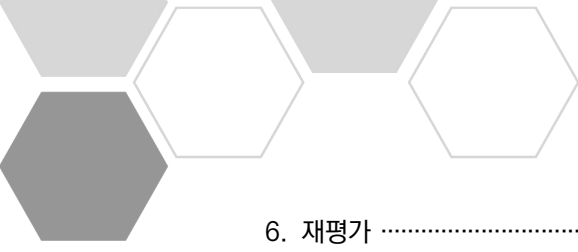


표지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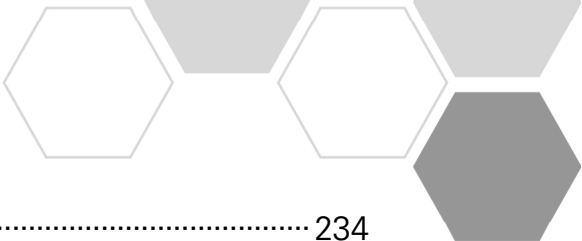


Contents

I. 질의항목 리스트	1
II. 회계처리에 관한 질의	27
제1장. 재무제표의 표시와 부속서류의 작성에 관한 지침	29
1. 일반사항	29
2. 재정상태표	32
3. 순자산변동표	33
제2장.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회계처리지침	35
1. 용어의 정의	35
2. 금융자산의 분류	36
3. 금융자산의 인식 후 평가	50
4. 금융자산의 감액과 대손	61
5. 금융자산의 제거	67
6. 금융부채의 분류	69
7. 금융부채의 최초 인식	71
제3장.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74
1.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의 분류	74
2. 인식의 일반원칙	84
3. 인식의 예외사항	91
4. 취득원가의 측정	94
5. 감가상각	125



6. 재평가	133
7. 감액	151
8. 제거	154
9. 공시	157
10. 경과조치	158
제4장. 무형자산 회계처리지침	159
1. 인식	159
2. 상각	174
제5장. 기타의 자산과 기타의 부채 회계처리지침	178
1. 용어의 정의	178
2. 기타의 자산	179
3. 기타의 부채	183
제6장. 리스 회계처리지침	188
1. 리스의 분류	188
2. 금융리스	189
제7장. 우발상황 회계처리지침	192
1. 우발부채 인식과 공시	192
제8장. 교환수익 회계처리지침	199
1. 교환수익의 분류	199
2. 교환수익의 회계처리	211
제9장. 비교환수익 회계처리지침	217
1. 비교환수익의 분류	217
2. 국세수익 이외의 비교환수익의 인식	225
3. 국세수익 이외의 비교환수익의 환급과 과오납금의 반환	229
4. 국세수익 이외의 비교환수익의 표시	233



- 제10장. 비용 회계처리지침 234
 - 1. 비용의 분류 234
 - 2. 비용의 회계처리 266

- 제11장. 연금 회계처리지침 274
 - 1. 용어의 정의 274
 - 2. 퇴직수당총당부채의 인식 및 측정 275
 - 3. 연금수익의 구성 및 인식 276

- 제12장. 보험 회계처리지침 279
 - 1. 보험수익·비용의 인식 및 측정 279

- 제13장. 보증 회계처리지침 282
 - 1. 보증총당부채의 인식 및 평가 2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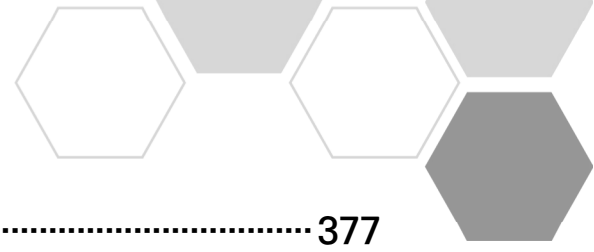
- 제14장. 용자 회계처리지침 283
 - 1. 적용범위 283
 - 2. 순현금흐름 290
 - 3. 유효이자율 293
 - 4. 용자보조원가총당금의 상각 및 평가 295
 - 5. 제거(용자금의 매각 및 대손) 298
 - 6. 수익과 비용의 인식 299
 - 7. 재무제표 표시 300
 - 8. 경과조치 301

- 제15장. 민간투자사업(BTO·BTL) 회계처리지침 303
 - 1. 임대형 민자사업(BTL) 방식의 회계처리 303

- 제16장. 원가계산에 관한 지침 304
 - 1. 일반사항 304



2. 비용과 수익의 집계	310
3. 비배분비용과 비배분수익의 구분	318
4. 관리운영비와 간접원가의 구분	325
제17장. 국고금 회계처리지침	326
1. 적용범위	326
2. 국고금의 수납	327
3. 국고금의 지출	328
4. 수입금의 반환	331
제18장. 세입·세출외거래 회계처리지침	332
1. 세입·세출외거래의 회계처리	332
제19장. 회계정책·회계추정의 변경과 오류수정에 관한 지침	333
1. 전기오류수정	333
제20장. 정부조직개편 회계처리지침	343
1.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회계처리	343
2. 정부조직 개편일이 속한 회계연도의 결산	345
제21장. 계정과목 해설서	346
1. 유형자산	346
2. 투자증권, 소프트웨어	349
3. 제재금수익, 무상이전수입, 이자수익	351
4. 재화및용역제공수익, 기타수익	355
5. 인건비, 복리후생비	357
6. 소모품비, 인쇄비	358
7. 외주용역비	361
8. 세금과공과, 여비교통비, 업무추진비	367
9. 지급수수료, 지급임차료	369
10. 보전비, 보조비, 수선유지비, 기타비용	371



Ⅲ. 디브리인 업무처리에 관한 질의 377

제1장. 수정전시산표 마감전 업무처리 379

- 1. 개별법과 재무제표 대사 379
- 2. 건설중인자산, 선급금 내역 검토 381
- 3. 계정과목 변경 384
- 4. 계정과목 적정성 검토 387
- 5. 부(-)의 계정과목 처리 394
- 6. 업무마감 절차 399
- 7.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 내역 검토 401
- 8. 처분 업무처리 오류 402
- 9. 취득 업무처리 오류 403

제2장. 내부거래 405

- 1. 거래처 수정 405
- 2. 기타 미제거 건 조치 방법 408
- 3. 대상제외 항목 410
- 4. 상대소관 또는 발생소관 미제거 건만 존재시 조치 방법 414
- 5. 수동대사 및 국채 제거 방법 417

제3장. 결산조정분개 및 결산보고서 수정 420

- 1. 결산조정분개 진행 및 등록 메뉴 사용 420
- 2. 결산조정전표 등록 422
- 3. 전기재무제표 재작성 424

Ⅳ.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질의 425

제1장. 결산개요 427

- 1. 자산, 부채 및 순자산증감표 427



제2장. 주식	428
1. 계류중인 소송사건	428
2. 압수품·몰수품 및 세입·세출외 현금	429
3. 용자사업	430
4. 자산재평가	432
제3장. 필수보충정보	433
1. 유산자산	433
2. 총잉여금·재정운영결과조정표	434
제4장. 부속명세서	437
1. 일반유형자산명세서	437
2. 출자금명세서	439
제5장. 기타	440
1. 결산보고서 제출방법	440



I

질의항목 리스트

[회계처리에 관한 질의]

연번	질의 요약	페이지
	제1장. 재무제표의 표시와 부속서류의 작성에 관한 지침	29
	1. 일반사항	29
Q1	국가회계실체의 범위	29
Q2	MMF 거래 시 발생하는 관련손익의 순액 회계처리 가능 여부	30
Q3	정부 내 전대차관 거래액 원단위 절사 후 인식 가능여부	31
	2. 재정상태표	32
Q4	재정상태표상 기본순자산이 표시되지 않은 이유	32
	3. 순자산변동표	33
Q5	재정상태표상 적립금및잉여금에 재정운영결과가 표시되지 않은 이유	33
Q6	재정상태표상 적립금및잉여금에 전기이월결손금·잉여금이 표시되지 않은 이유	34
	제2장.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회계처리지침	35
	1. 용어의 정의	35
Q7	외부 감정법인 산정결과의 공정가액 해당 여부	35
	2. 금융자산의 분류	36
Q8	정기예금의 계정과목 분류	36
Q9	수익증권의 계정과목 분류	37
Q10	국가채권과 재무결산상 미수이자수익(미수채권) 인식 차이	38
Q11	정부기금이 보유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계정과목 분류	39
Q12	임차보증금의 유동성 대체	41
Q13	임차보증금의 회계처리	42
Q14	시설장치 보증금 회계처리 계정과목	43
Q15	채권형 신증자본증권의 회계처리 계정과목	44
Q16	연기금풀에 비율로 투자하는 경우	45
Q17	만기보유 목적 채무증권의 공정가액 평가 제외 가능 여부	46
Q18	MMF의 계정과목	47
Q19	예탁금의 장·단기 구분 기준	48
Q20	민간업체 전기료 대납액의 회계처리	48
Q21	국유재산 대부보증금의 회계처리 계정과목	49
Q22	승소한 소송 관련 미수채권의 계정과목	49

연번	질 의 요 약	페이지
	3. 금융자산의 인식 후 평가	50
Q23	현재가치할인차금과 대손충당금의 구분	50
Q24	채무증권의 평가 원칙	51
Q25	출자금 평가방법	52
Q26	기타지분증권(연기금투자액)의 재투자 회계처리	53
Q27	매매기준율을 알 수 없는 경우 적용 환율	54
Q28	유가증권 평가 시 지분법 사용 가능 여부 및 그 근거	55
Q29	투자증권평가손실의 산정	55
Q30	대여금과 수익증권을 통한 간접 대여금의 공정가치 평가 여부	56
Q31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평가	57
Q32	MMF, 채권형펀드의 이자수익 원본 가산여부	58
Q33	지분증권의 공정가액 평가	59
	4. 금융자산의 감액과 대손	61
Q34	유가증권 감액손실 인식	61
Q35	주식 감액 사유의 유형	63
Q36	외화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 여부	63
Q37	대손충당금 추정 및 인식 시점	64
Q38	유효이자율보다 대여이자율이 높은 융자금의 대손추산액 회계처리	65
Q39	채권의 대손충당금 설정 방법	66
	5. 금융자산의 제거	67
Q40	발행자 청산에 따른 투자증권 처분 시 회계처리	67
Q41	전신전화가입권 환급시 선수금 처리의 적정여부	67
Q42	수익증권 처분 시 발생하는 이자의 회계처리 계정과목	68
	6. 금융부채의 분류	69
Q43	타 기금으로부터 상환의무가 있는 자금 수령시 회계처리	69
Q44	국고채무부담행위로 선박 취득시 회계처리	70
	7. 금융부채의 최초 인식	71
Q45	발행일과 매출일이 다른 국채 발행 회계처리	71
Q46	국채 발행시 발행수수료, 법률자문료 등의 회계처리	72
Q47	해외차입금의 현재가치평가시 적용할 유효이자율	73
	제3장.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74

연번	질 의 요 약	페이지
	1.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의 분류	74
Q48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의 구분 기준	74
Q49	국유재산·물품대장 등재 대상이 아닌 함포의 치안유지자산 처리 가능 여부	75
Q50	건설중인자산의 범위	76
Q51	건설중인기타의유형자산 계정과목이 발생하는 경우	77
Q52	치안유지자산의 회계처리	78
Q53	치안유지자산으로 재분류 시 장부가액 산정방법	78
Q54	탄피 회계처리	79
Q55	문화재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는 미술품의 회계처리	80
Q56	미술품 구입 관련 올바른 계정과목	81
Q57	정부미술품 계정과목 발생이 오류인지 여부	81
Q58	미술품 계정재분류 시 결산조정전표 일괄입력 가능여부	82
Q59	건축물의 정의	82
Q60	국유재산상 기계기구의 재무계정과목	83
Q61	국유재산관리기금을 통해 취득한 자산의 귀속여부	83
Q62	국유재산과 물품 간 구분 변경 시 회계처리	83
	2. 인식의 일반원칙	84
Q63	등기 미완료 토지에 대한 자산 인식 방법	84
Q64	국방부에서 관리중인 군견(생물자산)의 회계처리	85
Q65	50만원 미만 취득 건을 자산 계상해도 되는지 여부	86
Q66	국가회계예규상 50만원 기준과 물품분류 지침상 10만원 기준의 차이	86
Q67	50만원 미만 취득 건의 판단기준	87
Q68	취득원가 50만원 미만 물품의 자산인식 여부	87
Q69	국유재산관리기금을 통한 자산취득 시 회계처리	88
Q70	선사용 토지의 자산 인식여부	88
Q71	400번대 예산목 비용처리한 항목에 대한 추가 검토 여부	89
Q72	소유권이 없는 토지에 지은 건축물의 별도자산 인식 여부	89
Q73	재측량으로 장부가액 증가 시 회계처리 방법	90
Q74	기증받은 미술품의 회계처리	90
	3. 인식의 예외사항	91
Q75	‘유산자산취득비’사용시 회계처리	91

연번	질 의 요 약	페이지
Q76	보존용재산의 유산자산 해당여부	92
Q77	수변보호구역, 생태계보호구역의 유산자산 해당여부	93
	4. 취득원가의 측정	94
Q78	건물 방수공사의 자본적 지출 해당 여부	94
Q79	문화재 발굴조사비용 등의 자산취득 부대비용 해당 여부	95
Q80	지진계 설치를 위한 굴착비용이 취득부대비용인지 여부	95
Q81	감리비용이 취득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96
Q82	공사현장 감독 관련 여비의 취득부대비용 해당여부	96
Q83	주거이전비가 토지매입부대비용인지 여부	97
Q84	사용준비를 위한 지출을 취득부대비용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97
Q85	자산 취득 부대비용 해당 여부	98
Q86	취득부대비용이 본자산의 취득원가보다 큰 경우 회계처리	98
Q87	출연금 예산으로 민간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의 자산 해당 여부	99
Q88	자산 취득시 펀드에 지급한 수수료 등의 자산 취득원가 구성 여부	100
Q89	임차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 회계처리	101
Q90	부처 내 자산 관리권 이전의 회계처리	103
Q91	무상관리전환 시 처분실체에서 수행해야 하는 올바른 회계처리	104
Q92	무상관리전환 시 취득실체의 회계처리	104
Q93	국유재산관리기금을 통하지 않은 유상관리전환 시 회계처리	106
Q94	무상관리전환 자산에 대한 재평가이익의 처리	106
Q95	무상관리전환 시 처분실체의 재평가이익 처리방법	107
Q96	무상관리 전환 시 취득실체의 감가상각누계액 승계 여부	107
Q97	사용수익권의 재무제표 표시	108
Q98	사용수익권 유형자산별 배분	108
Q99	국가어항 관련 사용수익권 인식 및 회계처리	109
Q100	사용수익권 금액 평가방법	109
Q101	자산 교환으로 인한 취득 시 취득원가의 측정	110
Q102	현금이 수반된 토지교환거래 시 공정가액 평가방법	111
Q103	국가를 대행하여 취득한 자산의 자산화 여부	111
Q104	아파트 재건축(분양권)에 따른 회계처리	112
Q105	출자 및 민간대행사업을 통한 취득 시 사용수익권 계상	113

연번	질 의 요 약	페이지
Q106	출자 및 민간대행사업을 통한 취득 시 출자금 계상	114
Q107	철거 예정 건축물의 회계처리	115
Q108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의 구분	116
Q109	건물에 대한 추가설비를 건물과 구축물로 구분하는 기준	117
Q110	타부처 소유 청사의 자본적지출(리모델링)의 회계처리	118
Q111	건물 리모델링 공사 시 발생하는 지출에 대한 회계처리	119
Q112	국도수선유지비 자산화 여부	119
Q113	행사비용이 자본적 지출인지 여부	120
Q114	건설증인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	120
Q115	설계비, 감리비, 시공부대비 등의 자산가액 포함 여부	121
Q116	토지 취득 관련 보상비의 회계처리	122
Q117	유찰 업체에 지급한 설계보상비의 회계처리	123
Q118	일괄취득자산의 올바른 회계처리	124
	5. 감가상각	125
Q119	자산의 잔존가액 결정	125
Q120	잔존내용연수가 0인 경우 오류인지 여부	126
Q121	감가상각 미수행자산에 대한 전기누적효과 반영방법	128
Q122	철거예정자산 장부가액 순액표시 여부	129
Q123	감가상각 대상자산에서 감가상각비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 오류인지 여부	129
Q124	과거 취득한 자산의 내용연수도 변경해야 하는지 여부	130
Q125	치안유지자산의 감가상각방법	130
Q126	상각완료자산의 무상관리전환 또는 무상양여시 회계처리	132
	6. 재평가	133
Q127	자산 재평가 회계처리 방법	133
Q128	자산별 재평가 수행일의 차이 가능 여부	134
Q129	자산 재평가 시 공정가액의 범위	135
Q130	재평가손실이 있는 자산의 처분시 회계처리	136
Q131	자산 분류 변경 시 재평가이익의 처리	137
Q132	2010년에 취득한 자산의 재평가 대상 해당 여부	138
Q133	자산 재평가 단위	139
Q134	자산 재평가 수행 주기	140

연번	질 의 요 약	페이지
Q135	재평가이익이 있는 자산의 처분 시 회계처리	141
Q136	재평가 수행 자산의 처분시 회계처리	142
Q137	재평가 수행자산의 각 상황별 재평가이익 처리 방법	142
Q138	내용연수 경과자산도 재평가 대상인지	143
Q139	자산재평가 시 물가배수법 적용 관련 자본적지출 고려 여부	143
Q140	자산재평가지 물가배수법의 적용 조건	144
Q141	자산 재평가 시 물가배수법 적용 기준일	144
Q142	재평가 수행자산의 감가상각 시 내용연수 적용기준	145
Q143	자산재평가 시 감가상각대상 자산의 내용연수 조정 여부	145
Q144	투자자산도 재평가를 수행해야 하는지 여부	146
Q145	재평가이익 발생이 오류인지 여부	146
Q146	입목의 가격평가 방법	147
Q147	해외에 소재한 자산의 재평가 방법	148
Q148	치안유지자산 재평가 방법	149
Q149	토지의 용도변경 관련 올바른 회계처리	149
Q150	미술품도 재평가 대상인지 여부	150
Q151	재평가 수행자산의 재평가이익 상계방법	150
	7. 감액	151
Q152	건설중인건물에 대한 재해손실 회계처리	151
Q153	재평가 대상 자산의 감액 회계처리	152
Q154	자산 폐기시 회계처리 계정과목	153
	8. 제거	154
Q155	현물출자로 인한 유형자산 처분에 대한 회계처리	154
Q156	국유재산관리기금을 통한 자산매각 시 회계처리	155
Q157	토지 매각 관련 선수금 환원처리 여부	155
Q158	재평가 수행 자산의 현물출자 시 회계처리	156
	9. 공시	157
Q159	감가상각대체 사회기반시설의 공시사항	157
	10. 경과조치	158
Q160	감가상각 개시 시점의 감가상각누계액 인식 회계처리	158
	제4장. 무형자산 회계처리지침	159

연번	질 의 요 약	페이지
	1. 인식	159
Q161	홈페이지 구축 용역비의 자산 인식 여부	159
Q162	시스템 개발 관련 연구개발용역비 무형자산 인식여부	160
Q163	자체개발한 소프트웨어의 취득금액 산정 및 기술특허 전 발생된 비용에 대한 회계처리	162
Q164	홈페이지 웹호환성 인증마크 획득 및 디자인 개선에 지출된 금액의 회계처리 계정과목	164
Q165	특허권 취득원가에 관련 기술개발비(R&D비용)도 포함되는지	165
Q166	특허권 취득 관련 지출액의 무형자산 인식여부	167
Q167	기술개발비도 특허권의 취득원가에 포함되는지 여부	168
Q168	외부로부터 구입한 전산시스템의 자산 인식여부 및 내용연수의 측정	169
Q169	콘도회원권과 전선전화가입권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여야 하는지 여부	171
Q170	자본적지출로 증가한 부분을 별도자산으로 구분해야 하는지 여부	171
Q171	감리비용이 취득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172
Q172	보안프로그램 라이선스 취득 시 계정과목 질의	172
Q173	내부개발소프트웨어 무형자산 인식 관련규정 존재여부	173
	2. 상각	174
Q174	상각완료된 무형자산의 잔존가액	174
Q175	자본적지출로 증가한 부분에 대한 감가상각방법	174
Q176	전기 감가상각 미수행 무형자산의 당기 감가상각 수행 여부	175
Q177	내용연수가 경과한 무형자산의 잔존가액	176
Q178	소프트웨어 자본적지출 관련 추정내용연수 변경 여부	176
Q179	소프트웨어 자본적지출 관련하여 감가상각 시 월/연 단위 상각 여부	177
Q180	한시적 조직에서 취득한 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방법	177
	제5장. 기타의 자산과 기타의 부채 회계처리지침	178
	1. 용어의 정의	178
Q181	병원 내 의약품 구매비용 회계처리	178
	2. 기타의 자산	179
Q182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선택 및 변경방법	179
Q183	재고자산 저가평가 시 자산 가액	181
Q184	재고자산의 저가법 평가 시 회계처리	181

연번	질 의 요 약	페이지
Q185	채고자산의 정상적/비정상적 감모손실의 원가구분	182
	3. 기타의 부채	183
Q186	퇴직보험예치금 성격으로 편성된 예산을 수급권이 없는 일반 금융상품에 투자한 경우 회계처리 방법	183
Q187	퇴직보험예치금 회계처리	184
Q188	기타직에 대한 퇴직보험예치금 납입 시 회계처리	185
Q189	퇴직급여충당부채 초과 예치금 회계처리	186
Q190	퇴직연금운용자산 발생이자 회계처리	186
Q191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퇴직급여 충당부채 회계처리	187
	제6장. 리스 회계처리지침	188
	1. 리스의 분류	188
Q192	제3자 명의로 계약된 금융리스계약에 대한 자산, 부채의 인식 여부	188
	2. 금융리스	189
Q193	금융리스부채의 유동성 대체	189
Q194	금융리스자산 취득원가에 조달수수료 포함여부	189
Q195	리스개설직접원가에 따른 금융리스자산과 금융리스부채 금액 차이	190
Q196	지급일과 결산일이 상이한 금융리스 회계처리	190
Q197	금융리스 유동성 분류	191
Q198	금융리스자산의 재무제표 표시	191
	제7장. 우발상황 회계처리지침	192
	1. 우발부채 인식과 공시	192
Q199	진행 중인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충당부채 인식 요건	192
Q200	보고기간후사건으로 패소가 확정된 경우 소송충당부채 계상 여부	194
Q201	민간투자사업(최소운영수입보장 협약) 관련 우발손실 처리방법	195
Q202	소송관련 충당부채 회계처리 계정과목 및 주석 공시 방법	196
Q203	소송의 공시범위	197
Q204	소송가액 미확정 시 주석 공시 여부	198
	제8장. 교환수익 회계처리지침	199
	1. 교환수익의 분류	199
Q205	의무실에서 스켈링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의 계정과목	199
Q206	망향의 동산 묘지 사용료수익의 회계처리 계정과목	200

연번	질 의 요 약	페이지
Q207	일반회계의 수입대체경비 수입으로 민간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수익의 회계처리 계정과목	201
Q208	무형자산의 사용료 수익	202
Q209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의 회계처리 계정과목	203
Q210	일반회계의 수입대체경비 수입으로 ○○연수원에서 교육생들로부터 징수한 실습비의 회계처리 계정과목	204
Q211	토지대여료를 분납 형태로 수납 시 회계처리	205
Q212	과학관 관람료 및 주차장 수입 계정과목	206
Q213	항만시설 사용으로 인한 운영수입금	206
Q214	주파수할당대가 해당 계정과목 및 수익의 기간배분	207
Q215	소모품비로 처리하였던 고철 등 매각수입	208
Q216	신용카드 포인트 현금으로 반환 받는 경우 회계처리	209
Q217	소송승소로 청구하여 받은 소송비용 회계처리	210
	2. 교환수익의 회계처리	211
Q218	○○기금의 기술료 수익 회계처리 시점	211
Q219	건물의 손상으로 수령하는 보험료 회계처리 계정과목	212
Q220	전기에 징수결의 되었지만 아직 수납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에 대해 오류 정정하는 경우 회계처리 계정과목	213
Q221	수입금 환급과 과오납금 반환의 차이	214
Q222	소송관련 선수금의 수익 인식 시기	215
Q223	일반회계에서 발생하기 어려운 계정과목	216
	제9장. 비교환수익 회계처리지침	217
	1. 비교환수익의 분류	217
Q224	기타재원조달의 정의	217
Q225	부담금 연체이자의 회계처리 계정과목	218
Q226	환수금, 반환금 등에 대한 연체이자 회계처리 계정과목	219
Q227	농특세이전수입과 주세이전수입의 정의	220
Q228	주식매각 사후정산대금, 지방세 환급분 등을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수령한 경우 회계처리	221
Q229	국책사업으로 민간에게 돈을 지출한 후 추후에 민간이 구입한 물품을 인계받는 경우 회계처리 계정과목	223

연번	질 의 요 약	페이지
Q230	타 부처로 부터 건설증인자산을 이전 받은 경우 상대 계정과목	224
	2. 국세수익 이외의 비교환수익의 인식	225
Q231	기금이 수령하는 출연금 회계처리	225
Q232	차입금상환재원으로 수령한 출연금의 순자산변동표 반영	227
Q233	과태료 수익인식 시점	228
Q234	과징금 등 벌금수익의 인식시기	228
	3. 국세수익 이외의 비교환수익의 환급과 과오납금의 반환	229
Q235	외국환건전성부담금 징수과정에서 발생하는 회계처리의 적정성 문의	229
Q236	전기에 징수한 부담금수익에 대한 과오납반환시 계정과목 선택	230
Q237	법률에 따라 환급할 부담금수익의 회계처리	231
Q238	비교환수익 환급금이 당해 징수액을 초과하는 경우 회계처리	232
	4. 국세수익 이외의 비교환수익의 표시	233
Q239	비교환수익을 순자산변동표와 재정운영표로 구분 반영하는 기준	233
	제10장. 비용 회계처리지침	234
	1. 비용의 분류	234
Q240	무상관리전환시 자산을 이전하는 회계실체의 회계처리	234
Q241	계약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4대 보험료의 회계처리	235
Q242	TV수신료, Skylife 수신료 등의 회계처리	236
Q243	포상 목적의 상품권 지급 시 회계처리	237
Q244	외부 번역 용역비 회계처리	238
Q245	설치비 회계처리	239
Q246	민간위탁금 회계처리	240
Q247	조달청으로 불용품 무상양여 시 회계처리	241
Q248	선택진료수당 회계처리	242
Q249	전세권 설정 시 법무사에게 지출된 수수료 회계처리	243
Q250	소송 패소로 인한 지출 회계처리	244
Q251	파견자에게 지급하는 주거지원비 회계처리	245
Q252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 회계처리	246
Q253	신용카드 수수료 회계처리	247
Q254	의료적 시험 실시 비용 회계처리	248
Q255	출연비 계정과목의 구분	249

연번	질 의 요 약	페이지
Q256	보조비 계정과목의 구분	250
Q257	잔여재산 반환 회계처리	251
Q258	지방자치단체 소유 병원에 대한 보조금 회계처리	252
Q259	출자기관의 법인세 대납분에 대한 회계처리	252
Q260	관리용역비와 위탁사업비의 차이	253
Q261	퇴직보험운용사에 대한 수수료 회계처리	254
Q262	회의장소 임차료의 회계처리	255
Q263	연구개발용역비와 시험연구비의 차이	256
Q264	해외 주재원 여비 회계처리	257
Q265	조달수수료 회계처리	257
Q266	정책 연구용역 대금 회계처리	258
Q267	기타용역비와 기타수수료의 차이	259
Q268	업무용 차량 주유비 회계처리	260
Q269	급여 등 지출금을 반납 받는 경우 회계처리	260
Q270	보조비 등의 집행 잔액을 정산하여 반환 받는 경우 회계처리	262
Q271	지자체소유재산에 대한 리모델링 비용	263
Q272	공공기관출연비와 민간출연비	264
Q273	기타직직원의 4대보험료와 급여 지급 시 퇴직급여충당부채에서 차감	264
Q274	정부내예수금 조기상환으로 발생한 손실 회계처리	265
	2. 비용의 회계처리	266
Q275	협정에 따른 방위분담금의 부채 인식 필요 여부 등	266
Q276	OO부 의료급여 사업 미지급금 부채 인식여부	267
Q277	공중보건의 급여, 계약직 연봉 등의 회수액 회계처리	268
Q278	사업 잔액 반납 회계처리	269
Q279	반납받은 보전금의 원금과 이자 회계처리 구분 필요 여부	270
Q280	과외지급금회수금의 재정운영표상 표시 기준	271
Q281	민간경상보조금 정산으로 발생한 미수채권대손상각비 원가구분	272
Q282	지방재정교부금 인식시기	273
	제11장. 연금 회계처리지침	274
	1. 용어의 정의	274
Q283	연금충당부채의 정의	274

연번	질 의 요 약	페이지
	2. 퇴직수당총당부채의 인식 및 측정	275
Q284	사립학교교직원에 대한 퇴직수당총당부채 계상 여부	275
	3. 연금수익의 구성 및 인식	276
Q285	공무원연금 부담금을 부처 자체예산으로 지급하는 경우 회계처리	276
Q286	일반회계가 인사혁신처로부터 배부 받은 공무원연금부담비 재무제표 표시	277
Q287	인사혁신처가 타부처를 대신하여 공무원연금기금에 일괄납부하는 고용주부담금 회계처리	278
	제12장. 보험 회계처리지침	279
	1. 보험수익·비용의 인식 및 측정	279
Q288	미경과보험료 적립금 전입액 회계처리	279
Q289	미경과보험료적립금 감소 시 회계처리	280
Q290	보험총당부채 산정방식	281
	제13장. 보증 회계처리지침	282
	1. 보증총당부채의 인식 및 평가	282
Q291	보증비용의 측정	282
	제14장. 융자 회계처리지침	283
	1. 적용범위	283
Q292	융자보조원가총당금 인식의 주체	283
Q293	주식으로 공시해야 하는 융자사업의 범위	284
Q294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대여금의 회계처리	285
Q295	단기융자금에 대한 융자보조원가총당금 산정 필요 여부	286
Q296	융자보조원가총당금 설정 대상 융자금	287
Q297	융자금의 현재가치 평가 여부	288
Q298	변동이자율 조건의 융자금에 대한 융자 회계처리지침 적용여부	289
	2. 순현금흐름	290
Q299	융자보조원가총당금 계산시 융자금 현금흐름 변동의 반영 방법	290
Q300	융자금 채무불이행 예상액 산정 방법	291
Q301	순현금유입액 측정 시 채권잔액비례법 사용 가능 여부	292
	3. 유효이자율	293
Q302	융자보조원가총당금 계산 시 적용하는 유효이자율	293
Q303	국고채이자율 확인 방법	294

연번	질의 요약	페이지
	4. 용자보조원가총당금의 상각 및 평가	295
Q304	용자금에 대한 미수이자 계상 시 적용할 이자율	295
Q305	용자금 회수 시 회계처리	296
Q306	용자보조원가총당금의 변경액 인식 방법	297
	5. 제거(용자금의 매각 및 대손)	298
Q307	용자금 정상 회수의 경우 용자보조원가총당금의 회계처리	298
	6. 수익과 비용의 인식	299
Q308	용자보조비용(용자보조원가총당금환입), 용자금이자수익의 재정운영표상 표시	299
	7. 재무제표 표시	300
Q309	용자금의 표시(유동성 대체)	300
	8. 경과조치	301
Q310	피고용자 대상 용자금의 용자 회계처리지침 적용대상 여부	301
Q311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실행된 용자금에 대한 대손추산액의 처리	302
	제15장. 민간투자사업(BTO·BTL) 회계처리지침	303
	1. 임대형 민자사업(BTL) 방식의 회계처리	303
Q312	임대형 민자사업(BTL) 계약변경 시 회계처리	303
	제16장. 원가계산에 관한 지침	304
	1. 일반사항	304
Q313	프로그램에 추적 가능한 행정운영성 경비	304
Q314	기금의 관리운영비 프로그램총원가 계상 여부	305
Q315	관서운영경비(프로그램총원가 vs 관리운영비)	306
Q316	프로그램명이 변경된 경우 재정운영표상 표시 방법	306
Q317	동일 부처 내 회계실체간 간접원가 배부	307
Q318	타 부처가 집행하는 예산에 대한 원가 배부	308
Q319	일반회계의 프로그램수익	309
	2. 비용과 수익의 집계	310
Q320	비용과 수익의 집계	310
Q321	일반회계에서 운영하는 병원의 수익구분(프로그램수익인지 또는 비배분수익인지)	311
Q322	잡이익의 프로그램수익 분류 가능 여부	312
Q323	지원받는 기관의 운영비에 해당하는 보조비 원가구분	313
Q324	정부내전대차관이자수익(프로그램수익 vs 비배분수익)	314

연번	질의 요약	페이지
Q325	여유자금운용프로그램에서 발생한 장기투자증권처분손실(프로그램총원가 vs 비배분비용)	315
Q326	이자수익(프로그램수익 vs 비배분수익)	316
Q327	금융리스이자비용(프로그램총원가 vs 비배분비용)	317
	3. 비배분비용과 비배분수익의 구분	318
Q328	폐지된 프로그램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 프로그램원가 계상 여부	318
Q329	자산재평가손실, 외화평가손실 및 감가상각비의 원가구분	318
Q330	국고금운용수익계정에서 발생하는 손익의 재무제표 표시	320
Q331	재평가손실의 재정운영표상 표시	321
Q332	건물 감가상각비의 재정운영표상 구분	322
Q333	비배분비용과 비배분수익의 구분	323
Q334	중앙관서 융자프로그램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의 구분	324
Q335	자산폐기손실의 원가 구분	324
	4. 관리운영비와 간접원가의 구분	325
Q336	프로그램이 있는 사업의 인건비 회계처리	325
	제17장. 국고금 회계처리지침	326
	1. 적용범위	326
Q337	국고금 회계처리지침의 적용 대상	326
	2. 국고금의 수납	327
Q338	10원 미만 수입금의 처리	327
	3. 국고금의 지출	328
Q339	예산집행과정과 회계처리 시점의 관계	328
Q340	국고수입과 국고이전지출의 정의	329
Q341	기말 결산 시 국고예금 잔액이 있을 경우 오류여부	330
	4. 수입금의 반환	331
Q342	과오납반환금의 회계처리	331
	제18장. 세입·세출외거래 회계처리지침	332
	1. 세입·세출외거래의 회계처리	332
Q343	현물출자 시 취득한 유가증권의 취득원가	332
	제19장. 회계정책·회계추정의 변경과 오류수정에 관한 지침	333
	1. 전기오류수정	333

연번	질 의 요 약	페이지
Q344	재무제표 오류 수정시 적절한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표시 방법	333
Q345	누락된 자산의 재평가 회계처리	337
Q346	전기 재평가 자산의 재평가 금액에 오류가 있는 경우	338
Q347	계정과목 대체 시 회계처리	339
Q348	토지면적 변경에 따른 전기오류수정 회계처리	340
Q349	수익, 현금및현금성자산 분류 오류 수정 시 전기재무제표 재작성 여부	341
Q350	전 회계연도 이전에 발생한 중대한 오류 전기 순자산변동표 반영 방법	342
Q351	중대한 오류를 판단하기 위한 양적 기준 유무 여부	342
	제20장. 정부조직개편 회계처리지침	343
	1.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회계처리	343
Q352	조직 변경으로 이관된 자산이 취득원가 50만원 미만인 경우 회계처리	343
Q353	조직개편에 따른 자산 이관 회계처리 방법	344
Q354	정부조직개편등에따른순자산증감 계정과목 사용시기	344
Q355	조직개편 시 국고예금 처리방법	344
	2. 정부조직 개편일이 속한 회계연도의 결산	345
Q356	폐지부처 재무제표의 보고주체	345
	제21장. 계정과목 해설서	346
	1. 유형자산	346
Q357	특수장비취득 관련 비용 계정과목 선택	346
Q358	치안유지자산의 범위	347
Q359	예비군 훈련장비의 계정과목 선택	347
Q360	교도소 장비의 계정과목 선택	348
Q361	치안유지자산과 전비품과의 차이	348
	2. 투자증권, 소프트웨어	349
Q362	주식회사가 아닌 회사에 대한 투자금 회계처리	349
Q363	개발 중인 소프트웨어 회계처리 방법	350
	3. 제재금수익, 무상이전수입, 이자수익	351
Q364	소송패소에 따른 과징금 수익 반환 시 계정과목 선택	351
Q365	기금의 특별회계전입금(순자산)사용 가능 여부	351
Q366	공공기관으로부터 자산수증 시 계정과목 선택	352
Q367	학자금 대여금 이전에 따른 계정과목 선택	353

연번	질 의 요 약	페이지
Q368	보통예금 이자수익 계정과목 선택	354
Q369	정기예금 이자수익 계정과목	354
	4. 재화및용역제공수익, 기타수익	355
Q370	투기장 사용료 수익 계정과목 선택	355
Q371	폐지매각대금 계정과목 선택	355
Q372	고철대매각대금 계정과목 선택	356
	5. 인건비, 복리후생비	357
Q373	무기계약직 급여 계정과목 선택	357
Q374	4대보험관련 비용 계정과목 선택	357
	6. 소모품비, 인쇄비	358
Q375	업무용도서 및 도서관 도서구입비 계정과목 선택	358
Q376	신문 구독 대금 계정과목 선택	358
Q377	파워포인트 제작에 소요된 비용 계정과목 선택	359
Q378	사진인화 경비 계정과목 선택	359
Q379	관리지침 책자발행비 계정과목 선택	360
	7. 외주용역비	361
Q380	무선통신망 유지 관리비 계정과목 선택	361
Q381	전문가 자문에 대한 수당지급 관련 계정과목 선택	362
Q382	위탁계약에 의한 상담센터 운영비용 계정과목 선택	363
Q383	민간대행사업비 관련 운영비 계정과목 선택	364
Q384	연구개발용역비와 연구용역비의 차이	365
Q385	회의참석자에 대한 수당 계정과목 선택	366
	8. 세금과공과, 여비교통비, 업무추진비	367
Q386	해외출장관련 비용 계정과목 선택	367
Q387	행사 진행관련 비용 계정과목 선택	368
	9. 지급수수료, 지급임차료	369
Q388	송달료 등의 소송비용 계정과목 선택	369
Q389	근저당설정비용 계정과목 선택	369
Q390	신용평가정보이용료 계정과목 선택	370
Q391	운용리스와 임차계약 구분기준	370
	10. 보전비, 보조비, 수선유지비, 기타비용	371

연번	질 의 요 약	페이지
Q392	변론참고인에 지급한 여비 계정과목 선택	371
Q393	의료보조비 관련 비용 계정과목 선택	372
Q394	파티션 재배치 경비 계정과목 선택	373
Q395	소모성물품의 수선유지비 계정과목 선택	374
Q396	과오납반납 시 이자비용 계정과목 선택	374
Q397	소송충당부채 계상 시 비용 계정과목의 선택	375

[디브레인 업무처리에 관한 질의]

연번	질 의 요 약	페이지
	제1장. 수정전산표 마감전 업무처리	379
	1. 개별법과 재무제표 대사	379
Q398	결산조정전표로 등록하여 국유재산 대장에만 누락된 자산의 처리	379
Q399	계정과목세부명세서 조회 가능 시기	379
Q400	지번 변경으로 분할, 합병된 토지의 업무처리 방법	380
	2. 건설증인자산, 선급금 내역 검토	381
Q401	회계연도 말 선급금 잔액 정산 여부	381
Q402	전기 이전에 지출한 내역이 자본적지출 임에도 비용 처리한 경우 조치방법	381
Q403	결산담당자가 결산조정분개로 삭제한 건설증인자산을 일선관서에서 배부 처리한 경우 조치방법	382
Q404	본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완료된 부대공사의 정산 시기	382
Q405	본계정대체되지 않은 건설증인자산 회계처리	383
	3. 계정과목 변경	384
Q406	보험료 지급은 일반지출이 아닌 조달(계약) 메뉴로 처리 필요	384
Q407	세부·세세부항목 선택 오류의 수정 방법	384
Q408	시스템상 계정과목 변경 반영 시간	385
Q409	시스템을 통한 계정과목 변경이 가능한 범위	385
Q410	시스템을 통한 계정과목 변경 방법	385
Q411	비용 계정과목 정정 가능 시기	386
Q412	수익 계정과목 정정 가능 시기	386
	4. 계정과목 적정성 검토	387
Q413	국고예금 잔액 적정성 검토	387
Q414	국고수입과 월별 세출부 누계금액이 차이나는 원인	387
Q415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잔액이 한국은행국가예금 잔액과 일치	388
Q416	전기오류수정이익 계정과목 검토	388
Q417	정부외자산기부 회계처리 발생 사유	389
Q418	전기오류수정이익 발생내역 검토 및 조치 방법	390
Q419	기타증감을 통해 발생한 전기오류수정손익의 적정성 판단	391
Q420	감가상각비 재계산을 위한 정보 조회 방법	391

연번	질 의 요 약	페이지
Q421	기타증감을 통해 발생한 잡손실의 적정성 판단	392
Q422	임차보증금 계상 시 발생한 전기오류수정이익 조치 방법	392
Q423	물품대장과 국유재산대장 간의 자산 이동 시 발생한 손익 처리	392
Q424	기타증감의 사유를 잘못 선택하여 전기오류수정이익 발생	393
Q425	전세권의 재산종류를 잘못 선택하여 감가상각 발생	393
	5. 부(-)의 계정과목 처리	394
Q426	임차보증금 회수 시 기수납여부 체크 사용	394
Q427	계정과목별 부(-)의 명세서에서 관리번호별로 부(-)의 금액의 조치 필요성	395
Q428	계정과목별 부(-)의 명세서에서 관리번호의 의미	395
Q429	기수납여부 체크를 하여 선수금 잔액이 음수가 되는 오류	396
Q430	선급금 거래처별 부(-)의 잔액 조치 방법	396
Q431	거래처별 부(-)의 명세서에서 전기에 조치한 거래처가 당기에 부(-)의 금액으로 조회되는 경우 조치 방법	397
Q432	미지급금의 발생과 지급시점의 거래처가 상이하어 거래처별 부(-)의 금액 발생	397
Q433	연계기관이 재무결산 자료 등록 시 부(-)의 금액이 발생하여 연계가 불가능한 경우 조치방법	398
	6. 업무마감 절차	399
Q434	기금의 수입 업무 마감 시 중앙관서에서도 마감 필요	399
Q435	기금의 국유재산은 마감되었으나 중앙관서에서 마감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조치 방법	399
Q436	선급금이나 건설증인자산 본계정 대체 수행 시기	400
	7.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 내역 검토	401
Q437	자산취득비(430-01) 등 400번대 예산으로 지출한 내역이 자본적지출 또는 수익적지출인지 검토	401
	8. 처분 업무처리 오류	402
Q438	자산 매각 시 매각절차가 아닌 징수결의만 수행하여 자산이 차감되지 않는 오류 발생	402
	9. 취득 업무처리 오류	403
Q439	건설증인자산을 대체하지 않고 대장관리에서 기타증가로 처리	403
Q440	건당 취득금액이 50만 원 이상인 자산을 비용처리	403
Q441	대금 지급 시 미지급금이 정산되지 않은 오류	404

연번	질 의 요 약	페이지
Q442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에서 취득한 건물의 일반회계 이관	404
	제2장. 내부거래	405
	1. 거래처 수정	405
Q443	거래처를 자신의 관서로 선택한 후 수입/지출 마감된 상태에서 거래처 수정 방법	405
Q444	상대소관이 폐지소관인 경우 조치방법	405
Q445	상호점검에서 조회되지 않는 전표의 거래처 수정 방법	406
Q446	내부거래처가 올바른지 확인하는 방법	406
Q447	거래처명과 거래처 정보가 불일치하는 미제거 건 조치방법	407
	2. 기타 미제거 건 조치 방법	408
Q448	상호점검에서 '상호점검제거상태'만 다르고 나머지는 같은 건이 두 개 발생한 경우 조치방법	408
Q449	부가세 차이로 인한 미제거 건 조치방법	408
Q450	자산계정의 잔액이 0원이나, 당 회계연도 발생 부의금액이 미제거로 표시된 경우 제거 조치여부	409
	3. 대상제외 항목	410
Q451	대상제외 항목의 의미와 처리방법	410
Q452	내부거래 대상제외 항목 문의	410
Q453	조달수수료가 내부거래 제거 대상인지 여부	410
Q454	조달수수료가 미제거로 조회된 이유	411
Q455	기금 내부거래 대상 자료에 법인세비용 포함여부	412
Q456	선급법인세도 법인세비용과 같이 내부거래 대상제외 항목인지 여부	412
Q457	부담금수익과 제세의 내부거래 제거여부	413
Q458	관세를 운송비로 처리한 경우 조치방법	413
	4. 상대소관 또는 발생소관 미제거 건만 존재시 조치 방법	414
Q459	상호점검에서 발생소관의 미제거 건만 존재하는 경우 조치 방법	414
Q460	발생소관의 미제거 건만 존재하는 경우(상대소관 부채 누락) 조치 방법	414
Q461	발생소관의 미제거 건만 존재하는 경우(조달청에 대한 관리용역비) 조치 방법	415
Q462	발생소관의 미제거 건만 존재하는 경우(상대소관의 거래처 선택 오류) 조치 방법	415
Q463	상대소관에서 발생시킨 미제거 건만 존재하는 경우(계정과목 선택 오류) 조치 방법	416
Q464	환원전표 내부거래 제거 여부	416
	5. 수동대사 및 국채 제거 방법	417

연번	질 의 요 약	페이지
Q465	상호점검 조회 화면의 요청번호 의미	417
Q466	외부연계기관의 수동대사 수행 여부	417
Q467	자산부채의 결산 전 수동대사 필요 여부	418
Q468	내부거래 COA다운로드 방법	418
Q469	중앙관서 내 회계실체간 국채 내부거래 제거 방법	419
Q470	소관간 국채 내부거래 제거 방법	419
	제3장. 결산조정분개 및 결산보고서 수정	420
	1. 결산조정분개 진행 및 등록 메뉴 사용	420
Q471	디브레인을 통한 감가상각비 계산 시점	420
Q472	정부내예수금에 대한 미지급비용 계상 시 계정과목과 시스템상 처리방법	420
Q473	대손충당금의 프로그램 대응 방법	421
	2. 결산조정전표 등록	422
Q474	결산조정전표 등록 가능 시점	422
Q475	건설중인자산을 결산조정분개로 처리한 경우 사후 조치	422
Q476	결산조정전표 입력 시 조정항목의 순자산구분 선택 방법	423
Q477	소송패소로 소송비용 지급한 경우 기존 소송충당부채 상계 방법	423
	3. 전기재무제표 재작성	424
Q478	전기재무제표 재작성 절차	424
Q479	전기재무제표 재작성 시 수정분개의 반영 방식	424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질의]

연번	질 의 요 약	페이지
	제1장. 결산개요	427
	1. 자산, 부채 및 순자산증감표	427
Q480	연계기관의 자산, 부채 및 순자산증감표 작성방법	427
	제2장. 주식	428
	1. 계류중인 소송사건	428
Q481	주식에 공시 대상인 소송사건의 범위	428
Q482	소송관련 주식 작성	428
	2. 압수품·몰수품 및 세입·세출외 현금	429
Q483	압수품 몰수품 주식 기재 대상	429
Q484	세입·세출외 현금 주식 기재 대상	429
	3. 용자사업	430
Q485	용자보조원가충당금이 없는 용자사업 주식 공시	430
Q486	용자사업 주식에 대손처리금액 표시 방법	430
Q487	용자사업 세부현황에 감면액 작성방법	431
Q488	용자사업 주식 기재 범위	431
	4. 자산재평가	432
Q489	자산재평가 주식사항 작성방법	432
	제3장. 필수보충정보	433
	1. 유산자산	433
Q490	유산자산 공시방법	433
	2. 총잉여금·재정운영결과조정표	434
Q491	총잉여금·재정운영결과조정표상에서 미수채권의 증가 표시방법	434
Q492	공무원연금부담비의 총잉여금·재정운영결과조정표 조정항목 포함여부	434
Q493	총잉여금·재정운영결과조정표 금액 refer 방법	435
Q494	총잉여금·재정운영결과조정표의 퇴직급여차이와 재정운영표의 퇴직급여 금액 비교	436
Q495	총잉여금·재정운영결과조정표상의 무형자산관련 금액입력	436
	제4장. 부속명세서	437
	1. 일반유형자산명세서	437

연번	질의 요약	페이지
Q496	일반유형자산명세서상 '감가상각 등'과 '기타증감'의 내용	437
Q497	자산재평가이익 refer 방법	438
Q498	재평가가 있는 유형자산 처분시 명세서에 표시방법	438
	2. 출자금명세서	439
Q499	출자금명세서 작성 방법	439
	제5장. 기타	440
	1. 결산보고서 제출방법	440
Q500	결산보고서 인쇄본 기획재정부 제출여부	440

II

회계처리에 관한 질의

1. 일반사항

Q1 국가회계실체의 범위

질 의 내 용

국가회계실체의 범위를 결정하는 근거 규정은 무엇인가요?

- ✓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으로서 중앙관서별로 구분된 것을 국가회계실체로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3조는 국가회계실체의 회계처리에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이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의 표시와 부속서류의 작성에 관한 지침〉

실무해석13.

2. 국가회계기준의 구조와 내용

(나) 국가회계기준의 세부내용

1) 제1장 총칙

총칙은 국가회계기준의 목적, 적용범위 및 재무제표의 종류와 신뢰성 있는 재정정보 산출을 위한 회계처리의 기본원칙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2조(정의)에서는 "국가회계실체" 등 용어를 정의하였다. (후략)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회계실체"란 「국가재정법」 제4조에 따른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기금으로서 중앙관서별로 구분된 것을 말한다. (후략)

제3조(적용범위 등) ① 이 규칙은 「국가재정법」 제4조에 따른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기금의 회계처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Q2 MMF 거래 시 발생하는 관련손익의 순액 회계처리 가능 여부

질 의 내 용

OO기금의 경우 MMF 거래 시 계좌별로 각각 회계처리하지 않고 중요성에 따라 당일 거래를 하나의 회계처리로 수행하여 왔습니다.

(MMF 관련손익은 거래액의 약 0.09% 정도로 그 규모에 비해 매우 작은 금액임)
최근 일부 MMF에서 이익이 아닌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데 위와 같이 하나의 회계처리로 기록하는 경우 관련손익이 순액으로 조정되어 회계처리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관련손익을 순액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국가회계처리지침 상 타당한가요?

- ✔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에 따라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계정 과목과 금액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실용적인 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MMF 관련 거래손익이 중요하지 않은 금액인 경우 순액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습니다.

〈재무제표의 표시와 부속서류의 작성에 관한 지침〉

4. (일반원칙) 국가의 회계처리는 복식부기·발생주의 방식으로 하며, 다음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 (1) 회계처리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 (2) 재무제표의 양식, 과목 및 회계용어는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 (3) 중요한 회계방침, 회계처리기준, 과목 및 금액에 관하여는 그 내용을 재무제표에 충분히 표시하여야 한다.
 - (4) 회계처리에 관한 기준 및 추정은 기간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기간마다 계속하여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 (5)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계정과목과 금액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실용적인 방법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 (6) 회계처리는 거래 사실과 경제적 실질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Q3 정부 내 전대차관 거래액 원단위 절사 후 인식 가능여부

질 의 내 용

OO기금과 상대기관이 관련 법률에 따라 정부 내 전대차관원리금 거래 시 원단위 절사 후 금액으로 정산하는 경우 동 거래액을 원단위 절사 후 금액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는지요?

- ✓ 관련 법률에 따라 차관원리금 회수 시 원단위 절사 후 금액으로 정산하는 거래에서, 실현가능성이 없는 원단위 금액을 포함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원단위 절사 후 금액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재무제표의 표시와 부속서류의 작성에 관한 지침〉

4. (일반원칙) 국가의 회계처리는 복식부기·발생주의 방식으로 하며, 다음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 (6) 회계처리는 거래 사실과 경제적 실질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2. 재정상태표

Q4 재정상태표상 기본순자산이 표시되지 않은 이유

질 의 내 용

OO기금의 경우 타 기금과 다르게 기본순자산이 재정상태표에 표시되고 있지 않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 재무제표의 표시와 부속서류의 작성에 관한 지침 문단 12.(2)에 따르면 기본순자산은 순자산에서 적립금및잉여금, 순자산조정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OO기금의 경우 설치 당시 재원조성 없이 운영비 전입을 통해 조성된 기금이므로 기본순자산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무제표의 표시와 부속서류의 작성에 관한 지침〉

12. (순자산의 정의와 구분) (1) 순자산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을 말하며, 기본순자산, 적립금 및 잉여금, 순자산조정으로 구분한다.
- (2) 순자산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 (가) 기본순자산은 순자산에서 적립금 및 잉여금과 순자산조정을 뺀 금액으로 표시한다.
 - (나) 적립금 및 잉여금은 임의적립금, 전기이월결손금·잉여금, 재정운영결과 등을 표시한다.
 - (다) 순자산조정은 투자증권평가손익, 파생상품평가손익 및 기타 순자산의 증감 등을 표시한다.

3. 순자산변동표

Q5 재정상태표상 적립금및잉여금에 재정운영결과가 표시되지 않은 이유

질 의 내 용

재정상태표 상 적립금및잉여금에 재정운영결과가 표시되고 있지 않은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 재정상태표 상 적립금및잉여금은 재정운영결과 등을 포함한 누적액을 보여주는 항목이며, 재정운영결과는 변동액 개념이므로 순자산변동표에서 표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순자산변동표상 적립금및잉여금 표시 예시는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의 순자산변동표 양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제5호서식

순자산변동표

당기: 20XY년 1월 1일부터 20XY년 12월 31일까지
 전기: 20XX년 1월 1일부터 20XX년 12월 31일까지

대한민국 정부

(단위:)

	주식	기본순자산	적립금및 잉여금	순자산조정	합계
I. 기초순자산		XXX	XXX	XXX	XXX
1. 보고금액		XXX	XXX	XXX	XXX
2. 전기오류수정손익	X	XXX	XXX	XXX	XXX
3. 회계변경누적효과	X	XXX	XXX	XXX	XXX
II. 재정운영결과			XXX		XXX
III. 조정항목		XXX	XXX	XXX	XXX
1. 납입자본의 증감	X	XXX	-	-	XXX
2. 투자증권평가손익	X	-	-	XXX	XXX
3. 파생상품평가손익	X	-	-	XXX	XXX
4. 기타 순자산의 증감	X	XXX	XXX	XXX	XXX
5. ...	X	XXX	XXX	XXX	XXX
IV. 기말순자산(I-II+III)		XXX	XXX	XXX	XXX

210mmX297mm(백상지(120g/㎡)또는 백상지(80g/㎡))

Q6 재정상태표상 적립금및잉여금에 전기이월결손금·잉여금이 표시되지 않은 이유

질 의 내 용

적립금및잉여금을 구성하는 항목 중 하나인 전기이월잉여금에 대한 정의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 있나요?

- ✓ 현재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또는 국가회계 예규에 전기이월잉여금의 정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전기이월잉여금은 기초순자산의 적립금및잉여금 금액을 뜻하는 것으로 기말순자산의 적립금및잉여금 금액과 구분하기 위해 별도로 지칭하는 용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제5호서식

순자산변동표

당기: 20XY년 1월 1일부터 20XY년 12월 31일까지
 전기: 20XX년 1월 1일부터 20XX년 12월 31일까지

대한민국 정부 (단위:)

	주식	기본순자산	적립금및 잉여금	순자산조정	합계
I. 기초순자산		XXX	XXX	XXX	XXX
1. 보고금액		XXX	XXX	XXX	XXX
2. 전기이월결손금	X	XXX	XXX	XXX	XXX
3. 회계연경누적효과	X	XXX	XXX	XXX	XXX
II. 재정운영결과			XXX		XXX
III. 조정항목		XXX	XXX	XXX	XXX
1. 납입자본의 증감	X	XXX	-	-	XXX
2. 투자증권평가손익	X	-	-	XXX	XXX
3. 파생상품평가손익	X	-	-	XXX	XXX
4. 기타 순자산의 증감	X	XXX	XXX	XXX	XXX
5. ...	X	XXX	XXX	XXX	XXX
IV. 기말순자산(I - II + III)		XXX	XXX	XXX	XXX

210mmX297mm(백상지(120g/㎡)또는 백상지(80g/㎡))

1. 용어의 정의

Q7 외부 감정법인 산정결과의 공정가액 해당 여부

질 의 내 용

시장가격이 형성되지 않는 대체투자상품의 공정가액을 외부 감정법인의 용역결과에 따라 추정하여 산정한 경우에도 이를 신뢰성 있는 객관적 공정가액으로 볼 수 있나요?

- ✓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회계처리지침 문단3에 따르면 공정가액의 범위에 활성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평가기법을 이용하여 산정한 공정가액의 신뢰성 있는 추정액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해당 용역결과가 이러한 정의를 충족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회계처리지침〉

3.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4) "공정가액"이란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간에 거래될 수 있는 교환 가격을 말한다. 공정가치의 최선의 추정치는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가격(시장가격)이며, 활성 시장이 없는 경우에는 평가기법을 이용하여 산정한 공정가액의 신뢰성 있는 추정액을 말한다.

2. 금융자산의 분류

Q8 정기에금의 계정과목 분류

질의내용(1)

취득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정기에금도 금융상품으로 분류할 수 있나요?

- ✓ 취득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정기에금의 경우 통상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취득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경우라도 현금 전환이 용이하지 않거나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의 위험이 중요한 경우 '단기금융상품'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질의내용(2)

정기에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해당 여부 판단시 만기일이 3개월 이내라 함은 3개월을 포함하는 개념인지요, 3개월 이내 판단 시점은 결산시점과 취득 당시 중 언제인지요?

- ✓ 3개월 이내는 3개월을 포함하는 개념이며, 3개월 이내 판단시점은 결산시점이 아니라 취득시점입니다.

질의내용(3)

취득 당시 만기가 1개월인 정기에금은 계정과목을 어떻게 분류해야 하나요?

- ✓ 큰 거래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의 위험이 중요하지 않은 경우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해야 합니다.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회계처리지침〉

5. (현금및현금성자산) (1) "현금및현금성자산"은 통화 및 타인발행수표 등 통화대용증권과 보통예금, 당좌예금 및 큰 거래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의 위험이 중요하지 않은 유가증권 및 단기금융상품으로서 취득 당시 만기일이 3개월 이내인 것을 말한다.

Q9 수익증권의 계정과목 분류

질의내용(1)

MMF, 주식형·채권형·혼합형 펀드와 같은 수익증권은 계정과목을 어떻게 분류해야 하나요?

- ✔ MMF, 주식형·채권형·혼합형 펀드와 같은 수익증권은 유가증권(지분증권)으로 분류합니다. 동 유가증권을 자금운용목적 또는 법령·정책적 목적에 의해 취득한 경우에는 '지분증권' 중 '기타지분증권'으로 처리하고, 그 외의 목적에 의해 취득한 경우에는 '기타장·단기투자증권' 중 '기타지분증권'으로 처리합니다.
- 단, 동 지분증권이 큰 거래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의 위험이 중요하지 않으며 취득 당시 만기일이 3개월 이내라면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합니다.

질의내용(2)

연기금투자자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어떤 계정과목으로 분류하나요?

- ✔ 연기금투자자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지분증권'으로 분류합니다. 재정상태표일 현재 만기가 1년 이내 도래하거나 1년 이내 처분예정이면 '단기투자증권'으로 분류하고, 만기가 1년 초과하거나 1년 초과하여 처분예정이면 '장기투자증권'으로 분류합니다.
- 단, 동 지분증권이 큰 거래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의 위험이 중요하지 않으며 취득 당시 만기일이 3개월 이내라면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합니다.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회계처리지침〉

- 5. (현금및현금성자산) (1) "현금및현금성자산"은 통화 및 타인발행수표 등 통화대용증권과 보통예금, 당좌예금 및 큰 거래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의 위험이 중요하지 않은 유가증권 및 단기금융상품으로서 취득 당시 만기일이 3개월 이내인 것을 말한다.
- 7. (유가증권) (1) 유가증권(단기투자증권과 장기투자증권)은 시장에서 거래되거나 투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재산권을 나타내는 증권을 말한다.
 - (2) 유가증권은 그 형태에 따라 채무증권과 지분증권으로 구분한다.
 - (가) 채무증권이란 발행자에 대하여 금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하는 유가 증권 및 이와 유사한 유가증권으로서 국채, 공채, 지방채 및 회사채 등을 말한다.

- I. 정의항목 리스트
- II. 회계처리에 관한 질의
- III. 디브리인 업무처리에 관한 질의
- IV.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질의

- (나) 지분증권이란 유가증권 중 채무증권을 제외한 것으로서 주식, 출자금 등을 말한다.
- (3) (2)에 따른 채무증권 또는 지분증권을 자금운용목적 또는 법령·정책적 목적에 의해 취득한 경우에는 "채무증권" 또는 "지분증권"으로 처리하고, 그 외의 목적에 의해 취득한 경우에는 "기타 장·단기투자증권"으로 처리한다.

Q10 국가채권과 재무결산상 미수이자수익(미수채권) 인식 차이

질 의 내 용

융자금에 대한 미수이자를 계상하려고 하는데, 미수이자 계상으로 인한 국가채권과 재무결산상 미수채권의 차이가 발생하는지요?

- ✔ 재무결산상 미수이자수익은 수취기일이 도래하지 않았으나 기간 경과분에 해당하는 이자수익 및 수취기일이 도래하였으나 수취하지 못한 이자수익을 포함하지만, 국가채권에는 수취기일이 도래하였으나 수취하지 못한 이자수익만 포함되므로 국가채권과 재무결산상 미수채권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정과목 해설서〉

IV. 장·단기미수채권/ 2. 세부계정과목 설명

① (장기)미수채권

(9) (장기)미수이자수익

금융상품, 채권 및 대여금 등에 대하여 산정한 기간 경과분 미수수익 및 수취기일이 도래하였으나 수취하지 못한 이자수익 금액을 말한다.(☞ 프로그램수익·비배분수익의 이자수익)

Q11 정부기금이 보유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계정과목 분류

질의내용(1)

정부기금이 보유한 MMF(현금및현금성자산 인식 요건을 충족한 것)는 현금및 현금등가물 하위의 기타현금성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맞는지요?

질의내용(2)

정부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수시입출금식 MMF를 2014회계연도 결산시에는 '현금및현금 등가물/기타현금성자산'으로 분류했습니다. 2015회계연도에는 어떻게 분류해야 하나요?

- ✔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는 기금(정부기금)이 보유한 MMF 중 큰 거래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의 위험이 중요하지 않으며 취득당시 계약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것은 국고금으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국고금으로 분류해야하는 MMF를 '현금및현금등가물' 중 '기타현금성자산'으로 잘못 인식한 것이 있다면 '국고금' 중 '기타국고금'으로 재분류하여야 합니다.

질의내용(3)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는 기금이 보유하는 외화보통예금, MMF 등을 작년까지 "현금및 현금등가물"로 처리하였는데 이것이 올바른 회계처리인가요?

질의내용(4)

OO기금(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는 기금)은 2014회계연도까지 보유하고 있는 현금및현금성 자산을 당좌예금, 기타현금성자산 등 현금및현금등가물 하위 계정과목으로 처리하여 왔는데 2015회계연도 결산 관련하여 디브레인으로부터 이를 국고금 하위 계정과목으로 재분류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재분류하는 것이 타당한가요?

- ✔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회계처리지침 문단5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는 기금이 보유하는 현금및현금성자산은 '현금및현금등가물'이 아닌 '국고금'으로 분류하여야 합니다.
 - 현금및현금등가물로 잘못 처리하였다면 이러한 오류가 중대한지 여부에 따라 전기 비교표시 재무제표의 재작성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회계처리지침〉

5. (현금및현금성자산) (1) "현금및현금성자산"은 통화 및 타인발행수표 등 통화대용증권과 보통예금, 당좌예금 및 큰 거래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의 위험이 중요하지 않은 유가증권 및 단기금융상품으로서 취득 당시 만기일이 3개월 이내인 것을 말한다.
- (2) 「국고금 관리법」제2조에 따라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는 기금이 보유 하는 "현금및현금성자산"은 "국고금"으로 분류하고,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지 아니하는 기금이 보유하는 "현금및현금성자산"은 "현금및현금등가물"로 분류한다.

실무해설5. (☞ 관련문단 5) 현금및현금성자산 상세 계정과목

대분류	중분류	회계과목	관리과목	세부관리과목
자산	유동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현금및현금등가물	현금
				보통예금
				당좌예금
				기타현금성자산
			국고금	한국은행국가예금
				금고은행국가예금
				국고예금
				국고금여유자금운용액
				기타국고금

질의내용(5)

정부가금이 보유한 사용제한이 있는 보통예금에 대해서는 어떤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해야 하나요?

- ✔ 사용제한이 있는 보통예금은 장단기금융상품으로 분류해야 하나 국고금의 경우, 사용제한 여부와 관계없이 국고금으로 분류하므로 ‘국고금’ 하위의 ‘기타국고금’으로 분류해야 합니다.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회계처리지침〉

6. (단기금융상품과 장기금융상품) (1) "단기금융상품"과 "장기금융상품"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예금 및 기타 정형화된 상품 등을 말한다.

〈계정과목 해설서〉

I. 현금 및 현금성자산/ 3. 계정과목 회계처리 유의사항

① 현금및현금성자산 계정분류 시 유의사항

(2) 현금 또는 요구불예금 중 차입담보계약, 관련 법 또는 규정에 의한 사용제한 등의 특정 이유로 사용이 제한되어 언제든지 입출금이 가능하지 않을 경우 만기 구분에 따라 단기금융상품 또는 장기금융상품으로 분류한다. 다만, 국고금의 경우, 사용 제한 여부와 관계없이 국고금으로 분류한다.

Q12 임차보증금의 유동성 대체

질의내용

부처가 사용 중인 관사의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일이 2016년 5월입니다. 부처에서는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해당 관사를 임차할 예정인데 관련 임차보증금을 2015년 결산시 단기로 분류해야 하나요?

- ✔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일이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 도래하므로, 계약서에 계약연장 관련 특수조항이 없는 한 해당 임차보증금은 단기로 분류하여야 합니다.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회계처리지침〉

4.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다음의 자산을 말하며, 만기일이나 회수일이 재정상태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도래하는지 여부에 따라 장·단기로 구분한다.

I. 질의항목 리스트

II. 회계처리에 관한 질의

III. 디브리인 업무처리에 관한 질의

IV.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질의

Q13 임차보증금의 회계처리

질 의 내 용

임대차계약시 지급하는 보증금과 전세권 설정에 따른 등기비용은 어떻게 회계처리 하나요?

- ✔ 임차보증금은 전세권을 등기한 경우에는 '임차보증금-국유'로, 전세권 등기를 하지 않았으나 국가채권으로 관리되는 경우에는 '임차보증금-채권'으로, 국유재산 및 국가채권 보고대상이 아닐 경우에는 '임차보증금-일반'으로 회계처리 합니다.
- 그리고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일이 재정상태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도래하는지 여부에 따라 장·단기로 구분합니다.
- ✔ 전세권 설정에 따른 등기비용은 '지급수수료' 중 '등기료법정수수료'로 비용 처리합니다.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회계처리지침>

10. (기타의 금융자산) (1) 기타의 금융자산은 문단5부터 문단9의 금융자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파생상품자산", "부가세대급금", "지급보증금" 등을 말한다.

(중략)

(다) "지급보증금"은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보증금"과 "기타지급보증금"으로 분류한다. "임차보증금"은 전세권 등기를 하여 국유재산으로 관리될 경우에는 "임차보증금-국유"로, 전세권 등기를 하지 않았으나 국가채권으로 관리되는 자산은 "임차보증금-채권"으로, 국유재산 및 국가채권 보고대상이 아닐 경우에는 "임차보증금-일반"으로 구분한다.

Q14 시설장치 보증금 회계처리 계정과목

질 의 내 용

임차중인 건물에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하면서 납부한 소액(20만원 정도)의 보증금에 대하여 비용처리가 가능한지?

- ✓ 해당 보증금은 추후에 돌려받을 수 있는 지급보증금으로 자산에 해당되므로 비용처리 대상이 아닙니다.
- 지급보증금은 회수시점에 따라 재정상태표일 현재 1년 내에 돌려받을 보증금이라면 '기타지급보증금'으로, 1년 후에 돌려받을 보증금이라면 '장기기타지급보증금'으로 처리합니다.

Q15 채권형 신종자본증권의 회계처리 계정과목

질 의 내 용

OO기금이 만기의 영구성, 상환의 후순위성, 이자지급의 임의성을 갖고 있는 채권형 신종 자본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어떤 계정과목으로 분류해야 하나요?

- ✔ 국채, 공채, 지방채, 회사채와 같은 채권의 경우 유가증권 중 채무증권으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으며, 채권 성격과 주식 성격이 혼합되어 있는 증권의 경우 지분증권으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해당 신종자본증권의 경우 채권 성격과 주식 성격을 모두 갖고 있으므로 ‘지분증권’ 중 ‘기타지분증권’이 가장 적절한 계정과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회계처리지침〉

실무해설8. (☞ 관련문단 7) 유가증권 상세 계정과목

대분류	중분류	회계과목	관리과목	세부관리과목
자산	유동자산	단기투자증권	채무증권	국채
				공채
				지방채
			지분증권	회사채
				주식
				기타지분증권
	투자자산	장기투자증권	기타단기투자증권	국채
				공채
				지방채
			채무증권	회사채
				주식
				기타지분증권
투자자산	장기투자증권	지분증권	국채	
			공채	
			지방채	
		기타장기투자증권	회사채	
			주식	
			기타지분증권	

Q16 연기금월에 비율로 투자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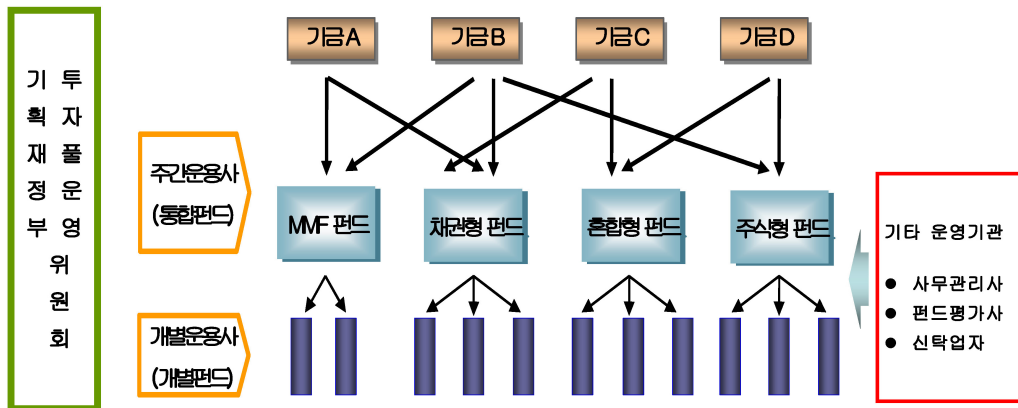
질 의 내 용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회계처리지침 실무해설10의 상품종류별 계정분류 예시에서 ‘연기금월에 비율로 투자하는 경우’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또 연기금투자자의 MMF 통합펀드의 투자 금액을 다른 통합펀드 투자액과 분리할 수 있다면 MMF 투자금액(3개월 미만)만 분리하여 현금성자산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나요?

✔ 연기금월에 비율로 투자하는 경우란 기획재정부 연기금투자자 제도*의 통합펀드에 위탁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펀드별로 투자 금액을 분리하여 별도로 관리할 수 있다면 MMF 펀드가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정의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따라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습니다.

* 연기금투자자 제도(’01.8월 도입)는 기금 여유자산의 수익률 제고 및 안정적 관리를 위한 통합자산운용 방식임

〈연기금투자자 운영체계〉



출처: 기획재정부

Q17 만기보유 목적 채무증권의 공정가액 평가 제외 가능 여부

질 의 내 용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한 경우 기업회계와 동일하게 공정가치 평가를 수행하지 않을 수 있나요?

- ✓ 만기보유 의도와 무관하게 투자목적의 유가증권이고 재정상태표일 현재 신뢰성있게 공정가액을 측정할 수 있다면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회계처리지침 문단22에 따라 해당 유가증권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합니다.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회계처리지침〉

22. (유가증권의 인식 후 평가) (1) 유가증권 중 채무증권은 상각후취득원가로 평가하고 취득원가와 만기액면가액의 차이는 상환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하여 취득원가와 이자수익에 가감한다. 지분증권과 기타 장기투자증권 및 기타 단기투자증권은 취득원가로 평가한다. 다만, 투자목적의 단기투자증권 또는 장기투자증권인 경우에는 재정상태표일 현재 신뢰성 있게 공정가액을 측정할 수 있으면 그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며, 장부가액과 공정가액 차이금액은 순자산변동표에 조정항목 중 "투자증권평가손익"으로 표시한다. (후략)

Q18 MMF의 계정과목

질 의 내 용

수시입출금식으로 운용되는 MMF의 경우 별도의 계약기간이 존재하지 않는데, 이 경우에도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정의에 부합되나요?

- ✓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회계처리지침 문단5에 따르면 현금및현금성자산에는 큰 거래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의 위험이 중요하지 않은 단기금융상품으로서 취득 당시 만기일이 3개월 이내인 것이 포함됩니다.
- 따라서 수시로 입출금되면서 거래비용 또는 제약이 없는 MMF의 경우 현금및현금성 자산의 정의를 충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단기투자증권 또는 장기투자증권으로 분류되는 MMF의 경우 취득 당시 만기일이 3개월을 초과하는 MMF를 말합니다.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회계처리지침〉

5. (현금및현금성자산) (1) "현금및현금성자산"은 통화 및 타인발행수표 등 통화대용증권과 보통예금, 당좌예금 및 큰 거래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의 위험이 중요하지 않은 유가증권 및 단기금융상품으로서 취득 당시 만기일이 3개월 이내인 것을 말한다.
(후략)
- 실무해설5. (중략) (2) 현금성자산은 보통예금, 당좌예금,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이 3개월 이하인 초단기 수익증권(MMF를 포함), 취득 당시의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채권, 취득 당시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내인 상환우선주, 환매채(3개월 이내의 환매조건) 등을 의미한다.

Q19 예탁금의 장·단기 구분 기준

질 의 내 용

AA기금은 BB기금에 매년 3월 3일에 빌려주고 3월 3일에 되돌려 받는 예탁금이 있습니다. (BB기금은 3월 2일까지 이 자금을 운용합니다.) 이 예탁금의 경우 만기가 1년 이내인 것으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1년 이상인 것으로 봐야 할까요?

- ✔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회계처리지침 문단4에 따르면 대여금 등 금융자산은 만기일이나 회수일이 재정상태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 단기로 구분하므로 만기가 1년인 예탁금은 '단기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해야 합니다.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회계처리지침〉

4.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다음의 자산을 말하며, 만기일이나 회수일이 재정상태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도래하는지 여부에 따라 장·단기로 구분한다.

Q20 민간업체 전기료 대납액의 회계처리

질 의 내 용

OO부가 청사 내 민간업자 자판기에 대해 미리 납부하였던 전기요금을 민간업자에게 되돌려 받는 경우 해당 요금을 잡이익으로 처리해도 되나요?

- ✔ 선납 전기요금은 추후 민간업자로부터 현금으로 되돌려 받을 것을 전제로 지급한 것이므로 OO부에서 전기요금 납부 시 '기타의미수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이를 되돌려 받을 때 기타의미수금의 회수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다만, 선납 전기요금이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비용으로 인식한 경우 '잡이익'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회계처리지침〉

8. (미수채권) (1) 미수채권은 정부 고유의 행정활동, 재화 및 용역제공활동 등의 거래에 의하여 장래에 일정한 현금을 수취할 권리를 갖게 되는 경우 등에서 발생한 채권을 말한다. (후략)

Q21 국유재산 대부보증금의 회계처리 계정과목

질 의 내 용

국유재산에 대한 대부보증금을 받은 경우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 ✓ 대부보증금은 대부계약 종료 시 되돌려 줄 것을 전제로 수취한 것이므로 '기타유동부채'의 '예수보증금' 중 '임대보증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회계처리지침〉

16. (기타의 금융부채) (1) 기타의 금융부채는 문단12부터 문단15까지의 금융부채에 속하지 아니하는 "파생상품부채", "예수금", "예수보증금", "미지급비용", "미지급법인세" 등을 말한다. (후략)

Q22 승소한 소송 관련 미수채권의 계정과목

질 의 내 용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하여 받을 금액이 확정되어 있으면 미수채권 중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 ✓ 승소로 인해 수취가 확정된 사건은 수익을 발생시키는 사건으로 볼 수 있으므로 '미수채권' 중 '미수기타수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회계처리지침〉

8. (미수채권) (1) 미수채권은 정부 고유의 행정활동, 재화 및 용역제공활동 등의 거래에 의하여 장래에 일정한 현금을 수취할 권리를 갖게 되는 경우 등에서 발생한 채권을 말한다. (후략)

3. 금융자산의 인식 후 평가

Q23 현재가치할인차금과 대손충당금의 구분

질 의 내 용

대체투자의 형식으로 대여한 금액에 대해 미래 추정회수가능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하는 경우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성격과 대손충당금의 성격이 합쳐진 금액이 되는데, 이와 같은 경우 현재가치할인차금과 대손충당금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계정과목으로 처리해도 무방한가요?

(해당 대여금은 용자 회계처리지침 적용대상이 아니며, 투자증권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 ✔ 일반대여금의 현재가치할인차금은 만기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되는 반면, 일반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재정상태표일마다 대손액의 추산(평가) 과정을 통해 추가 설정 또는 환입되므로 두 계정과목을 하나의 계정과목으로 통합하여 인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각각 적절한 금액으로 계산하여 별도로 인식해야 합니다.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회계처리지침〉

23. (미수채권 등의 인식 후 평가) 미수채권, 대여금 등의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매 회계연도에 환입하여 재정운영순원가에 반영한다.
29. (미수채권 등의 대손충당금 설정) 미수채권, 대여금 등은 신뢰성 있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여 평가한다. (중략)
 - (2) 대손추산액과 대손충당금 잔액을 비교하여 결산전 대손충당금 잔액이 대손추산액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부족분은 "대손상각비"로 처리하고, 대손충당금 잔액이 대손추산액보다 더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분은 "대손충당금환입"으로 처리한다. 회수가 불가능한 미수채권 또는 대여금은 대손충당금과 상계하고 대손충당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대손상각비"로 처리한다.

Q24 채무증권의 평가 원칙

질 의 내 용

OO기금에서 보유하고 있는 채무증권에 대해 공정가액이 아닌 상각후취득원가로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건은 무엇인가요?

- ✓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회계처리지침 문단22는 채무증권에 대해 상각후취득원가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투자목적이면서 공정가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상각후취득원가로 평가할 수 있는 조건은 투자목적이 아니거나, 투자목적이지만 공정가액을 측정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회계처리지침〉

22. (유가증권의 인식 후 평가) (1) 유가증권 중 채무증권은 상각후취득원가로 평가하고 취득원가와 만기액면가액의 차이는 상환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하여 취득원가와 이자수익에 가감한다. 지분증권과 기타 장기투자증권 및 기타 단기투자증권은 취득원가로 평가한다. 다만, 투자목적의 단기투자증권 또는 장기투자증권인 경우에는 재정상태표일 현재 신뢰성 있게 공정가액을 측정할 수 있으면 그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며, 장부가액과 공정가액 차이금액은 순자산 변동표에 조정항목 중 "투자증권평가손익"으로 표시한다.
- (후략)

Q25 출자금 평가방법

질 의 내 용

OO부 일반회계에서 벤처투자회사에 직접투자하여 보유하고 있는 출자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해야 하나요?

- ✓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회계처리지침 문단22에 따라 출자금은 취득원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투자목적이고 공정가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합니다.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회계처리지침〉

22. (유가증권의 인식 후 평가) (1) 유가증권 중 채무증권은 상각후취득원가로 평가하고 취득원가와 만기액면가액의 차이는 상환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하여 취득원가와 이자수익에 가감한다. 지분증권과 기타 장기투자증권 및 기타 단기투자증권은 취득원가로 평가한다. 다만, 투자목적의 단기투자증권 또는 장기투자증권인 경우에는 재정상태표일 현재 신뢰성 있게 공정가액을 측정할 수 있으면 그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며, 장부가액과 공정가액 차이금액은 순자산 변동표에 조정항목 중 "투자증권평가손익"으로 표시한다.

(후략)

Q26 기타지분증권(연기금투자액)의 재투자 회계처리

질 의 내 용

연기금풀에 투자하여 운용 중인 기타지분증권을 재투자하고자 합니다. 이때 기준가격 이상의 상승분에 대한 회계처리 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회계처리지침 문단22의(4)에 따라 장단기투자증권의 처분이익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맞나요?

- ✓ 연기금풀에 투자하는 경우 '지분증권' 중 '기타지분증권'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해당 수익증권은 장단기투자증권으로 분류되므로 문단22의(4)에 따라 재투자시 기준가격 상승분을 투자증권처분이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회계처리지침〉

22. (유가증권의 인식 후 평가) (1) 유가증권 중 채무증권은 상각후취득원가로 평가하고 취득원가와 만기액면가액의 차이는 상환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하여 취득원가와 이자수익에 가감한다. 지분증권과 기타 장기투자증권 및 기타 단기투자증권은 취득원가로 평가한다. 다만, 투자목적의 단기투자증권 또는 장기투자증권인 경우에는 재정상태표일 현재 신뢰성 있게 공정가액을 측정할 수 있으면 그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며, 장부가액과 공정가액 차이금액은 순자산 변동표에 조정항목 중 "투자증권평가손익"으로 표시한다.

(중략)

(4) 단기투자증권 또는 장기투자증권에 포함된 수익증권으로서 투자신탁계약기간 내에 이익분배금의 명목으로 현금을 수취하거나 이를 재투자하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단기투자증권처분이익" 또는 "장기투자증권처분이익"으로 당기수익으로 처리한다. 이 경우 당기수익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금액은 현금을 수취하는 시점의 기준가격이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해당 수익증권과 관련된 "투자증권평가이익"은 가산하고 "투자증권평가손실"은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나머지는 투자원본의 반환으로 처리한다.

I. 정의항목 리스트

II. 회계처리에 관한 정의

III. 디브리인 업무처리에 관한 정의

IV.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정의

Q27 매매기준율을 알 수 없는 경우 적용 환율

질 의 내 용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회계처리지침의 실무해설에 따르면 외화채권 구입 시 (주)서울외국환중개의 매매기준율을 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입한 외화채권 통화에 대한 매매기준율이 (주)서울외국환중개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환율을 써야 하는지요?

- ✔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회계처리지침 문단25에 따르면 화폐성 외화자산의 경우 기말 기준 환율(매매기준율)로 평가하여야 합니다. 만약 기준환율을 알 수 없다면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47조제1항에 따라 회계실체가 해당 화폐성 외화자산에 대한 적절한 환율을 산정하여 적용하여야 합니다.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회계처리지침〉

25. (외화자산의 인식 후 평가) (1) 화폐성 외화자산에 해당하는 금융자산은 재정상태표일 현재의 기준환율로 평가한다.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47조(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평가) ① 화폐성 외화자산과 화폐성 외화부채는 재정상태표일 현재의 적절한 환율로 평가한다.

Q28 유가증권 평가 시 지분법 사용 가능 여부 및 그 근거

질 의 내 용

투자유가증권 평가 시 지분법을 사용할 수 있나요? 만약 사용할 수 없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가요?

- ✓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회계처리지침 문단22은 유가증권 중 지분증권을 취득원가로 평가하되 투자목적이면서 공정가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분법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회계처리지침〉

22. (유가증권의 인식 후 평가) (1) 유가증권 중 채무증권은 상각후취득원가로 평가하고 취득원가와 만기액면가액의 차이는 상환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하여 취득원가와 이자수익에 가감한다. 지분증권과 기타 장기투자증권 및 기타 단기투자증권은 취득원가로 평가한다. 다만, 투자목적의 단기투자증권 또는 장기투자증권인 경우에는 재정상태표일 현재 신뢰성 있게 공정가액을 측정할 수 있으면 그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며, 장부가액과 공정가액 차이금액은 순자산변동표에 조정항목 중 "투자증권평가손익"으로 표시한다.

(후략)

Q29 투자증권평가손실의 산정

질 의 내 용

유가증권(대우조선해양)에 대한 투자증권평가이익의 잔액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투자증권평가손실을 인식할 수 있나요?

- ✓ 투자증권평가이익의 잔액이 남아있는 경우, 동일한 유가증권에 대해 기존에 인식하고 있던 투자증권평가이익을 우선적으로 차감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투자증권평가손실을 인식합니다.

Q30 대여금과 수익증권을 통한 간접 대여금의 공정가치 평가 여부

질 의 내 용

직접 제3자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인식한 대여금과, 수익증권을 통해 간접적으로 제3자에게 대여한 대여금을 공정가치로 평가해야 하는지요?

- ✔ 직접 대출한 대여금은 공정가치 평가 대상이 아니며, 현재가치 및 대손평가를 고려하여 취득원가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문단19, 23, 29)
- ✔ 한편, 투자자금을 납입하고 보유하는 수익증권은 신탁재산에 대한 수익권을 표시하는 유가증권이므로 장·단기투자증권에 해당하며, 투자목적일 경우 재정상태표일 현재 신뢰성 있게 공정가액을 측정할 수 있으면 그 공정가액으로 평가합니다.(문단22)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회계처리지침〉

19. (미수채권 등의 취득원가) (1) 장기연불조건의 거래, 장기금전대차거래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미수채권, 대여금 등으로서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는 현재가치를 취득원가로 한다. 다만, 미수채권 중 "장기미수국세", 대여금 중 "전대차관대여금", "정부내에 탁금"은 현재가치로 평가하지 아니한다.
 - (2) (1)에 따른 현재가치는 해당 금융자산으로 미래에 받을 총금액을 해당 거래의 유효이자율(유효이자율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유사한 조건의 국채 유통수익률을 말한다)로 할인한 가액으로 한다.
 - (3) (1)에 따라 발생하는 금융자산의 명목가액과 현재가치 가액의 차액인 "현재가치할인차금"은 해당 자산의 차감항목으로 표시한다.
 - (4) (1)에서의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를 말한다.
 - (가)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금액이 1억원을 초과
 - (나)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금액이 명목가액의 30%를 초과
22. (유가증권의 인식 후 평가)지분증권과 기타 장기투자증권 및 기타 단기투자증권은 취득원가로 평가한다. 다만, 투자목적의 단기투자증권 또는 장기투자증권인 경우에는 재정상태표일현재 신뢰성 있게 공정가액을 측정할 수 있으면 그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며, 장부가액과 공정가액 차이금액은 순자산변동표에 조정항목 중 "투자증권평가손익"으로 표시한다.
23. (미수채권 등의 인식 후 평가) 미수채권, 대여금 등의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매 회계연도에 환입하여 재정운영순원가에 반영한다.
29. (미수채권 등의 대손충당금 설정) 미수채권, 대여금 등은 신뢰성 있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여 평가한다.

Q31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평가

질의내용(1)

MMF 등의 수익증권과 정기예금 등의 금융상품이 취득당시 만기 3개월 이내로 '기타현금성 자산'으로 분류되는 경우 기말 자산가액 평가 및 미수이자 등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는지요?

- ✓ MMF, MMW 등의 수익증권을 '기타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한 경우에는 재정상태표일 현재의 공정가액으로 평가하고, 공정가액과 취득원가의 차이를 '기타금융상품이자수익' 또는 '기타의기타이자비용'으로 처리합니다.(문단21)
- ✓ 정기적금, 정기예금 등의 금융상품을 '기타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한 경우에는 취득원가로 평가하고 기간경과분 이자는 '미수금융상품이자수익'으로 처리하므로 기타현금성자산의 기말장부가액에는 기간경과분 미수이자가 포함되지 않습니다.(문단20)

질의내용(2)

재정상태표일 현재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구분되어 있는 MMF의 공정가액 평가금액과 취득원가의 차이는 어떻게 회계처리 되는지요?

- ✓ 취득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임에 따라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분류된 MMF의 경우 재정상태표일 현재의 공정가액으로 평가하고, 공정가액과 취득원가의 차이를 '기타금융상품이자수익' 또는 '기타의기타이자비용'으로 회계처리 합니다.(문단21)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회계처리지침〉

20. (금융자산의 인식 후 평가) 금융자산은 이 예규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취득원가로 평가한다.
21.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인식 후 평가) (1) 채권, 상환우선주, 환매채 및 MMF 등의 수익증권이 취득당시 만기일이 3개월 이내임에 따라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분류된 경우에는 재정상태표일 현재의 공정가액으로 평가하고, 취득원가와 공정가액의 차이금액을 재정운영표에 "기타금융상품이자수익" 또는 "기타의기타이자비용"으로 반영한다.

I. 질의항목 리스트

II. 회계처리에 관한 질의

III. 디버테인 업무처리에 관한 질의

IV.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질의

Q32 MMF, 채권형펀드의 이자수익 원본 가산여부

질의내용(1)

초단기 수익증권 MMF(국가채권), 채권형펀드(국유재산)의 고객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이 12월말 현재 예탁금계좌에 존재하는 경우 MMF나 채권형펀드의 원본에 가산해야 하는지요?

- ✔ 고객예탁금에서 발생하여 예탁금계좌에 존재하는 이자수익은 차후 펀드 환매 시 고객에게 지급되므로, 12월말 현재 MMF나 채권형펀드의 원본에 가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질의내용(2)

00기금은 정부기금으로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MMF를 기타 현금성자산으로 잘못 분류하고 있어, 기타국고금으로 계정재분류하려고 합니다. 이때 MMF에서 발생한 이자수익도 원금과 같이 기타국고금으로 계정분류하는 것이 맞는지요?

- ✔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분류되는 MMF등 수익증권의 경우 재정상태표일 현재의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자수익도 원금에 가산하여 공정가액으로 계상하여 '현금및현금성자산'의 '국고금' 중 '기타국고금'으로 분류해야 합니다.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회계처리지침〉

21.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인식 후 평가) (1) 채권, 상환우선주, 환매채 및 MMF 등의 수익증권이 취득당시 만기일이 3개월 이내임에 따라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분류된 경우에는 재정상태표일 현재의 공정가액으로 평가하고, 취득원가와 공정가액의 차이금액을 재정운영표에 "기타금융상품이자수익" 또는 "기타의기타이자비용"으로 반영한다.
-

Q33 지분증권의 공정가액 평가

질의내용(1)

상장되어있는 OO공사의 지분증권을 결산시 시가평가 해야하는지요?

질의내용(2)

비상장주식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해야 하는지요?

- ✓ 지분증권은 종목별로 총평균법 등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취득원가로 인식하고 인식 후 취득원가로 평가합니다. 다만, 투자목적(매매차익목적)으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재정상태표일 현재 신뢰성 있게 공정가액을 측정할 수 있으면 그 공정가액으로 평가합니다.

질의내용(3)

상증법 상 국세 물납 등의 사유로 취득한 비상장투자증권의 평가는 어떻게 수행하나요?

- ✓ 국세 물납 등의 사유로 취득한 비상장투자증권은 기타 장·단기투자증권으로 분류되며, 투자목적으로 보유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취득원가로 평가합니다.
 - 다만, 감액이 발생(공정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으로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 미만으로 하락하고 그 하락이 장기간 계속되어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하였다고 판단되면 감액손실을 재정운영순원가에 반영해야 합니다.
 - 투자증권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한 회사에 파산, 폐업, 부도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당해 투자증권을 감액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참고하여 감액 가능성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I. 질의응답 리스트

II. 회계처리에 관한 질의

III. 디브리인 업무처리에 관한 질의

IV.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질의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회계처리지침〉

22. (유가증권의 인식 후 평가)지분증권과 기타 장기투자증권 및 기타 단기투자증권은 취득원가로 평가한다. 다만, 투자목적의 단기투자증권 또는 장기투자증권인 경우에는 재정상태표일 현재 신뢰성 있게 공정가액을 측정할 수 있으면 그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며, 장부가액과 공정가액 차이금액은 순자산변동표에 조정항목 중 "투자증권평가손익"으로 표시한다.

28. (유가증권의 감액과 회복) 금융자산 중 유가증권의 감액은 다음의 사항을 적용한다.

- (1) 유가증권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 미만으로 하락하고 그 하락이 장기간 계속되어 회복될 가능성이 없을 경우에는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감액손실"로 인식하고 재정운영순원가에 반영한다.

실무해설9. "기타 장·단기투자증권"의 대표적인 예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등에 따른 국세 물납으로 취득한 유가증권 등이 있다.

4. 금융자산의 감액과 대손

Q34 유가증권 감액손실 인식

질의내용(1)

유가증권 감액손실을 인식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 ✓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회계처리지침 문단 28(유가증권의 감액과 회복)에 따라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 미만으로 하락하고 그 하락이 장기간 계속되어 회복될 가능성이 없을 경우 감액손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질의내용(2)

투자조합에 대한 출자증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감액손실을 계상해야 하는지요?

- ✓ 해당 투자조합에 대한 출자증권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 미만으로 하락하고 그 하락이 장기간 계속되어 회복될 가능성이 없을 경우에는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감액손실로 인식하여야 합니다.

질의내용(3)

부처에서 출자한 공기업이 부분자본잠식 상태인 경우 해당 출자금에 대해서 투자증권감액손실을 인식해야 하는지요?

- ✓ 부분자본잠식 여부가 감액손실을 인식해야할 충분조건은 아닙니다. 해당 출자금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 미만으로 하락하고 그 하락이 장기간 계속되어 회복될 가능성이 없을 경우 감액손실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질의내용(4)

유가증권으로부터 회수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이 장부금액보다 현저하게 적고, 회복가능성이 낮은 경우 감액손실 인식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지요? 감액손실을 인식하지 않고 추후 유가증권의 제거시점에 처분손실로 인식하면 안 되는지요?

✔ 재정상태표일 현재 유가증권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 미만으로 하락하고 그 하락이 장기간 계속되어 회복될 가능성이 없을 경우에는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감액손실로 인식해야 합니다.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회계처리지침〉

28. (유가증권의 감액과 회복) 금융자산 중 유가증권의 감액은 다음의 사항을 적용한다.

- (1) 유가증권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 미만으로 하락하고 그 하락이 장기간 계속되어 회복될 가능성이 없을 경우에는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감액손실"로 인식하고 재정운영순원가에 반영한다. 다만, 투자목적으로 보유하는 유가증권의 경우 순자산변동표에 조정항목으로 인식한 "투자증권평가손실" 또는 "투자증권평가이익"을 "감액손실"에 더하거나 뺀다.

실무해설32. (☞ 관련문단 28) 유가증권의 회수가능가액이 채무증권의 상각후취득원가 또는 지분증권의 취득원가, 기타투자증권의 취득원가보다 작은 경우에는 감액손실을 인식할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계정과목해설서〉

XV. 자산감액손실

(1) 투자증권감액손실

감액손실의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는 재정상태표일마다 평가하고 그러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감액이 필요하지 않다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회수가능가액을 추정하여 감액손실을 인식한다.

Q35 주식 감액 사유의 유형

질 의 내 용

휴업, 폐업, 완전자본잠식, 법정관리, 회생절차 포기 등이 발생한 주식은 반드시 감액손실을 인식해야 하나요?

- ✔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회계처리지침 문단26에 따르면 금융자산 시장가치가 급격하게 하락하는 등 해당 금융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고 그 미달액이 중요한 경우에 감액손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 휴업, 폐업, 완전자본잠식, 법정관리, 회생절차 포기 등은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이 있을 것으로 예상 가능한 손상징후에 해당하므로 그러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문단26에 따른 감액손실 발생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회계처리지침〉

26. (금융자산의 감액) 금융자산(공정가액으로 평가하고 그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반영하는 금융 자산은 제외한다)은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으로 해당 금융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고 그 미달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장부가액에서 직접 빼서 회수가능가액으로 조정하고, 장부가액과 회수가능가액의 차액을 해당 금융자산에 대한 "감액손실"로 재정운영순원가에 반영한다.

Q36 외화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 여부

질 의 내 용

00기금이 시중은행에 대해 만기 1~20년의 대출을 시행하려고 하는데, 해당 대출채권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필요가 있나요?

- ✔ 시중은행의 경우 국가와 같이 채무불이행위험이 없는 채무자가 아니므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회계처리지침 문단29에 따라 대여금에 대해 신뢰성 있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여야 합니다.

I. 질의응답 목록

II. 회계처리에 관한 질의

III. 디브리인 업무처리에 관한 질의

IV.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질의

Q37 대손충당금 추정 및 인식 시점

질 의 내 용

OO기금의 시중은행에 대한 융자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각각의 융자금이 지출된 시점에 설정해야 할까요 아니면 기말에 일괄적으로 설정해야 할까요?

- ✓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회계처리지침 문단29에 따르면 대손충당금의 경우 기말 결산시점에 기말 채권잔액 중 기간경과분석, 거래처별 신용 및 재무상태분석, 과거경험률을 토대로 대손예상액을 추산하여 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융자금 지출시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상태표일에 설정해야 합니다.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회계처리지침〉

29. (미수채권 등의 대손충당금 설정) 미수채권, 대여금 등은 신뢰성 있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여 평가한다. (후략)

Q38 유효이자율보다 대여자율이 높은 융자금의 대손추산액 회계처리

질 의 내 용

유효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로 빌려주어 융자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융자금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별도로 설정해야 하나요? 기존 지침에서는 어디에 규정되어 있었나요?

✔ 융자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융자금은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회계처리지침 문단2에 따라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회계처리지침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같은 예규 문단29에 따른 대손충당금을 설정해야 합니다.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회계처리지침〉

2. (적용범위) 이 예규는 다음을 제외한 국가회계실체의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에 적용한다.

- (1) 국고금의 수납·지출, 여유자금운용 등에 따른 국고금회계의 회계처리(「국고금 회계처리지침」을 참조한다)
- (2) 유효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제공하는 융자금(「융자 회계처리지침」을 참조한다)
- (3) 금융리스부채(「리스 회계처리지침」을 참조한다)

29. (미수채권 등의 대손충당금 설정) 미수채권, 대여금 등은 신뢰성 있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여 평가한다. (후략)

I. 질의응답 목록

II. 회계처리에 관한 질의

III. 디브리인 업무처리에 관한 질의

IV.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질의

Q39 채권의 대손충당금 설정 방법

질의내용(1)

전기까지 채권의 대손충당금을 명확한 근거 없이 채권잔액의 1%로 설정하였습니다. 대손충당금의 설정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질의내용(2)

전기에 채권의 대손율을 1%로 설정하였습니다. 당기에도 그대로 사용해도 되는지요?

- ✔ 대손충당금은 연령분석법, 채권잔액비례법, 대손실적률법, 그 이외에도 기타 합리적이고 판단한 방법을 사용하여 설정해야 합니다.
- 1%의 대손율이 당기에도 합리적이라 판단되면 사용해도 무방하나 명확한 근거 없이 추정된 것이라면 신뢰성 있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추정한 대손율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회계처리지침〉

29. (미수채권 등의 대손충당금 설정) 미수채권, 대여금 등은 신뢰성 있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여 평가한다.
- (1) 기말 미수채권과 대여금 잔액에 대한 대손추산액을 산정할 때에는 연령분석법, 채권잔액비례법, 대손실적률법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 이외에도 기타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5. 금융자산의 제거

Q40 발행자 청산에 따른 투자증권 처분 시 회계처리

질 의 내 용

OO기금의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보고될 때에는 지분법으로 평가되지만 국가회계기준에 의해 보고될 때에는 원가법으로 평가되는 투자증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해당 증권을 발행한 회사가 청산을 수행하여 일정 대가를 받게 된 경우 지분법 평가가 국가회계기준에 따르는 회계처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나요?

- ✔ 청산에 따라 대가를 받은 것은 처분에 해당하며 처분 후에는 해당 증권과 관련된 계정이 모두 제거되어 '0'으로 되어야 하므로 결과적으로 지분법 평가와 국가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는 무관할 것입니다.

Q41 전신전화가입권 환급시 선수금 처리의 적정여부

질 의 내 용

전신전화가입권(기존에 자산 계상) 해지 후 수령한 환급금에 대하여 선수금으로 처리하였는데, 적절한 회계처리인지요?

- ✔ 전신전화가입권을 해지하였으므로 동 자산은 재정상태표에서 제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부채로 계상한 선수금과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는 전신전화가입권을 서로 상계하는 회계처리를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회계처리지침〉

30. (금융자산의 제거) 금융자산은 문단17에 따른 금융자산의 인식기준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에 재정상태표에서 제거한다.

Q42 수익증권 처분 시 발생하는 이자의 회계처리 계정과목

질 의 내 용

수익증권 처분 시 이자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이자를 이자수익으로 처리해야 할까요?
아니면 처분손익에 포함시켜야 할까요?

- ✔ 해당 수익증권이 투자신탁 계약기간이 3개월 이하이고 큰 거래비용이 없으며 가치변동 위험이 중요하지 않은 현금및현금성자산에 해당한다면 '기타금융상품이자수익'으로 처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장·단기투자증권처분손익'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회계처리지침〉

22. (유가증권의 인식 후 평가) (중략)

- (4) 단기투자증권 또는 장기투자증권에 포함된 수익증권으로서 투자신탁계약기간 내에 이익분 배금의 명목으로 현금을 수취하거나 이를 재투자하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단기투자증권처 분이익" 또는 "장기투자증권처분이익"으로 당기수익으로 처리한다. 이 경우 당기수익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금액은 현금을 수취하는 시점의 기준가격이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해당 수익증권과 관련된 "투자증권평가이익"은 가산하고 "투자증권평가손실"은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나머지는 투자원본의 반환으로 처리한다.

6. 금융부채의 분류

Q43 타 기금으로부터 상환의무가 있는 자금 수령시 회계처리

질 의 내 용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수령한 자금(재정상 원조를 할 목적이 아닌 상환의무가 있는 것)은 어떤 계정으로 처리해야하는지요?

- ✔ 타회계/기금으로부터 상환 의무가 있는 자금을 수령한 경우 '정부내차입금'으로 처리합니다. 상환일이 재정상태표일로부터 1년 이내 도래하는지 여부에 따라 장·단기로 구분합니다.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회계처리지침〉

11. (금융부채) 금융부채는 다음의 부채를 말하며, 상환일이 재정상태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도래하는지 여부에 따라 장·단기로 구분한다.
- (1) 국채(단기국채와 국채)
 - (2) 공채(단기공채와 공채)
 - (3) 차입금(단기차입금과 장기차입금)
 - (4) 미지급금(미지급금과 장기미지급금)
 - (5) 기타의 금융부채
14. (차입금) (1) 차입금은 일정한 기간 내에 원금의 상환과, 일정한 이자를 지급한다는 채권·채무 계약에 따라 조달된 자금을 말한다.
- (2) 차입금은 "국내차입금", "해외차입금", "정부내차입금", "기타민간예수금"으로 구분한다.

Q44 국고채무부담행위로 선박 취득시 회계처리

질 의 내 용

국고채무부담행위를 통해 선박 취득시 회계처리는 어떻게 되는지요? 또한 선박 취득대금이 아닌 펀드회사에 지급하는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는지요?

✓ 국고채무부담행위를 통해 선박 취득시 회계처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리고 국가회계에서는 금융비용자본화를 하지 않으므로 펀드회사에 지급하는 이자는 비용처리합니다.

〈계약이행시〉

(차) 건설중인자산 XXX / (대) (장기)미지급금((장기)국고채무부담행위액) XXX

〈대금지급시〉

(차) (장기)미지급금((장기)국고채무부담행위액) XXX / (대) 한국은행국가예금 XXX

〈이자지급시〉

(차) 이자비용 XXX / (대) 한국은행국가예금 XXX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회계처리지침〉

실무해설19. (☞ 관련문단 15) "국고채무부담행위액"은 국고채무부담행위에따라 발생한 미지급금으로서 국고채무부담행위가 실제로 발생하는 연도에 국고채무부담행위와 관련된 계약상 의무가 이행되었으나 그 대가가 미지급된 부분을 말한다.

여기서 국고채무부담행위란 국가채무의 한 종류로서 「국가재정법」제25조에 따라 예산확보 없이 국가가 미리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지출이 수반되는 계약을 미리 체결하고, 예산의 지출은 다음연도 이후의 예산에 계상하게 된다(관련 회계처리는 적용사례4 참조).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9. 자산의 제작, 매입, 건설을 위하여 사용된 자금을 차입금으로 총당하는 경우 동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등은 원가에 산입하지 않고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처리한다.

7. 금융부채의 최초 인식

Q45 발행일과 매출일이 다른 국채 발행 회계처리

질 의 내 용

국채의 발행일과 매출일이 다른 경우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서는 발행일을 기준으로 기록이 되고, 국가채무관리보고서에는 매출일을 기준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발생주의 회계 기준에서는 이와 같이 발행일과 매출일이 다른 경우 어떻게 회계처리하나요?

- ✓ 국채 회계처리는 매출일을 기준으로 수행되나, 발행일부터 매출일까지의 매출경과료를 미지급이자비용으로 기록함으로써 최초 이자지급일에 이자비용을 계산할 때 고려하고 있습니다. 즉, 회계처리는 매출일을 기준으로 수행되나, 이자비용의 인식은 발행일을 기준으로 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회계처리지침〉

32. (국채의 최초 측정) (1) 국채는 국채발행수수료 및 발행과 관련하여 직접 발생한 비용을 뺀 발행가액으로 평가한다.
- (2) 국채의 액면가액과 발행가액의 차이는 "국채할인(할증)발행차금"으로 액면가액에서 빼거나 더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 (3) 국채의 발행일과 매출일이 불일치할 경우 매출일을 기준으로 할인(할증)발행차금을 산출한다. 발행일과 매출일 불일치로 매출경과료(10원 미만은 절사한다)가 발생하는 경우 "미지급이자비용"으로 처리하고, 할인(할증)발행차금에 가산(차감)한다.

$$\text{할인(할증)발행차금} = \text{발행액면금액} - \text{발행대금납입액} + \text{매출경과료}$$

Q46 국채 발행시 발행수수료, 법률자문료 등의 회계처리

질의내용(1)

국채를 발행할 때 지출한 발행수수료 등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나요?

- ✔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회계처리지침 문단32에 따라 국채발행수수료 및 발행 관련 직접비용은 비용 처리하지 않고 국채의 발행가액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질의내용(2)

국채를 발행할 당시에는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던 법률자문료를 발행일 이후에 지급하면서 비용으로 처리하였는데 적절한 회계처리에 해당하나요?

- ✔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회계처리지침 문단32에 따라 법률자문료는 발행과 관련하여 직접 발생한 비용으로 볼 수 있으므로 지급될 때 부채의 발행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합니다.
 - 또한 기존의 유효이자율을 법률자문료 차감 후 발행금액과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일치시키는 이자율로 재계산해야 하며, 이 유효이자율을 바탕으로 국채의 이자비용과 할인차금 상각액을 다시 계산하여야 합니다.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회계처리지침〉

32. (국채의 최초 측정) (1) 국채는 국채발행수수료 및 발행과 관련하여 직접 발생한 비용을 뺀 발행가액으로 평가한다.
- (2) 국채의 액면가액과 발행가액의 차이는 "국채할인(할증)발행차금"으로 액면가액에서 빼거나 더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 (3) 국채의 발행일과 매출일이 불일치할 경우 매출일을 기준으로 할인(할증)발행차금을 산출한다. 발행일과 매출일 불일치로 매출경과료(10원 미만은 절사한다)가 발생하는 경우 "미지급이자비용"으로 처리하고, 할인(할증)발행차금에 가산(차감)한다.

$$\text{할인(할증)발행차금} = \text{발행액면금액} - \text{발행대금납입액} + \text{매출경과료}$$

Q47 해외차입금의 현재가치평가지 적용할 유효이자율

질 의 내 용

해외차입금의 현재가치평가지 적용할 유효이자율은 무엇인가요?

- ✔ 해외차입금의 현재가치평가지 해당 거래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해야하며, 유효이자율이란 정상이자율로서 거래발생 당시 거래 상대방의 신용상태 및 지급조건 등이 충분히 반영되어 체결된 계약에 적용될 수 있는 이자율을 의미합니다.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회계처리지침〉

34. (차입금 등의 최초 측정) (1) 장기연불조건의 거래, 장기금전대차거래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차입금, 미지급금 등으로서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는 현재가치로 평가한다. 다만, 차입금 중 "전대차관"과 "정부내예수금"은 현재가치로 평가하지 아니한다.
- (2) (1)에 따른 현재가치 가액은 해당 금융부채로 인해 미래에 지급할 총금액을 해당 거래의 유효이자율(유효이자율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유사한 조건의 국채 유통수익률을 말한다)로 할인한 가액으로 한다.

실무해설3. 유효이자율이란 거래 당시 상대방의 신용상태 및 지급 조건 등을 충분히 반영하여 체결된 계약에 적용될 수 있는 이자율이다. 그러나 거래 발생시점의 공정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의 유효이자율은 자산·부채의 공정가액과 당해 자산·부채에서 발생하는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일치시키는 할인율로서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해서 산정된다.

I. 정의항목 리스트

II. 회계처리에 관한 질의

III. 디브리인 업무처리에 관한 질의

IV.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질의

1.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의 분류

Q48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의 구분 기준

질 의 내 용

재무제표 상 사회기반시설이 계상되어 있는데, 해당자산이 일반유형자산인지 사회기반시설 인지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 ✓ 일반유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하더라도 국가의 기반을 형성하기 위하여 대규모로 투자하여 건설하고 그 경제적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자산은 '사회기반시설'로 분류하여야 합니다.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3.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일반유형자산"이란 고유한 행정활동에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사회기반시설은 제외한다)으로서,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집기·비품·차량운반구, 전비품, 기타 일반유형자산 및 건설중인일반유형자산 등을 말한다. 일반유형자산은 재화의 생산, 용역의 제공 또는 자체 사용 등의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이다.
 - (2) "사회기반시설"이란 국가의 기반을 형성하기 위하여 대규모로 투자하여 건설하고 그 경제적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자산으로서, 도로, 철도, 항만, 댐, 공항, 기타사회기반시설 및 건설중인사회기반시설 등을 말한다. 사회기반시설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에서 나열한 시설 및 그 부속 토지 중 국가회계실체가 소유(실질적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통제하고 있는 자산이다.

Q49 국유재산·물품대장 등재 대상이 아닌 함포의 치안유지자산 처리 가능 여부

질 의 내 용

국유재산 및 물품대장 등재 대상이 아닌 함포의 경우 '치안유지자산'으로 회계처리하나요?

✔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함포의 경우 '전비품', 치안유지목적으로 보유한 경우 '기타일반유형자산' 중 '치안유지자산'으로 분류합니다.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 4. (일반유형자산의 분류) 일반유형자산의 분류는 다음과 같다.
 - (6) "전비품"이란 전쟁의 억제 및 수행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전문 군사장비와 탄약 등을 말한다.
 - (7) "기타일반유형자산"이란 (1) 내지 (6)으로 분류되지 아니한 일반유형자산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 (가) 입목: 토지에서 자라고 있는 수목
 - (나) 치안유지자산: 치안유지목적으로 보유한 총기류 및 탄약 등으로 전비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산
 - (다) 정부미술품·정부미화물품: 국가회계실체가 보유하는 미술품 및 미화물품 중 「문화재보호법」을 적용받지 않아 유산자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 자산
 - (라) 기타의기타일반유형자산: (가) 내지 (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기타일반유형자산



I. 질의응답 리스트

II. 회계처리에 관한 질의

III. 디브리인 업무처리에 관한 질의

IV.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질의

Q50 건설중인자산의 범위

질 의 내 용

건물신축 시 개업 준비를 위해 지출된 사무직 인건비를 건설중인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 ✔ '건설중인자산'이란 취득과정이 진행 중인 일반유형자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 등의 지출액을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계정과목으로 자산으로 인식됩니다.
- 따라서 인건비 등이 건물 취득을 위하여 직접적으로 발생된 경우에는 취득원가 또는 취득부대비용으로 보아 자산이 완공되기 전까지 '건설중인자산'으로 회계처리하게 됩니다.
 - 개업 준비를 위해 지출된 사무직 인건비는 건물 신축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으며 미래경제적 효익창출이나 용역잠재력 있는 자산성 있는 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4. (일반유형자산의 분류) 일반유형자산의 분류는 다음과 같다.
- (8) "건설중인일반유형자산"이란 취득과정이 진행 중인 일반유형자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 등의 지출액을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계정을 말한다. 건설중인일반유형자산은 검수 또는 국유재산등에 등재시점에 본계정으로 대체한다.
9. (취득원가의 측정)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의 취득원가는 취득을 위하여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과 취득부대비용을 포함한다. 다만,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액 및 취득부대비용을 취득원가로 한다. 자산의 제작, 매입, 건설을 위하여 사용된 자금을 차입금으로 총당하는 경우 동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등은 원가에 산입하지 않고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처리한다.

Q51 건설중인기타의유형자산 계정과목이 발생하는 경우

질 의 내 용

건설중인기타의유형자산은 어떤 경우에 발생하는 계정과목인가요?

- ✔ 토지, 건물 등 자산을 일괄매입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선금 지급시 '건설중인기타의유형자산'으로 회계처리 하였다가 자산대장 등재 시 감정가액으로 안분 계산해서 각각 토지, 건물로 계상합니다.
- ✔ 또한, 국세청이 물납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건설중인기타의유형자산'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 됩니다.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14. (일괄취득) 일반유형자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일괄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원가를 각 자산의 공정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개별 자산의 취득원가로 한다. 일괄취득한 자산 중 일부 자산의 공정가액만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공정가액을 알 수 있는 자산의 공정가액을 우선 배분하고, 잔액은 나머지 자산에 배분한다.

실무해설9. 국세청이 물납으로 취득하는 일반유형자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은 취득 시 "건설중인기타의유형자산"으로 분류하고 기획재정부 이관 시 "물납이전"으로 처리한다.

I. 질의응답 리스트

II. 회계처리에 관한 질의

III. 디브리태인 업무처리에 관한 질의

IV.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질의

Q52 치안유지자산의 회계처리

질 의 내 용

과거에 물품으로 등재해오던 전기충격기 등을 치안유지자산으로 계상해야 하는지?

- ✔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문단4에 따르면 치안유지자산은 치안유지 목적으로 보유한 총기류 및 탄약 등 중에서 전비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산을 의미하므로 해당 자산이 이에 포함된다면 치안유지자산으로 계상해야 합니다.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4. (일반유형자산의 분류) 일반유형자산의 분류는 다음과 같다.
(7) "기타일반유형자산"이란 (1) 내지 (6)으로 분류되지 아니한 일반유형자산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나) 치안유지자산: 치안유지목적으로 보유한 총기류 및 탄약 등으로 전비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산

Q53 치안유지자산으로 재분류 시 장부가액 산정방법

질 의 내 용

선박에 붙어있는 포 같은 경우에 올해부터 선박이 아니라 치안유지자산으로 계정분류를 해야 하는데 그 금액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 ✔ 선박에서 치안유지자산으로 계정 재분류를 수행할 경우, 재분류 당시 포와 관련된 취득가액과 감가상각누계액을 승계하면 됩니다. 별도의 자산평가는 수행하지 않습니다.

Q54 탄피 회계처리

질 의 내 용

보유중인 탄피는 재고자산으로 처리해도 되는지? 무기류와 같이 전비품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 ✔ 보유 중인 탄피는 보유목적에 따라 ‘재고자산’ 또는 ‘군수품’, ‘치안유지자산’ 중 적절한 과목으로 회계처리 합니다.
- ‘재고자산’은 판매를 위해 보유하거나 생산과정에 투입을 위해 존재하는 자산을 의미합니다. 보유중인 탄피가 판매 또는 용역제공을 위하여 보유하는 자산인 경우 재고자산으로 처리합니다.
- 탄피가 군수품관리법에 따라 관리되는 경우에는 ‘전비품’(전쟁의 억제 및 수행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전문 군사장비와 탄약 등), 치안유지목적을 위한 총기류와 관련되었다면 ‘치안유지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 4. (일반유형자산의 분류) 일반유형자산의 분류는 다음과 같다.
 - (6) "전비품"이란 전쟁의 억제 및 수행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전문 군사장비와 탄약 등을 말한다.
 - (7) "기타일반유형자산"이란 (1) 내지 (6)으로 분류되지 아니한 일반유형자산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 (나) 치안유지자산: 치안유지목적으로 보유한 총기류 및 탄약 등으로 전비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산

〈기타의 자산과 기타의 부채 회계처리지침〉

- 3.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재고자산"이란 판매 또는 용역제공을 위하여 보유하거나 생산과정에 있는 자산, 생산과정 또는 용역제공과정에 투입될 원재료나 소모품 형태로 존재하는 자산으로 상품, 제품, 재공품, 원재료, 부재료, 축산물, 미착품 및 기타의저장품이 있다.(이하생략)

I. 정의항목 리스트

II. 회계처리에 관한 정의

III. 디버레인 업무처리에 관한 정의

IV.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정의

Q55 문화재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는 미술품의 회계처리

질 의 내 용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에 해당하지 않는 미술품 또는 미화물품은 어떻게 회계처리 하는지?

- ✓ 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문단4에 따라 문화재보호법을 적용받지 않아 유산자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 미술품 및 미화물품은 '기타일반유형자산'의 '정부미술품·정부미화물품'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4. (일반유형자산의 분류) 일반유형자산의 분류는 다음과 같다.
- (7) "기타일반유형자산"이란 (1) 내지 (6)으로 분류되지 아니한 일반유형자산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 (다) 정부미술품·정부미화물품: 국가회계실체가 보유하는 미술품 및 미화물품 중 「문화재보호법」을 적용받지 않아 유산자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 자산

Q56 **미술품 구입 관련 올바른 계정과목**

질 의 내 용

○○부의 미술작품 구입은 크게 미술은행 구입건과 미술관 소장용 2가지로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 미술은행 구입건(타중앙부처에 미술작품을 대여하기 위해 취득한 2000만원 미만의 미술작품)은 건설중인가타의일반유형자산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 미술관 소장용 미술품은 홍보물품비로 처리하였습니다.

미술품에 대하여 동일한 처리를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그렇다면 올바른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 보유중인 미술품 및 미화물품 중 「문화재보호법」을 적용받지 않아 유산자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 자산은 ‘기타일반유형자산’ 중 ‘정부미술품·정부미화물품’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존에 ‘홍보물품비’로 처리한 미술품과 ‘건설중인가타의유형자산’으로 처리한 미술품은 모두 ‘정부미술품·정부미화물품’으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계정과목 해설서>

VIII. 일반유형자산

 7 기타일반유형자산

 (3) 정부미술품·정부미화물품

 보유중인 미술품 및 미화물품 중 「문화재보호법」을 적용받지 않아 유산자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 자산을 말한다.

Q57 **정부미술품 계정과목 발생이 오류인지 여부**

질 의 내 용

조달청 사이버갤러리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부미술품을 각 회계실체의 자산으로 인식하는 것이 올바른 회계처리인가요?

✔️ 정부미술품의 소유권을 각 보유 회계실체가 갖고 있는 경우에는 보유 회계실체가 정부 미술품을 자산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I. 질의항목 리스트

II. 회계처리에 관한 질의

III. 디브리킹 업무처리에 관한 질의

IV.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질의

Q58 미술품 계정재분류 시 결산조정전표 일괄입력 가능여부

질 의 내 용

미술품 관련 계정재분류 시 하나의 결산조정분개로 업무처리를 해도 되나요?

- ✓ 하나의 결산조정분개로 업무처리가 가능하지만 미술품 관리부서에서 미술품대장을 관리할 때 처분, 폐기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정부미술품·정부미화물품 계정에서 수정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가 필요합니다.

Q59 구축물의 정의

질 의 내 용

구축물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건물에 포함되는 전기공사비용을 현재 별도의 구축물로 관리하고 있는데 올바른 것인지?

- ✓ '구축물'은 토지에 정착된 부동산 중 입목, 건물 및 건물 부속시설 등을 제외한 시설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건물에 부수되는 전기공사비용은 구축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별도의 자산으로 관리해야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건물에 포함되는 전기공사비용은 자본적지출 등으로 처리하여 건물장부가액에 가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4. (일반유형자산의 분류) 일반유형자산의 분류는 다음과 같다.
 - (3) "구축물"이란 토지에 정착된 부동산 중 입목, 건물 및 건물 부속시설 등을 제외한 시설물을 말한다.
-

Q60 국유재산상 기계기구의 재무계정과목

질 의 내 용

국유재산 상 기계기구로 분류되는 항목은 재무제표에서 어떤 계정과목과 매칭 되는지?

- ✓ 국유재산법에 따른 기계기구는 국가회계 계정과목 ‘고정성기계장치’와 매칭됩니다.

Q61 국유재산관리기금을 통해 취득한 자산의 귀속여부

질 의 내 용

국유재산관리기금을 통해 취득한 자산을 일반회계의 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가요?

- ✓ 국유재산관리기금을 통해 취득한 자산이라 하더라도 일반회계에서 사용 및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반회계의 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 경우 국유재산법에 따라 등기된 재산은 물론이고 건설중인자산도 모두 일반회계 귀속분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Q62 국유재산과 물품 간 구분 변경 시 회계처리

질 의 내 용

업무담당자들이 기타증감 업무처리를 통해 국유재산을 물품으로, 물품을 국유재산으로 변경하는 경우 손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회계처리 해야 할까요?

- ✓ 국유재산과 물품간의 종류 변경은 재무결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중에 기타증감 업무처리를 통해 발생한 손익은 결산조정을 통해 제거해야 합니다.

I. 질의응답 리스트

II. 회계처리에 관한 질의

III. 디브리엔 업무처리에 관한 질의

IV.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질의

2. 인식의 일반원칙

Q63 등기 미완료 토지에 대한 자산 인식 방법

질 의 내 용

등기가 완료되지 않아 국유재산대장에 등재하지 못하고 있는 취득 중인 토지의 회계처리 방법은?

- ✓ 일반유형자산은 미래 경제적 효익 또는 용역잠재력이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취득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하며, 일반적으로 검수 또는 국유재산대장 등의 등재시점에 인식하게 됩니다.
- 등재여부와 관계없이 자산인식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자산으로 인식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국유재산 등재시점을 자산인식시점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국유재산에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 건설중인자산으로 인식하고 추후 대장 등재 시 본자산(토지)으로 대체해도 됩니다.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6. (인식조건) (1)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 인식하며, 일반적으로 검수 또는 국유재산대장 등의 등재시점에 자산으로 인식한다.
- (가)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 또는 용역잠재력이 국가회계실체 등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 (나) 자산의 취득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 (2) 다만, 건당 취득원가가 50만원 미만인 경우 또는 금액과 무관하게 소모성 물품의 경우에는 비용으로 처리한다.
-

Q64 국방부에서 관리중인 군견(생물자산)의 회계처리

질 의 내 용

국방부에서 관리중인 군견(생물자산)이 유형자산에 해당하는지?

- ✔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문단6에 따라 군견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 또는 용역잠재력이 국가회계실체 등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자산의 취득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면 유형자산으로 인식하여야 합니다.
 - 다만, 국방부에서 관리 중인 군견 중 외부에서 구입하지 않는 경우 취득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 6. (인식조건) (1)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 인식하며, 일반적으로 검수 또는 국유재산대장 등의 등재시점에 자산으로 인식한다.
 - (가)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 또는 용역잠재력이 국가회계실체 등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 (나) 자산의 취득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 (2) 다만, 건당 취득원가가 50만원 미만인 경우 또는 금액과 무관하게 소모성 물품의 경우에는 비용으로 처리한다.

I. 질의응답 리스트

II. 회계처리에 관한 질의

III. 디브리엔 업무처리에 관한 질의

IV.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질의

Q65 50만원 미만 취득 건을 자산 계상해도 되는지 여부

질 의 내 용

50만원 미만 물품 취득에 따른 비용을 결산조정으로 자산으로 계상해도 되나요?

✔ 건당 50만원 미만 자산은 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Q66 국가회계예규상 50만원 기준과 물품분류 지침상 10만원 기준의 차이

질 의 내 용

국가회계예규에서 50만원을 기준으로 비용과 자산을 구분하는 규정과 물품분류지침에서 10만원을 기준으로 구분하는 규정은 무슨 차이인지?

- ✔ 국가회계예규의 50만원 기준은 소모성 물품을 제외하고는 건당 취득원가가 50만원 미만인 경우는 비용처리하고, 50만원 이상인 경우만 자산 처리하도록 하는 규정이고,
- 물품분류지침에서의 10만원 기준은 취득단가가 10만원 미만일 경우 소모품으로 분류하고 이상인 경우만 비소모품으로 분류하라는 규정입니다.
- 참고로 국가회계예규 상 50만원 기준은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4조* 상 물품관리운영보고서의 작성 대상 물품의 금액기준이 50만원 이상임을 참고하여 제정된 것입니다.

* 제24조(물품관리운영보고서의 작성) ① 법 제21조에 따라 물품관리운영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물품은 취득단가가 5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한다.(이하생략)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 6. (인식조건) (1)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 인식하며, 일반적으로 검수 또는 국유재산대장 등의 등재시점에 자산으로 인식한다.
 - (가)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 또는 용역잠재력이 국가회계실체 등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 (나) 자산의 취득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 (2) 다만, 건당 취득원가가 50만원 미만인 경우 또는 금액과 무관하게 소모성 물품의 경우에는 비용으로 처리한다.

Q67 50만원 미만 취득 건의 판단기준

질 의 내 용

물품의 건당 50만원 미만 '기계장치및부품비' 비용 처리 시 '건당'의 판단기준은 무엇인가요?

✔ 물품취득 시 취득원가가 50만원 미만인지 여부는 일괄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물품 개별 건별로 판단해야 합니다.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6. (인식조건) (2) 다만, 건당 취득원가가 50만원 미만인 경우 또는 금액과 무관하게 소모성 물품의 경우에는 비용으로 처리한다.

Q68 취득원가 50만원 미만 물품의 자산인식 여부

질 의 내 용

취득원가가 50만원 미만인 경우 물품으로 계상되어 있지 않는데 올바른 회계처리 인가요?

✔ 건당 취득원가가 50만원 미만인 경우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비용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6. (인식조건) (2) 다만, 건당 취득원가가 50만원 미만인 경우 또는 금액과 무관하게 소모성 물품의 경우에는 비용으로 처리한다.

I. 질의응답 리스트

II. 회계처리에 관한 질의

III. 디브리엔 업무처리에 관한 질의

IV.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질의

Q69 **국유재산관리기금을 통한 자산취득 시 회계처리**

질 의 내 용

국유재산관리기금을 통하여 국유재산 취득 시 국유재산기금과 실제 취득 회계실체는 각각 어떠한 회계처리를 수행해야 하나요?

✔ 자산을 취득하는 회계실체가 부담해야 할 금액을 다른 국가회계실체가 대신 부담하는 경우에는 각각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를 수행해야 합니다.

〈국유재산관리기금〉

(차) 기타재원이전 XXX / (대) 현금및현금성자산 XXX

〈취득 회계실체〉

(차) 자산 XXX / (대) 기타재원조달 XXX

Q70 **선사용 토지의 자산 인식여부**

질 의 내 용

아직 지출이 완료되지 않은 토지 취득 건에 대하여 해당 토지를 실제 사용하는 경우 토지를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나요?

✔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 토지를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으며, 미지출분에 대하여 부채를 함께 인식하여야 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검수 또는 국유재산대장 등의 등재시점에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6. (인식조건) (1)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 인식하며, 일반적으로 검수 또는 국유재산대장 등의 등재시점에 자산으로 인식한다.

(가)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 또는 용역잠재력이 국가회계실체 등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나) 자산의 취득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Q71 400번대 예산목 비용처리한 항목에 대한 추가 검토 여부

질 의 내 용

410~440 예산목으로 지출하고 비용처리한 항목과 관련하여 지출금액이 큰 건에 대해서 자산으로 계상해야 할지 여부를 검토해야 하나요?

- ✔ 410~440 예산목으로 지출한 비용 중 검토 결과 자산화 요건을 충족하는 건에 대해서는 자산으로 계상하도록 업무담당자에게 업무 재수행을 요청해야 합니다.
또한, 본 자산이 있는 상태에서 해당 자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대비에 대해서는 자본적 지출인지 수익적지출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자본적지출인 경우 본 자산의 장부가액에 가산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Q72 소유권이 없는 토지에 지은 건축물의 별도자산 인식 여부

질 의 내 용

다른 회계실체 소유의 토지에 건축물을 지었을 경우에도 해당 회계실체의 자산으로 개별적으로 인식할 수 있나요?

- ✔ 토지 소유자와 상관없이 건축물이 자산인식요건을 충족한다면 해당 회계실체 소유의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I. 질의항목 리스트

II. 회계처리에 관한 질의

III. 디브리엔 업무처리에 관한 질의

IV.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질의

Q73 재측량으로 장부가액 증가 시 회계처리 방법

질 의 내 용

재측량 과정에서 토지 면적이 증가하여 장부가액이 증가하는 경우 잡이익으로 회계처리 되어 있는데, 어떤 회계처리를 하는 것이 적정한지?

- ✓ '잡이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재측량의 사유가 최초 측량시의 오류로 인한 것이라면 '잡이익'이 아니라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적정합니다.

Q74 기증받은 미술품의 회계처리

질 의 내 용

기증받은 미술품의 회계처리는?

- ✓ 보유중인 미술품 및 미화물품 중 「문화재보호법」을 적용받지 않아 유산자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 자산은 '기타일반유형자산' 중 '정부미술품·정부미화물품'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액 및 취득부대비용을 취득 원가로 인식합니다.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9. (취득원가의 측정)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의 취득원가는 취득을 위하여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과 취득부대비용을 포함한다. 다만,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액 및 취득부대비용을 취득원가로 한다. 자산의 제작, 매입, 건설을 위하여 사용된 자금을 차입금으로 충당하는 경우 동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등은 원가에 산입하지 않고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처리한다.

〈계정과목 해설서〉

VIII. 일반유형자산

⑦ 기타일반유형자산

(3) 정부미술품·정부미화물품

보유중인 미술품 및 미화물품 중 「문화재보호법」을 적용받지 않아 유산자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 자산을 말한다.

3. 인식의 예외사항

Q75 '유산자산취득비'사용시 회계처리

질 의 내 용

유산자산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유산자산취득비' 계정과목을 사용할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 것인지?

- ✓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문단7에 따라 유산자산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을 '유산자산취득비'로 처리합니다.
 - 따라서 '유산자산취득비'는 취득시점에 재정운영표상 비용으로 표시됩니다.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7. (유산자산) 유산자산이란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하여 국가가 영구히 보존하여야 할 자산으로서 역사적, 자연적, 문화적, 교육적 및 예술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갖는 자산을 말한다. 유산자산과 관리토지는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유산자산취득비" 또는 "관리토지취득비"로 처리한다.

I. 질의응답 리스트

II. 회계처리에 관한 질의

III. 디버레인 업무처리에 관한 질의

IV.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질의

Q76 보존용재산의 유산자산 해당여부

질 의 내 용

국유대장상 보존용재산으로 분류되는 자산은 유산자산으로 보아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 것이 적정한지?

- ✔ 보존용재산이라고 해서 무조건 유산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유산자산의 정의를 충족할 때 유산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 유산자산의 정의를 충족하더라도 청사와 같이 공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유산자산으로 분류하지 아니하고 '일반유형자산'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7. (유산자산) 유산자산이란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하여 국가가 영구히 보존하여야 할 자산으로서 역사적, 자연적, 문화적, 교육적 및 예술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갖는 자산을 말한다. 유산자산과 관리토지는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유산자산취득비" 또는 "관리토지취득비"로 처리한다.

〈계정과목 해설서〉

XI. 유산자산

③ 유산자산 인식 예외사항

- (1) 유산자산의 정의를 충족하는 자산이 공용으로 행정활동에 사용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예: 청사)에 공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유산자산이 아닌 일반유형자산으로 인식한다. 따라서 유산자산인 건물을 행정업무용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반유형자산의 건물로 분류한다.)

Q77 수변보호구역, 생태계보호구역의 유산자산 해당여부

질 의 내 용

수변보호구역, 생태계보호구역이 유산자산에 해당되나요?

- ✔ 수변보호구역, 생태계보호구역이 유산자산의 분류 중 보호구역에 해당할 경우 유산자산으로 분류해야 합니다.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실무해설4. 유산자산의 분류는 다음과 같다.

- (3) 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생태계보호구역, 자연경관보호구역 등과 같이 역사적, 자연적, 문화적, 교육적 및 예술적으로 미래세대를 위해 영구히 보존할 가치가 있으며, 관리주체가 국가인 보호구역

I. 질의응답 리스트

II. 회계처리에 관한 질의

III. 디브리인 업무처리에 관한 질의

IV.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질의

4. 취득원가의 측정

Q78 건물 방수공사의 자본적 지출 해당 여부

질 의 내 용

건물 옥상에 누수방지를 위해 실시한 방수공사는 자본적지출인가요?

- ✔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문단26에 의하면 자본적 지출은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을 의미하므로 건물 방수공사가 이러한 정의에 부합하는지 판단하여 회계처리해야 합니다.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26.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은 자본적 지출로서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에 가산한다. 이 외의 지출에 대하여는 수익적 지출로서 당기 비용으로 처리한다.

Q79 문화재 발굴조사비용 등의 자산취득 부대비용 해당 여부

질 의 내 용

토지 취득 시에 의무적으로 수행하는 문화재 지표조사비용 및 문화재 발굴조사비용은 비용으로 처리하나요 아니면 토지의 취득원가로 처리하나요?

✔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지출이라면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문단9에 따른 토지 취득부대비용으로 보아 토지의 취득원가에 산입해야 합니다.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9. (취득원가의 측정)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의 취득원가는 취득을 위하여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과 취득부대비용을 포함한다. 다만,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액 및 취득부대비용을 취득원가로 한다. 자산의 제작, 매입, 건설을 위하여 사용된 자금을 차입금으로 충당하는 경우 동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등은 원가에 산입하지 않고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처리한다.

Q80 지진계 설치를 위한 굴착비용이 취득부대비용인지 여부

질 의 내 용

지진계를 설치하기 위한 굴착 등 공사비용을 지진계의 원가로 보아야 하나요? 아니면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여야 하나요?

✔ 지진계를 설치하기 위한 공사비용은 취득부대비용에 해당하므로 지진계의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I. 질의항목 리스트

II. 회계처리에 관한 질의

III. 디브리인 업무처리에 관한 질의

IV.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질의

Q81 감리비용이 취득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 의 내 용

자산 취득 시 발생한 감리비용은 취득부대비용에 해당하나요?

- ✔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실무해설5에서 취득부대비용의 예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해당사항을 참고하며 해당 비용이 취득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실무해설5. (☞ 관련문단 9) 취득부대비용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 (1) 설치장소 준비를 위한 지출
- (2) 외부 운송 및 취급비
- (3) 설치비
- (4) 설계와 관련하여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 (5) 취득세, 등록세 등 관련 제세공과금

Q82 공사현장 감독 관련 여비의 취득부대비용 해당여부

질 의 내 용

시설부대비(420-05)로 지출한 내역 중에 공사현장 감독을 위한 여비 등으로 지출한 것은 취득부대비용으로 회계처리 해야 하나요?

- ✔ 공사현장 감독을 위한 여비가 자산취득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 취득부대비용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Q83 주거이전비가 토지매입부대비용인지 여부

질 의 내 용

토지를 매입하면서 원소유자에게 지급한 주거이전비의 경우 비용성격인가요? 토지매입부대비용인가요?

- ✓ 일반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취득을 위하여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과 취득부대비용을 포함합니다. 주거이전비의 경우 토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지출하여야 하는 비용이므로 취득부대비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Q84 사용준비를 위한 지출을 취득부대비용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질 의 내 용

합, 포 등 치안유지자산 취득시 지출되는 설치기술지원비는 본 자산 취득 후 이를 사용하기 전까지 발생할 수 있는데, 어느 시점(취득시 or 사용시)까지 발생한 금액을 취득부대비용으로 보나요?

- ✓ 취득부대비용은 취득 후 사용 준비를 위한 지출을 포함하므로 치안유지자산을 사용가능한 상태에 도달하기까지 발생한 설치기술지원비는 취득부대비용으로 보아 치안유지자산의 취득원가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I. 질의응답 리스트

II. 회계처리에 관한 질의

III. 디브레인 업무처리에 관한 질의

IV.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질의

Q85 자산 취득 부대비용 해당 여부

질 의 내 용

국방시설 관련 토지 및 건물 취득 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의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지출하는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을 취득부대비용으로 볼 수 있나요?

- ✓ 해당 부담금이 관련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지출이라면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문단9에 따른 자산의 취득부대비용으로 보아 자산의 취득원가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9. (취득원가의 측정)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의 취득원가는 취득을 위하여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과 취득부대비용을 포함한다. 다만,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액 및 취득부대비용을 취득원가로 한다. 자산의 제작, 매입, 건설을 위하여 사용된 자금을 차입금으로 충당하는 경우 동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등은 원가에 산입하지 않고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처리한다.

Q86 취득부대비용이 본자산의 취득원가보다 큰 경우 회계처리

질 의 내 용

취득부대비용이 본자산의 취득원가보다 큰 경우(예시: 토지취득비가 2억, 주거이전비가 4억인 경우) 취득부대비용을 본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것이 타당한 회계처리인가요?

- ✓ 금액적 비중이 취득부대비용의 자산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아니므로 취득부대비용이 본자산의 취득원가보다 크더라도 관련 금액을 본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Q87 출연금 예산으로 민간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의 자산 해당 여부

질 의 내 용

예산상 '출연금'으로 민간에게 지출한 공사금액을 국가회계실체의 선급금 및 건설중인 자산으로 회계처리 해도 되나요?

✔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문단22에 따르면 공사 지출금을 '출연금' 예산으로 지출한 경우에는 '선급금' 및 '건설중인자산'으로 회계처리 할 수 없습니다.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22. (공사 지출금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여 자산을 취득) 공사 지출금의 일부(예산상 "출연금"으로 지출되는 경우를 제외한다)를 국가가 부담하여 향후 지분만큼 국가가 자산을 취득하고 사용수익권을 부여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완공 전에 지급한 공사지출금은 선급금으로 회계처리하며, 완공 후 취득시 취득원가 전체를 자산으로 계상하고 국가가 부담하지 않은 부분을 사용수익권으로 회계처리한다.

〈비교환수의 회계처리지침〉

3.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출연금"이란 기금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또는 민간으로부터 재정상 원조의 목적으로 법령에 근거하여 반대급부 없이 제공받는 금전을 말하며 「부담금관리기본법」상의 출연금을 제외한다.

I. 질의응답 목록

II. 회계처리에 관한 질의

III. 디브리딩 업무처리에 관한 질의

IV.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질의

Q88 자산 취득시 펀드에 지급한 수수료 등의 자산 취득원가 구성 여부

질 의 내 용

선박펀드를 통해 선박 취득시 펀드에 지급하는 이자비용과 조달수수료는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나요?

- ✔ 자산의 제작, 매입, 건설 시 발생한 펀드 지급 이자비용과 조달수수료는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합니다.
- 다만, 자산의 제작, 매입, 건설을 위하여 사용된 자금을 직접 차입금으로 충당하여 발생하는 이자비용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처리하고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9. (취득원가의 측정)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의 취득원가는 취득을 위하여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과 취득부대비용을 포함한다. 다만,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액 및 취득부대비용을 취득원가로 한다. 자산의 제작, 매입, 건설을 위하여 사용된 자금을 차입금으로 충당하는 경우 동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등은 원가에 산입하지 않고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처리한다.
-

Q89 임차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 회계처리

질의내용(1)

OO청이 임차한 건물 내 실험실에 대해 대규모 수선 공사를 수행한 경우 해당 공사비용을 자산으로 회계처리 가능한가요? 또한, 임차한 건물에 설치한 간판은 자산으로 회계처리 가능한가요?

- ✓ 임차자산에 대하여 자본적지출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유, 지출금액, 자산의 사용기간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여야 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 임차자산을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기 위해 발생한 지출금액이 크고, 취득한 자산의 사용기간이 임차자산의 임차기간과 다른 경우에는 별도자산으로 인식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 임차한 건물에 설치한 간판은 별도의 자산으로 관리할 수 있으므로 비소모성 물품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질의내용(2)

임차해서 사용 중인 건물에 대하여 자본적지출이 발생한 경우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임차자산에 대하여 자본적지출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유, 지출금액, 자산의 사용기간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여야 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 임차자산을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기 위해 발생한 지출금액이 크고, 취득한 자산의 사용기간이 임차자산의 임차기간과 다른 경우에는 별도자산으로 인식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I. 질의항목 리스트

II. 회계처리에 관한 질의

III. 디버레인 업무처리에 관한 질의

IV.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질의

질의 내용(3)

OO청에서 지자체의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공사(195백만원)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경우 엘리베이터 관련 공사 금액을 자본적지출로 보고 자산으로 처리해도 되는지?

- ✔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문단26에 의하면 자본적지출은 대상 자산(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지출을 의미합니다. 엘리베이터의 설치 등은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지출로 판단됩니다.
- 무상 임차자산에 대하여 자본적지출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유, 지출금액, 자산의 사용기간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여야 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임차자산을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기 위해 발생한 지출금액이 크고, 취득한 자산의 사용기간이 임차자산의 임차기간과 다른 경우에는 별도자산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26. (자본적지출과 수익적 지출)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은 자본적지출로서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에 가산한다. 이 외의 지출에 대하여는 수익적 지출로서 당기 비용으로 처리한다.
-

Q90 부처 내 자산 관리권 이전의 회계처리

질 의 내 용

부처 내부적으로 자산의 관리권을 이전받은 경우 회계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 ✔ 국가회계실체 사이의 관리전환에 해당되는 경우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문단13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 유상관리전환인 경우 관리전환받은 자산의 공정가액을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로 하되, 제공하는 자산을 공정가액으로 간주하여 장부가액과 공정가액의 차이는 처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 무상관리전환인 경우 관리전환으로 자산을 제공한 상대 회계실체의 장부가액을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로 하되, 감가상각누계액 등 관련 계정과목과 함께 재무제표에 총액으로 표시합니다.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13. (관리전환을 통한 취득) 관리전환으로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원가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다만, 관리전환의 경우 장부가액이 50만원 미만인 소액자산의 경우에도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자산의 취득으로 처리한다.
 - (1) 유상관리전환의 경우, 관리전환 대상 자산의 공정가액을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로 하되, 제공하는 자산을 공정가액으로 간주하여 장부가액과 공정가액의 차이는 처분손익으로 한다.
 - (2) 무상관리전환 또는 용도폐지에 따른 전환의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는 관리전환으로 자산을 제공하는 실체의 장부가액으로 하며, 재무제표에 총액으로 표시한다.

I. 정의항목 리스트

II. 회계처리에 관한 정의

III. 디버레인 업무처리에 관한 정의

IV.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정의

Q91 무상관리전환 시 처분실체에서 수행해야 하는 올바른 회계처리

질의내용

동일한 유형의 관리전환과 관련하여 '기타무상이전지출'과 '정부내자산기부'로 각각 다르게 회계처리한 사항이 발견되었습니다. 어떻게 회계처리하는 것이 맞는지요?

- ✔ 무상관리전환(용도폐지 인계 포함)의 경우 처분실체는 장부가액에서 '자산재평가이익'을 차감한 금액을 '정부내자산기부'로 인식하여야 합니다.

〈비용 회계처리지침〉

28. (정부내자산기부의 측정) 정부내자산기부는 정부내부간 자산의 무상관리전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무상관리전환하는 국가회계실체에서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자산재평가이익"을 차감한 금액을 "정부내자산기부"로 회계처리한다.

Q92 무상관리전환 시 취득실체의 회계처리

질의내용(1)

정부로부터 기부받은 건물에 대해서 잡이익으로 계상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올바른 회계 처리는 무엇인가요?

- ✔ 동 거래는 무상관리전환에 해당하는 거래로써 무상관리전환 받는 부처의 경우 '정부내 자산수증'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현재 '잡이익'으로 계상된 부분은 '정부내 자산수증'으로 변경되어야 합니다.

질의내용(2)

무상관리전환 시 취득실체에서 수행해야 하는 올바른 회계처리는 무엇인가요?

- ✔ 무상관리전환 시 취득실체는 관리전환으로 자산을 제공하는 실체의 장부가액을 취득 원가로 하며(총액표시), 동 금액을 '정부내자산수증'으로 회계처리해야 합니다.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13. (관리전환을 통한 취득)

(2) 무상관리전환 또는 용도폐지에 따른 전환의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는 관리전환으로 자산을 제공하는 실체의 장부가액으로 하며, 재무제표에 총액으로 표시한다.

〈비교환수익 회계처리지침〉

12. (무상이전수입) "무상이전수입"이란 일반회계, 특별회계와 기금으로부터 무상으로 받는 자금, 정부내자산수증, 정부외자산수증, 정부외기부금, 농특세이전수입 및 주세이전수입 등을 통한 순자산의 증가로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4) 정부내자산수증: 국유재산과 물품에 대하여 국가회계실체 간 무상관리전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

질의내용(3)

국방부로부터 토지를 무상관리전환 받았는데 국유재산 담당자가 기타증감/기타(증)으로 업무처리(토지가액 공지가가로 반영) 하였습니다. 어떻게 조치해야 할까요??

- ✔ 무상관리전환의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는 공시지가가 아닌 장부가액으로 계상하여야 하므로, 결산조정분개를 통해 토지 취득원가를 장부가액으로 변경하고 기타(증) 업무처리 시 발생한 전기오류수정이익을 삭제해야 합니다.

I. 질의항목 리스트

II. 회계처리에 관한 질의

III. 디브리엔 업무처리에 관한 질의

IV.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질의

Q93 국유재산관리기금을 통하지 않은 유상관리전환 시 회계처리

질 의 내 용

회계실체가 보유하던 국유재산을 국유재산관리기금을 통하지 않고 다른 회계실체에 유상 관리전환하면서 국고이전지출로 처리하였는데 올바른 회계처리인가요?

- ✔ 국유재산 유상관리전환 시 국유재산관리기금을 통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매각과 동일한 회계처리 수행됩니다. 따라서 ‘국고이전지출’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회계처리〉

(차) 국고이전지출 XXX / (대) 미수금 XXX

Q94 무상관리전환 자산에 대한 재평가이익의 처리

질 의 내 용

무상관리전환 자산에 대하여 재평가이익이 계상되어 있는 경우, 무상관리전환 시 해당 자산에 대한 재평가이익의 처리는?

- ✔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문단13에서 무상관리전환의 경우 자산을 제공하는 실체의 장부가액을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로 하되, 재무제표에 총액으로 표시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재평가이익을 승계하여 인식하여야 합니다.

* [참고]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적용사례3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13. (관리전환을 통한 취득) 관리전환으로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원가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다만, 관리전환의 경우 장부가액이 50만원 미만인 소액자산의 경우에도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자산의 취득으로 처리한다.
 - (1) 유상관리전환의 경우, 관리전환 대상 자산의 공정가액을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로 하되, 제공하는 자산을 공정가액으로 간주하여 장부가액과 공정가액의 차이는 처분손익으로 한다.
 - (2) 무상관리전환 또는 용도폐지에 따른 전환의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는 관리전환으로 자산을 제공하는 실체의 장부가액으로 하며, 재무제표에 총액으로 표시한다.

Q95 무상관리전환 시 처분실체의 재평가이익 처리방법

질 의 내 용

재평가를 수행하여 재평가이익이 존재하는 자산을 무상관리전환을 통하여 타 부처로 이관을 수행하자 '기타의기타순자산의증가' 계정과목이 발생하였습니다. 올바른 회계처리 인가요?

✔ 무상관리전환의 경우 재평가이익을 정부내자산기부와 상계하여야 합니다.

〈비용 회계처리지침〉

28. (정부내자산기부의 측정) 정부내자산기부는 정부내부간 자산의 무상관리전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무상관리전환하는 국가회계실체에서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자산재평가이익"을 차감한 금액을 "정부내자산기부"로 회계처리한다.

Q96 무상관리 전환 시 취득실체의 감가상각누계액 승계 여부

질 의 내 용

무상관리전환 시 감가상각누계액을 포함하여 취득 회계처리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순액으로 계상하는 것이 올바른 회계처리가 아닌가요?

✔ 무상관리전환의 경우 관리전환 받는 자산의 장부가액을 총액으로 승계해야 합니다. 따라서 처분실체의 취득원가와 감가상각누계액을 각각 승계하여 각각 자산과 자산의 차감항목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13. (관리전환을 통한 취득)
 (2) 무상관리전환 또는 용도폐지에 따른 전환의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는 관리전환으로 자산을 제공하는 실체의 장부가액으로 하며, 재무제표에 총액으로 표시한다.

I. 정의항목 리스트

II. 회계처리에 관한 정의

III. 디브리태인 업무처리에 관한 정의

IV.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정의

Q97 사용수익권의 재무제표 표시

질 의 내 용

국가회계에서 사용수익권은 재무제표에 어떻게 표시되는지?

- ✔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문단27에 따르면 사용수익권은 재정상태표상 관련자산의 차감항목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27. (사용수익권) 국가 이외의 자에게 부여하는 일반유형자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거래상대방(수증자)이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는 사용수익권과 동일하게 평가하며, 관련 자산의 차감항목으로 표시한다. 다만, 기부채납 당시 사용수익권 교부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국가가 일정 기간 사용 후 기존 국가 보유 자산의 무상사용 허가와 동일한 절차로 사용을 허가한 경우에는 "사용수익권"을 인식하지 않는다.

Q98 사용수익권 유형자산별 배분

질 의 내 용

사용수익권을 토지, 건물, 구축물로 배분해서 회계처리 해야 하나요?

- ✔ 현 계정과목 체계에 따라 사용수익권은 실질에 맞게 토지, 건물, 구축물로 안분하여 회계처리 해야 합니다.

Q99 국가어항 관련 사용수익권 인식 및 회계처리

질 의 내 용

국가어항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어떻게 회계처리 해야 하나요?

- ✔ 국가어항의 사용수익권을 국가어항자산의 차감계정으로 회계처리 해야 합니다. 이때 어촌·어항법 제29조의 어항시설관리운영권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사용수익권으로 표시 해야 합니다.
 - 한편 부처 예산을 투입하여 건설한 국가어항에 대해 해당 부처가 무상대부 또는 유상대 부하는 사용허가, 점유권에 대해서는 ‘사용수익권’으로 회계처리하지 않습니다.

〈어촌·어항법〉

제29조(어항시설관리운영권) 지정권자는 제26조제4항에 따라 비지정권자가 어항시설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기간 동안 이를 유지·관리하고, 해당 어항시설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어항시설관리운영권"이라 한다)를 해당 비지정권자에게 설정할 수 있다.

Q100 사용수익권 금액 평가방법

질 의 내 용

사용수익권 금액은 사용수익권 관리기관에서 수령한 금액으로 평가하나요?

- ✔ 사용수익권은 사용수익권 관리기관이 무형자산으로 인식한 금액과 동일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민간투자사업(BTO·BTL)회계처리지침〉

5. (취득원가) (2) 해당 자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수증자가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는 사용수익권과 동일하게 평가한다.

Q101 자산 교환으로 인한 취득 시 취득원가의 측정

질 의 내 용

교환에 따라 취득한 자산의 취득원가는 어떻게 측정해야 하는지?

- ✔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문단13에 따르면 국가회계실체 내의 교환으로 자산을 취득한 경우 유상관리전환 회계처리를 준용하여 회계처리하며,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을 그 취득원가로 하되,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이 불확실한 경우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액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 ✔ 국가회계실체 외의 상대방과의 교환으로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문단15에 따라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을 취득한 자산의 취득원가로 하되,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이 불확실한 경우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액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13. (관리전환을 통한 취득) 관리전환으로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원가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다만, 관리전환의 경우 장부가액이 50만원 미만인 소액자산의 경우에도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자산의 취득으로 처리한다.
 - (1) 유상관리전환의 경우, 관리전환 대상 자산의 공정가액을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로 하되, 제공하는 자산을 공정가액으로 간주하여 장부가액과 공정가액의 차이는 처분손익으로 한다.
 - (2) 무상관리전환 또는 용도폐지에 따른 전환의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는 관리전환으로 자산을 제공하는 실체의 장부가액으로 하며, 재무제표에 총액으로 표시한다.
15. (교환으로 인한 취득) 국가회계실체 외의 상대방과의 교환으로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다만,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액으로 측정할 수 있다.

Q102 현금이 수반된 토지교환거래 시 공정가액 평가방법

질 의 내 용

토지를 교환하면서 현금을 수령한 경우 공정가액을 어떻게 측정해야 하나요?

- ✓ 취득 당시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에서 현금수령액을 차감한 금액을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원가(공정가액)로 해야 합니다.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15. (교환으로 인한 취득) 국가회계실체 외의 상대방과의 교환으로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다만,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액으로 측정할 수 있다.

Q103 국가를 대행하여 취득한 자산의 자산화 여부

질 의 내 용

OO공사가 민간대행사업으로 국가를 대행하여 취득한 댐 등의 취득가액 및 공사대금 중 자산화 대상 및 금액은?

- ✓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문단25에 따라 민간대행사업을 통해 자산을 취득하고, 해당 자산의 완공시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투자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므로 투입된 금액 전체를 취득원가로 하고, 사용수익권은 인식하지 않습니다.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25. (민간대행사업을 통한 취득) 예산상 "민간이전-민간대행사업비"를 통하여 지출 후 해당 자산의 완공시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투자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므로 투입된 전체금액을 취득원가로 하고, 사용수익권은 인식하지 않는다.

Q104 아파트 재건축(분양권)에 따른 회계처리

질 의 내 용

아파트를 구입하여 기숙사 등으로 사용해 오던 중 재건축으로 인하여 분양권이 발생한 경우의 회계처리는?

- ✓ 기존 아파트와 재건축 아파트의 교환으로 보아 회계처리 합니다.
- 기존 아파트의 미상각장부가액은 재건축을 위한 양도시점(등기부등본 말소시점)에 별도의 계정(예: 건설중인자산)으로 대체하고, 교환으로 새로운 자산을 취득하는 시점에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하여 교환 회계처리를 해야 합니다.
 - 이때 발생하는 차액은 처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 * [참고]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적용사례5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15. (교환으로 인한 취득) 국가회계실체 외의 상대방과의 교환으로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다만,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액으로 측정할 수 있다.

Q105 출자 및 민간대행사업을 통한 취득 시 사용수익권 계상

질 의 내 용

출자금 및 민간사업대행을 통한 취득의 경우, 댐 완공 시 국가 이외의 자의 사용권비율만큼을 사용수익권금액으로 계상하는지?

✔ '출자금' 및 '민간이전-민간대행사업비'를 통하여 지출한 후 해당 자산의 완공시 국가에 귀속되고 사용수익권을 부여하는 경우, 투입된 전체금액을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로 하며 국가 이외의 자의 사용권 비율만큼 '사용수익권'으로 회계처리 합니다.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24. (출자 및 민간대행사업을 통한 취득) 예산상 "출자금" 및 "민간이전-민간대행사업비"를 통하여 지출 후 해당 자산의 완공시 국가에 귀속되고 사용수익권을 부여하는 경우, 투입된 전체금액을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로 하며 국가 이외의 자의 사용권 비율만큼 사용수익권으로 회계처리한다. 이 때 기지급된 선급금(총 투자비 중 국가 부담금)과 사용수익권의 차액은 출자금에 가감한다.

I. 질의항목 리스트

II. 회계처리에 관한 질의

III. 디브리딩 업무처리에 관한 질의

IV.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질의

Q106 출자 및 민간대행사업을 통한 취득 시 출자금 계상

질 의 내 용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문단24(출자 및 민간대행사업을 통한 취득)에서 기지급된 선급금(총투자비 중 국가부담금)과 사용수익권의 차액은 출자금에 가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가감이라는 표현이 적절한지?

- ✔ 출자 및 민간대행사업을 통한 취득이 완료된 시점에서 출자금은 기 지급된 선급금과 사용수익권의 차액으로 결정되는데, 국가와 민간사업체의 사용권 비율 평가결과에 따라 사용수익권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출자금에 대한 가산 또는 차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적용사례 16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24. (출자 및 민간대행사업을 통한 취득) 예산상 "출자금" 및 "민간이전-민간대행사업비"를 통하여 지출 후 해당 자산의 완공시 국가에 귀속되고 사용수익권을 부여하는 경우, 투입된 전체금액을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로 하며 국가 이외의 자의 사용권 비율만큼 사용수익권으로 회계처리한다. 이 때 기지급된 선급금(총 투자비 중 국가 부담금)과 사용수익권의 차액은 출자금에 가감한다.

Q107 철거 예정 건축물의 회계처리

질 의 내 용

철거 예정인 건축물의 회계처리 방법은?

- ✓ 철거 예정인 건축물은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문단63에 따라 회수가능가액과 비교하여 감액손실을 인식합니다.
 - 이후 철거 시점에는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문단17에 따라
 -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사용 중인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물의 장부가액은 제거하여 처분손실로 반영하고, 철거비용은 전액 당기비용으로 처리합니다.
 -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그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물의 철거 관련 비용에서 철거된 건물의 부산물 판매대가를 차감한 가액을 토지의 취득원가에 가산합니다.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17. (기존 건물 철거비용) (1)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사용 중인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장부가액은 제거하여 처분손실로 반영하고, 철거비용은 전액 당기비용으로 처리한다.
- (2)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그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물의 철거 관련 비용에서 철거된 건물의 부산물 판매대가를 차감한 가액을 토지의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63. (감액의 요건) (1) 일반유형자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물리적인 손상 또는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으로 해당 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고 그 미달액이 중요한 경우에 감액손실을 인식한다.
- (2) 회수가능가액은 해당 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을 말한다.
 - (가) 순실현가능가치란 해당 자산의 예상 매각대가에서 매각 시 발생하는 추정 처분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 (나) 사용가치란 해당 자산의 사용으로부터 예상되는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금액을 말한다.

Q108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의 구분

질 의 내 용

수선유지비를 지출하였을 때,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을 실무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상세한 기준이 있는지?

- ✔ 국가회계예규는 구체적인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의 구분사례 등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문단26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국가회계실체가 경제적 실질에 따라 자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법인세 집행기준 23-31-2」에서는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26. (자본적지출과 수익적 지출)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은 자본적지출로서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에 가산한다. 이 외의 지출에 대하여는 수익적 지출로서 당기 비용으로 처리한다.

〈법인세 집행기준 23-31-2〉

구분	자본적지출	수익적지출
추상적 구 분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	감가상각자산의 원상을 회복시키거나 능률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
구체적 구 분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기계·설비 등의 복구 5.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1부터 4까지와 유사한 성질의 것	1. 건물 또는 벽의 도장 2. 파손된 유리나 기와의 대체 3. 기계의 소모된 부속품 또는 벨트의 대체 4. 자동차 타이어의 대체 5. 재해를 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의 복구·도장 및 유리의 삽입 6. 기타 조업가능한 상태의 유지 등 1부터 5까지와 유사한 성질의 것

Q109 건물에 대한 추가설비를 건물과 구축물로 구분하는 기준

질 의 내 용

건물에 추가적으로 설치한 설비가 있는데 이를 건물과 구축물 중 어느 것으로 구분해야 하나요?

✓ 건물이란 청사, 관사, 아파트 등「건축법」상 건축물로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부수되는 시설물을 말합니다. 또한 구축물이란 토지에 정착된 부동산 중 입목, 건물 및 건물 부속시설 등을 제외한 시설물을 의미합니다.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4. (일반유형자산의 분류) 일반유형자산의 분류는 다음과 같다.

(2) "건물"이란 청사, 관사, 아파트 등「건축법」상 건축물로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부수되는 시설물을 말한다.

(3) "구축물"이란 토지에 정착된 부동산 중 입목, 건물 및 건물 부속시설 등을 제외한 시설물을 말한다.

I. 질의응답 리스트

II. 회계처리에 관한 질의

III. 디브리인 업무처리에 관한 질의

IV.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질의

Q110 타부처 소유 청사의 자본적지출(리모델링)의 회계처리

질 의 내 용

AA부가 BB부 소유의 청사건물을 사용하면서 지출한 리모델링 비용은 자본적지출로 보아 AA부의 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나요?

- ✔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문단9에 따라 AA부가 수행한 리모델링은 AA부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원이므로 자산의 정의를 충족합니다. 따라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가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이를 자산으로 인식합니다.
- 사용 중인 타 회계실체의 자산(건물)에 대한 리모델링을 수행한 경우 지출한 비용은 AA부의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여 임차자산의 사용기간 동안 상각하여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자산의 정의와 구분) ① 자산은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현재 국가회계실체가 소유(실질적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통제하고 있는 자원으로서, 미래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거나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거나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을 말한다.

제10조(자산의 인식기준) ① 자산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등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거나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거나 창출에 기여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가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한다.

Q111 건물 리모델링 공사 시 발생하는 지출에 대한 회계처리

질 의 내 용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데 냉난방기 설치, 창호공사, 전기공사와 관련된 지출을 건물로 회계처리 해야 하는지, 별도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해야 하는지?

- ✓ 건물 리모델링으로 인해 건물의 내용연수가 증가되었거나 그 가치가 실질적으로 증가된 경우 자본적지출로 보아 건물의 장부가액에 가산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수익적 지출로 보아 비용으로 회계처리 합니다.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26. (자본적지출과 수익적 지출)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은 자본적지출로서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에 가산한다. 이 외의 지출에 대하여는 수익적 지출로서 당기 비용으로 처리한다.

Q112 국도수선유지비 자산화 여부

질 의 내 용

국도수선유지비 당기 발생금액은 대부분 종전의 도로와 관련한 공사비(수선유지비)이기는 하나 차선확장공사, 일부 도로변경, 중앙분리대 및 중앙분리 화단설치 등 종전의 도로를 획기적으로 재설치 및 확충하는 공사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동 공사비를 수선유지비와 자산 중 어떤 항목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또한 자산으로 처리할 경우 어떤 계정과목으로 반영해야 하나요?

- ✓ 국도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거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은 자본적 지출로 보아 해당 국도의 장부가액에 가산하여야 합니다.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26.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은 자본적 지출로서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에 가산한다. 이 외의 지출에 대하여는 수익적 지출로서 당기 비용으로 처리한다.

Q113 행사비용이 자본적 지출인지 여부

질 의 내 용

파출소 등을 새로 개관할 때 집행한 행사비용(개관식 등에 소요된 비용)은 자본적지출인가요?

- ✔ 자본적지출은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유형자산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로, 개관식에서 발생한 행사비용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26.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은 자본적 지출로서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에 가산한다. 이 외의 지출에 대하여는 수익적 지출로서 당기 비용으로 처리한다.

Q114 건설중인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

질 의 내 용

민자와 국가부담 50:50의 조건으로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고 있는 중에 민간업체에서 추가적으로 자본적지출을 한 경우 자산가액 및 사용수익권 금액에 이를 반영해야 하는 것인지?

- ✔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문단22에 따라 건설 중의 추가적 지출금을 포함하여 완공 후 공사지출금은 해당 금액 전체를 자산으로 계상한 뒤 이 중 국가가 부담하지 않은 부분을 '사용수익권'으로 회계처리 해야 합니다.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22. (공사 지출금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여 자산을 취득) 공사 지출금의 일부(예산상 "출연금"으로 지출되는 경우를 제외한다)를 국가가 부담하여 향후 지분만큼 국가가 자산을 취득하고 사용수익권을 부여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완공 전에 지급한 공사지출금은 선급금으로 회계처리하며, 완공 후 취득시 취득원가 전체를 자산으로 계상하고 국가가 부담하지 않은 부분을 사용수익권으로 회계처리한다.

Q115 설계비, 감리비, 시공부대비 등의 자산가액 포함 여부

질 의 내 용

건물 공사 시 발생한 설계비, 감리비, 시공부대비 등을 자산가액에 포함하는 근거 규정은?

- ✔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및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에 따라 일반유형자산은 해당 자산의 건설원가 또는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을 취득원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실무해설5에서 제시하고 있는 취득부대비용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설치장소 준비를 위한 지출
 - (2) 외부 운송 및 취급비
 - (3) 설치비
 - (4) 설계와 관련하여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 (5) 취득세, 등록세 등 관련 제세공과금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일반유형자산의 평가) ① 일반유형자산은 해당 자산의 건설원가 또는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을 취득원가로 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추정한 기간에 정액법 등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한다.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9. (취득원가의 측정)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의 취득원가는 취득을 위하여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과 취득부대비용을 포함한다. 다만,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액 및 취득부대비용을 취득원가로 한다. 자산의 제작, 매입, 건설을 위하여 사용된 자금을 차입금으로 총당하는 경우 동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등은 원가에 산입하지 않고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처리한다.

Q116 토지 취득 관련 보상비의 회계처리

질 의 내 용

토지 취득과정에서 발생한 보상비가 등기 이후에 지출되었는데, 이때 보상비는 어떻게 회계처리 해야 하는지?

- ✓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문단9에 따라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의 취득원가는 취득을 위하여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과 취득부대비용을 포함합니다. 해당 보상비가 토지 취득을 위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지출이라면 취득부대비용에 해당하므로 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9. (취득원가의 측정)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의 취득원가는 취득을 위하여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과 취득부대비용을 포함한다. 다만,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액 및 취득부대비용을 취득원가로 한다. 자산의 제작, 매입, 건설을 위하여 사용된 자금을 차입금으로 총당하는 경우 동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등은 원가에 산입하지 않고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처리한다.

실무해설5. 취득부대비용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 (1) 설치장소 준비를 위한 지출
- (2) 외부 운송 및 취급비
- (3) 설치비
- (4) 설계와 관련하여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 (5) 취득세, 등록세 등 관련 제세공과금

Q117 유찰 업체에 지급한 설계보상비의 회계처리

질 의 내 용

설계-시공-입찰이 일괄적으로 이루어지는 턴키(turn-key) 방식¹⁾으로 자산 취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낙찰되지 못한 업체에게 설계보상비를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자산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 ✓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문단9에 따라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의 취득원가는 취득을 위하여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과 취득부대비용을 포함합니다.
- 낙찰되지 못한 경우 지급하는 설계보상비는 턴키 방식의 사업으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지출이므로 취득부대비용으로 보아 자산 취득원가에 가산합니다.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9. (취득원가의 측정)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의 취득원가는 취득을 위하여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과 취득부대비용을 포함한다. 다만,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액 및 취득부대비용을 취득원가로 한다. 자산의 제작, 매입, 건설을 위하여 사용된 자금을 차입금으로 총당하는 경우 동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등은 원가에 산입하지 않고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처리한다.

실무해설5. 취득부대비용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 (1) 설치장소 준비를 위한 지출
- (2) 외부 운송 및 취급비
- (3) 설치비
- (4) 설계와 관련하여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 (5) 취득세, 등록세 등 관련 제세공과금

1) 턴키(turn-key)방식: 일괄시공업자가 건설공사에 대한 자원조달, 토지구매, 설계와 시공, 운전 등의 모든 서비스를 발주자를 위하여 제공하는 방식

Q118 일괄취득자산의 올바른 회계처리

질 의 내 용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일괄지출한 비용 전액을 일반유형자산으로 등재하였습니다. 세부 취득내역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개발비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경우 회계처리는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

- ✔ 자산을 일괄취득한 경우 공정가액 비율로 구분하고, 취득부대비용은 개별자산별 안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안분하고 대응이 어려운 취득부대비용은 취득 시 비용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일괄취득의 경우 각각의 세부내역을 파악하여 공정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취득원가를 산정하고, 취득부대비용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각 자산에 직접 대응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14. (일괄취득) 일반유형자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일괄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원가를 각 자산의 공정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개별 자산의 취득원가로 한다. 일괄취득한 자산 중 일부 자산의 공정가액만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공정가액을 알 수 있는 자산의 공정가액을 우선 배분하고, 잔액은 나머지 자산에 배분한다. 다만, 일괄취득에 따른 부대비용 안분의 경우에는 개별자산별 대응이 가능한 취득부대비용에 대하여는 안분을 하고, 대응이 어려운 취득부대비용은 취득 시 비용화한다.

5. 감가상각

Q119 자산의 잔존가액 결정

질의내용(1)

자산 잔존가액의 입력기준은?

질의내용(2)

대장 마감을 하면서 잔존가액과 취득가액이 같아서 오류가 발생합니다. 잔존가액을 어떤 기준으로 입력해야 하나요?

질의내용(3)

국유재산대장 상 건물의 잔존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입력하는지?

질의내용(4)

유형자산의 잔존가액은 모두 1천원으로 설정해야 하는지?

- ✓ 잔존가액이란 자산이 내용연수 종료시점에 도달하였다는 가정 하에 자산의 처분 시 획득할 금액에서 추정 처분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며, 자산 취득 시점에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다만, 사용완료 후의 잔존가액이 중요하지 않다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잔존가액을 "0"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감가상각 완료 후 자산의 처분 시까지 1천원을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38. (재무제표에 인식하는 경우) 잔존가액이란 자산이 내용연수 종료시점에 도달하였다는 가정 하에 자산의 처분 시 획득할 금액에서 추정 처분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의 잔존가액은 자산 취득시점에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용완료 후의 잔존가액이 중요하지 않다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잔존가액을 "0"으로 할 수 있다.
39. (상각완료자산의 관리) 일반유형자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감가상각이 완료되는 마지막 연도에는 잔존가액을 제외한 장부가액을 감가상각비로 인식하고 잔존가액을 처분시점까지의 자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문단38에 따라 잔존가액이 "0"인 자산의 경우, 감가상각완료 후 자산의 처분시까지 1천원을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Q120 잔존내용연수가 0인 경우 오류인지 여부

질의내용(1)

현재 국유재산대장에 일반유형자산의 잔존가액이 "0"원으로 입력되어 있으면 오류인지?

- ✔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문단38에 따라 일반유형자산의 사용완료 시점에 잔존가액이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 잔존가액을 "0"으로 할 수 있으므로 오류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38. (잔존가액의 결정) 잔존가액이란 자산이 내용연수 종료시점에 도달하였다는 가정 하에 자산의 처분 시 획득할 금액에서 추정 처분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의 잔존가액은 자산 취득시점에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용완료 후의 잔존가액이 중요하지 않다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잔존가액을 "0"으로 할 수 있다

질의 내용(2)

현재 자산대장의 잔존가액이 “0”원으로 입력되어 있으면 오류인지? 또한 내용연수 경과 자산의 대장금액은 “0”원이 되어야 하는지?

- ✓ 사용완료 후의 잔존가액이 중요하지 않다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잔존가액을 “0”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잔존가액이 중요하지 않은 경우 “0”원으로 입력되어 있어도 오류는 아닙니다.
- 잔존가액이 “0”인 경우라도 감가상각이 완료되었지만 실제로 실물이 존재하거나 사용되는 경우에는 자산의 처분시까지 1천원을 자산가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 38. (잔존가액의 결정) 잔존가액이란 자산이 내용연수 종료시점에 도달하였다는 가정 하에 자산의 처분 시 획득할 금액에서 추정 처분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의 잔존가액은 자산 취득시점에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용완료 후의 잔존가액이 중요하지 않다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잔존가액을 "0"으로 할 수 있다.
- 39. (상각완료자산의 관리) 일반유형자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감가상각이 완료되는 마지막 연도에는 잔존가액을 제외한 장부가액을 감가상각비로 인식하고 잔존가액을 처분시점까지의 자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문단38에 따라 잔존가액이 "0"인 자산의 경우, 감가상각완료 후 자산의 처분시까지 1천원을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Q121 감가상각 미수행자산에 대한 전기누적효과 반영방법

질 의 내 용

감가상각비를 당기에 최초 계상할 경우, 전기누적효과는 어떻게 반영해야 하나요? 또한 전기 재무제표는 재작성해야 하나요?

- ✓ 전기누적효과가 중대한 경우에는 전기재무제표를 재작성하고 관련 효과를 전기 순자산 변동표상 기초순자산의 '전기오류수정손익'에 반영하고, 중대하지 않은 경우 재정운영표의 '전기오류수정손익'에 직접반영해야 합니다.

(회계·정책회계추정의변경과 오류수정에 관한 지침)

8. (중대한 전기오류수정) 전기오류수정이 중대한 경우 다음의 방법으로 소급하여 재작성하며, 전기오류수정 효과를 오류를 발견한 회계연도 순자산변동표상 기초순자산의 "전기오류수정손익"에 반영한다.
- (1) 오류가 전 회계연도에 발생한 경우에는 비교표시되는 전기재무제표의 해당 재무정보를 재작성한다.
 - (2) 오류가 전 회계연도 이전에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전기오류수정효과는 비교표시되는 전기재무제표의 자산, 부채 및 순자산변동표 상 기초순자산 금액을 재작성한다.
9. (중대하지 않은 전기오류수정) 전기오류수정이 중대하지 않은 경우 오류를 발견한 회계연도의 재정운영표상 "전기오류수정이익" 또는 "전기오류수정손실"에 반영한다. 다만, 재정운영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오류수정의 경우에는 발견한 회계연도의 재정상태표 또는 순자산변동표에 직접 반영한다.

Q122 철거예정자산 장부가액 순액표시 여부

질 의 내 용

철거예정인 건물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순액으로 재무제표에 표시해야 하나요?

- ✓ 철거예정자산도 다른 일반유형자산과 동일하게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총액표시 해야 합니다.

Q123 감가상각 대상자산에서 감가상각비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 오류인지 여부

질 의 내 용

자산으로 계상한 총기와 포에서는 감가상각비가 발생하였고, 탄약에서는 감가상각비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오류인가요?

- ✓ 전비품에 해당하는 탄약을 재고법을 통해 감가상각을 수행하기로 한 경우 취득은 완료 되었으나 사용이 개시되지 않았다면 감가상각비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I. 질의응답 리스트

II. 회계처리에 관한 질의

III. 디브리엔 업무처리에 관한 질의

IV.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질의

Q124 과거 취득한 자산의 내용연수도 변경해야 하는지 여부

질의 내용

전년도에는 감가상각 대상자산의 내용연수를 자체적으로 정하여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당기부터 조달청 고시 내용연수로 바뀌어야 하나요?

- ✓ 과거에 취득한 자산의 내용연수(합리적인 내용연수 적용이 원칙이나 결정이 어려운 경우 기준내용연수 준용)는 계속성의 원칙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자본적 지출 또는 진부화 등의 사유로 인해 과거 취득 자산의 내용연수가 증감될 경우, 해당 기관에서 잔존내용연수를 재검토하여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37. (내용연수의 수정) 일반유형자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내용연수가 자본적 지출 또는 진부화 등의 사유로 인해 증감될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잔존내용연수를 재검토하여 수정할 수 있다. 다만, 자본적 지출로 인해 증가된 내용연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증가된 내용연수가 없는 것으로 가정하고 감가상각한다.

Q125 치안유지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질의 내용(1)

치안유지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은 기존 전비품과 일반유형자산 중 어떤 항목과 동일하게 수행해야 하나요?

질의 내용(2)

부속품만 교체하면 무한정하게 쓸 수 있는 치안유지자산에 대한 상각방법을 전비품을 준용해 재고법 등을 사용해도 되나요?

질의내용(3)

치안유지자산의 경우 감가상각 대상 자산인지? 만약 감가상각 대상이라면 내용연수는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지?

✓ ‘치안유지자산’은 ‘전비품’이 아닌 ‘기타일반유형자산’으로 구분됩니다. ‘기타일반유형자산’에 대한 상각방법은 정액법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이 소비되는 형태가 정액법과 중대하게 다를 경우에는 다른 감가상각 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중앙관서의 장은 자산의 경제적 효익의 감소, 주기적인 대규모 수선, 교체 주기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내용연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 29. (감가상각방법)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의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이 소비되는 형태가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는 방법과 중대하게 다를 경우에는 경제적 효익이 소비되는 형태를 반영한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감가상각에 따른 자산 감소분은 자산에서 직접 차감하지 않고 감가상각누계액에 가산하여 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 33. (내용연수) 내용연수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추정한 기간으로서 자산이 사용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을 말한다. 중앙관서의 장은 자산의 경제적 효익의 감소, 주기적인 대규모 수선, 교체 주기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내용연수를 정한다. 다만, 민간투자사업에 해당되어 사용수익권이 설정된 자산의 경우, 위의 방법으로 정한 내용연수와 사용수익기간 중 긴 것을 내용연수로 한다.

Q126 상각완료자산의 무상관리전환 또는 무상양여시 회계처리

질 의 내 용

무상관리전환, 무상양여에 관한 회계처리 중에 정부내자산기부, 정부외자산기부로 처리되는 1,000원이 존재합니다. 해당 계정과목이 생성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 감가상각이 완료된 자산의 경우 자산이 이관 또는 처분이 될 때까지 1,000원을 비망가액으로 장부에 기록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산의 처분시점에 해당 비망가액이 상계되면서 업무에 알맞은 회계처리가 생성됩니다. 무상관리전환의 경우에는 '정부내자산기부'로 회계처리가 생성되며, 무상양여의 경우에는 '정부외자산기부' 회계처리가 생성됩니다.

6. 재평가

Q127 자산 재평가 회계처리 방법

질 의 내 용

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증가한 경우 그 증가액에 대한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자산의 장부가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증가된 경우에 그 증가액은 '자산재평가이익'으로 순자산조정으로 인식한 후 해당 자산이 감가상각, 폐기·처분될 때 관련손익과 상계처리해야 합니다.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60. (재평가손익의 인식 및 측정) (1) 자산의 장부가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증가된 경우에 그 증가액은 순자산조정인 "자산재평가이익"으로 인식하되, 동일한 자산에 대하여 이전에 재정운영순원가로 반영한 "자산재평가손실"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자산재평가손실환입"으로 우선 인식한 후 나머지를 "자산재평가이익"으로 인식한다.
61. (자산재평가이익의 상계) 자산의 재평가로 인식한 순자산조정인 "자산재평가이익"은 해당 자산이 감가상각, 처분·폐기될 때 관련손익과 상계처리한다. 감가상각대상 자산의 경우 재평가로 인한 자산증가분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비는 "자산재평가이익"과 상계한다. 처분 또는 폐기시 인식한 처분 및 폐기손익은 이전에 인식한 "자산재평가이익"과 상계한다.

Q128 자산별 재평가 수행일의 차이 가능 여부

질 의 내 용

기금의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재평가 수행일이 서로 달라도 문제가 없나요?

- ✔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의 문단48과 문단50은 재평가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말일을 기준으로 개별자산 건별로 재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와 건물의 재평가 사유 발생 연도가 다르다면 재평가 수행일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48. (재평가 단위) (1) 자산을 재평가할 때, 개별자산 건별로 분류하여 재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2) 2개 이상의 자산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자산 상호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단가를 적용하여 일괄 평가할 수 있다.
(3) 여러 개별요소로 구성된 1개의 자산이 개별요소별로 가치를 달리하는 경우나 분할 취득된 경우 그 부분은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분 평가된 자산의 평가액은 합산한다.
50. (재평가기준일)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의 재평가기준일은 재평가 사유가 발생한 해당 보고 기간 말로 한다.

Q129 자산 재평가 시 공정가액의 범위

질 의 내 용

현재 건물 금액이 시세에 비해 너무 작다고 판단되어 건물에 대해 별도의 감정 평가를 받을 경우 그 금액을 자산재평가 금액으로 볼 수 있나요?

- ✓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문단3에 따르면 공정가액의 범위에 전문성 있는 평가인이 시장에 근거한 증거를 기초로 평가한 가액이 포함되므로 감정평가금액을 자산재평가 금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3.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중략)

- (4) "공정가액"이란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적인 당사자 간에 거래될 수 있는 교환가격을 말한다. 공정가액은 시장가격으로 하되, 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동일 또는 유사 자산의 현금거래로부터 추정할 수 있는 실현가능가액이나 전문성 있는 평가인이 시장에 근거한 증거를 기초로 평가한 가액을 사용할 수 있다.

Q130 재평가손실이 있는 자산의 처분시 회계처리

질 의 내 용

재평가손실이 발생한 자산 처분 시 재평가손실환입으로 회계처리해야 하나요?

- ✔ '자산재평가손실환입'은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문단 60에 따라 자산의 장부가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증가된 경우 기존의 자산재평가손실 인식 금액을 환입할 때 발생하는 계정과목이므로, 자산 처분 시에는 '재평가손실환입'이 아닌 '자산처분손익'으로 회계처리해야 합니다.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60. (재평가손익의 인식 및 측정) (1) 자산의 장부가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증가된 경우에 그 증가액은 순자산조정인 "자산재평가이익"으로 인식하되, 동일한 자산에 대하여 이전에 재정운영순원가로 반영한 "자산재평가손실"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자산재평가손실환입"으로 우선 인식한 후 나머지를 "자산재평가이익"으로 인식한다.

(후략)

68. (처분시 회계처리) 문단67에 의한 처분대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을 "자산처분이익"으로 반영하고, 처분대가가 장부가액보다 작은 경우 그 차액을 "자산처분손실"로 처리한다.

Q131 자산 분류 변경 시 재평가이익의 처리

질 의 내 용

구축물로 계상된 자산을 물품(집기비품차량운반구)으로 변경할 경우 기존에 인식된 재평가이익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 ✓ 선박·항공기를 제외한 집기비품차량운반구의 경우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문단47에 따른 재평가대상이 아니므로 기존에 인식한 재평가이익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47. (재평가 사유) (1)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은 다음 중 하나의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재평가한다.
- (가) 취득 이후 공정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이가 중요하게 발생한 자산
 - (나) 국유재산 관리 총괄청이 일정주기를 정하여 재평가하기로 한 자산
- (2)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산은 재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 (가)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제32조제4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할 수 있는 전비품
 - (나)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이 아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을 개정하는 자산
 - (다) 집기·비품·차량운반구(선박및항공기는 제외한다), 기계장치(고정성기계장치는 제외한다), 기타일반유형자산(입목은 제외한다), 건설중인일반유형자산, 건설중인사회기반시설

Q132 2010년에 취득한 자산의 재평가 대상 해당 여부

질 의 내 용

2010년 중에 취득하여 2011회계연도 재평가 대상에서 제외된 자산을 2012회계연도에 재평가할 필요가 있나요?

- ✔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문단47에 따라 취득 이후 공정가액과 장부가액 간에 중요한 차이가 발생한 자산이거나 국유재산 관리 총괄청이 재평가하기로 한 자산인 경우 2011회계연도에 재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재평가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47. (재평가 사유) (1)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은 다음 중 하나의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재평가한다.
- (가) 취득 이후 공정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이가 중요하게 발생한 자산
 - (나) 국유재산 관리 총괄청이 일정주기를 정하여 재평가하기로 한 자산
- (2)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산은 재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 (가)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제32조제4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할 수 있는 전비품
 - (나)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이 아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을 개정하는 자산
 - (다) 집기·비품·차량운반구(선박및항공기는 제외한다), 기계장치(고정성기계장치는 제외한다), 기타일반유형자산(입목은 제외한다), 건설중인일반유형자산, 건설중인사회기반시설

Q133 자산 재평가 단위

질 의 내 용

자산을 재평가할 때 개별자산 건별이 아닌 자산 종류별로 그룹화하여 재평가 수행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지?

- ✓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문단48에 따라 자산 재평가는 개별자산 건별로 분류하여 재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48. (재평가 단위) (1) 자산을 재평가할 때, 개별자산 건별로 분류하여 재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 (2) 2개 이상의 자산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자산 상호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단가를 적용하여 일괄 평가할 수 있다.
- (3) 여러 개별요소로 구성된 1개의 자산이 개별요소별로 가치를 달리하는 경우나 분할 취득된 경우 그 부분은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분 평가된 자산의 평가액은 합산한다.

Q134 자산 재평가 수행 주기

질 의 내 용

자산 재평가는 매년 수행해야 하는지?

- ✔ 재평가 사유 검토는 매 보고기간 말에 수행하되, 재평가 사유가 존재하는 자산의 경우 재평가를 수행합니다.
- 자산 재평가는 취득 이후 공정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이가 중요하게 발생한 자산 또는 국유재산 관리 총괄청이 일정주기를 정하여 재평가하기로 한 자산에 대해서 재평가를 수행합니다.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47. (재평가 사유) (1)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은 다음 중 하나의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재평가한다.
- (가) 취득 이후 공정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이가 중요하게 발생한 자산
 - (나) 국유재산 관리 총괄청이 일정주기를 정하여 재평가하기로 한 자산
- (2)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산은 재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 (가)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제32조제4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할 수 있는 전비품
 - (나)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이 아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을 개정하는 자산
 - (다) 집기·비품·차량운반구(선박및항공기는 제외한다), 기계장치(고정성기계장치는 제외한다), 기타일반유형자산(입목은 제외한다), 건설중인일반유형자산, 건설중인사회기반시설
49. (재평가 사유 검토) 재평가 사유 검토는 매 보고기간 말에 수행하며, 공정가액과 장부가액의 중요한 차이에 대한 판단기준은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별로 해당 자산이 포함된 자산분류 내에서 동일하게 적용한다.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의 자산 분류의 예는 다음과 같다.
- (1) 일반유형자산: 토지, 건물, 구축물, 입목, 기계장치, 차량운반구(선박및항공기)
 - (2) 사회기반시설: 토지, 건물, 구축물, 기타

Q135 재평가이익이 있는 자산의 처분 시 회계처리

질 의 내 용

매각금액 1,000, 자산의 장부가액 700, 재평가이익(순자산조정) 200이 계상된 재평가된 자산을 처분하였을 때 인식해야 할 처분손익은 얼마인지?

✔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문단61에 따라 순자산조정인 '자산재평가 이익'은 해당 자산이 감가상각, 처분·폐기될 때 관련손익과 상계처리하여야 합니다.

○ 질의내용의 회계처리를 수행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차) 현금 1,000	대) 자 산 700
차) 재평가이익 200	대) 자산처분이익 500*

*처분이익 500 = 1,000 - (700 - 200)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61. (자산재평가이익의 상계) 자산의 재평가로 인식한 순자산조정인 "자산재평가이익"은 해당 자산이 감가상각, 처분·폐기될 때 관련손익과 상계처리한다. 감가상각대상 자산의 경우 재평가로 인한 자산증가분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비는 "자산재평가이익"과 상계한다. 처분 또는 폐기시 인식한 처분 및 폐기손익은 이전에 인식한 "자산재평가이익"과 상계한다.

Q136 재평가 수행 자산의 처분시 회계처리

질 의 내 용

재평가를 수행한 토지를 당기 중 처분하고 신탁사업수익권을 인식(장부가액법, 상대 민간)한 경우 재평가이익(순자산조정)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 ✔ 재평가를 수행한 자산을 처분하고 신탁사업수익권을 인식할 경우 재평가이익은 처분 손익과 상계해야 합니다.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61. (자산재평가이익의 상계) 자산의 재평가로 인식한 순자산조정인 "자산재평가이익"은 해당 자산이 감가상각, 처분·폐기될 때 관련손익과 상계처리한다. 감가상각대상자산의 경우 재평가로 인한 자산증가분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비는 "자산재평가이익"과 상계한다. 처분 또는 폐기시 인식한 처분 및 폐기손익은 이전에 인식한 "자산재평가이익"과 상계한다.

Q137 재평가 수행자산의 각 상황별 재평가이익 처리 방법

질 의 내 용

재평가이익이 발생한 자산을 다음 각각의 경우에,

1. 외부에 처분하는 경우
2. 용도폐지하는 경우
3. 국가회계실체에게 유상관리전환하는 경우
4. 민간과 교환하는 경우

기 계상되었던 재평가이익은 각각 어떤 계정과목에 반영되어야 하나요?

- ✔ 재평가이익이 발생한 자산을 외부에 처분하거나, 유상관리전환 또는 교환하는 경우에는 재평가이익을 처분손익에 반영해야 합니다. 단 용도폐지의 경우에는 용도폐지 후 자산을 인수하는 총괄청에서 관련 재평가이익을 승계해야 합니다.

Q138 내용연수 경과자산도 재평가 대상인지

질 의 내 용

내용연수가 경과하여 사용을 중지하고 철거 예정인 자산의 경우에도 자산재평가를 수행해야 하나요?

- ✓ 이미 내용연수가 경과하여 잔존가액이 0인 철거예정자산은 재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의 처분시까지 1천원을 자산가액으로 해야 합니다.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39. (상각완료자산의 관리) 일반유형자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감가상각이 완료되는 마지막 연도에는 잔존가액을 제외한 장부가액을 감가상각비로 인식하고 잔존가액을 처분시점까지의 자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문단38에 따라 잔존가액이 "0"인 자산의 경우, 감가상각완료 후 자산의 처분시까지 1천원을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Q139 자산재평가 시 물가배수법 적용 관련 자본적지출 고려 여부

질 의 내 용

물가배수법 적용시 자본적지출이 포함되지 않은 취득금액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이 맞는지?

- ✓ 물가배수법은 최초 취득원가에 물가배수를 반영하여 재조달원가로 산정하는 방법이므로 자본적지출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I. 질의응답 리스트

II. 회계처리에 관한 질의

III. 디브리태인 업무처리에 관한 질의

IV.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질의

Q140 자산재평가시 물가배수법의 적용 조건

질 의 내 용

자산재평가 대상자산의 취득원가가 크거나 중요한 경우 물가배수법 적용이 가능한가요?

- ✔ 자산재평가 대상자산의 취득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 최초 취득원가에 물가배수를 반영하는 물가배수법 적용이 가능합니다.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53. (상각후대체원가법) (2) 재조달원가 산정방법 중 물가배수법이란 최초 취득원가에 물가배수를 반영하여 재조달원가를 산정하는 방법으로, 취득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다.

Q141 자산 재평가 시 물가배수법 적용 기준일

질 의 내 용

2012년 자산재평가를 수행할때 물가배수법을 이용할 경우 2012년 1월 1일 기준인가요? 아니면 12월 31일 기준인가요? 그리고 해당 물가배수표를 받아볼 수는 없나요?

- ✔ 자산재평가 기준일은 매년 12월 31일입니다. 물가배수표는 매년 국유재산총괄청이 제공하며, dBrain 시스템에 입력되어 있으므로 재평가를 수행하시면 12월 31일 기준으로 금액이 산정됩니다.

Q142 재평가 수행자산의 감가상각 시 내용연수 적용기준

질 의 내 용

재평가된 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시 추정내용연수는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 인가요?

- ✔ 재평가된 자산의 감가상각시 적용되는 추정내용연수는 재평가일로부터 자산이 사용가 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이며, 회계처리지침에 제시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62. (재평가 이후 감가상각) 일반유형자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재평가한 경우에는 재평가금액을 재평가시점의 잔존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한다.

Q143 자산재평가 시 감가상각대상 자산의 내용연수 조정 여부

질 의 내 용

재평가로 인해 장부가액이 변동한 경우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은 자산의 잔존내용연수 조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 ✔ 재평가로 자산의 장부가액이 변동하였다도 다른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잔존내용연수를 조정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62. (재평가 이후 감가상각) 일반유형자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재평가한 경우에는 재평가금액을 재평가시점의 잔존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한다.

Q144 투자자산도 재평가를 수행해야 하는지 여부

질 의 내 용

일반유형자산과 투자자산 각각 재평가를 수행해야 하나요?

- ✔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만 재평가 대상 자산에 해당합니다. 투자자산은 재평가 대상자산이 아니고 공정가액 평가 또는 감액손실 인식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47. (재평가 사유) (1)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은 다음 중 하나의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재평가한다.

Q145 재평가이익 발생이 오류인지 여부

질 의 내 용

OO부 재무제표에 자산재평가이익이 발생했습니다. 오류인가요?

- ✔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자산재평가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산재평가이익이 발생한다고 해서 무조건 오류라고 할 수 없으며 재평가대상자산의 존재유무와 재평가사유 발생여부를 확인한 후 오류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47. (재평가 사유) (1)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은 다음 중 하나의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재평가한다.
(가) 취득 이후 공정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이가 중요하게 발생한 자산
(나) 국유재산 관리 총괄청이 일정주기를 정하여 재평가하기로 한 자산

Q146 입목의 가격평가 방법

질 의 내 용

자산재평가 시 입목의 가격평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입목의 가격평가는 재평가기준일의 공정가액(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정가액에 대한 합리적인 증가가 없는 경우에는 조달청 고시가격, 물가정보지 등 신뢰성 있는 가액을 사용하여 재평가해야 합니다.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 52. (재평가금액의 측정) 최초 인식 이후 재평가하는 자산의 금액은 재평가기준일의 공정가액으로 한다. 재평가기준일 전후 1년 이내를 평가시점으로 하는 공정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재평가기준일의 공정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자산의 공정가액에 대한 합리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공시가격이나 상각후대체원가법 등 대체적인 평가방법을 사용하여 재평가금액을 측정할 수 있다.
- 58. (입목의 대체적 평가방법) 입목은 재평가기준일 현재 결정·공시된 시가표준액을 재평가금액으로 한다. 다만, 조달청 고시가격, 물가정보지 등 신뢰성 있는 가액을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재평가금액으로 적용할 수 있다.

Q147 해외에 소재한 자산의 재평가 방법

질 의 내 용

해외 소재한 자산의 경우 2009년 1월 1일 이전 취득분은 재평가 대상인데 재평가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해외자산도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현지 감정평가법인의 감정 등을 통하여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이상적이나, 공정가액에 대한 합리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대체적인 평가방법을 사용하여 재평가금액을 측정해야 합니다.
 - 상각후대체원가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 건물의 경우 물가배수법(한국은행 생산자물가지수를 근거로 재조달원가 산정) 등을 사용하여야 하는데, 해외 자산의 경우 이를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재평가를 하지 못한 해외자산의 경우 재평가를 못한 사유 등을 주석사항에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52. (재평가금액의 측정) 최초 인식 이후 재평가하는 자산의 금액은 재평가기준일의 공정가액으로 한다. 재평가기준일 전후 1년 이내를 평가시점으로 하는 공정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재평가기준일의 공정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자산의 공정가액에 대한 합리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공시가격이나 상각후대체원가법 등 대체적인 평가방법을 사용하여 재평가금액을 측정할 수 있다.

Q148 치안유지자산 재평가 방법

질 의 내 용

전비품은 국방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는데, 치안유지자산은 어떻게 평가 하나요?

- ✓ '치안유지자산'은 '기타일반유형자산'에 해당합니다. '기타일반유형자산'은 재평가 대상 자산이 아니므로 재평가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47. (재평가 사유) (2)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산은 재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집기·비품·차량운반구(선박및항공기는 제외한다), 기계장치(고정성기계장치는 제외한다), 기타일반유형자산(입목은 제외한다), 건설중인일반유형자산, 건설중인사회기반시설

Q149 토지의 용도변경 관련 올바른 회계처리

질 의 내 용

2015년도 중 토지가 임야에서 대지로 변경(자산가치 상승분 62억)되었습니다. 이를 국유재산 대장에서 기타증감(임야:기타(감), 대지:기타(증))으로 처리하여 차변과 대변에 각각 전기오류수정손실(이익)이 발생하였습니다. 타당한 회계처리인가요?

- ✓ 토지가 임야에서 대지로 용도 변경된 경우 회계처리는 불필요합니다. 따라서 기중에 발생한 '전기오류수정손실(이익)'은 제거되어야 합니다. 다만, 임야에서 대지로 변경되어 발생한 자산가치 상승분(62억)은 기말 자산재평가를 통해 토지 장부가액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Q150 미술품도 재평가 대상인지 여부

질 의 내 용

미술품도 재평가 대상인가요?

- ✔ 미술품(‘정부미술품·정부미화물품’)은 기타 일반유형자산으로 재평가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47. (재평가 사유) (2)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산은 재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집기·비품·차량운반구(선박및항공기는 제외한다), 기계장치(고정성기계장치는 제외한다), 기타일반유형자산(입목은 제외한다), 건설중인일반유형자산, 건설중인사회기반시설

Q151 재평가 수행자산의 재평가이익 상계방법

질 의 내 용

재평가된 자산의 감가상각 시 재평가이익은 어떤 방법으로 상계처리 해야 하나요?

- ✔ 재평가 이후 발생하는 감가상각비 중 취득가액과 ‘재평가이익(순자산조정)’으로 인식된 부분의 비율 기준으로 안분하여 ‘재평가이익(순자산조정)’과 상계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61. (자산재평가이익의 상계) 자산의 재평가로 인식한 순자산조정인 "자산재평가이익"은 해당 자산이 감가상각, 처분·폐기될 때 관련손익과 상계처리한다. 감가상각대상 자산의 경우 재평가로 인한 자산증가분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비는 "자산재평가이익"과 상계한다. 처분 또는 폐기시 인식한 처분 및 폐기손익은 이전에 인식한 "자산재평가이익"과 상계한다.

7. 감액

Q152 건설중인건물에 대한 재해손실 회계처리

질 의 내 용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건설중인건물에 대해 화재가 발생하여 건설중인건물 100억원 중 40억원이 멸실된 경우 재해손실을 어떻게 인식해야 하나요? 또 건설회사로부터 배상받는 금액이 추후 발생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회계처리 해야 하나요?

- ✔ 일반유형자산의 물리적인 손상에 따른 일부멸실에 해당하므로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문단65에 따라 자산감액손실로 인식해야 하며, 건설회사 배상금은 추후 수취 시점에서 적절한 수익 계정과목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65. (감액손실의 인식) 감액사유 발생 시, 일반유형자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장부가액을 회수가능가액으로 조정하고, 장부가액과 회수가능가액의 차액을 그 자산에 대한 "감액손실"의 과목으로 재정운영순원가에 반영한다. 이 때, 보유한 자산의 일부멸실, 일부손망실의 경우 "자산감액손실"로 처리하나, 자산의 전액멸실, 전액손망실, 폐기의 경우에는 "자산폐기손실"로 처리한다.

Q153 재평가 대상 자산의 감액 회계처리

질 의 내 용

재평가이익(순자산조정)을 인식하였던 자산이 손상된 경우 재평가손실과 감액손실 중 어떤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해야 하는지?

- ✓ 재평가대상 자산에 대한 감액사유가 발생한 경우 우선 자산의 공정가액과 장부가액을 비교하여 자산을 재평가한 후에 물리적 손상 등에 의한 감액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64. (재평가와 감액판단의 순서) 문단47에 따른 재평가 사유가 발생한 자산을 문단63에 따라 감액하는 경우에는 재평가 후에 감액 여부를 판단한다.

문단제정근거14. 재평가대상 자산의 경우 '시장가치의 하락에 의한' 감액사유 발생 시 감액손실과 자산재평가손실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어 적용순서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손실을 인식하는 재평가대상 자산의 공정가액은 시장상황 및 기타 외부요소에 따라 결정될 수 있으므로, 자산의 공정가액과 장부가액을 비교하여 자산재평가를 여부를 판단한 후에 물리적인 손상 등에 의한 감액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다.

Q154 자산 폐기시 회계처리 계정과목

질 의 내 용

자산 폐기시 자산처분손실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자산폐기손실로 해야 하는지?

- ✓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문단65에서 자산의 전액멸실, 전액손망실, 폐기의 경우 '자산폐기손실'로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폐기손실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65. (감액손실의 인식) 감액사유 발생 시, 일반유형자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장부가액을 회수가능가액으로 조정하고, 장부가액과 회수가능가액의 차액을 그 자산에 대한 "감액손실"의 과목으로 재정운영순원가에 반영한다. 이 때, 보유한 자산의 일부멸실, 일부손망실의 경우 "자산감액손실"로 처리하나, 자산의 전액멸실, 전액손망실, 폐기의 경우에는 "자산폐기손실"로 처리한다.

8. 제거

Q155 현물출자로 인한 유형자산 처분에 대한 회계처리

질 의 내 용

부동산을 SPC에 현물출자하고 주식을 수령하는 경우 제공하는 부동산의 장부가액과 취득하는 주식의 공정가액의 차이를 처분손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 ✔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문단67은 현물출자를 처분의 한 종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유형자산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공정가액의 차이는 자산처분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참고]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적용사례26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67. (처분대가의 측정) 처분의 종류에는 매각, 교환, 양여, 유상관리전환, 현물출자, 멸실, 신탁, 기타 처분이 있으며,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의 처분대가는 제공받는 자산의 공정가액으로 한다. 다만, 교환의 경우에는 제공하는 자산의 공정가액을 처분대가로 하되, 교환으로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할 수 있다.

Q156 국유재산관리기금을 통한 자산매각 시 회계처리

질 의 내 용

국유재산관리기금을 통하여 국유재산 매각 시 징수결의 시점에 국유재산관리기금과 처분 회계실체는 각각 어떠한 회계처리를 수행해야 하나요?

- ✓ 국유재산관리기금을 통해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각각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를 수행해야 합니다.

〈국유재산관리기금〉

(차) 미수금 XXX / (대) 기타재원조달 XXX

〈처분 회계실체〉

(차) 기타재원이전 XXX / (대) 선수금 XXX

Q157 토지 매각 관련 선수금 환원처리 여부

질 의 내 용

2015년에 토지 매각 대금 중 일부인 계약금을 수령하여 선수금으로 인식하였는데, 동 선수금을 2016회계년도 초에 환원 처리해야하는지?

- ✓ 토지 매각 관련하여 선수금은 토지를 인계하는 시점에 제거되기 때문에 환원전표로 처리하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Q158 재평가 수행 자산의 현물출자 시 회계처리

질 의 내 용

재평가를 수행하여 재평가이익이 존재하는 자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하나요?

- ✔ 현물출자의 경우 자산의 처분과 동일하게 회계처리합니다. 따라서 재평가이익은 처분 손익과 상계하여야 합니다.

〈회계처리〉

(차) 투자자산 XXX / (대) 자산 XXX

(차) 재평가이익 XXX / (대) 처분이익 XXX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61. (자산재평가이익의 상계) 자산의 재평가로 인식한 순자산조정인 "자산재평가이익"은 해당 자산이 감가상각, 처분·폐기될 때 관련손익과 상계처리한다. 감가상각대상자산의 경우 재평가로 인한 자산증가분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비는 "자산재평가이익"과 상계한다. 처분 또는 폐기시 인식한 처분 및 폐기손익은 이전에 인식한 "자산재평가이익"과 상계한다.
-

9. 공시

Q159 감가상각대체 사회기반시설의 공시사항

질 의 내 용

감가상각대체하는 사회기반시설의 필수보충정보의 작성 수준은?

- ✓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문단72에 따라 감가상각대체 사회기반시설의 경우 다음의 사항을 필수보충정보로 공시하여야 합니다.
 - 감가상각대체 사회기반시설 분류기준의 충족 여부
 - 감가상각대체 사회기반시설의 종류 및 규모(또는 수량)
 - 상태평가, 상태평가기준 및 작성기관, 상태평가기준의 평가 등급
 - 최소유지등급
 - 최근 3개년치의 상태평가결과
 - 최근 5개년의 추정된 수선유지비와 실제 지출된 수선유지비의 비교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72. (필수보충정보) 감가상각대체 사회기반시설로 분류한 경우, 다음의 사항을 필수보충정보로 공시한다.
- (가) 감가상각대체 사회기반시설 분류기준의 충족여부
 - (나) 감가상각대체 사회기반시설의 종류 및 규모(또는 수량)
 - (다) 상태평가, 상태평가기준 및 작성기관, 상태평가기준의 평가등급
 - (라) 최소유지등급
 - (마) 최근 3개년치의 상태평가결과
 - (바) 최근 5개년의 추정된 수선유지비와 실제 지출된 수선유지비의 비교

10. 경과조치

Q160 감가상각 개시 시점의 감가상각누계액 인식 회계처리

질 의 내 용

감가상각 개시에 따라 기존에 보유중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누계액을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 상대 계정과목은 무엇이 되는지?

- ✓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문단76에 따라 2011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감가상각 시행일 이전까지의 감가상각 효과는 기초순자산(적립금 및 잉여금)에 반영합니다.

※ 기초순자산 = 보고금액 + 전기오류수정손익 + 회계변경누적효과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76. (2011년 1월 1일 이전 취득 자산의 감가상각) 2011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한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의 감가상각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1) 2011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한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의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중 재평가되지 않은 자산은 취득시점부터 소급하여 감가상각하되, 소급적용에 따른 감가상각 효과는 「회계정책·회계추정의 변경과 오류수정에 관한 지침」에 따라 반영한다.
- (2) 2011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한 기금·기업특별회계(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를 포함한다)의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은 회계처리의 계속성 유지를 위해 이미 적용하고 있던 감가상각 방법과 내용연수를 계속 적용하되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1. 인식

Q161 홈페이지 구축 용역비의 자산 인식 여부

질 의 내 용

홈페이지 구축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무형자산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 ✓ 홈페이지 구축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 무형자산 인식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하여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 무형자산의 인식조건은 ①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 또는 용역잠재력이 국가 회계실체 등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②자산의 취득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형자산 회계처리지침〉

4. (인식조건) (1) 무형자산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 인식하며, 일반적으로 검수 또는 국유재산 등의 등재시점에 자산으로 인식한다.
- (가)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 또는 용역잠재력이 국가회계실체 등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 (나) 자산의 취득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 (2) 다만, 소프트웨어 취득 시 건당 취득원가가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비용으로 처리한다.

Q162 시스템 개발 관련 연구개발용역비 무형자산 인식여부

질의내용(1)

질병관리본부에서 사용할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소요된 연구개발용역비는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인지 아니면 무형자산으로 인식해야 하는지?

질의내용(2)

연구개발 목적으로 지출된 금액 중 내부개발소프트웨어로 자산처리해야 하는 부분을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질의내용(3)

홈페이지 구축에 10억원이 소요되었으나, 일선관서에서는 비용처리하려고 합니다. 홈페이지 구축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는게 맞나요?

질의내용(4)

형사사법통계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출한 연구개발용역비를 국유재산으로 등재해야 하는 근거는?

질의내용(5)

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지출한 용역비는 어떻게 회계처리 되어야 하나요?

질의내용(6)

외부업체에 대가를 지불하고 구축한 전산시스템(업무포탈구축비)은 비용과 자산 중 어떻게 회계처리 해야 하나요?

- ✓ 무형자산 회계처리지침에서는 시스템 구축비용이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재무제표에 무형자산(내부개발소프트웨어)으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가)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 또는 용역잠재력이 국가회계실체 등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 (나) 자산의 취득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무형자산 회계처리지침〉

4. (인식조건) (1) 무형자산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 인식하며, 일반적으로 검수 또는 국유재산 등의 등재시점에 자산으로 인식한다.
- (가)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 또는 용역잠재력이 국가회계실체 등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 (나) 자산의 취득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

Q163

자체개발한 소프트웨어의 취득금액 산정 및 기술특허 전 발생된 비용에 대한 회계처리

질 의 내 용

1. 사업부서의 연구용역개발로 추진된 사업 중 내부적으로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취득금액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2. 내부적으로 개발된 기록물 보존기술의 특허 결정 전까지 발생한 금액은 전액 비용처리 하고 특허를 위해 발생한 수수료만 무형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개발된 10개의 기술 중 1-2개만 특허권을 받음)

✔ (답변1) 외부업체에 대가를 지불하고 구축한 내부개발소프트웨어는 무형자산에 해당합니다.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취득을 위하여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과 취득부대비용을 포함합니다.

<무형자산 회계처리지침>

5. (취득원가의 측정)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취득을 위하여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과 취득부대비용을 포함한다. 다만, 무형자산을 취득하는 기간동안 발생한 금융비용은 당기 이자비용으로 인식한다.

<계정과목해설서>

X. 무형자산

③ 소프트웨어

(1) 내부개발소프트웨어

외부업체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구축한 전산 프로그램 등을 말한다.

(2) 외부구입소프트웨어

외부에서 구입한 전산 패키지 등을 말한다.

✔ (답변2) 특허권 취득여부와 상관없이 기록물보전기술이 무형자산 회계처리지침 문단4의 인식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 <무형자산 인식조건>

(가)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 또는 용역잠재력이 국가회계실체 등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나) 자산의 취득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 ✔ 이때, 자산인식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비용으로 계상한 개발비는 특허권 취득 시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으며, 특허권 취득과정에서 직접 사용된 금액만을 특허권의 취득 원가로 계상합니다(적용사례2).

〈무형자산 회계처리지침〉

4. (인식조건) (1) 무형자산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 인식하며, 일반적으로 검수 또는 국유재산 등의 등재시점에 자산으로 인식한다.

(가)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 또는 용역잠재력이 국가회계실체 등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나) 자산의 취득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2) 다만, 소프트웨어 취득 시 건당 취득원가가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비용으로 처리한다.

적용사례2. 자산인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신기술과 관련된 개발비

(*) 연구개발을 위한 지출의 경우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무형자산(기타무형자산)으로 인식함

(가) 무형자산을 사용 또는 판매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시킬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

(나) 무형자산을 완성해 그것을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의도가 있다.

(다) 완성된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능력을 제시할 수 있다.

(라) 무형자산이 어떻게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인가를 보여줄 수 있다. 예를 들면, 무형자산의 산출물, 그 무형자산에 대한 시장의 존재 또는 무형자산이 내부적으로 사용될 것이라면 그 유용성을 제시하여야 한다.

(마) 무형자산의 개발을 완료하고 그것을 판매 또는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금전적 자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시할 수 있다.

(바)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구분하여 측정할 수 있다.

Q164

홈페이지 웹호환성 인증마크 획득 및 디자인 개선에 지출된 금액의 회계처리 계정과목

질 의 내 용

홈페이지 웹호환성 인증마크 획득 및 디자인 개선에 지출된 금액을 자본적지출로 보아 무형자산으로 등재해야 하는지?

- ✔ 홈페이지 웹호환성 인증마크 획득 및 디자인 개선에 지출된 금액이 본 자산(소프트웨어 등)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자산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경우라면 자본적 지출로서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에 가산하고, 이 외의 지출에 대하여는 수익적 지출로서 당기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 자본적 지출이란 생산능력 증대, 내용연수 연장, 원가 절감 또는 품질 향상을 가져오는 지출 등이 해당합니다.
- 수익적 지출이란 자산의 원상회복이나 능률유지를 위한 지출 등이 해당합니다.

<무형자산 회계처리지침>

6.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은 자본적 지출로서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에 가산한다. 이 외의 지출에 대하여는 수익적 지출로서 당기 비용으로 처리한다.
-

Q165 특허권 취득원가에 관련 기술개발비(R&D비용)도 포함되는지**질 의 내 용**

특허권의 취득원가에 특허권과 관련된 기술개발비(R&D비용)도 포함되는지?

✔ 특허권 취득을 위한 연구개발을 위한 지출 즉, 특허권과 관련된 기술개발비가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특허권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여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자산 인식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 <특허권 취득을 위한 연구개발지출의 무형자산 인식조건>

- (가) 무형자산을 사용 또는 판매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시킬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
- (나) 무형자산을 완성해 그것을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의도가 있다.
- (다) 완성된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능력을 제시할 수 있다.
- (라) 무형자산이 어떻게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인가를 보여줄 수 있다. 예를 들면, 무형자산의 산출물, 그 무형자산에 대한 시장의 존재 또는 무형자산이 내부적으로 사용될 것이라면 그 유용성을 제시하여야 한다.
- (마) 무형자산의 개발을 완료하고 그것을 판매 또는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금전적 자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시할 수 있다.
- (바)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구분하여 측정할 수 있다.

<무형자산 회계처리지침>

4. (인식조건) (1) 무형자산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 인식하며, 일반적으로 검수 또는 국유재산 등의 등재시점에 자산으로 인식한다.
- (가)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 또는 용역잠재력이 국가회계실체 등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 (나) 자산의 취득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 (2) 다만, 소프트웨어 취득 시 건당 취득원가가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비용으로 처리한다.

적용사례2. 산업재산권 취득사례

- (*) 연구개발을 위한 지출의 경우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무형자산(기타무형자산)으로 인식함
- (가) 무형자산을 사용 또는 판매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시킬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

-
- (나) 무형자산을 완성해 그것을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의도가 있다.
 - (다) 완성된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능력을 제시할 수 있다.
 - (라) 무형자산이 어떻게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인가를 보여줄 수 있다. 예를 들면, 무형자산의 산출물, 그 무형자산에 대한 시장의 존재 또는 무형자산이 내부적으로 사용될 것이라면 그 유용성을 제시하여야 한다.
 - (마) 무형자산의 개발을 완료하고 그것을 판매 또는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금전적 자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시할 수 있다.
 - (바)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구분하여 측정할 수 있다.
-

Q166 특허권 취득 관련 지출액의 무형자산 인식여부**질의내용(1)**

특허권 취득원가로 계상되는 금액은 관련 지출 중 어떤 부분만 해당되나요?

✔ 특허권 취득을 위하여 직접 사용된 금액만을 특허권의 취득원가로 계상해야 합니다.

질의내용(2)

OO부 일반회계에서 2011년 이전에 특허권과 관련되어 지출된 연구용역비를 2011년 중에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습니다. 이러한 회계처리가 타당한가요?

차) 산업재산권 3억

대) 기타순자산증감 3억

✔ 자산인식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연구개발비는 특허권 취득시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으며, 특허권 취득을 위하여 직접 사용된 금액을 특허권의 취득원가로 계상해야 합니다. 해당 연구개발비가 자산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당기에 수행한 ‘산업재산권’ 과 ‘기타순자산증감’ 분개를 취소해야 합니다. 해당 연구개발비가 자산인식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산업재산권으로 자산 계상하면서 ‘기타순자산증감’ 계정과목이 아닌 ‘전기오류수정이익’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합니다.

〈무형자산 회계처리지침〉

4. (인식조건) (1) 무형자산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 인식하며, 일반적으로 검수 또는 국유재산 등의 등재시점에 자산으로 인식한다.
- (가)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 또는 용역잠재력이 국가회계실체 등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 (나) 자산의 취득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Q167 기술개발비도 특허권의 취득원가에 포함되는지 여부

질 의 내 용

특허권과 관련된 기술개발비(R&D비용)도 특허권의 취득원가에 포함되나요?

- ✔ 자산인식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비용으로 계상한 기술개발비는 특허권 취득 시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으며, 특허권 취득을 위하여 직접 사용된 금액만을 특허권의 취득원가로 계상하여야 합니다.

〈무형자산 회계처리지침〉

적용사례2. 연구개발을 위한 지출의 경우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무형자산(기타무형자산)으로 인식함

- (가) 무형자산을 사용 또는 판매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시킬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
- (나) 무형자산을 완성해 그것을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의도가 있다.
- (다) 완성된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능력을 제시할 수 있다.
- (라) 무형자산이 어떻게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인가를 보여줄 수 있다. 예를 들면, 무형자산의 산출물, 그 무형자산에 대한 시장의 존재 또는 무형자산이 내부적으로 사용될 것이라면 그 유용성을 제시하여야 한다.
- (마) 무형자산의 개발을 완료하고 그것을 판매 또는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금전적자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시할 수 있다.
- (바)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구분하여 측정할 수 있다.

Q168 외부로부터 구입한 전산시스템의 자산 인식여부 및 내용연수의 측정**질 의 내 용**

○○○위원회에서 외부에 용역을 주어 구축한 전산시스템(업무포탈시스템)의 회계처리 및 내용연수 산정방법은?

✓ 무형자산 인식여부는 무형자산 회계처리지침 문단4의 인식조건*을 충족할 경우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며, '내부개발소프트웨어'**로 계상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무형자산 인식조건>

(가)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 또는 용역잠재력이 국가회계실체 등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나) 자산의 취득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 내부개발소프트웨어: 외부업체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구축한 전산 프로그램 등을 말함

✓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는 무형자산 회계처리지침 문단8에 따라 법적권한의 존속기간 등을 고려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합리적인 내용연수를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 경우 상각기간은 독점적·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관계 법령이나 계약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다만, 내용연수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으며, 중앙관서의 장은 자산별 관리상태와 특수성을 감안하여 기준내용연수를 일정 범위(±25%) 내에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무형자산 회계처리지침>

4. (인식조건) (1) 무형자산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 인식하며, 일반적으로 검수 또는 국유재산 등의 등재시점에 자산으로 인식한다.

(가)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 또는 용역잠재력이 국가회계실체 등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나) 자산의 취득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2) 다만, 소프트웨어 취득 시 건당 취득원가가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비용으로 처리한다.

8. (내용연수) (1)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는 법적권한의 존속기간 등을 고려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합리적인 내용연수를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상각기간은 독점적·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관계 법령이나 계약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다만, 내용연수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으며, 중앙관서의 장은 자산별 관리상태와 특수성을 감안하여 기준내용연수를 일정 범위 (±25%) 내에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무형자산의 기준내용연수〉

종류		기준내용연수
산업재산권	광업권	20
	상표권	5
	저작권	10
	특허권	10
	실용신안권	5
기타무형자산		5
소프트웨어		5

〈계정과목 해설서〉

X. 무형자산

③ 소프트웨어

(1) 내부개발소프트웨어

외부업체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구축한 전산 프로그램 등을 말한다.

Q169 콘도회원권과 전신전화가입권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 의 내 용

콘도회원권과 전신전화가입권은 무형자산으로 보아 일정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을 수행해야 하나요? 아니면 기타비유동자산(임차보증금 등)으로 보아 감가상각하지 않는 것이 맞나요?

- ✓ 콘도회원권은 '기타투자자산' 중 '투자회원권'으로 분류하고, 전신전화가입권은 '기타비유동자산' 중 '전신전화가입권'으로 분류하며 둘 다 감가상각은 수행하지 않습니다.

<계정과목 해설서>

VII. 기타투자자산

- (1) 투자회원권: 사용 및 매매를 목적으로 보유하는 콘도회원권, 골프회원권 등을 말한다.

XII. 기타의기타비유동자산

(3) 장기지급보증금

- ① 전신전화가입권: 가입한 전신 및 전화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전신전화가입권은 반증이 없다면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하므로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함

Q170 자본적지출로 증가한 부분을 별도자산으로 구분해야 하는지 여부

질 의 내 용

무형자산과 관련하여 자본적 지출로 증가한 부분은 별도자산으로 계상해야 하나요?

- ✓ 자본적지출로 증가한 금액을 본자산인 무형자산에 가산해야 합니다.

Q171 감리비용이 취득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 의 내 용

내부개발소프트웨어 취득 시 발생한 감리비용은 취득부대비용에 해당하나요?

- ✔ 감리비용이 내부개발소프트웨어 취득을 위해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라면 취득부대비용으로 보아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무형자산 회계처리지침〉

실무해설2. (☞ 관련문단 5) 무형자산의 취득원가 예시는 다음과 같다.

- (1) 무형자산의 창출에 사용된 재료비, 용역비 등
- (2) 특허 출원과 관련하여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 (3) 취득과 관련된 제세공과금

Q172 보안프로그램 라이선스 취득 시 계정과목 질의

질 의 내 용

보안프로그램(V3) 라이선스 취득 건에 대해서 기타무형자산으로 처리해도 괜찮은가요?

- ✔ 보안프로그램 라이선스 취득의 경우 '외부구입소프트웨어'로 처리하여야합니다.(무형자산) 소프트웨어) 외부구입소프트웨어)

Q173 내부개발소프트웨어 무형자산 인식 관련규정 존재여부**질 의 내 용**

내부개발소프트웨어의 경우 국유재산에 등재하여야 하고, 재무제표에 자산으로 인식한다는 근거 규정이 존재하는지?

✓ 국유재산 결산지침에서는 전산시스템 구축 및 프로그램 개발에 지출된 비용(용역비)을 무체재산으로 등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형자산 회계처리지침에서는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내부개발소프트웨어를 재무제표에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가)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 또는 용역잠재력이 국가회계실체 등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 (나) 자산의 취득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무형자산 회계처리지침〉

4. (인식조건) (1) 무형자산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 인식하며, 일반적으로 검수 또는 국유재산 등의 등재시점에 자산으로 인식한다.
- (가)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 또는 용역잠재력이 국가회계실체 등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 (나) 자산의 취득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2. 상각

Q174 상각완료된 무형자산의 잔존가액

질 의 내 용

당기말 현재 소프트웨어 중 상각이 완료된(내용연수 경과) 자산의 장부금액은 0원이지만 사용되어지는 자산이 있는 경우 비망관리를 위해서 장부금액을 1,000원으로 수정해야 하는지, 혹은 0원으로 관리해도 되는지?

- ✔ 무형자산의 잔존가액이 0일 경우 상각이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자산이 실제로 사용되고 있다면, 자산의 처분 시 까지 비망관리를 위하여 1,000원으로 장부가액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무형자산 회계처리지침〉

10. (상각완료자산의 관리) 무형자산의 상각이 완료되는 마지막 연도에는 잔존가액을 제외한 장부가액을 "무형자산상각비"로 인식하고 잔존가액을 처분시점까지의 자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잔존가액이 "0"인 자산의 경우, 상각이 완료되었지만 실제로 보유 중이거나 사용된다면 자산의 처분시까지 1천원을 자산가액으로 한다.

Q175 자본적지출로 증가한 부분에 대한 감가상각방법

질 의 내 용

무체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시스템업그레이드)로 인하여 증가한 금액은 어떤 내용연수를 적용해야 하나요?

- ✔ 시스템 업그레이드로 인한 무체자산의 증가는 본자산인 무체자산의 잔존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을 수행해야 합니다.

Q176 전기 감가상각 미수행 무형자산의 당기 감가상각 수행 여부**질 의 내 용**

전기까지 감가상각하지 않던 소프트웨어(무형자산)의 경우 당기에 감가상각을 수행해야 하나요? 감가상각을 수행해야 하는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회계처리를 수행해야 하나요?

- ✔ 전기에 감가상각을 수행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감가상각대상 자산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전기 이전 상각분에 대해서는 '전기오류수정손익'을 인식해야 합니다. 전기오류가 중요한 경우에는 전기재무제표를 재작성하고, 관련 효과를 순자산변동표에 반영해야 하며,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정운영표에 반영해야 합니다.

<회계·정책회계추정의변경과 오류수정에 관한 지침>

8. (중대한 전기오류수정) 전기오류수정이 중대한 경우 다음의 방법으로 소급하여 재작성하며, 전기오류수정 효과를 오류를 발견한 회계연도 순자산변동표상 기초순자산의 "전기오류수정손익"에 반영한다.
- (1) 오류가 전 회계연도에 발생한 경우에는 비교표시되는 전기재무제표의 해당 재무정보를 재작성한다.
 - (2) 오류가 전 회계연도 이전에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전기오류수정효과는 비교표시되는 전기재무제표의 자산, 부채 및 순자산변동표 상 기초순자산 금액을 재작성한다.
9. (중대하지 않은 전기오류수정) 전기오류수정이 중대하지 않은 경우 오류를 발견한 회계연도의 재정운영표상 "전기오류수정이익" 또는 "전기오류수정손실"에 반영한다. 다만, 재정운영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오류수정의 경우에는 발견한 회계연도의 재정상태표 또는 순자산변동표에 직접 반영한다.

Q177 내용연수가 경과한 무형자산의 잔존가액

질 의 내 용

내용연수가 경과한 무형자산도 유형자산과 마찬가지로 1천원을 비망가액으로 남겨야 하나요?

- ✔ 무형자산도 일반유형자산과 동일하게 상각완료된 자산가액을 처분 전까지 1천원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무형자산 회계처리지침〉

10. (상각완료자산의 관리) 무형자산의 상각이 완료되는 마지막 연도에는 잔존가액을 제외한 장부가액을 "무형자산상각비"로 인식하고 잔존가액을 처분시점까지의 자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잔존가액이 "0"인 자산의 경우, 상각이 완료되었지만 실제로 보유 중이거나 사용된다면 자산의 처분시까지 1천원을 자산가액으로 한다.

Q178 소프트웨어 자본적지출 관련 추정내용연수 변경 여부

질 의 내 용

2009년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국유재산으로 관리하였고 2010년, 2011년에 자본적 지출에 의해 각각 고도화를 추진한 경우, 소프트웨어 자본적 지출 증가에 따른 추정내용연수 산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무형자산 회계처리지침 문단 8에 따라 자산의 내용연수에 대하여 중요한 자본적 지출 또는 진부화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재검토하여 잔존내용연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무형자산 회계처리지침〉

8. (내용연수) (3)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자산의 내용연수에 대하여 중요한 자본적 지출 또는 진부화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잔존내용연수를 재검토하여 수정할 수 있다.

Q179 소프트웨어 자본적지출 관련하여 감가상각 시 월/연 단위 상각 여부**질 의 내 용**

2009년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국유재산으로 관리하였고 2010년, 2011년에 자본적 지출에 의해 각각 고도화를 추진한 경우, 소프트웨어 감가상각 시 월 단위, 연 단위 중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하나요?

- ✓ 기중에 발생한 자본적지출은 모두 기초에 발생한다고 가정하고 감가상각해야 하므로 자본적지출이 발생한 경우 월 단위 상각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무형자산 회계처리지침〉

실무해설4. (☞ 관련문단 8. (3)) 기중에 자본적 지출이 발생하여도 월할 상각하지 않는다. 이는 기중에 자본적 지출이 발생하여도 기초에 자본적 지출이 발생하였다고 가정하고 상각을 진행한다는 의미이다. 기중에 발생한 자본적 지출을 고려하여 상각비를 계산할 경우 계산이 복잡해지는 것에 비해 그에 따른 실익은 크지 않아 기중에 발생한 자본적 지출은 모두 기초에 발생하였다고 가정하여 상각한다.

Q180 한시적 조직에서 취득한 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방법**질 의 내 용**

한시적 조직에서 자산을 취득할 경우 내용연수의 적용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내용연수의 적용은 기준내용연수를 참고하되, 한시적 조직으로 조직폐지될 때 본 자산도 폐기처분된다면, 취득 시부터 폐기처분될 때까지의 기간을 내용연수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1. 용어의 정의

Q181 병원 내 의약품 구매비용 회계처리

질 의 내 용

병원(특별회계)에서 사용하는 약품의 경우 병원 내 재고자산에 해당하나요?

- ✓ 병원(특별회계)에서 구매하는 의약품/의료소모품의 경우 기말에 회계실체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재고자산에 해당합니다.

〈기타의 자산과 기타의 부채 회계처리지침 실무해설〉

(1) 기업특별회계(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를 포함한다)의 재고자산 종류

구분	종류
양곡관리특별회계	미곡, 잡곡, 기타부산물, 포장재 등
조달특별회계	6대 원자재(유연탄, 우라늄, 철광석, 동광석, 아연, 니켈), 희귀금속 등 비축물자
우편사업/우체국예금	저장품, 미착자산
경찰병원/국립병원/국립재활원	의약품, 진료재료, 의료소모품

2. 기타의 자산

Q182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선택 및 변경방법

질 의 내 용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이동평균법에서 개별법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 ✓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은 품목별로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물흐름 및 원가산정 방법 등에 비추어 다른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별법, 이동평균법 등을 적용하고 한번 선택된 평가방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재고자산 평가방법으로 개별법을 적용하는 것이 이동평균법을 적용하는 것보다 보다 합리적이라고 판단할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할 경우에 한하여 변경이 가능합니다.
- ✓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의 변경은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합니다.
 -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른 영향은 새로운 회계정책이 적용되는 회계연도와 비교표시되는 회계연도의 순자산변동표상 기초순자산의 ‘회계변경누적효과’에 반영합니다.

〈기타의 자산과 기타의 부채 회계처리지침〉

4. (재고자산과 저장품) "재고자산"과 "저장품"의 회계처리는 아래 사항을 따른다.
 - (1)~(2) 생략
 - (3) 단위원가의 결정: "재고자산"과 "저장품"의 품목별로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실물흐름 및 원가산정 방법 등에 비추어 다른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별법, 이동평균법 등을 적용한다. 이 때 한번 선택된 평가방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변경할 수 없다.(이하 생략)

〈회계정책·회계추정의 변경과 오류수정에 관한 지침〉

3.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생략
 - (2) "회계정책의 변경"이란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령의 제·개정이 있거나,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7. (회계정책의 변경시 처리)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른 영향은 다음의 방법으로 소급하여 적용하며,

새로운 회계정책이 적용되는 회계연도와 비교표시되는 회계연도의 순자산변동표상 기초순자산의 "회계변경누적효과"에 반영한다. 다만,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른 누적효과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른 영향을 해당 회계연도와 그 회계연도 후의 기간에 반영할 수 있다.

- (1) 회계정책의 변경이 직전 회계연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비교표시되는 전기재무제표의 해당 재무정보에 반영한다.
 - (2) 회계정책의 변경이 직전 회계연도 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그 전기회계변경누적효과는 비교표시되는 전기재무제표의 자산, 부채 및 순자산변동표 상 기초순자산 금액에 반영한다.
-

Q183 재고자산 저가평가 시 자산 가액**질 의 내 용**

재고자산 평가시 시가와 취득가 중 저가로 평가하는 것이 맞는지?

- ✓ 재고자산은 취득원가보다 시가가 낮은 경우 시가로 평가하는 저가법을 적용합니다.
- 이때, 재고자산 중 제품, 상품 및 재공품의 시가는 순실현가능가치를 말하며, 생산과정에 투입될 원재료의 시가는 현행대체원가를 말합니다.

<기타의 자산과 기타의 부채 회계처리지침>

4. (재고자산과 저장품) "재고자산"과 "저장품"의 회계처리는 아래 사항을 따른다.

(1)~(3) 생략

(4) 저가법의 적용: 단위원가 평가 수행 후 "재고자산"과 "저장품"의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시가를 재정상태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재고자산"과 "저장품" 중 제품, 상품 및 재공품의 시가는 순실현가능가치를 말하며, 생산과정에 투입될 원재료의 시가는 현행대체원가를 말한다. (이하 생략)

Q184 재고자산의 저가법 평가 시 회계처리**질 의 내 용**

재고자산의 저가법 평가에 따른 평가손실의 회계처리는?

- ✓ 재고자산의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낮은 경우 재고자산은 시가로 평가하고 이에 따라 인식하는 평가손실은 '평가손실' 중 '기타평가손실'로 회계처리 해야 하며, 이는 재화판매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소요된 원가이므로 프로그램총원가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Q185 재고자산의 정상적/비정상적 감모손실의 원가구분

질 의 내 용

재고자산의 감모손실을 정상적인 부분과 비정상적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경우 감모손실의 회계처리는?

- ✓ 국가회계예규는 재고자산의 감모손실을 정상적·비정상적 여부로 구분하지 않으므로 원가계산에 관한 지침 문단13.(2)에 따라 ‘기타자산감액손실*’과목으로 하여 프로그램총원가 또는 비배분비용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기타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고 그 미달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기타자산감액손실”을 인식함

〈원가계산에 관한 지침〉

13. (비배분비용) (1) 비배분비용은 국가회계실체가 투입한 비용 중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프로그램에 배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비용을 말한다.
(2) 비배분비용에는 다음 항목이 포함될 수 있다.
(가) 평가손실
(나) 자산감액손실
(다) 자산처분손실
(라) 이자비용
(마) 기타비용 등
(3) (2)에 해당하는 비용 항목이라 하더라도 자산의 취득과 관리, 처분, 외환관리, 자금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회계실체의 경우에는 프로그램총원가로 구분할 수 있다.

3. 기타의 부채

Q186

퇴직보험예치금 성격으로 편성된 예산을 수급권이 없는 일반 금융상품에 투자한 경우 회계처리 방법

질 의 내 용

○○기금은 퇴직보험예치금 성격으로 편성된 예산을 직원의 수급권이 없는 금융상품(정기예금)에 투자했음. 따라서 회계처리 시 부채 차감이 아닌 금융상품으로 처리하였는데 이러한 회계처리가 적절한지?

- ✓ 퇴직보험예치금이란 직원의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사, 은행 등에 퇴직금의 일정 부분을 적립해 두는 금액으로, 퇴직급여충당부채의 차감계정으로 처리합니다.
- 이 경우 수급권이 보장되지 않은 예금에 투자한 경우로 퇴직보험예치금으로 처리할 수 없고 금융상품으로 처리하여 합니다.

<기타의 자산과 기타의 부채 회계처리지침>

9. (퇴직급여충당부채) (1)생략

(2) 다음의 자산은 "퇴직급여충당부채"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가) "퇴직보험예치금"이란 직원의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사, 은행 등에 퇴직금의 일정 부분을 적립해 두는 금액을 말한다.

Q187 퇴직보험예치금 회계처리

질 의 내 용

직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외부 금융기관의 퇴직보험에 적용한 "퇴직보험예치금"의 적절한 회계처리는?

- ✓ 직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외부 금융기관의 퇴직보험에 적용한 보험금은 "퇴직급여충당부채"의 차감계정으로 처리합니다.

〈기타의 자산과 기타의 부채 회계처리지침〉

9. (퇴직급여충당부채) (1)생략

(2) 다음의 자산은 "퇴직급여충당부채"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가) "퇴직보험예치금"이란 직원의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사, 은행 등에 퇴직금의 일정 부분을 적립해 두는 금액을 말한다.

〈퇴직급여충당부채 회계처리〉

회계과목	관리과목	금액
퇴직급여충당부채	합계	25,000,000
	퇴직급여충당부채	80,000,000
	퇴직보험예치금	(-55,000,000)

Q188 기타직에 대한 퇴직보험예치금 납입 시 회계처리**질 의 내 용**

일선관서에서 기타직에 대한 퇴직보험예치금 납입 시 보통예금으로 회계처리해도 무방한가요?

- ✓ '보통예금'은 국고금이 아닌 현금및현금등가물을 보유하고 있는 민간기금만이 사용할 수 있는 계정과목이며, 정의 상 예입과 인출이 자유로운 통장식 은행예금을 말합니다.
- 기타직에 대한 퇴직보험예치금은 퇴직급여충당부채의 차감계정으로 회계처리 해야 합니다.

* '퇴직급여충당부채' 중 '퇴직보험예치금'

〈기타의 자산과 기타의 부채 회계처리지침〉

9. (퇴직급여충당부채) (1) 재정상태표일 현재 「공무원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퇴직금 지급대상자가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을 추정하여 "퇴직급여충당부채"로 인식한다.
- (2) 다음의 자산은 "퇴직급여충당부채"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 (가) "퇴직보험예치금"이란 직원의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사, 은행 등에 퇴직금의 일정 부분을 적립해 두는 금액을 말한다.
 - (나) "퇴직연금운용자산"이란 국가회계실체가 퇴직연금제도와 관련하여 직원의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있는 자산을 말한다.
 - (다) "국민연금전환금"이란 「국민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퇴직금전환금을 말한다.

Q189 퇴직급여충당부채 초과 예치금 회계처리

질 의 내 용

퇴직급여충당부채 금액을 초과하는 퇴직연금운용자산은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나요?

✔ '기타투자자산' 중 '기타의기타투자자산'으로 회계처리하면 됩니다.

〈계정과목해설서〉

IV. 장기충당부채

① 충당부채 인식

(7) 퇴직연금운용자산이 퇴직급여충당금을 초과하는 경우 투자자산으로 재정상태표에 표시한다.

Q190 퇴직연금운용자산 발생이자 회계처리

질 의 내 용

퇴직연금운용자산에서 발생한 이자가 원본에 가산되는 경우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야 하나요?

✔ 원본에 가산한 이자금액만큼 차변에 '퇴직연금운용자산'을 증가시키고 대변에 '기타이자 수익'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Q191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퇴직급여 총당부채 회계처리

질 의 내 용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인 임시직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임시직보수로 회계처리하였습니다. 올바른 회계처리인가요?

- ✓ 기타직에 대한 퇴직금 지급 시 퇴직급여총당부채를 차감하는 회계처리를 수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업무담당자가 디브레인의 '계정과목 변경' 기능을 통해 세부, 세세부항목을 다시 선택하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1. 리스의 분류

Q192 제3자 명의로 계약된 금융리스계약에 대한 자산, 부채의 인식 여부**질 의 내 용**

○○청이 업무대행업체(계약서상 리스 이용자)를 통하여 계약하는 금융리스계약에 대하여 금융리스자산(○○청이 통제 및 사용 중)과 금융리스부채(○○청이 리스료를 전액 부담)를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

- ✓ 리스는 경제적 실질에 따라 판단하며, 당해 금융리스 계약의 위험과 효익을 실질적으로
○○청이 부담한다면 ○○청은 금융리스자산과 금융리스부채를 인식하여야 합니다.

2. 금융리스

Q193 금융리스부채의 유동성 대체

질 의 내 용

유동성 금융리스부채의 계상 시기와 금액은?

- ✓ 유동성 금융리스부채 금액은 재정상태표일로 부터 1년 이내에 상환할 금액으로 매년 재정상태표일을 기준으로 상환기일이 1년 이내인지 초과인지에 따라 유동성대체가 이루어집니다.

Q194 금융리스자산 취득원가에 조달수수료 포함여부

질 의 내 용

금융리스를 조달청을 통해 계약하는 경우 수수료가 발생하게 되는데 해당 금액을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해야 하나요? 혹은 기타수수료로 처리해야 하나요?

- ✓ 리스계약과 관련해서 조달청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취득부대비용에 해당하는 비용으로써, 리스이용자의 금융리스자산에 가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리스 회계처리지침〉

3.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5) "리스개설직접원가"란 리스의 협상 및 계약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하는 리스계약 부대비용 등을 말한다.
6. 리스이용자의 리스개설직접원가는 금융리스자산으로 인식될 금액에 포함한다.

$$\text{금융리스자산} = \text{Min}[\text{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 \text{리스자산의 공정가치}] + \text{리스이용자의 리스개설직접원가}$$

Q195 리스개설직접원가에 따른 금융리스자산과 금융리스부채 금액 차이

질 의 내 용

리스계약과정에서 발생한 수수료, 부대비용 등이 금융리스자산에만 포함되어 동 금액만큼 금융리스부채와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적정한가요?

- ✓ 리스개설직접원가가 발생한 경우 금융리스자산에만 포함되므로, 동 금액만큼 금융리스부채와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리스 회계처리지침〉

6. 리스이용자의 리스개설직접원가는 금융리스자산으로 인식될 금액에 포함한다. 리스개설직접원가가 발생한 경우, 금융리스부채와 금융리스자산은 동일한 금액으로 인식되지 아니한다.

Q196 지급일과 결산일이 상이한 금융리스 회계처리

질 의 내 용

금융리스의 리스료 지급일과 결산일이 다른 경우 기간경과분에 대한 이자비용을 인식하는 것이 맞나요? 인식해야 한다면 결산조정분개를 수행해야 하나요?

- ✓ 금융리스 이용자가 매기 지급하는 최소리스료는 ① 금융원가와 ② 금융리스부채의 원금상환액으로 구분되며, 기간경과분에 해당하는 금융원가 만큼 이자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금융리스관련 이자비용은 디브레인 '결산조정진행및등록'에서 자동 연계되는 결산조정사항에 추가되어 별도의 결산조정분개를 수행할 필요는 없습니다.(2015년 디브레인 개선사항)

차)이자비용*xx 대) 금융리스부채xx

* 이자비용인식액=직전 리스료지급일의 금융리스부채 장부금액*유효이자율*직전 리스료지급일부터 결산일까지의 월수/12

만약 '결산조정진행및등록'을 통해 기간경과분에 대한 이자비용 인식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금융리스 관련 상환스케줄이 정확하게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 후 수정 조치가 필요합니다.

Q197 금융리스 유동성 분류**질 의 내 용**

유동성금융리스부채로의 유동성 대체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 사항 인가요?

- ✔ 재정상대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하여야 하는 금융리스부채는 유동성 대체를 반드시 수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필수사항입니다.

〈계정과목해설서〉

I. 장·단기 국·공채

① 전기차입부채의 유동성대체

최초 차입 당시에는 장기차입부채(장기차입금)였으나 기간의 경과에 따라 재정상대표일로부터 상환기일이 1년 이내에 도래하는 장기차입부채는 유동성장기차입부채로 대체한다.

- (1) 유동성국내장기차입금
- (2) 유동성해외장기차입금
- (3) 유동성정부내장기차입금
 - ① 유동성장기전대차관
 - ② 유동성정부내장기예수금
- (4) 유동성금융리스부채
- (5) 유동성기타장기민간예수금
- (6) 유동성기타장기차입부채

Q198 금융리스자산의 재무제표 표시**질 의 내 용**

금융리스부채는 계정과목에 있는데 금융리스자산은 어디에 있나요?

- ✔ 금융리스부채와 달리 금융리스자산은 별도의 계정과목으로 표시되지 않고, 해당 자산의 성격에 따라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집기·비품·차량운반구 등으로 회계 처리됩니다.

1. 우발부채 인식과 공시

Q199 진행 중인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충당부채 인식 요건**질의내용(1)**

OO부 에특회계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법인 감사를 맡은 회계법인 심리실에서 1심 패소한 모든 소송에 대해 충당부채를 인식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국가회계처리지침상 충당부채 인식요건에 1심패소 혹은 2심패소 등의 구체적인 조건이 있는지요?

질의내용(2)

법적 소송의 경우 우발부채 인식기준이 지침에 정해져 있나요? (1심패소 or 2심패소 등)

질의내용(3)

진행 중인 소송사건에 대하여 어떠한 기준으로 우발부채 인식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요?

질의내용(4)

2심 패소한 소송 건에 대하여 소송충당부채를 계상하여야 하나요?

질의내용(5)

1,2심 패소하였으나 3심에서 승소하여 다시 1심으로 파기환송된 사건에 대해 소송총당부채를 계상해야 하는지요?

질의내용(5)

2심 일부 패소인 경우 소송총당부채 금액은 소송가액의 전체로 잡는 것과 일부만 잡는 것 중 합리적인 것은 무엇인가요?

- ✔ 재정상대표일 현재 우발손실의 발생이 확실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기준에 따라 소송총당부채를 인식하며, 구체적인 재판결과(1심패소, 2심패소 등)를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우발손실의 발생가능성, 즉 패소가능성에 대해서는 중앙관서 또는 회계실체 내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우발손실의 발생이 확실한 경우란 소송 등이 불리하게 진행되어 향후 손실을 부담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 등을 말합니다.
- ✔ 소송총당부채는 패소 시 발생할 비용을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계상하여야 하며, 이때 소송가액이나 판결금액, 청구원금 뿐 아니라 소송가액에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는 환급가산금 및 이자비용, 예상지연손해금 등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합니다.

〈우발상황 회계처리지침〉

4. (재무제표에 인식하는 경우) (1) 우발부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재정상대표에 부채로 인식하고, 우발손실을 재정운영순원가에 반영한다.
- (가) 재정상대표일 현재 우발손실의 발생이 확실하다.
 - (나) 우발손실 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

Q200 보고기간후사건으로 패소가 확정된 경우 소송충당부채 계상 여부

질 의 내 용

퇴직급여 지급과 관련하여 피고로 계류 중이던 소송이 2015년 12월 중 1심 패소 확정되었고, 2016년 1월 12일 항소를 하지 않기로 최종 확정된 경우 보고기간후사건으로 보아 2015년 말 소송충당부채를 계상하여야 하는지요?

- ✔ 우발상황이란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가 통제할 수 없는 불확실한 미래 사건의 발생여부에 따라 그 의무나 권리의 존재여부가 확인되는, 발생여부가 불확실한 현재의 상태나 상황을 의미하므로,
- 보고기간후사건을 통해 지급해야할 금액이 확정된 경우, 소송충당부채가 아니라 미지급금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계정과목해설서〉

III. 기타유동부채

① 기타유동부채

(2) 미지급금

국가회계실체의 자산취득과 사회보험, 연금 및 보험 등의 부담과정에서 발생하여 이미 확정된 채무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

Q201 민간투자사업(최소운영수입보장 협약) 관련 우발손실 처리방법

질 의 내 용

민간투자사업 중 최소운영수입보장 협약을 체결한 경우 향후 계약기간 동안의 우발손실에 대하여 부채로 인식하여야 하나요?

- ✓ 우발부채는 재정상태표일 현재 우발손실의 발생이 확실하고, 우발손실 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을 때 부채로 인식하고,
- ✓ 우발손실의 발생이 확실하나 우발손실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이 불가능하거나, 합리적으로 우발손실금액은 추정할 수 있으나 우발손실의 발생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석으로 공시합니다.
 - 주석 공시 내용은 「민간투자사업(BTO·BTL) 회계처리지침」 문단 1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발상황 회계처리지침〉

- 4 (재무제표에 인식하는 경우) 우발부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재정상태표에 부채로 인식하고, 우발손실을 재정운영순원가에 반영한다.
- (가)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가 존재한다.
 - (나) 재정상태표일 현재 우발손실의 발생이 확실하다.
 - (다) 우발손실 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
- 5 (주석으로만 공시하는 경우) (1)우발부채는 다음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재정상태표에 부채로 인식하지 않고 주석으로만 공시한다. 다만, 주석으로 공시하는 것이 당해 우발부채와 관련하여 진행 중인 상대방과의 분쟁에 현저하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주석공시를 생략할 수 있다.
- (가) 재정상태표일 현재 우발손실의 발생가능성이 확실하지 않다.
 - (나) 재정상태표일 현재 우발손실의 발생이 확실하나 그 손실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다.

〈민간투자사업(BTO·BTL) 회계처리지침〉

12. (주석사항) 국가회계실체가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최소운영수입보장 협약을 체결한 경우 다음 사항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 (1) 최소운영수입보장 협약의 주요 내용
 - (2) 최근 3개년 간 최소운영수입보장 협약에 따른 지급액
 - (3) 그 밖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Q202 소송관련 총당부채 회계처리 계정과목 및 주식 공시 방법

질 의 내 용

소송관련 총당부채 회계처리 계정과목 및 주식 공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 '차) 기타비용(소송총당부채전입액) 대)기타장기총당부채(소송총당부채)'로 회계처리 합니다.
- ✔ '장기총당부채' 주식에는 소송총당부채의 기초, 당기증감금액, 기말잔액을 표시하고,
- ✔ '우발사항 및 약정사항' 주식에는 계류중인 소송사건의 현황을 기재하고 소송사건 중 중요한 내역에 대하여 소송상대방, 사건내용, 소송가액, 진행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합니다.

〈우발상황 회계처리지침〉

12 (주식사항) (1) 우발부채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주식으로 공시한다.

- (가) 우발상황의 내용
- (나) 문단8~11에 따라 측정된 우발손실에 따른 재무적 영향의 추정금액
- (다) 손실금액 및 시기와 관련된 불확실성 정도, 손실금액의 추정이 곤란한 사유, 제3자에 의한 변제 가능성 등
- (라) 우발부채를 재무제표에 인식하는 경우, 그 사실

〈계정과목해설서〉

XVII. 기타비용

① 기타비용

(18) 소송총당부채전입액

재정상태표일 현재 소송총당부채에서 직전 재정상태표일 현재 소송총당부채를 차감한 후 회계연도 중 지급한 금액을 더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Q203 소송의 공시범위

질 의 내 용

회계실체에서 피소당한 소송의 경우 발생가능성과 관계없이 모두 주석으로 공시하여야 하는지요?

- ✓ '우발상황 회계처리지침' 문단5 및 문단6에 따르면 해당 우발손실의 발생가능성이 거의 없는 경우에는 주석으로 공시하지 않습니다.
- 해당 소송에 따른 우발손실의 발생가능성이 확실하지 않은 수준이거나, 발생가능성은 확실하나 그 손실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석으로 공시하여야 합니다.
- 다만, 주석으로 공시하는 것이 당해 소송과 관련하여 진행 중인 상대방과의 분쟁에 현저하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주석 공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우발상황 회계처리지침〉

5. (주석으로만 공시하는 경우) (1) 우발부채는 다음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재정상태표에 부채로 인식하지 않고 주석으로만 공시한다. 다만, 주석으로 공시하는 것이 당해 우발부채와 관련하여 진행 중인 상대방과의 분쟁에 현저하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주석 공시를 생략할 수 있다.
 - (가) 재정상태표일 현재 우발손실의 발생가능성이 확실하지 않다.
 - (나) 재정상태표일 현재 우발손실의 발생이 확실하나 그 손실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다.
- (2) 우발손실의 발생가능성은 당초에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따라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러한 상황변화를 주시하여야 한다. 과거에 주석으로만 공시하는 우발부채로 처리하였더라도 그 이후 상황변화로 인하여 우발손실의 발생이 확실하고, 그 손실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면 그러한 가능성의 변화가 발생한 기간의 재정상태표에 부채로 인식한다.
6. (공시하지 않는 경우) 우발손실의 발생가능성이 거의 없는 경우에는 주석으로 공시하지 않는다.

I. 질의응답 리스트

II. 회계처리에 관한 질의

III. 디베이트인 업무처리에 관한 질의

IV.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질의

Q204 소송가액 미확정 시 주석 공시 여부

질 의 내 용

소송이 발생하였으나 소송가액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결산보고서 작성 시 우발사항 및 약정사항에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 ✔ 우발상황이란 진행 중인 소송사건 등으로 통제할 수 없는 불확실한 미래사건의 발생 여부에 따라 그 의무나 권리의 존재 여부가 확인되는 것으로서 그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현재의 상태 또는 상황을 말합니다.
- 소송가액의 확정 여부와 상관없이 우발상황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석으로 공시하여야 합니다.
- 다만, 주석으로 공시하는 것이 당해 소송과 관련하여 진행 중인 상대방과의 분쟁에 현저하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주석 공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우발상황 회계처리지침〉

3. (정의) (1) "우발상황"이란 진행 중인 소송사건, 타인의 채무에 대한 지급보증 등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가 통제할 수 없는 불확실한 미래 사건의 발생 여부에 따라 그 의무나 권리의 존재 여부가 확인되는 것으로서 그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현재의 상태 또는 상황을 말한다.
5. (주석으로만 공시하는 경우) (1) 우발부채는 다음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재정상태표에 부채로 인식하지 않고 주석으로만 공시한다. 다만, 주석으로 공시하는 것이 당해 우발부채와 관련하여 진행 중인 상대방과의 분쟁에 현저하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주석 공시를 생략할 수 있다.

1. 교환수익의 분류

Q205 의무실에서 스켈링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의 계정과목

질 의 내 용

오송연구단지의 의무실에서 스켈링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 수입의 계정과목이 잡이익이 적절한지요?

- ✓ '잡이익'은 교환수익 중 타 항목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수익으로 중요하지 않거나 그 항목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수익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됩니다. 학교 및 단체의 실습연구 시험에 따른 부산물 판매수입 및 실습수입과 같이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익 등이 해당합니다.
- ✓ 의무실에서 스켈링 제공에 따른 대가로 발생하는 수익이므로 실습 등에 따른 부수적 수익이 아니라면, '재화 및 용역제공수익' 중 '용역제공수익' 또는 '기타사업수익'의 '수수료 수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교환수익 회계처리지침〉

5. (재화 및 용역제공수익) "재화 및 용역제공수익"이란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 등을 통해 발생하는 교환수익으로 재화판매수익, 용역제공수익과 기타사업수익을 말한다. (1) 생략
 (2) 용역제공수익: 일반적인 계약에 의하여 합의된 과업을 수행함에 따른 대가로 국가가 수행하는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
 (3) 기타사업수익: 재화판매수익과 용역제공수익을 제외한 재화 및 용역제공수익
 (가) 생략
 (나) 수수료수익: 인적사무에 대한 반대급부로 수취하는 수익

Q206 망향의 동산 묘지 사용료수익의 회계처리 계정과목

질 의 내 용

망향의 동산 묘지 사용료수익의 계정과목이 잡이익이 적절한지요?

- ✔ '잡이익'은 교환수익 중 타 항목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수익으로 중요하지 않거나 그 항목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수익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됩니다.
- ✔ 묘지 제공에 따른 대가로 발생하는 수익이므로 '재화 및 용역제공수익' 중 '기타사업수익'의 '사용료 수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교환수익 회계처리지침〉

5. (재화 및 용역제공수익) "재화 및 용역제공수익"이란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 등을 통해 발생하는 교환수익으로 재화판매수익, 용역제공수익과 기타사업수익을 말한다. (1)~(2) 생략
(3) 기타사업수익: 재화판매수익과 용역제공수익을 제외한 재화 및 용역제공수익
(가) 사용료수익: 일반유형자산, 사회기반시설, 무형자산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
-

Q207

일반회계의 수입대체경비 수입으로 민간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수익의 회계처리 계정과목

질 의 내 용

일반회계의 수입대체경비 수입으로 민간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수익의 회계처리 계정과목은 무엇인지요?

- ✓ 민간에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수익은 교환수익 회계처리지침 문단 5.(2)에 따라 '용역제공수익'으로 처리하며, 원가계산에 관한 지침 문단12.(1)에 따라 일반회계의 수입대체경비수입은 프로그램수익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교환수익 회계처리지침〉

5. (재화 및 용역제공수익) "재화 및 용역제공수익"이란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 등을 통해 발생하는 교환수익으로 재화판매수익, 용역제공수익과 기타사업수익을 말한다. (1) 생략
(2) 용역제공수익: 일반적인 계약에 의하여 합의된 과업을 수행함에 따른 대가로 국가가 수행하는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

〈원가계산에 관한 지침〉

12. (교환수익과 비교환수익의 구분집계) 수익은 교환수익과 비교환수익으로 구분하여 집계되어야 한다.
(1) 교환수익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발생하는 수익으로 프로그램 대응여부에 따라 프로그램수익과 비배분수익으로 구분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연도 이전까지 일반회계는 수입대체경비수입에 해당하는 수익만을 프로그램수익으로 구분한다.

Q208 무형자산의 사용료 수익

질 의 내 용

무형자산의 사용료 수익 인식 요건은 무엇인지요?

- ✓ '사용료수익'이란 일반유형자산, 사회기반시설, 무형자산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을 말합니다.
- ✓ '사용료수익'은 기간단위의 계약에 의하여 사용하는 경우 기간배분에 따라 인식하나 입장료수입 등 1회성으로 사용하는 대가로 즉시 대금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수납시점에 수익을 인식합니다.

〈교환수익 회계처리지침〉

5. (재화 및 용역제공수익) "재화 및 용역제공수익"이란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 등을 통해 발생하는 교환수익으로 재화판매수익, 용역제공수익과 기타사업수익을 말한다. (1)~(2) 생략
(3) 기타사업수익: 재화판매수익과 용역제공수익을 제외한 재화 및 용역제공수익
(가) 사용료수익: 일반유형자산, 사회기반시설, 무형자산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
14. (사용료수익) "재화 및 용역제공수익"의 기타사업수익 중 사용료수익은 기간단위의 계약에 의하여 사용하는 경우 기간배분에 따라 인식한다. 입장료수입 등 1회성으로 사용하는 대가로 즉시 대금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수납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Q209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의 회계처리 계정과목**질 의 내 용**

법무부 산하 ○○감호소에서 치료목적으로 봉투를 접는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 봉투를 판매하여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수익의 적절한 계정과목은 무엇인가요?

- ✓ ○○감호소에서 봉투를 생산하고, 이를 판매하여 발생한 수입이 ○○감호소의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수익이라면 '재화 및 용역제공수익'의 '재화판매수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교환수익 회계처리지침〉

5. (재화 및 용역제공수익) "재화 및 용역제공수익"이란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 등을 통해 발생하는 교환수익으로 재화판매수익, 용역제공수익과 기타사업수익을 말한다.
- (1) 재화판매수익: 판매를 위하여 취득한 상품과 판매목적으로 생산한 제품 등을 비롯한 재고자산의 판매에 대한 대가로 국가회계실체의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

Q210

일반회계의 수입대체경비 수입으로 ○○연수원에서 교육생들로부터 징수한 실습비의 회계처리 계정과목

질 의 내 용

○○연수원에서 운영 중인 교육프로그램을 수강하는 학생들로부터 실습비를 수령하고 있는데, 실습비의 대부분은 식비 명목입니다. 현재는 이를 “잡이익”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수입대체경비수입 성격이 강한 이 실습비를 계속해서 “잡이익” 처리해도 되는지요?

✔ 일반회계의 수입대체경비 수입으로 ○○연수원이 직영하고 있는 식당의 식대수입은 교환수익 회계처리지침 문단 5.(2)에 따라 ‘용역제공수익’으로 처리하며, 원가계산에 관한 지침 문단12.(1)에 따라 일반회계의 수입대체경비수입은 프로그램수익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교환수익 회계처리지침>

- 5. (재화 및 용역제공수익) "재화 및 용역제공수익"이란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 등을 통해 발생하는 교환수익으로 재화판매수익, 용역제공수익과 기타사업수익을 말한다. (1) 생략
- (2) 용역제공수익: 일반적인 계약에 의하여 합의된 과업을 수행함에 따른 대가로 국가가 수행하는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

<원가계산에 관한 지침>

- 12. (교환수익과 비교환수익의 구분집계) 수익은 교환수익과 비교환수익으로 구분하여 집계되어야 한다.
- (1) 교환수익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발생하는 수익으로 프로그램 대응여부에 따라 프로그램수익과 비배분수익으로 구분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연도 이전까지 일반회계는 수입대체경비수입에 해당하는 수익만을 프로그램수익으로 구분한다.

Q211 토지대여료를 분납 형태로 수납 시 회계처리**질 의 내 용**

토지대여료를 분납 형태로 수납 시 회계처리 및 적절한 계정과목은 어떻게 되나요?

- ✓ 토지 대여수입은 '사용료수익'에 해당하고, 기간단위의 계약에 의하여 사용하는 경우 토지 대여기간에 따라 인식합니다. 일시납, 분납 등 수납방식은 회계처리와 무관합니다.

<교환수익 회계처리지침>

5. (재화 및 용역제공수익) "재화 및 용역제공수익"이란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 등을 통해 발생하는 교환수익으로 재화판매수익, 용역제공수익과 기타사업수익을 말한다.

(1)~(2) 생략

(3) 기타사업수익: 재화판매수익과 용역제공수익을 제외한 재화 및 용역제공수익

(가) 사용료수익: 일반유형자산, 사회기반시설, 무형자산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

14. (사용료수익) "재화 및 용역제공수익"의 기타사업수익 중 사용료수익은 기간단위의 계약에 의하여 사용하는 경우 기간배분에 따라 인식한다.

Q212 과학관 관람료 및 주차장 수입 계정과목

질 의 내 용

현재 관람료 및 주차장 수입을 용역제공수익 또는 사용료수익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어떤 계정과목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가요?

- ✓ 과학관 관람료 및 주차장 수입은 교환수익 회계처리지침 문단5에 따라 '사용료수익' 계정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Q213 항만시설 사용으로 인한 운영수입금

질 의 내 용

특별회계에서 항만시설 사용으로 인한 운영수입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떤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 해야 하나요?

- ✓ 국가가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각종 시설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이므로 '사용료수익'으로 회계처리 해야 합니다.

〈교환수익 회계처리지침〉

5. (재화및용역제공수익) (3)기타사업수익 (가) 사용료수익: 일반유형자산, 사회기반시설, 무형자산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

Q214 주파수할당대가 해당 계정과목 및 수익의 기간배분**질 의 내 용**

주파수할당대가는 어떤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 해야 하나요? 또한 수익의 기간배분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주파수할당대가는 계약기간(예: 10년) 동안 분할납부하며, 최초 납부 시 전체 대가의 1/4을 납부하고 이후 남은 기간 동안은 나머지 3/4을 매년 균등분할하여 납부하고 있음)

- ✔ 주파수할당대가는 주파수를 사용하는 대가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재화및용역제공수익' 중 '사용료수익'에 해당합니다.
- 원칙적으로 기간배분에 의하여 수익을 인식하여야 하므로 최초 납부시에는 1/n(계약 기간)을 초과하여 받은 만큼 선수수익으로 처리하고, 다음 해부터 납부대가와 선수수익을 함께 사용료수익으로 계상하면 됩니다.

〈교환수익 회계처리지침〉

5. (재화및용역제공수익) (3)기타사업수익 (가) 사용료수익: 일반유형자산, 사회기반시설, 무형자산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
14. (사용료수익) "재화 및 용역제공수익"의 기타사업수익 중 사용료수익은 기간단위의 계약에 의하여 사용하는 경우 기간배분에 따라 인식한다.

Q215 소모품비로 처리하였던 고철 등 매각수입

질 의 내 용

기존에 소모품비 처리했던 고철과 탄피를 매각한 수입은 어떤 계정과목을 써야 하는지요?

- ✓ 소모품비로 처리한 항목을 매각할 경우 발생하는 수입의 계정과목은 '잡이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계정과목 해설서〉

VII. 기타수익

(23) 잡이익

교환수익 중 "프로그램수익/비배분수익"의 타항목에서 설명되지 아니하는 수익으로 학교 및 단체의 실습연구 시험에 따른 부산물판매수입 및 실습 수입과 같이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익 또는 금액적으로 중요하지 않거나 그 항목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수익 등을 말한다.

Q216 신용카드 포인트 현금으로 반환 받는 경우 회계처리**질 의 내 용**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발생한 포인트를 현금으로 돌려받는 경우에 잡이익으로 회계처리하여도 괜찮은가요?

- ✓ 신용카드 사용으로 발생한 포인트를 현금으로 반환 받은 경우,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익 또는 금액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수익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잡이익'으로 회계처리하여도 무방합니다.

〈계정과목 해설서〉

VII. 기타수익

(23) 잡이익

교환수익 중 "프로그램수익/비배분수익"의 타항목에서 설명되지 아니하는 수익으로 학교 및 단체의 실습연구 시험에 따른 부산물판매수입 및 실습 수입과 같이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익 또는 금액적으로 중요하지 않거나 그 항목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수익 등을 말한다.

Q217 소송승소로 청구하여 받은 소송비용 회계처리

질 의 내 용

행정소송 승소 후 청구하여 받은 소송비용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나요?

- ✔ 행정소송 승소 후 청구하여 받은 소송비용의 경우에는 잡이익으로 처리합니다. 다만 당기에 비용 처리된 소송비용을 받은 경우에는 당기비용에서 차감합니다.

〈계정과목 해설서〉

VII. 기타수익

- (23) 잡이익: 교환수익 중 "프로그램수익/비배분수익"의 타항목에서 설명되지 아니하는 수익으로 학교 및 단체의 실습연구 시험에 따른 부산물판매수입 및 실습 수입과 같이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익 또는 금액적으로 중요하지 않거나 그 항목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수익 등을 말한다.
-

2. 교환수익의 회계처리

Q218 ○○기금의 기술료 수익 회계처리 시점

질 의 내 용

○○기금의 기술료 수익인식시점이 전담기관과 사업자 간 기술실시 계약체결 시점인지, 전담기관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금액을 기금으로 통보한 시점인지?

- ✓ 교환수익은 수익창출활동이 완료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합니다. 다만, 수익창출활동으로 인한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낮거나 수익금액의 신뢰성 있는 측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금유입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 ✓ 전담기관과 기금의 기술료 징수·관리 절차 및 여건을 고려하여 ○○기금이 기술료 수익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합니다.

〈교환수익 회계처리지침〉

10. (일반원칙) 교환수익은 수익창출활동이 완료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한다. 다만, 수익창출활동으로 인한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낮거나 수익금액의 신뢰성 있는 측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금유입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다.

Q219 건물의 손상으로 수령하는 보험료 회계처리 계정과목

질 의 내 용

건물의 지붕이 손상되어 보험료를 받을 예정인데, 관련 회계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 ✔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을 보험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보험사고로 멸실될 자산의 장부가액만큼 '기타의미수금'을 계상하고,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을 보험금이 확정되는 시점에 '보험차익'을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교환수익 회계처리지침〉

18. (보험차익) 기타수익 중 보험차익은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을 보험금이 확정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실무해설13.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을 보험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보험사고로 멸실된 자산의 장부가액만큼 "기타의미수금"을 계상한다.
-

Q220

전기에 징수결의 되었지만 아직 수납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에 대해 오류 정정하는 경우 회계처리 계정과목

질 의 내 용

미납된 연구개발부담금의 가산금에 대하여 이전 여러 차례의 고지를 취소하고 한꺼번에 가산금 고지를 하기 위해 징수결의를 정정하는 경우, 징수결의착오정정이라는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지?

- ✓ 전기 또는 전기이전에 징수결의 하였지만 아직 수납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금액을 정정하는 경우에는 '전기징수결의착오정정'의 계정과목으로 처리합니다.
- 다만, 당해 연도 발생한 징수결의를 착오정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계정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기존 발생한 교환수익에서 차감합니다.

〈교환수익 회계처리지침〉

3.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3)생략
- (4) "징수결의착오정정"이란 징수결의금액에 착오가 있을 경우 수납전에 이를 올바른 금액으로 정정하는 것을 말한다.
21. (징수결의착오정정의 회계처리) 교환수익의 징수결의착오정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회계처리한다.
- (1) 당해 연도 발생한 징수결의를 착오정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계정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기존 발생한 교환수익에서 차감한다.
- (2) 전기 또는 전기이전에 발생한 징수결의를 착오정정하는 경우에는 재정운영표의 "전기징수결의착오정정"으로 처리한다.

Q221 수입금 환급과 과오납금 반환의 차이

질 의 내 용

수입금의 환급과 과오납금의 반환의 의미와 회계처리 상 차이는 무엇인가요?

- ✔ (의미상 차이) 수입금의 환급이란 수입으로서 납입된 금액 중 법률에 의거 환급할 금액이 있는 경우 국고금관리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등에 따라 환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과오납금 반환이란 수입징수관이 징수결정과 수납업무의 착오, 중복 등의 사유로 수납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수납한 분에 대하여 국고금관리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등에 따라 반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 수입금환급금은 적절한 절차에 의하여 환급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과오납금반환금과 차이가 있습니다.
- ✔ (회계처리상 차이) 수입금환급금은 해당 수익에서 차감하나, 과오납반환금의 경우 당해년도 발생한 수입금의 과오납반환은 기존 수익에서 차감하고, 전기 또는 전기이전에 발생한 수입금의 과오납반환은 재정운영표의 '전기과오납금반환금'으로 처리합니다.

〈교환수익 회계처리지침〉

19. (수입금환급금의 회계처리) 교환수익의 수입금환급금은 해당 교환수익에서 차감한다.
 20. (과오납반환금의 회계처리) 교환수익의 과오납반환금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회계처리한다.
 - (1) 당해 연도 발생한 수입금의 과오납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계정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기존 발생한 교환수익에서 차감한다.
 - (2) 전기 또는 전기 이전에 발생한 수입금의 과오납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재정운영표의 "전기과오납금반환금"으로 처리한다.
-

Q222 소송관련 선수금의 수익 인식 시기**질 의 내 용**

소송과 관련되어 현금 수취 후 선수금으로 계상한 것이 있는데, 현재 1심과 2심 모두 승소하였음. 해당 선수금을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는 시기는?

- ✓ 수익은 교환수익 회계처리지침 문단10에 따라 수익창출활동이 끝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합니다.
- ✓ 소송이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수익창출활동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소송 완료 시 인식하여야 합니다.

〈교환수익 회계처리지침〉

10. (일반원칙) 교환수익은 수익창출활동이 완료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한다. 다만, 수익창출활동으로 인한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낮거나 수익금액의 신뢰성 있는 측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금유입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다.

Q223 일반회계에서 발생하기 어려운 계정과목

질 의 내 용

‘재화판매수익’ 및 ‘정기예금이자수익’이 일반회계에서 발생할 수 있나요?

✔ ‘재화판매수익’이란 판매를 위하여 취득하거나 생산한 재고자산의 판매 대가로 국가회계 실체의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의미하며, ‘정기예금이자수익’이란 정기예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일반회계에서는 일반적으로 발생하기 어려운 계정과목입니다. 계정과목의 정의에 부합하는지 다시 확인하신 후 수정 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교환수익 회계처리지침〉

실무해설9. 재화판매수익의 예

- (1) 양곡관리특별회계의 미곡·잡곡·기타부산물 판매수입
- (2) 조달특별회계의 비축물자 사업수입
- (3) 복권기금의 복권사업수입
- (4) 간행물, 영상물 판매수입과 행정용품 판매수입

〈계정과목 해설서〉

I. 재화및용역제공수익

(1) 재화판매수익

판매를 위하여 취득한 상품과 판매목적으로 생산한 제품 등을 비롯한 재고자산의 판매에 대한 대가로 국가회계실체의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말한다.

IV. 이자수익

이자수익이란 금융상품 예치, 국·공채 등 장·단기투자증권 보유, 외부자금대여 등에 대한 대가로 수취하는 수익을 말한다.

1. 비교환수익의 분류

Q224 기타자원조달의 정의

질 의 내 용

비교환수익 계정과목 중 기타자원조달은 어느 경우에 사용하는 계정과목인지?

- ✓ '기타자원조달'이란 국가회계실체가 부담하여야 하는 자원의 유출을 다른 국가회계실체가 대신 부담하는 경우와 순자산의 증감효과를 발생시키는 거래 중 국세수익, 부담금수익, 제재금수익, 사회보험수익, 채무면제이익, 무상이전수입 등을 제외한 각종 자원조달 거래를 말합니다.
- ✓ (사례) 인사혁신처가 타 부처를 대신하여 공무원연금부담액을 납부한 경우 타 부처는 비용('공무원연금부담비')을 인식하고, 상대계정과목으로 '기타자원조달'을 인식합니다.

〈비교환수익 회계처리지침〉

13. "기타자원조달"이란 국가회계실체가 부담하여야 하는 자원의 유출을 다른 국가회계실체가 대신 부담하는 경우와 순자산의 증감효과를 발생시키는 거래 중 위*에서 언급한 수익을 제외한 각종 자원조달거래를 말한다.

* 국세수익, 부담금수익, 제재금수익, 사회보험수익, 채무면제이익, 무상이전수입 등

〈연금 회계처리지침〉

적용사례3. 공무원연금 관련 회계처리

1. 배경정보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연금부담비를 각 부처의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국가 각 부처의 공무원연금비용을 '전출금' 예산을 통해 일괄적으로 공무원연금기금에 지급한다. 인사혁신처가 타중앙관서 소속 공무원에 대한 고용주부담금을 납부할 경우에는 해당하는 금액을 순자산변동표 상의 "기타재원이전"으로 처리하고 타중앙관서는 "기타자원조달"로 처리한다.

Q225 부담금 연체이자의 회계처리 계정과목

질 의 내 용

부담금의 연체이자는 가산금수익과 부담금수익 중 어느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 해야 하는지?

- ✓ 연체이자는 '제재금수익' 구분 중 '가산금수익'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가산금 수익'은 국세, 부담금, 과태료 및 과징금 등을 납부해야 할 행정법상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제재로 부과하는 할증된 금액을 말합니다.

〈비교환수익 회계처리지침〉

7. (제재금수익) "제재금수익"이란 법이나 규정 등을 위반한 자에게 부담시켜 지급의무를 발생시키는 수익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1)~(2)생략
- (3) 가산금수익: 국세, 부담금, 과태료 및 과징금 등을 납부해야 할 행정법상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제재로 부과하는 할증된 금액
-

Q226 환수금, 반환금 등에 대한 연체이자 회계처리 계정과목

질 의 내 용

환수금, 반환금 등에 대한 연체이자를 제재금수익 하위의 가산금수익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

- ✓ '가산금수익'이란 국세, 부담금, 과태료 및 과징금 등을 납부해야 할 행정법상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제재로 부과하는 할증된 금액을 말합니다.
 - 따라서 국세, 부담금, 과태료 및 과징금 등을 납부해야 할 행정법상의 의무 이행을 지체하여 발행한 연체이자라면 '가산금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 환수금, 반환금 등 해당 연체 이자가 국세, 부담금, 과태료 및 과징금 등을 납부해야 할 행정법상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의무의 이행 지체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해당 수익에 가산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비교환수익 회계처리지침>

- 7. (제재금수익) "제재금수익"이란 법이나 규정 등을 위반한 자에게 부담시켜 지급의무를 발생시키는 수익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1)~(2)
- (3) 가산금수익: 국세, 부담금, 과태료 및 과징금 등을 납부해야 할 행정법상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제재로 부과하는 할증된 금액

I. 질의응답 리스트

II. 회계처리에 관한 질의

III. 디버킷인 업무처리에 관한 질의

IV.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질의

Q227 농특세이전수입과 주세이전수입의 정의

질 의 내 용

농특세이전수입과 주세이전수입의 정의는?

- ✔ '농특세이전수입', '주세이전수입'은 국세청·관세청·기획재정부에서 징수하는 농어촌특별세수익과 주세수익을 해당 특별회계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해당 특별회계가 인식하는 수익을 말합니다.
- '농특세이전수입'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가 기획재정부로부터 이전받는 농어촌특별세수입으로 기획재정부 징수업무를 수행하나 농림축산식품부 특별회계의 세입에 해당합니다.
- '주세이전수입'은 지역발전특별회계가 국세청과 관세청으로부터 이전받는 주세수입으로 국세청 및 관세청에서 징수업무를 수행하나 해당 특별회계의 세입에 해당합니다.

〈비교환수익 회계처리지침〉

12. (무상이전수입) "무상이전수입"이란 일반회계, 특별회계와 기금으로부터 무상으로 받는 자금, 정부내자산수증, 정부외자산수증, 정부외기부금, 농특세이전수입 및 주세이전수입 등을 통한 순자산의 증가로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1)~(6)생략
- (7) 농특세이전수입, 주세이전수입: 국세청·관세청·기획재정부에서 징수하는 농어촌특별세수익과 주세수익을 해당 특별회계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해당 특별회계가 인식하는 수익

〈계정과목해설서〉

II. 재원의 조달

⑦ 무상이전수입

(8) 농특세이전수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가 기획재정부로부터 이전받는 농어촌특별세수입으로 농어촌특별세수익은 기획재정부에서 징수업무를 수행하나 농림축산식품부 특별회계의 세입에 해당한다. 다만, 징수 결의시점에 농어촌특별세수익이 국세수익의 항목으로 국세징수활동표에 인식되거나 국고금 배정절차를 통하여 수납 결의시점에 농림축산식품부 특별회계의 농특세이전수입으로 순자산변동표에 인식된다.

II. 재원의 조달

⑦ 무상이전수입

(9) 주세이전수입

지역발전특별회계가 국세청과 관세청으로부터 이전받는 주세수입으로 주세수익은 국세청 및

관세청에서 징수업무를 수행하나 해당 특별회계의 세입에 해당한다. 다만, 징수 결의시점에 주세수익이 국세수익의 항목으로 국세징수활동표에 인식되나 국고금 배정절차를 통하여 수납 결의시점에 해당 특별회계의 주세이전수입으로 순자산변동표에 인식된다.

Q228 **주식매각 사후정산대금, 지방세 환급분 등을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수령한 경우 회계처리**

질 의 내 용

○○기금은 부실채권정리기금의 폐지이후 부실채권정리기금에 대한 출연비율에 따라 2013년 중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잔여재산을 배분받았으며, 잔여재산 수령 시 기타무상이전수입으로 회계처리하였음. 이후 2014년에도 주식매각 사후정산대금, 지방세 환급분 등을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수령하였는데 이 경우에도 기타무상이전수입으로 회계처리 해야 하는지?

✓ 2014년에 정산과정을 통해 수령한 자금의 경우 국가회계실체에 해당하지 않는 자산관리공사로부터 받아 순자산의 증가효과를 발생시키는 거래이므로 '기타무상이전수입'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기타무상이전수입'이란 무상이전수입* 중 일반회계전입금, 특별회계전입금, 기금전입금, 정부내자산수증, 정부외자산수증, 정부외기부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거래를 처리하는 계정을 말합니다.

* 무상이전수입에는 국가회계실체는 물론 정부외자산수증, 정부외기부금 등 국가회계실체 이외의 자로부터 받아 순자산이 증가하는 경우를 말함

<비교환수의 회계처리지침>

13. "기타재원조달"이란 국가회계실체가 부담하여야 하는 자원의 유출을 다른 국가회계실체가 대신 부담하는 경우와 순자산의 증감효과를 발생시키는 거래 중 위*에서 언급한 수익을 제외한 각종 재원조달거래를 말한다.

* 국세수익, 부담금수익, 제재금수익, 사회보험수익, 채무면제이익, 무상이전수입 등

<기타재원조달 계정과목>

대분류	중분류	회계과목	관리과목	세부관리과목
수익	비교환	기타재원조달	무상이전수입	일반회계전입금

II 회계처리에 관한 질의

대분류	중분류	회계과목	관리과목	세부관리과목
	수익등	및이전		특별회계전입금
				기금전입금
				정부내자산수증
				정부외자산수증
				정부외기부금
				손익계정전입금
				자본계정전입금
				감가상각전입금
				당기순이익전입금
				기타무상이전수입
		기타재원조달		

Q229

국책사업으로 민간에게 돈을 지출한 후 추후에 민간이 구입한 물품을 인계받는 경우 회계처리 계정과목

질 의 내 용

국책사업으로 민간에게 돈을 지출한 후 추후에 민간이 구입한 물품을 인계받는 경우 상대 계정과목으로 적절한 것은?

- ✓ 민간에게 돈을 지출한 행위와 별도로 자산의 무상취득으로 보아 '무상이전수입'으로 회계 처리하여야 하며, 관리과목은 '정부외자산수증'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정부외자산수증'은 국가회계실체 이외의 자로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수증받는 수익을 말합니다. 정부외자산기부금은 현금성자산 또는 금융자산을 수증 받는 경우인데 반해 정부외자산수증의 경우 비금융자산을 수증 받는 경우입니다.

〈비교환수의 회계처리지침〉

12. (무상이전수입) "무상이전수입"이란 일반회계, 특별회계와 기금으로부터 무상으로 받는 자금, 정부내자산수증, 정부외자산수증, 정부외기부금, 농특세이전수입 및 주세이전수입 등을 통한 순자산의 증가로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1)~(4)생략
- (5) 정부외자산수증: 국가회계실체 외의 자로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수증 받는 수익

Q230 타 부처로 부터 건설중인자산을 이전 받은 경우 상대 계정과목

질 의 내 용

○○청이 ○○부로부터 이전 받은 건설중인자산의 상대계정과목은?

✔ 타 부처로 부터 받은 국유재산 및 물품이 국가회계실체 간 무상관리전환에 해당하면 '정부내자산수증'으로 계상하고, 이외의 경우에는 '기타무상이전수입'으로 계상하여야 합니다.

○ '건설중인자산'은 국유재산 및 물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기타무상이전수입'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교환수의 회계처리지침>

12. (무상이전수입) "무상이전수입"이란 일반회계, 특별회계와 기금으로부터 무상으로 받는 자금, 정부내자산수증, 정부외자산수증, 정부외기부금, 농특세이전수입 및 주세이전수입 등을 통한 순자산의 증가로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1)~(3)생략

(4) 정부내자산수증: 국유재산과 물품에 대하여 국가회계실체 간 무상관리전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

2. 국세수익 이외의 비교환수익의 인식

Q231 기금이 수령하는 출연금 회계처리

질의내용(1)

기금이 국가로부터 받은 출연금을 재정운영표의 비교환수익에 반영하는 경우와 순자산변동표의 기타순자산의증감항목으로 반영하는 경우는?

질의내용(2)

기금이 출연금을 수령한 경우 기타순자산증가로 처리해야 하나요? 비교환수익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 ✓ 기금이 수령하는 출연금은 지출용도에 따라 재정운영표의 '비교환수익 등' 또는 순자산변동표의 '기타순자산의증감'으로 처리합니다.
- 사업비용, 관리·운영비 등에 충당하여 재원이 소진되는 경우라면 재정운영표의 '무상이전수입'으로 처리
 - 시설 신설과 증설 등 자본적 지출, 자산매입, 신용보증의 채원, 차입금상환의 채원 등 자산 또는 부채의 변화를 가져오는 용도에 사용되어 재원의 원본이 유지되는 경우라면 순자산변동표의 '출연금의증가'로 처리

〈비교환수익 회계처리지침〉

29. (출연금) (1) 생략

(2) 기금이 수령하는 출연금은 지출용도에 따라 재정운영표의 '비교환수익 등' 또는 순자산변동표의 "기타순자산의증감"으로 처리한다. 다만, 재원의 용도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주된 지출용도에 따라 회계처리 할 수 있다.

(가) 기금이 출연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운영비 등에 충당하여 조성된 재원이 소진되는 경우 재정운영표의 "무상이전수입"으로 처리한다. 기금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조성된 재원을 다음의 용도에 주로 사용하는 경우 조성된 재원이 소진되는 것으로 본다.

- 1) 사업비용 충당(대표적으로 보험관련 기금)
- 2) 관리, 운영비 등에 충당
- 3) 연구개발 관련 비용에 충당

(나) 기금이 출연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주로 자산 또는 부채의 변화를 가져오는 용도에 사용되어

재원의 원본이 유지되는 경우 순자산변동표의 "출연금의증가"로 처리한다. 기금이 조성된 재원을 다음의 용도에 주로 사용하는 경우 재원의 원본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 1) 시설 신설과 증설 등 자본적 지출
- 2) 자산매입(부실채권, 유가증권 등의 매입) 또는 융자금의 재원
- 3) 신용보증, 채무보증의 재원
- 4) 차입금과 이자 상환의 재원

〈기금이 수령하는 출연금의 계정과목〉

대분류	중분류	회계과목	관리과목	세부관리과목
수익	비교환 수익등	기타재원조달 및이전	무상이전수입	일반회계전입금
				특별회계전입금
				기금전입금
				정부내자산수증
				정부외자산수증
				정부외기부금
				손익계정전입금
				자본계정전입금
				감가상각전입금
				당기순이익전입금
기타무상이전수입				
순자산변동	조정항목	기타순자산의 증감	출연금의 증가	
			출연금의 감소	

Q232 차입금상환재원으로 수령한 출연금의 순자산변동표 반영

질 의 내 용

○○기금은 ○○부 일반회계로부터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용도로 출연금을 수령하여 순자산변동표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이때 순자산변동표의 '재원의조달'과 '조정항목' 중 어느 곳에 반영하여야 하나요?

- ✓ 순자산변동표의 '재원의 조달 및 이전'란은 행정형회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서 발생한 비교환수의 등을 표시하는 부분입니다.
- ✓ 기금은 사업형회계(기업특별회계나 기금)이므로 순자산변동표의 조정항목 중 '기타순자산의 증감_출연금의 증가' 계정과목으로 적립금및잉여금에 표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비교환수의 회계처리지침>

적용사례17 출연금회계처리(순자산변동표의 기타순자산의 증감항목)

20X1년 12월 31일 국방부 일반회계는 「군인복지기금법」 제4조(복지계정의 재원과 용도)에 따라 군인복지기금에 38억원을 출연했다. 출연금은 기금 한국은행수입계좌로 수령했다.

<국방부 일반회계>

차)무상이전지출(기금전출금) 3,800백만원 대)한국은행국가예금 3,800백만원

<군인복지기금>

차)한국은행국가예금 3,800백만원 대)출 연 금 의 증 가(*) 3,800백만원

*) "기타순자산의 증감" 계정과목으로 순자산변동표의 조정항목에 반영하며 적립금 및 잉여금의 증가에 표시함

Q233 과태료 수익인식 시점

질 의 내 용

과태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카드 결제 시점과 카드사로부터 국고통장으로 현금이 입금되는 시점 중 언제 수익을 인식하나요?

- ✓ 과태료는 고지하는 때 수익을 인식합니다. 따라서, 카드결제금액을 고지하는 때 미수금으로 수익을 인식하고, 현금이 입금되는 시점에 해당 미수금을 상계처리하여야 합니다.

Q234 과징금 등 벌금수익의 인식시기

질 의 내 용

과징금 등 벌금수익의 수익 인식 시기는 언제인가요?

- ✓ 비교환수익 회계처리지침 상 과징금 등 제재금수익은 청구권이 확정된 때에 그 확정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다만 청구권이 확정된 때나 몰수품을 몰수할 때에 그 금액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벌금, 과료 또는 범칙금이 납부되거나 몰수품이 처분된 때에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비교환수익 회계처리지침〉

- 22. (국세수익 이외의 비교환수익의 인식기준) 부담금수익, 무상이전수입, 기부금 수익, 제재금수익 등은 청구권이 확정된 때에 그 확정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한다. 다만, 제재금수익 중 벌금, 과료, 범칙금 또는 몰수품으로서 청구권이 확정된 때나 몰수품을 몰수한 때에 그 금액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벌금, 과료 또는 범칙금이 납부되거나 몰수품이 처분된 때에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다.
- 24. (제재금수익) 일반적으로 제재금수익의 수익인식 시기는 다음과 같다.(1)~(3) 생략
 - (4) 벌금수익
 - (가) 벌금 및 과료: 납부하는 때
 - (나) 범칙금: 납부하는 때
 - (다) 과태료: 고지하는 때, 다만 자진신고 후 고지전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하는 때
 - (라) 과징금: 고지하는 때

3. 국세수익 이외의 비교환수익의 환급과 과오납금의 반환

Q235 외국환건전성부담금 징수과정에서 발생하는 회계처리의 적정성 문의

질 의 내 용

외국환건전성부담금 징수과정에서 (1) 부담금 납부 전 금액이 감액 또는 증액 조정이 결정된 경우 회계처리는?
 (2) 납부기관(은행)과 징수기관(기금)의 사업연도 종료일 불일치가 회계처리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 (답변1) 부담금 납부 전 금액 정정이 결정된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기 또는 전기 이전에 인식한 부담금수익 금액을 납부 전에 조정하는 경우에는 '전기 징수결의착오정정' 과목으로 하여 당기 비용으로 처리
 - 만약, 당해 연도 발생한 징수결의를 착오정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계정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기존 발생한 비교환수익에서 차감
- ✓ (답변2) 부담금 수익은 청구권이 확정된 때 수익으로 인식하며 사업연도 종료일이 다른 것이 회계처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징수기관의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회계처리하면 됩니다.

〈비교환수익 회계처리지침〉

32. (징수결의착오정정) (1)생략
- (2) 국세수익 이외의 비교환수익의 징수결의착오정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회계처리한다.
 - (가) 당해 연도 발생한 징수결의를 착오정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계정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기존 발생한 비교환수익에서 차감한다.
 - (나) 전기 또는 전기이전에 발생한 징수결의를 착오정정하는 경우에는 재정운영표의 "전기징수결의착오정정"으로 처리한다.

Q236 전기에 징수한 부담금수익에 대한 과오납반환시 계정과목 선택

질 의 내 용

전기에 징수한 부담금수익에 대해 과오납반환이 발생한 경우 기타비용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한지? 비교환수익에 대한 과오납반환이므로 비교환수익에서 직접 차감하는 방식 등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닌지?

- ✓ 전기와 전기 이전에 발생한 수입금의 과오납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재정운영표의 '전기과오납금반환금'으로 처리합니다.
- 참고로 당해 연도 발생한 수입금의 과오납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계정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기존 발생한 비교환수익에서 차감합니다.

〈비교환수익 회계처리지침〉

- 31. (과오납금의 반환) (1) 생략
 - (2) 국세수익 이외의 비교환수익의 과오납금을 반환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 (가) 당해 연도 발생한 수입금의 과오납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계정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기존 발생한 비교환수익에서 차감한다.
 - (나) 전기와 전기 이전에 발생한 수입금의 과오납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재정운영표의 "전기과오납금반환금"으로 처리한다.
-

Q237 법률에 따라 환급할 부담금수익의 회계처리

질 의 내 용

전기징수한 부담금수익에 대하여 법률에 따라 환급할 금액이 발생하여 부담금수익을 환급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환급건의 경우 전기이전까지 순자산변동표 상 '전기오류 수정손익'으로 처리하여 왔는데, 이러한 회계처리가 맞는지요?

- ✓ 부담금수익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수익환급금'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하고 해당 수익에서 차감해서 표시해야 합니다.
 - 순자산변동표 상 '전기오류수정손익'은 중대한 오류에 해당하여 전기 재무제표를 재작성하는 경우에 나타나는 계정입니다.

<비교환수익 회계처리지침>

30(수입금의 환급)

(2) 국세수익 이외의 비교환수익을 환급할 때에는 해당 비교환수익에서 차감한다.

<계정과목해설서>

II.재원의 조달

⑨ 환급금

비교환수익 등을 법률의 변경 등으로 적법하게 환급하여야 할 경우, 동 환급금을 '○○환급금'으로 처리하되, 해당 수익에서 차감하여 표시한다.

I. 질의항목 리스트

II. 회계처리에 관한 질의

III. 디베이트인 업무처리에 관한 질의

IV.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질의

Q238 비교환수익 환급금이 당해 징수액을 초과하는 경우 회계처리

질 의 내 용

비교환수익 환급금이 비교환수익을 초과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 ✔ 환급금이 당해 수익을 초과하여 재정운영표 상 부(-)의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기타비용' 중 '환급금'으로 인식하여야 합니다.

<계정과목 해설서>

XVII. 기타비용

(4) 환급금

부담금수익 등 수익의 환급금이 해당 수익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을 기타비용의 환급금으로 인식한다.

4. 국세수익 이외의 비교환수익의 표시

Q239 비교환수익을 순자산변동표와 재정운영표로 구분 반영하는 기준

질의 내용(1)

기금의 경우 부담금수익 등 비교환수익이 일반회계와 동일하게 순자산변동표에 직접 반영되나요?

질의 내용(2)

"정부외자산수증" 계정과목과 관련하여 재정운영표와 순자산변동표에 반영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 ✓ 기금, 기업특별회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비교환수익은 재정운영표의 '비교환수익 등'으로 표시하고, 일반회계나 기타특별회계의 비교환수익은 순자산변동표의 '재원의조달및이전'으로 표시합니다.

〈비교환수익 회계처리지침〉

34. (국세수익 이외의 비교환수익의 표시) (1) 국세수익 이외의 비교환수익(다만, 납입자본금 성격은 문단28을 참조한다)은 일반회계나 기타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순자산변동표의 "재원의조달및이전"에 표시하며, 「정부기업예산법」 제3조에 따른 특별회계,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및 기금의 경우에는 재정운영표의 '비교환수익 등'에 표시한다.

1. 비용의 분류

Q240 무상관리전환시 자산을 이전하는 회계실체의 회계처리**질 의 내 용**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토지를 무상이전하는 경우 어떤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하나요?

- ✓ 국가회계실체간 무상관리전환으로 토지를 무상이전하는 경우 이전하는 토지의 상대 계정과목은 '무상이전지출' 중 '정부내자산기부'로 회계처리 합니다.

* (일반회계) 차) 정부내자산기부 XXX / 대) 토지 XXX
 (특별회계) 차) 토지 XXX / 대) 정부내자산수증 XXX

〈비용 회계처리지침〉 (2017회계연도부터 적용)

23. (무상이전지출) "무상이전지출"이란 정부내부거래로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자금, 국고금회계전출금, 정부내자산기부 등을 통한 순자산의 감소로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 (6) 정부내자산기부: 국유재산 및 물품에 대하여 국가회계실체 간 무상관리전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

Q241 계약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4대 보험료의 회계처리

질 의 내 용

계약직 근로자에 대하여 국가가 부담하는 4대 보험료는 어떤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하나요?

✔ 계약직 등에 대하여 국가가 부담하는 4대 보험료는 '복리후생비'로 회계처리 합니다.

대분류(I)	중분류(II)	회계과목(III)	관리과목(IV)	세부관리과목(V)
비용	프로그램총원가/ 관리운영비/ 비배분비용	복리후생비	법정고용부담금	국민연금부담비
				고용보험부담비
				산재보험부담비
				건강보험부담비

〈비용 회계처리지침〉

7.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란 법적고용부담금과 기타복리후생비를 말한다.

- (1) 법정고용부담금: 복리후생비의 일종으로서 국가가 부담하여야 할 법정복리비, 복리시설부담금 및 후생비 등으로 국민연금부담비, 공무원연금부담비, 군인연금부담비, 고용보험부담비, 산재보험부담비, 건강보험부담비, 사학연금부담비

Q242 TV수신료, Skylife 수신료 등의 회계처리

질 의 내 용

일반수용비(210-01) 예산으로 편성된 TV수신료, Skylife 수신료 등은 '기타수수료'와 '공공요금' 중 어떤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하나요?

- ✔ 공공요금이란 우편요금, 전신·전화요금, 팩시밀리 등의 회선 사용료 등을 말하므로 '세금과공과' 중 '공공요금'으로 회계처리 합니다.

<계정과목해설서>

VII. 지급수수료

① 지급수수료

- (1) 업무대행수수료: 물품관리위탁수수료, 업무대행수수료 등과 같이 외부에 업무를 대행하고 지급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 (2) 송금수수료: 외국환관리규정에 의한 외국환대체송금, 전송금, 우편송금수수료를 말한다.
- (3) 등기료법정수수료: 등기 및 소송료(인지대 및 법정수수료) 등을 말한다.
- (4) 검정및시험수수료: 검정료, 감정료, 시험료를 말한다.
- (5) 외주가공비: 외부에 제품 등의 가공을 의뢰하고 지불하는 비용을 말한다.
- (6) 포장비: 물품 등의 포장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 (7) 보관비: 물품 등의 보관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 (8) 운송비: 물품 등의 운송 및 운송을 위한 포장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 (9) 상하차비: 선적하역비,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 및 차고료, 상하차비 등을 말한다.
- (10) 지급의료비: 공상치료비, 구속집행정지자, 형집행정지자 또는 감정 유치된 피고인, 피의자 중 법원의 감정 유치장 또는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회병원 및 의료기관에 수용된 자의 입원비, 시술비 등을 말한다.
- (11) 기타수수료: 외부에 지급하는 수수료 중 (1)~(10) 이외의 비용을 말한다.

V. 세금과공과

① 세금과공과

- (1) 공공요금이란 우편요금, 전신·전화요금, 팩시밀리 등의 회선 사용료 등을 말한다.

Q243 포상 목적의 상품권 지급 시 회계처리

질 의 내 용

직원에게 포상 목적으로 상품권을 구입하여 지급하는 경우 어떤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 하나요?

- ✓ 법령에 의한 포상인 경우 '복리후생비'의 '기타복리후생비' 중 '시상금'으로 처리하고, 내부 포상인 경우 '복리후생비'의 '기타복리후생비' 중 '선물대'로 회계처리 합니다.
 - 시상금은 법령에 의하여 반대급부 또는 채권채무의 원인행위 없이 일방적으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및 상금, 예산절약 상여금이며, 선물대는 직원에 대한 선물 구입비 등을 말합니다.

〈비용 회계처리지침〉

7.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란 법정고용부담금과 기타복리후생비를 말한다.
 - (2) 기타복리후생비: 근로환경의 개선 및 근로의욕의 향상 등을 위하여 간접적으로 부담하는 시설운영 및 유지비용, 경비 등으로 특근매식비, 일숙직비, 시상금, 경조금, 건강진단비, 선물대, 재해보상비, 모임지원비 등

Q244 외부 번역 용역비 회계처리

질 의 내 용

시험연구비(210-13) 예산으로 연구 목적의 외부 번역을 맡긴 경우 '시험연구비'와 '기타용역비' 중 어떤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하나요?

- ✓ 연구 목적의 외부 번역을 맡긴 경우 '시험연구비'와 '기타용역비' 계정과목 모두 사용이 가능하며, 거래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선택하여야 합니다.
- 시험연구에 직접 관련된 비용일 경우에는 '연구개발비' 중 '시험연구비'로 처리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외주용역비' 중 '기타용역비'로 처리합니다.

〈계정과목해설서〉

IV. 연구개발비

(1) 시험연구비

국가시험연구기관 및 방위력정비 사업에서 시험연구에 직접 관련된 일용 임금, 일반수용비, 공공요금및제세, 피복비, 운영수당, 임차료,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 여비, 연구개발비 등의 비용을 말한다.

IV. 외주용역비

(5) 기타용역비(2017회계연도부터 적용)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채용, 영상자료 제작 등의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과 국선변호사 및 수임·고문변호사에 대한 변호료·수임료 및 보수, 속기·원고측량 등의 각종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 및 전문가 자문료 등을 말한다.

Q245 설치비 회계처리

질 의 내 용

기설치되었던 에어컨을 다른 장소로 이동할 때 발생한 설치비는 어떤 계정과목으로 회계 처리하나요?

- ✓ 유형자산의 설치장소 이동으로 내용연수가 연장되거나 가치가 실질적으로 증가한 것은 아니므로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 현재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으로 보아 수선유지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비용 회계처리지침〉

8. (수선유지비) "수선유지비"란 일반유형자산, 사회기반시설, 유산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현재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경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Q246 민간위탁금 회계처리

질 의 내 용

OO공단에 지급한 해양오염방제를 위한 민간위탁금을 현재 '위탁사업비'로 비용처리하고 있는데, 예금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 ✔ OO공단에 지급한 해양오염방제를 위한 민간위탁금은 '해양오염방제 민간위탁금 위·수탁 협약서'에 따라 OO공단에 위탁 운영하는 제비용으로 법령에 규정된 국가 사무 중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 이자수취를 위한 예금과 성격이 다르며, '외주용역비' 중 '위탁사업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계정과목해설서〉

IV. 외주용역비

(3) 위탁사업비(2017회계연도부터 적용)

법률에 규정된 국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 명의·책임 하에 행사하는 경우의 제비용을 말한다.

Q247 조달청으로 불용품 무상양여 시 회계처리

질 의 내 용

OO청에서 △△청의 위탁기관으로 불용품 무상양여시 '정부외자산기부'로 회계처리하면 되나요?

- ✓ 물품관리법 제38조에 따르면 불용품의 양여는 중앙관서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 국가회계실체 이외와의 거래 시에 적용됩니다.
 - 불용품은 △△청과 위탁 계약된 정부물품재활용센터로 양여하는 것이므로 '기타비용' 중 '정부외자산기부'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비용 회계처리지침>

19. (기타비용) "기타비용"이란 외환차손, 파생상품거래손실, 정부외자산기부 등 각종 기타비용을 말한다.

<계정과목해설서>

XVII. 기타비용

(3) 정부외자산기부

국가회계실체가 민간 등에 반대급부 없이 경제적 자원을 이전하는 경우에 정부외자산기부로 계상한다.

<물품관리법>

제38조 (불용품의 양여)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불용품의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물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교육·연구기관, 국가보훈단체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교육·연구기관, 국가보훈단체 및 비영리단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3.25.]

Q248 선택진료수당 회계처리

질 의 내 용

재활원의 선택진료수당은 '기타직보수' 와 '기타복리후생비' 중 어떤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하나요?

- ✓ 복리후생비는 근무여건 향상 등을 위하여 지급하는 비용이므로 해당 선택진료수당의 경우 복리후생비로 회계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추가적인 임금의 성격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 따라서 '급여' 중 '기타직보수'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비용 회계처리지침〉

7.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란 법적고용부담금과 기타복리후생비를 말한다.

(1) (생략)

(2) 기타복리후생비: 근로환경의 개선 및 근로의욕의 향상 등을 위하여 간접적으로 부담하는 시설운영 및 유지비용, 경비 등으로 특근매식비, 일숙직비, 시상금, 경조금, 건강진단비, 선물대, 재해보상비, 모임지원비 등

실무해설3. 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2017회계연도부터 적용)

(5) 기타직보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에 준하는 인건비를 지급하도록 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개별법령에 의하여 월지급액이 정하여진 경비로 다음을 포함

(가) 전문임기제 보수

(나) 사법연수원생 보수

(다) 임용전수습, 견습직원 보수

(라) 청원경찰 보수

(마) 경비교도대원 보수

(바) 전공의 보수

(사) 공중보건과의사 보수

(아) 경찰대학생 및 경찰·소방간부후보생 보수

(자) 공익법무관 보수

(차) 청원산림보호직 보수

(카) 각종 위원회 상근직

Q249 전세권 설정 시 법무사에게 지출된 수수료 회계처리**질 의 내 용**

전세권 설정 시 법무사에게 지출된 수수료는 '업무대행수수료', '등기료법정수수료', '검정및시험수수료', '기타수수료' 중 어떤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하나요?

- ✓ 전세권 설정 시 법무사에게 지출된 수수료는 '지급수수료' 중 '업무대행수수료'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계정과목해설서〉

VII. 지급수수료

- (1) 업무대행수수료: 물품관리위탁수수료, 업무대행수수료 등과 같이 외부에 업무를 대행하고 지급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 (2) 송금수수료: 외국환관리규정에 의한 외국환대체송금, 전송금, 우편송금수수료를 말한다.
- (3) 등기료법정수수료: 등기 및 소송료(인지대 및 법정수수료) 등을 말한다.
- (4) 검정및시험수수료: 검정료, 감정료, 시험료를 말한다.
- (5) 외주가공비: 외부에 제품 등의 가공을 의뢰하고 지불하는 비용을 말한다.
- (6) 포장비: 물품 등의 포장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 (7) 보관비: 물품 등의 보관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 (8) 운송비: 물품 등의 운송 및 운송을 위한 포장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 (9) 상하차비: 선적하역비,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 및 차고료, 상하차비 등을 말한다.
- (10) 지급의료비: 공상치료비, 구속집행정지자, 형집행정지자 또는 감정 유치된 피고인, 피의자 중 법원의 감정 유치장 또는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회병원 및 의료기관에 수용된 자의 입원비, 시술비 등을 말한다.
- (11) 기타수수료: 외부에 지급하는 수수료 중 (1)~(10) 이외의 비용을 말한다.

Q250 소송 패소로 인한 지출 회계처리

질 의 내 용

OO청의 헬기도입사업과 관련하여 소송 패소하여 당기 이전 회계연도에 수납한 지체상금 중 일부를 돌려주었는데 '기타수수료', '잡손실', '기타의보상비' 중 어떤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하나요?

- ✔ 전기까지 관련 소송충당부채를 인식한 경우라면 기 인식한 소송충당부채에서 차감하는 회계처리를 하여야 하나, 전기까지 인식한 소송충당부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면 소송의 내용에 따라 적절한 계정과목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 전기까지 인식한 소송충당부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면 해당 사안은 국가가 사업을 적법하게 수행하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로 볼 수 있으므로 '보상비' 중 '기타의보상비'로 회계처리 합니다.

<계정과목해설서>

VII. 지급수수료

(11) 기타수수료

외부에 지급하는 수수료 중 (1)~(10) 이외의 비용을 말한다.

XVII. 기타비용

(11) 잡손실

프로그램충원가/비배분비용의 타 항목에서 설명되지 아니하는 손실이다.

VIII. 보전비

(1) 보상비

- ⑥ 기타의보상비: ① 내지 ⑤ 이외의 국가가 사업을 적법하게 수행함에 있어 또는 국가의 공무원이 적법하게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인에게 손해나 손실을 가했을 경우 각종 법률에 따라 지급하는 경비

Q251 파견자에게 지급하는 주거지원비 회계처리

질 의 내 용

파견자에 대한 주거지원비 지출 시 어떤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하나요?

- ✔ 파견자에 대한 주거지원비의 성격에 따라 구분하여 회계처리 합니다.
 - 개인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인 급여 또는 복리후생비의 성격이라면 ‘인건비’ 또는 ‘복리후생비’로 회계처리 합니다.
 - 그 이외의 경우 장소에 관한 임차료이므로 ‘지급임차료’ 중 ‘건물임차료’ 등 해당 국가회계실체의 경비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비용 회계처리지침〉

6. (인건비) "인건비"란 공무원 등이 고용관계 또는 위임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급여, 퇴직급여 등의 일체의 금품 및 이익을 말한다.
7.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란 법적고용부담금과 기타복리후생비를 말한다.
 - (1) 법정고용부담금: 복리후생비의 일종으로서 국가가 부담하여야 할 법정복리비, 복리시설부담금 및 후생비 등으로 국민연금부담비, 공무원연금부담비, 군인연금부담비, 고용보험부담비, 산재보험부담비, 건강보험부담비, 사학연금부담비
 - (2) 기타복리후생비: 근로환경의 개선 및 근로의욕의 향상 등을 위하여 간접적으로 부담하는 시설운영 및 유지비용, 경비 등으로 특근매식비, 일숙직비, 시상금, 경조금, 건강진단비, 선물대, 재해보상비, 모임지원비 등

〈계정과목해설서〉

- Ⅶ. 지급임차료
 - (2) 건물임차료
건물, 장소 등의 임차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는 임차료를 말한다.

Q252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 회계처리

질 의 내 용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라 지급한 비용은 '지급수수료'와 '복리후생비' 중 어떤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하나요?

- ✓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라 지급하는 비용은 '기타복리후생비' 중 '기타의기타복리후생비'로 회계처리 해야 합니다.

<계정과목해설서>

II. 복리후생비

(2) 기타복리후생비

⑨ 기타의기타복리후생비

선택적 복지제도 시행경비 등을 말하며, 여기서 선택적 복지제도란 복지항목에 대한 선택권을 사용인에게 부여함으로써 복지를 증진시키는 제도임

Q253 신용카드 수수료 회계처리

질 의 내 용

OO에서 지출하는 신용카드수수료의 경우 세출로 처리된 후 세입으로 처리되는 성격을 갖고 있는데, '기타수수료'와 '업무대행수수료' 중 어떤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하나요?

- ✓ 신용카드수수료는 국립재활원의 업무를 대행한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이 아니므로 업무대행수수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지급수수료' 중 '기타수수료'가 보다 적절합니다.

〈계정과목해설서〉

VII. 지급수수료

- (1) 업무대행수수료: 물품관리위탁수수료, 업무대행수수료 등과 같이 외부에 업무를 대행하고 지급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 (2) 송금수수료: 외국환관리규정에 의한 외국환대체송금, 전송금, 우편송금수수료를 말한다.
- (3) 등기료법정수수료: 등기 및 소송료(인지대 및 법정수수료) 등을 말한다.
- (4) 감정및시험수수료: 감정료, 감정료, 시험료를 말한다.
- (5) 외주가공비: 외부에 제품 등의 가공을 의뢰하고 지불하는 비용을 말한다.
- (6) 포장비: 물품 등의 포장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 (7) 보관비: 물품 등의 보관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 (8) 운송비: 물품 등의 운송 및 운송을 위한 포장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 (9) 상하차비: 선적하역비,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 및 차고료, 상하차비 등을 말한다.
- (10) 지급의료비: 공상치료비, 구속집행정지자, 형집행정지자 또는 감정 유치된 피고인, 피의자 중 법원의 감정 유치장 또는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회병원 및 의료기관에 수용된 자의 입원비, 시술비 등을 말한다.
- (11) 기타수수료: 외부에 지급하는 수수료 중 (1)~(10) 이외의 비용을 말한다.

Q254 의료적 시험 실시 비용 회계처리

질 의 내 용

OO병원 환자에 대해 여러 가지 의료적 시험을 실시(병원 직접 실시)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시험연구비', '기타용역비', '기타수수료' 중 어떤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하나요?

✓ '연구개발비' 중 '시험연구비'로 회계처리 합니다.

- 외주용역비 또는 지급수수료는 용역 계약, 외부 지급 등을 통해 발생하는 비용이므로, 병원이 직접 시험을 실시하는데 소요된 비용을 '외주용역비' 중 '기타용역비' 또는 '지급수수료' 중 '기타수수료'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계정과목해설서〉

IV. 연구개발비

(1) 시험연구비

국가시험연구기관 및 방위력정비 사업에서 시험연구에 직접 관련된 일용 임금, 일반수용비, 공공요금및제세, 피복비, 운영수당, 임차료,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 여비, 연구개발비 등의 비용을 말한다.

IV. 외주용역비

(5) 기타용역비(2017회계연도부터 적용)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채용, 영상자료 제작 등의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과 국선변호사 및 수임·고문변호사에 대한 변호료·수임료 및 보수, 속기·원고측량 등의 각종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 및 전문가 자문료 등을 말한다.

VII. 지급수수료

(11) 기타수수료

외부에 지급하는 수수료 중 (1)~(10) 이외의 비용을 말한다.

Q255 출연비 계정과목의 구분

질 의 내 용

출연비 계정과목 중 '공공기관출연비', '민간출연비' 등을 구분할 때 1차 거래처를 기준으로 하나요, 아니면 최종 수혜자를 기준으로 하나요?

- ✓ 출연비 계정과목은 국가회계실체 입장에서 거래상대방(즉, 1차 거래처)의 성격이 무엇인지에 따라 구분하여야 합니다.
 - 출연비 계정과목은 출연비를 국가로부터 1차로 지급받는 대상에 따라 세부 계정과목이 구분되며, 출연비를 직접 지급받는 대상이 공공기관이라면 '출연비' 중 '공공기관출연비'로 회계처리 해야 합니다.

〈비용 회계처리지침〉

10. (출연비) "출연비"란 국가가 다른 경제주체에 대해 반대급부 없이 일방적으로 지급하는 비용 중 하나로서 공공기관출연비, 민간출연비, 해외출연비 등을 말한다.

〈계정과목해설서〉

Ⅷ. 출연비

(1) 공공기관출연비

법령에 의한 중앙정부출연금 중 기금을 제외한 공공기관에 대한 출연금을 말한다.

(2) 민간출연비

법령에 의한 중앙정부출연금 중에서 민간에 대하여 무상으로 지원하는 출연금을 말한다.

(3) 해외출연비

법령에 의한 중앙정부출연금 중 해외출연금을 말한다.

Q256 보조비 계정과목의 구분

질 의 내 용

보조비 계정과목 중 '공공기관보조비', '민간보조비' 등을 구분할 때 1차 거래처를 기준으로 하나요, 아니면 최종 수혜자를 기준으로 하나요?

- ✔ 보조비 계정과목은 보조비를 지급받는 대상에 따라 세부 계정과목이 구분되며, 국가회계실체가 최초 지급하는 대상(1차 거래처)을 기준으로 합니다.
- 따라서 보조비를 직접 지급받는 대상이 공공기관이라면 '보조비' 중 '공공기관보조비'로 회계처리 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이 민간에게 보조금을 재교부하는 거래는 공공기관의 회계에 속하는 사항이며, 이는 국가회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공공기관보조비'와 '민간보조비' 두 계정과목 모두 국가회계실체 이외의 자에게 지급한 보조비라는 면에서는 공통점이 있으나, '공공기관보조비'의 경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지급한 보조금이며, '민간보조비'의 경우 공공기관이 아닌 자에 대해 지급한 보조금을 말합니다.

〈비용 회계처리지침〉

11. (보조비) "보조비"란 국가가 다른 경제주체에 대해 반대급부 없이 일방적으로 지급하는 비용 중 하나로서 공공기관보조비, 민간보조비, 자치단체보조비, 해외보조비, 교부금을 말한다.

Q257 잔여재산 반환 회계처리

질 의 내 용

OO기금이 운용 종료되어 OO부처 일반회계에게 잔여재산(현금 및 현물)을 반환할 때 어떤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하나요?

- ✓ 기금의 운용 종료에 따라 잔여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기금은 재정운영표 상 '비교환수익 등'에 표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잔여재산 중 현금의 경우 '기타재원조달및이전'의 '무상이전지출' 중 '기타무상이전지출'로 회계처리하고, 현물의 경우 '기타재원조달및이전' 중 '기타재원이전'으로 회계처리 합니다.
- 다만, 잔여재산 반환 대상이 국가회계실체인 경우 내부거래 제거를 통하여 국가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비용 회계처리지침〉

23. (무상이전지출) "무상이전지출"이란 정부내부거래로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 등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다음의 자금을 말한다.
 - (1)~(6) (생략)
 - (7) 기타무상이전지출: (1)~(6)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무상이전지출
24. (기타재원이전) "기타재원이전"이란 순자산에 감소효과를 발생시키는 거래 중 문단21~23을 제외한 각종 재원의 이전거래를 말한다.

Q258 지방자치단체 소유 병원에 대한 보조금 회계처리

질 의 내 용

OO부처에서 지방자치단체 소유 병원 설립을 위하여 지출하는 보조금은 어떤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하나요?

- ✔ 지방자치단체 소유 병원 설립을 위하여 지출하는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비이므로 '보조비' 중 '자치단체보조비'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계정과목해설서〉

VIII. 보조비, 출연비, 보조비

③ 보조비

(3) 자치단체보조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조금 중 지방정부에 자본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하여 지급하는 보조금 및 지방정부를 통하여 민간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적 지원,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의한 법정배분금 중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적 지원 등을 말한다.

Q259 출자기관의 법인세 대납분에 대한 회계처리

질 의 내 용

OO기금에서 출자한 △△캐피탈의 법인세 대납분은 어떤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하나요?

- ✔ 법인세 대납분이 회수 가능하면 채권으로 회계처리하고, 금액이 중요하지 않고 비경상적 거래일 경우 '기타비용'에서 적절한 하위 계정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비용 회계처리지침〉

19. (기타비용) "기타비용"이란 외환차손, 파생상품거래손실, 정부외자산기부 등 각종 기타비용을 말한다.

Q260 관리용역비와 위탁사업비의 차이

질 의 내 용

210-15(위탁사업비) 예산 목과 연계되는 계정과목인 ‘관리용역비’와 ‘위탁사업비’는 어떻게 구분해야 하나요?

- ✓ 법령에 의해 규정된 위탁사업인지 여부에 따라 관리용역비와 위탁사업비를 구분해야 합니다.
- 법령에 규정된 국가 사무 중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경우 ‘외주용역비’ 중 ‘위탁사업비’로,
 - 청사시설관리, 장비유지관리, 전산운영 등 기관 운영과정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유지관리 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외부에 대행시키는 경우 ‘외주용역비’ 중 ‘관리용역비’로 회계처리 합니다.

<계정과목해설서>

IV.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외주용역비

③ 외주용역비

(2) 관리용역비 (2017회계연도부터 적용)

청사의 시설관리 또는 장비의 유지관리, 전산운영 등 기관의 운영과정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유지관리 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외부에 대행시키는 제비용을 말한다.

(3) 위탁사업비 (2017회계연도부터 적용)

법률에 규정된 국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 명의·책임 하에 행사하는 경우의 제비용을 말한다.

Q261 퇴직보험운용사에 대한 수수료 회계처리

질 의 내 용

일선관서에서 퇴직보험운용사인 OO증권에 수수료를 지급하였는데 이를 퇴직보험예치금으로 회계처리하면 되나요?

- ✔ 운용사에 대한 수수료는 추후 회수할 수 있는 예치금 성격이 아니므로 퇴직보험예치금이 아닌 '지급수수료'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계정과목해설서〉

VII. 지급수수료, 지급보험료, 지급임차료

① 지급수수료

지급수수료는 업무대행수수료, 송금수수료, 등기료법정수수료, 외주가공비, 포장비, 보관비, 운송비 등 외부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IV. 장기충당부채

① 퇴직급여충당부채

(2) 퇴직보험예치금

직원의 퇴직급여 지급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외부 금융기관에 가입한 퇴직보험에 적용한 금액으로, 퇴직급여충당부채의 차감계정이다. 재정상태표일의 잔액을 재정상태표 가액으로 계상한다.

Q262 회의장소 임차료의 회계처리

질 의 내 용

회의를 위해 건물 회의실을 임차한 경우 '기타자산임차료'와 '건물임차료' 중 어떤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하나요?

- ✓ 임대차계약에 따라 건물을 임차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지급임차료' 중 '건물임차료'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계정과목해설서〉

VII. 지급수수료, 지급보험료, 지급임차료

② 지급임차료

(2) 건물임차료

건물, 장소 등의 임차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는 임차료를 말한다.

(3) 기타자산임차료

임대차 계약에 의한 시설, 장비, 물품 등의 임차료, 물건 보관을 위한 간단한 창고 이용료, 버스·승용차 등의 차량 임차료 및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ing)서비스 이용에 따른 임차료를 말한다.

ASP서비스란 네트워크를 통해 각종 응용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서비스 이용자는 고가의 소프트웨어 구입, 유지비 대신 ASP 업체에게 정기적으로 사용료를 지불하고 프로그램을 임차하여 사용하게 된다.

Q263 연구개발용역비와 시험연구비의 차이

질 의 내 용

‘연구개발용역비’와 ‘시험연구비’는 어떻게 구분해야 하나요?

- ✔ ‘연구개발용역비’는 연구개발을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위탁하여 수행할 때 소요되는 경비를 말하며, ‘시험연구비’는 시험연구를 직접 수행할 때 소요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 ‘연구개발용역비’와 ‘시험연구비’는 직접 수행하는지 여부에 따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계정과목해설서〉

IV.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외주용역비

㉠ 연구개발비

(1) 시험연구비

국가시험연구기관 및 방위력정비 사업에서 시험연구에 직접 관련된 일용 임금, 일반수용비, 공공요금및제세, 피복비, 운영수당, 임차료,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 여비, 연구개발비 등의 비용을 말한다.

(3) 연구개발용역비(2017회계연도부터 적용)

국가사업의 지속적인 연구 등을 위촉받는 자의 조사, 강연, 연구 등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로 지급된 금액으로서 일반연구개발용역비는 국가로부터 지식기반 업무에 대한 것(학술, 기술, 평가, 자문 및 시운전, 실태조사, 전산개발, 임상연구 등)에 대한 비용을 말하며, 정책연구개발 용역비는 각 부처에서 정책 개발을 위해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 관련 비용을 말한다.

Q264 해외 주재원 여비 회계처리

질 의 내 용

해외공관의 주재원들이 사용한 여비는 '국외여비'와 '국내여비' 중 어떤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하나요?

- ✔ 국가회계기준 상 '국내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출장여비 등을 말하며, '국외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해외출장여비를 말합니다.
 - 해외공관의 주재원들이 사용한 여비가 공무원여비규정상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적절한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 해야 합니다.

〈계정과목해설서〉

VI. 여비교통비, 업무추진비, 국립학교운영비

① 여비교통비

(1) 국내여비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공무원 국내출장여비 및 공무원이 아닌 자의 국내출장여비, 공무원의 인사이동에 따른 이전여비를 말한다.

(2) 국외여비

여비규정에 의한 해외출장여비, 해외출장지원경비를 말한다.

Q265 조달수수료 회계처리

질 의 내 용

조달청에 지급하는 조달수수료를 부수적인 비용으로 보아 본 자산 또는 본 비용에 포함시켜야 하나요? 아니면 별도의 거래로 보아 '기타수수료' 등의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하나요?

- ✔ 조달수수료의 금액이 크고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도의 계정과목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부수적인 거래로 보는 경우 원거래에 포함하여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Q266 정책 연구용역 대금 회계처리

질 의 내 용

정책과 관련된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대금을 지급한 경우 '연구개발용역비'와 '연구용역비' 중 어떤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하나요?

- ✔ 정책 개발을 위해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 관련 비용이므로 '연구개발비' 중 '연구개발용역비'로 회계처리 합니다.

〈계정과목해설서〉

IV.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외주용역비

① 연구개발비

(3) 연구개발용역비(2017회계연도부터 적용)

국가사업의 지속적인 연구 등을 위촉받는 자의 조사, 강연, 연구 등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로 지급된 금액으로서 일반연구개발용역비는 국가로부터 지식기반 업무에 대한 것(학술, 기술, 평가, 자문 및 시운전, 실태조사, 전산개발, 임상연구 등)에 대한 비용을 말하며, 정책연구개발용역비는 각 부처에서 정책 개발을 위해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 관련 비용을 말한다.

③ 외주용역비

(1) 연구용역비

사업계획을 기초로 하여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조사 및 교통·환경영향평가와 사업기본계획수립에 소요되는 경비, 주요설계 시행지침이나 예비설계, 기본설계 및 개략공사비 산정에 소요되는 경비,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집행방법이 확정된 공사의 발주에 따른 설계보상비, 차관자금으로 직접 지급되는 것으로서 국내외에서 수행되는 조사, 연구 등 용역비를 말한다.

Q267 기타용역비와 기타수수료의 차이

질 의 내 용

‘기타용역비’와 ‘기타수수료’는 어떻게 구분해야 하나요?

- ✔ ‘외주용역비’의 경우 계약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공급받는 대가로 지불하는 금액이며, ‘지급수수료’는 개별적인 서비스 공급에 대하여 외부에 지급하는 대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정과목해설서〉

IV.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외주용역비

③ 외주용역비

(5) 기타용역비 (2017회계연도부터 적용)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채용, 영상자료 제작 등의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과 국선번호사 및 수입·고문번호사에 대한 번호료·수임료 및 보수, 속기·원고측량 등의 각종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 및 전문가 자문료 등을 말한다.

VII. 지급수수료, 지급보험료, 지급임차료

① 지급수수료

- (1) 업무대행수수료: 물품관리위탁수수료, 업무대행수수료 등과 같이 외부에 업무를 대행하고 지급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 (2) 송금수수료: 외국환관리규정에 의한 외국환대체송금, 전송금, 우편송금수수료를 말한다.
- (3) 등기료법정수수료: 등기 및 소송료(인지대 및 법정수수료) 등을 말한다.
- (4) 감정및시험수수료: 감정료, 감정료, 시험료를 말한다.
- (5) 외주가공비: 외부에 제품 등의 가공을 의뢰하고 지불하는 비용을 말한다.
- (6) 포장비: 물품 등의 포장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 (7) 보관비: 물품 등의 보관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 (8) 운송비: 물품 등의 운송 및 운송을 위한 포장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 (9) 상하차비: 선적하역비,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 및 차고료, 상하차비 등을 말한다.
- (10) 지급의료비: 공상치료비, 구속집행정지자, 형집행정지자 또는 감정 유치된 피고인, 피의자 중 법원의 감정 유치장 또는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회병원 및 의료기관에 수용된 자의 입원비, 시술비 등을 말한다.
- (11) 기타수수료: 외부에 지급하는 수수료 중 (1)~(10) 이외의 비용을 말한다.

Q268 업무용 차량 주유비 회계처리

질의내용

업무용 차량의 기름 값은 어떤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하며, 그 계정과목은 어느 재무제표에서 확인 가능한가요?

✔ 업무용 차량의 주유비는 '유류비'로 회계처리 합니다.

○ 이 '유류비'는 재무제표 중 재정운영표에 표시되며, 주로 관리운영비 항목에 포함됩니다.

〈계정과목해설서〉

V. 세금과공과, 수도광열비, 유류비, 피복비와급량비

③ 유류비(2017회계연도부터 적용)

유류비는 원동기 등 동력장치, 중장비의 가동 및 차량·항공기·선박의 운행 등에 필요한 모든 유류(LPG, LNG 포함) 구입비를 말한다.

Q269 급여 등 지출금을 반납 받는 경우 회계처리

질의내용(1)

지출되었던 급여의 정산으로 인해 회수금이 발생한 경우 어떻게 회계처리하면 되나요?
현재까지는 '잡이익'으로 처리하여 왔습니다.

질의내용(2)

판결금 임의지급금에 대한 환급액을 과오지급금회수금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적정한가요?

질의내용(3)

당기 이전에 지방자치단체보조비로 지급한 금액 중에서 일부가 반환되는 경우 회계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질의내용(4)

특별회계에서 사업비 반납액을 잡이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회계처리인가요?

질의내용(5)

국고보조금 반납액을 잡이익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맞는지요?

- ✓ 당기에 지출한 금액을 반납 받는 경우 그 금액을 해당 당기 비용에서 차감합니다.
- ✓ 전기 이전에 지출한 금액을 반납 받을 때 그 사유가 과오로 초과 지급한 지출금을 반납 받는 것이면 '과오지급금회수금'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른 정산 등 과오가 아닌 사유로 반납 받는 것이면 '지출금반납금'으로 처리합니다.

〈비용 회계처리지침〉

29의2 (당기지출금의 반납) 국가회계실체가 당기에 지출한 비용을 반납 받는 경우 그 금액을 해당 비용에서 차감한다.

29의3 (전기이전지출금의 반납) 국가회계실체가 전기 이전에 지출한 비용을 반납 받는 경우 반납의 사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회계처리한다.

- (1) 전기 이전에 과오로 초과지급한 지출금을 반납 받는 경우에는 재정운영표에 "과오지급금회수금"으로 처리한다.
- (2) 과오가 아닌 사유로 전기 이전의 지출금을 반납 받는 경우에는 재정운영표에 "지출금반납금"으로 처리한다.

Q270 보조비 등의 집행 잔액을 정산하여 반환 받는 경우 회계처리

질의 내용

사업비를 집행하고 정산하여 남은 잔액 징수분을 모두 잡이익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처리인가요?

질의내용(2)

○○부의 경우 민간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민간에서 사용하고 남은 잔액은 ○○부로 반환처리 합니다. 이 경우 대부분 잡이익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처리인가요?

질의내용(3)

부처의 세부사업을 대신 수행하는 업체에 보조비를 지급하고, 이에 대한 정산잔액을 반납받는 경우에는 어떤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하는 게 맞나요?

질의내용(4)

전기에 지출되었던 공무원 단체보험금의 정산으로 인해 당기에 회수금이 발생한 경우 적절한 회계처리는 무엇인가요?

- ✔ 당기에 지출한 비용을 반납 받는 경우 그 금액을 해당비용에서 차감(당기 비용 취소)합니다.
- ✔ 전기 이전에 지출한 비용을 정산하여 반납 받는 경우에는 '지출금반납금' 으로 처리합니다.

〈비용 회계처리지침〉

29의2 (당기지출금의 반납) 국가회계실체가 당기에 지출한 비용을 반납 받는 경우 그 금액을 해당 비용에서 차감한다.

29의3 (전기이전지출금의 반납) 국가회계실체가 전기 이전에 지출한 비용을 반납 받는 경우 반납의 사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회계처리한다.

(2) 과오가 아닌 사유로 전기 이전의 지출금을 반납 받는 경우에는 재정운영표에 "지출금반납금"으로 처리한다.

Q271 지자체소유재산에 대한 리모델링 비용

질 의 내 용

지자체 소유재산에 대한 리모델링비용을 어떤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 해야 하나요?

- ✓ 국가회계실체가 임차하고 있지 않고, 국가회계실체의 자산이 아닌 경우 해당자산을 위해 지출된 리모델링 비용은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자체 지원을 한 것으로 보아 적정한 비용계정과목(예 : 자치단체보조비 등)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 다만, 국가회계실체가 지자체의 소유자산을 임차한 후 해당 자산에 대해 리모델링을 수행한 경우에는 자산의 정의 및 인식요건 충족하는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해야 합니다.(참조Q89)

〈비용 회계처리지침〉

11 (보조비) "보조비"란 국가가 다른 경제주체에 대해 반대급부 없이 일방적으로 지급하는 비용 중 하나로서 공공기관보조비, 민간보조비, 자치단체보조비, 해외보조비, 교부금을 말한다.

〈계정과목해설서〉

보조비

(3) 자치단체보조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조금 중 지방정부에 자본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하여 지급하는 보조금 및 지방정부를 통하여 민간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적 지원,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의한 법정배분금 중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적 지원 등을 말한다.

Q272 공공기관출연비와 민간출연비

질 의 내 용

공공기관출연비와 민간출연비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 ✔ 법령에 의한 중앙정부출연금 중 기금을 제외한 공공기관에 대한 출연금은 공공기관출연비로,
 - 민간에 대하여 무상으로 지원하는 출연금은 민간출연금으로 구분합니다.

〈계정과목해설서〉

VIII. 보전비, 출연비, 보조비

② 출연비

(1) 공공기관출연비

법령에 의한 중앙정부출연금 중 기금을 제외한 공공기관에 대한 출연금을 말한다.

(2) 민간출연비

법령에 의한 중앙정부출연금 중에서 민간에 대하여 무상으로 지원하는 출연금을 말한다.

Q273 기타직직원의 4대보험료와 급여 지급 시 퇴직급여충당부채에서 차감

질 의 내 용

기타직직원의 4대보험료와 기타직 급여가 퇴직급여충당부채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적절한 처리인가요?

- ✔ 기타직 직원의 4대 보험료 고용주 부담분은 '복리후생비'의 '법정고용부담금' 중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부담비'로 계상되어야 하며, 급여는 '인건비'의 '급여' 중 '기타직보수'로 계상되어야 합니다.
 - 기타직 직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만 퇴직급여충당부채에서 차감하여야 합니다.

Q274 정부내예수금 조기상환으로 발생한 손실 회계처리

질 의 내 용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차입한 정부내예수금을 조기상환하면서 발생한 손실은 어떤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해야 하는지요?

✔ 정부내예수금을 조기 상환하면서 발생한 손실은 채무상환손실로 회계처리해야 합니다.

<계정과목해설서>

XVII. 기타비용

(6) 채무상환손실

채무를 조기에 상환하는 경우, 조기상환에 따른 수수료 비용 등의 지출에 따른 손실을 의미한다.

I. 질의항목 리스트

II. 회계처리에 관한 질의

III. 디브리인 업무처리에 관한 질의

IV.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질의

2. 비용의 회계처리

Q275 협정에 따른 방위분담금의 부채 인식 필요 여부 등

질 의 내 용

1. 미국과의 협정에 따라 부담하기로 한 방위분담금(부담해야 할 금액은 협정으로 확정되어 있음)에 대해 부채로 인식해야 하나요?
2. 분담금의 예산 상 지급방식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변경이 부채 인식 여부에 영향을 주나요?

- ✔ 비용 회계처리지침 문단25에 따르면 비용은 법령 등에 따른 지출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재량이 거의 없어 그 의무가 존재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방위비분담금 관련 협정이 문단25의 비용 인식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관련 부채를 인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 예산의 편성, 자금의 배정은 회계처리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지급하는 예산 방식의 변경은 부채 인식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비용 회계처리지침〉

25. (비용 인식기준) 비용은 다음 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 (1) 재화나 용역의 제공 등 국가재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자산이 감소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 또는 법령 등에 따른 지출 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재량이 거의 없어 그 의무가 존재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한다.
 - (2) 과거에 자산으로 인식한 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이 감소 또는 소멸되거나 자원의 지출 없이 부채가 발생 또는 증가한 것이 명백한 때에도 비용을 인식한다.
-

Q276 OO부 의료급여 사업 미지급금 부채 인식여부

질 의 내 용

OO부가 수행하는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예산부족으로 미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회계상 미지급금을 인식해야 하나요?

- ✓ 비용 회계처리지침 문단25은 법령 등에 따른 지출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재량이 거의 없어 그 의무가 존재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에 비용을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보조금 지급과 같은 비교환거래의 경우 지출의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해당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구속력 있는 절차나 사건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의료급여 발생과 같이 거래상대방이 수급조건을 충족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부채 인식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비용 회계처리지침〉

25. (비용 인식기준) 비용은 다음 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 (1) 재화나 용역의 제공 등 국가재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자산이 감소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 또는 법령 등에 따른 지출 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재량이 거의 없어 그 의무가 존재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한다.
 - (2) 과거에 자산으로 인식한 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이 감소 또는 소멸되거나 자원의 지출 없이 부채가 발생 또는 증가한 것이 명백한 때에도 비용을 인식한다.

I. 질의항목 리스트

II. 회계처리에 관한 질의

III. 디브리인 업무처리에 관한 질의

IV.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질의

Q277 공중보건의 급여, 계약직 연봉 등의 회수액 회계처리

질 의 내 용

공중보건의 급여, 계약직 연봉 등의 회수액을 과오지급금회수금, 잡이익 중 어떤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하나요?

- ✔ 당기에 지급한 비용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당기 회계처리한 해당 비용에서 차감하고, 전기 이전에 지급한 비용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반납 사유에 따라 구분하여 회계처리해야 합니다.
- 전기 이전에 과오로 초과지급한 비용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재정운영표에 '기타수익' 중 '과오지급금회수금'으로 회계처리합니다.
- 전기 이전에 과오가 아닌 사유로 비용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재정운영표에 '기타수익' 중 '지출금반납금'으로 회계처리 합니다.

〈비용 회계처리지침〉

29의2. (당기 지출금의 반납) 국가회계실체가 당기에 지출한 비용을 반납 받는 경우 그 금액을 해당 비용에서 차감한다.

29의3. (전기 이전 지출금의 반납) 국가회계실체가 전기 이전에 지출한 비용을 반납 받는 경우 반납의 사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회계처리한다.

- (1) 전기 이전에 과오로 초과지급한 지출금을 반납 받는 경우에는 재정운영표에 "과오지급금회수금"으로 처리한다.
- (2) 과오가 아닌 사유로 전기 이전의 지출금을 반납 받는 경우에는 재정운영표에 "지출금반납금"으로 처리한다.

Q278 사업 잔액 반납 회계처리

질 의 내 용

사업 종료 후 반납잔액은 어떤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하나요?

- ✔ 당기 지출금 반납의 경우에는 당기에 지출한 비용에서 차감하고, 전기 이전 지출금 반납의 경우에는 재정운영표에 '기타수익' 중 '지출금반납금'으로 회계처리 합니다.

〈비용 회계처리지침〉

29의2. (당기 지출금의 반납) 국가회계실체가 당기에 지출한 비용을 반납 받는 경우 그 금액을 해당 비용에서 차감한다.

29의3. (전기 이전 지출금의 반납) 국가회계실체가 전기 이전에 지출한 비용을 반납 받는 경우 반납의 사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회계처리한다.

- (1) 전기 이전에 과오로 초과지급한 지출금을 반납 받는 경우에는 재정운영표에 "과오지급금회수금"으로 처리한다.
- (2) 과오가 아닌 사유로 전기 이전의 지출금을 반납 받는 경우에는 재정운영표에 "지출금반납금"으로 처리한다.

Q279 반납받은 보전금의 원금과 이자 회계처리 구분 필요 여부

질 의 내 용

지방자치단체에 지출한 보전금의 반납액 내역을 원금과 이자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를 별도의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하나요? 아니면 하나의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하나요?

✔ 원금과 이자를 구분하지 않고 별도의 계정과목이 아닌 하나의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합니다.

〈비용 회계처리지침〉

29의2. (당기 지출금의 반납) 국가회계실체가 당기에 지출한 비용을 반납 받는 경우 그 금액을 해당 비용에서 차감한다.

29의3. (전기 이전 지출금의 반납) 국가회계실체가 전기 이전에 지출한 비용을 반납 받는 경우 반납의 사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회계처리한다.

- (1) 전기 이전에 과오로 초과지급한 지출금을 반납 받는 경우에는 재정운영표에 "과오지급금회수금"으로 처리한다.
- (2) 과오가 아닌 사유로 전기 이전의 지출금을 반납 받는 경우에는 재정운영표에 "지출금반납금"으로 처리한다.

Q280 과오지급금회수금의 재정운영표상 표시 기준

질 의 내 용

과거 회계연도에 재정운영순원가에 반영되었던 지출금을 몇 년이 지나 과오지급금회수금으로 처리할 경우 비교환수익으로 반영될 여지가 있나요?

- ✓ '과오지급금회수금'의 경우 과오로 초과 지급한 지출금을 반납 받는 경우 생성되는 계정 과목으로, 지출 시 재정운영순원가에 반영되었다면 돌려받을 때 교환수익으로 처리되는 것이 올바른 회계처리입니다. 따라서 비교환수익으로 구분할 수 없습니다.

〈비용 회계처리지침〉

29의2 (당기지출금의 반납) 국가회계실체가 당기에 지출한 비용을 반납 받는 경우 그 금액을 해당 비용에서 차감한다.

29의3 (전기이전지출금의 반납) 국가회계실체가 전기 이전에 지출한 비용을 반납 받는 경우 반납의 사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회계처리한다.

- (1) 전기 이전에 과오로 초과지급한 지출금을 반납 받는 경우에는 재정운영표에 "과오지급금회수금"으로 처리한다.
- (2) 과오가 아닌 사유로 전기 이전의 지출금을 반납 받는 경우에는 재정운영표에 "지출금반납금"으로 처리한다.

Q281 민간경상보조금 정산으로 발생한 미수채권대손상각비 원가구분

질 의 내 용

민간경상보조금을 정산하여 환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미수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면서 인식한 대손상각비를 재정운영표 상 어떤 항목으로 구분해야 하나요?

- ✓ 보조금을 정산, 환수하는 경우 과오로 인한 반납인지 여부에 따라 '과오지급금회수금' 또는 '지출금반납금'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 ✓ 동 과정에서 발생한 미수채권의 대손상각비 역시 프로그램대응 여부에 따라 프로그램원가(또는 관리운영비)나 비배분비용으로 구분하여야 합니다.

〈비용 회계처리지침〉

29의3 (전기이전지출금의 반납) 국가회계실체가 전기 이전에 지출한 비용을 반납 받는 경우 반납의 사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회계처리한다.

- (1) 전기 이전에 과오로 초과지급한 지출금을 반납 받는 경우에는 재정운영표에 "과오지급금회수금"으로 처리한다.
 - (2) 과오가 아닌 사유로 전기 이전의 지출금을 반납 받는 경우에는 재정운영표에 "지출금반납금"으로 처리한다.
-

Q282 지방재정교부금 인식시기

질 의 내 용

「지방교부세법」에 의한 지방재정교부금 정산금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나요?

- ✔ 지방재정교부금은 정산이 확정되어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 지방재정교부금 계정에 다음과 같이 가감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합니다.

〈직전회계연도가 (+) 정산일 경우(세계잉여금 처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xx / 기타재원조달 xx

〈직전회계연도가 (-) 정산일 경우(다음회계연도 예산 반영)〉

기타의미수금 xx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xx

〈비용 회계처리지침〉

25. (비용 인식기준) 비용은 다음 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 (1) 재화나 용역의 제공 등 국가재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자산이 감소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 또는 법령 등에 따른 지출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재량이 거의 없어 그 의무가 존재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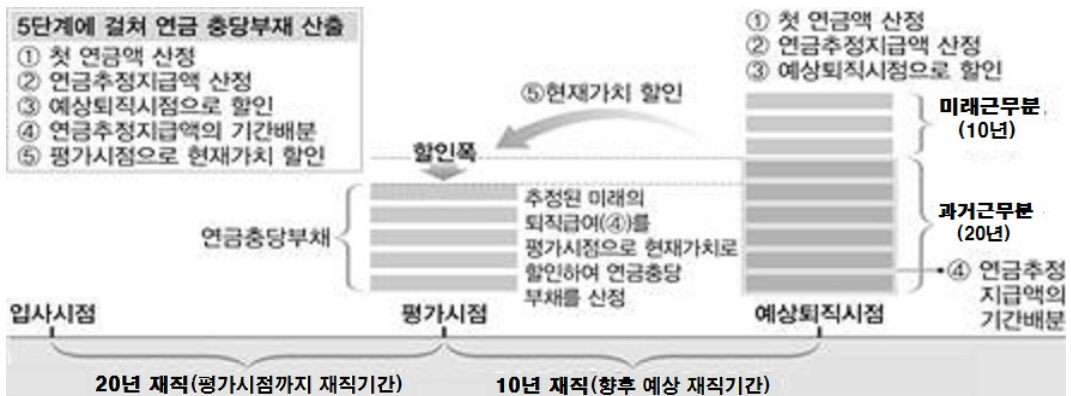
1. 용어의 정의

Q283 연금충당부채의 정의

질 의 내 용

연금충당부채 산정과 관련하여 "미래에 추정되는 연금지급액 전부를 연금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것은 아니며, 재정상태표일 현재까지 할당된 금액만을 인식하게 됩니다" 라는 문구를 봤습니다. 이 문구대로라면 연금충당부채에 대해서는 미래의 추정이 필요없다는 뜻인지?

- ✓ 연금충당부채의 산정 과정에는 반드시 미래에 대한 추정이 개입되며, 해당 문구 즉 "재정상태표일 현재까지 할당된 금액만을 인식한다"의 의미는 연금충당부채를 산정할 때 "전체근무기간에 배분된 미래예측급여 할인액 중 당기말까지의 기간에 배분된 금액을 구하는 과정"을 뜻합니다.
 - 연금충당부채는 피고용자가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발생하는 의무이므로 근로가 제공된 기간 즉, 재정상태표일까지의 기간에 대응되는 금액이 연금충당부채의 산정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2. 퇴직수당충당부채의 인식 및 측정

Q284 사립학교교직원에 대한 퇴직수당충당부채 계상 여부

질 의 내 용

사립학교교직원에 대한 퇴직수당도 공무원 및 군인과 마찬가지로 퇴직수당충당부채를 계상할 수 있는지?

- ✓ 연금 회계처리지침 문단39에 따르면 사립학교교직원에 대한 퇴직수당은 재정상태표일 현재 지급기일이 도래하였으나 지급하지 않은 금액만을 미지급금으로 인식하고 퇴직수당충당부채는 인식하지 않습니다.
 - 공무원과 군인의 경우에는 문단34에 따라 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장래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수당추정지급액 중 재정상태표일 현재 귀속되는 금액의 현재가치를 퇴직수당충당부채로 인식합니다.

〈연금 회계처리지침〉

34. (퇴직수당충당부채의 인식 및 측정) (1)「공무원연금법」제42조의 퇴직수당 및「군인연금법」제6조의 퇴직수당은 연금충당부채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며, 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장래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수당추정지급액 중 재정상태표일 현재 귀속되는 금액을 재정상태표일의 현재가치로 평가한 금액을 "퇴직수당충당부채"로 인식한다.
39. (퇴직수당충당부채의 인식)「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제42조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수당은 재정상태표일 현재 지급기일이 도래하였으나 지급하지 않은 금액을 미지급금으로 인식한다.

3. 연금수익의 구성 및 인식

Q285 공무원연금 부담금을 부처 자체예산으로 지급하는 경우 회계처리

질 의 내 용

공무원연금 부담금을 인사혁신처에서 부담하지 않고 자체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하는 경우 어떻게 회계처리하나요?

- ✔ 부처에서는 고용주부담금을 '복리후생비'로 인식, 공무원연금기금에서는 '연금수익' 중 '고용주부담금'으로 인식합니다.
- 즉 인사혁신처에서 일괄적으로 공무원연금기금에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각 부처는 지급하는 금액을 '복리후생비'로 인식하고, 인사혁신처와의 '기타재원조달' 회계처리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금 회계처리지침〉

33 (고용주실체의 비용인식 등) 공무원과 군인의 고용주체인 국가가 연금기금에 납입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 (1) 고용주부담금: 고용주실체가 해당 기금에 고용주부담금을 지급 시 재정운영표의 프로그램총원가 또는 관리운영비의 "복리후생비"로 인식한다. 다만, 특정 국가회계실체가 다른 국가회계실체가 납부하여야 할 고용주부담금을 연금기금에 일괄납부하는 경우, 일괄납부하는 국가회계실체는 순자산변동표의 "기타재원이전"으로 인식하고 본래 납부하여야 하는 국가회계실체는 순자산변동표의 "기타재원조달"로 인식한다.

Q286

일반회계가 인사혁신처로부터 배부 받은 공무원연금부담비 재무제표 표시

질 의 내 용

○○부 일반회계가 인사혁신처로부터 배부 받은 공무원연금부담비(기타재원조달)에 대해 재무제표에 어떻게 표시하여야 하나요?

- ✓ 인사혁신처가 ○○부 일반회계 소속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연금부담비를 대신 공무원연금기금에 지급하는 경우, 일반회계에서는 재정운영표의 '복리후생비'로 인식하면서 상대계정은 순자산변동표의 '기타재원조달'로 인식합니다.

〈연금 회계처리지침〉

33 (고용주실체의 비용인식 등) 공무원과 군인의 고용주체인 국가가 연금기금에 납입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 (1) 고용주부담금: 고용주실체가 해당 기금에 고용주부담금을 지급 시 재정운영표의 프로그램총원가 또는 관리운영비의 "복리후생비"로 인식한다. 다만, 특정 국가회계실체가 다른 국가회계실체가 납부하여야 할 고용주부담금을 연금기금에 일괄납부하는 경우, 일괄납부하는 국가회계실체는 순자산변동표의 "기타재원이전"으로 인식하고 본래 납부하여야 하는 국가회계실체는 순자산변동표의 "기타재원조달"로 인식한다.

Q287

인사혁신처가 타부처를 대신하여 공무원연금기금에 일괄납부하는 고용주부담금 회계처리

질 의 내 용

인사혁신처에서 타 부처를 대신하여 공무원연금기금에 지급한 공무원연금고용주부담금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나요?

- ✓ 인사혁신처가 국가 각 부처의 공무원연금비용을 '전출금' 예산을 통해 일괄적으로 공무원연금기금에 납부하는 경우 인사혁신처가 납부하는 타중앙관서 소속 공무원에 대한 고용주부담금은 순자산변동표 상의 '기타재원이전'으로 처리하고, 본래 납부해야할 중앙관서는 같은 금액을 순자산변동표의 '기타재원조달'로 인식하여 부처 간 내부거래 제거 되도록 해야 합니다.

〈연금 회계처리지침〉

33 (고용주실체의 비용인식 등) 공무원과 군인의 고용주체인 국가가 연금기금에 납입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 (1) 고용주부담금: 고용주실체가 해당 기금에 고용주부담금을 지급 시 재정운영표의 프로그램총원가 또는 관리운영비의 "복리후생비"로 인식한다. 다만, 특정 국가회계실체가 다른 국가회계실체가 납부하여야 할 고용주부담금을 연금기금에 일괄납부하는 경우, 일괄납부하는 국가회계실체는 순자산변동표의 "기타재원이전"으로 인식하고 본래 납부하여야 하는 국가회계실체는 순자산변동표의 "기타재원조달"로 인식한다.

1. 보험수익·비용의 인식 및 측정

Q288 미경과보험료 적립금 전입액 회계처리

질 의 내 용

미경과보험료적립금에 대한 전입금은 재정운영표 상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 미경과보험료적립금이 증가하는 경우 미경과보험료적립금전입액으로 처리합니다.

〈보험회계처리지침〉

10. (미경과보험적립금 관련 비용의 인식) "기타부채"에 포함되는 미경과보험료적립금이 증가하는 경우 "미경과보험료적립금전입액"으로 처리하며, 감소할 경우에는 그 환입액을 "미경과보험료적립금전입액"에서 차감하되 감소액이 "미경과보험료적립금전입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미경과보험료적립금환입액"으로 회계처리한다.

Q289 미경과보험료적립금 감소 시 회계처리

질 의 내 용

보험 기타부채 관련 미경과보험료적립금이 전기 대비 감소할 경우 어떻게 회계처리하는지?

- ✓ 보험 회계처리지침 문단10에 따라 미경과보험료적립금이 전기 대비 감소할 경우 미경과보험료적립은 전입액에서 차감하되, 초과할 경우 미경과보험료적립금환입액으로 회계처리합니다.

〈보험 회계처리지침〉

10. (미경과보험적립금 관련 비용의 인식) "기타부채"에 포함되는 미경과보험료적립금이 증가하는 경우 "미경과보험료적립금전입액"으로 처리하며, 감소할 경우에는 그 환입액을 "미경과보험료적립금전입액"에서 차감하되 감소액이 "미경과보험료적립금전입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미경과보험료적립금환입액"으로 회계처리한다.
-

Q290 보험충당부채 산정방식

질 의 내 용

보험충당부채를 기금의 설치근거법령 등에 따른 비상위험준비금 등으로 산정하여 평가하여도 괜찮은지?

- ✓ 보험 회계처리지침 문단5에 따르면 관련법령에 의한 적립금과 준비금 산정 방식이 보험충당부채의 평가 방식과 유사한 경우 그 적립금과 준비금을 보험충당부채로 볼 수 있습니다.

〈보험 회계처리지침〉

10. (보험충당부채의 평가) (1) "보험충당부채"는 재정상태표일 이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나 미지급된 보험금 지급예상액과 재정상태표일 현재 보험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장래 발생할 보험사고를 대비하여 적립하는 지급예상액으로 구성된다.
- (2) 관련법령에 의한 적립금과 준비금 산정 방식이 (1)의 보험금예상지급액 산정방식과 유사한 경우 그 적립금과 준비금을 "보험충당부채"로 본다. 다만, 미경과보험료적립금은 "보험충당부채"가 아닌 "기타부채"로 표시한다.

1. 보증총당부채의 인식 및 평가

Q291 보증비용의 측정

질 의 내 용

보증 회계처리지침 문단9에서 "보증비용은 직전 재정상태표일과 비교한 보증총당부채 증감액으로 재정운영표에 인식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회계연도 중 보증총당부채에서 지급된 금액을 보증비용 측정 시 추가 고려하고 있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 ✓ 신용보증사업을 수행하는 국가회계실체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현금 지급액은 보증총당부채에서 차감 또는 보증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구상채권으로 인식됩니다.
- 따라서 보증비용은 보험 회계처리지침 문단9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재정상태표일 사이의 보증총당부채의 증감액으로 인식합니다.

〈보증 회계처리지침〉

5. (보증총당부채의 평가) "보증총당부채"는 보증약정 등에 따른 주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국가회계실체가 부담하게 될 추정 순현금유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한다. 다만, 추정 순현금유출액의 현재가치를 추정하기 어려운 경우 재정상태표일 현재의 보증잔액에 대하여 피보증자의 신용위험, 경험손실을 및 예상손실을 등 신뢰성 있고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추정 손실예상액을 추정 순현금유출액의 현재가치로 할 수 있다.
9. (보증비용의 인식 및 측정) "보증비용"은 국가회계실체가 보증채무 이행 가능성을 추정하여 "보증총당부채"가 증가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보증비용"은 직전 재정상태표일과 비교한 "보증총당부채" 증감액을 재정운영표에 프로그램충원가로 인식하며, 그 금액이 부(負)의 금액인 경우 프로그램수익으로 인식한다.

1. 적용범위

Q292 융자보조원가충당금 인식의 주체

질 의 내 용

AA기금은 BB부로부터 무이자로 조달받은 재원을 바탕으로 학자금 대여금을 역시 무이자로 대여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융자 회계처리지침에 따라 융자보조원가충당금과 융자보조비용을 계상하는 경우 순자산이 약 2,000억원이 감소하게 됩니다. AA기금의 경우 학자금대여 사업이 그 구조상 BB부가 직접 대여하는 것과 동일하므로 융자 회계처리지침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인 것 아닌가요?

- ✓ 융자 회계처리지침에 따라 융자보조원가충당금 및 융자보조비용을 계상해야 할 국가회계실체는 해당 융자사업을 직접 수행하고 있는 AA기금입니다.
 - BB부의 경우 AA기금에 대해 재원을 지원할 뿐이며 해당 융자사업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BB부의 융자사업으로 처리하는 것은 옳바르지 않습니다.
- ✓ 또한 융자보조원가충당금 인식에 따라 감소하는 순자산은 향후 융자금 회수시마다 융자보조원가충당금 상각 및 이자수익 인식으로 인한 순자산 증가로 회복되므로 융자사업으로 인해 반드시 AA기금의 순자산이 감소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융자 회계처리지침〉

2. (적용범위) 이 예규는 국가회계실체가 유효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융자를 제공하는 사업에 적용한다.

Q293 주석으로 공시해야 하는 용자사업의 범위

질 의 내 용

용자 회계처리지침 문단23에 따라 사업관련사항을 주석으로 공시해야 하는 용자사업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 ✓ 용자회계처리지침 문단2에 따라 용자사업은 국가회계실체가 유효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용자를 제공하는 사업이므로 문단 23에 따른 주석 공시 범위는 해당 사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용자 회계처리지침〉

2. (적용범위) 이 예규는 국가회계실체가 유효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용자를 제공하는 사업에 적용한다.
23. (주석사항) 용자사업을 수행하는 국가회계실체는 다음 사항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 (1) 용자사업의 개요
 - (2) 적용이자율, 사업기간 및 용자조건
 - (3) 당기 및 전기 용자금지원액
 - (4) 당기 및 전기 용자금회수액
 - (5) 당기 및 전기 재정상태표일 현재 용자금잔액
 - (6) 당기 및 전기에 인식한 용자보조비용
 - (7) 그 밖에 중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Q294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대여금의 회계처리

질 의 내 용

임직원을 대상으로 대여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해당 대여금의 경우 어떤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해야 하나요?

- ✓ 임직원 대상 대여금은 정부외장·단기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하되, 유효이자율 보다 낮은 이자율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장·단기융자금으로 처리하고 융자 회계처리지침에 따라 융자보조원가충당금을 설정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융자 회계처리지침>

2. (적용범위) 이 예규는 국가회계실체가 유효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융자를 제공하는 사업에 적용한다.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회계처리지침>

실무해설12. (☞ 관련문단 9) 대여금 상세 계정과목

대분류	중분류	회계과목	관리과목	세부관리과목
자산	유동자산	단기대여금	정부내 단기대여금	단기전대차관대여금
				정부내단기예탁금
			정부외 단기대여금	단기전대차관대여금
				단기융자금
	투자자산	장기대여금	정부내 장기대여금	단기일반대여금
				장기전대차관대여금
			정부외 장기대여금	정부내장기예탁금
				장기전대차관대여금
			장기융자금	
			장기일반대여금	

Q295 단기융자금에 대한 융자보조원가충당금 산정 필요 여부

질 의 내 용

단기융자금에도 융자보조원가충당금을 산정하여야 하나요?

- ✔ 융자 회계처리지침 문단2에 따르면 융자금 만기의 장·단기 여부에 따른 구분 없이 유효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융자를 제공하는 사업이 적용 대상이므로 단기 융자금에 대해서도 융자보조원가충당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융자 회계처리지침〉

2. (적용범위) 이 예규는 국가회계실체가 유효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융자를 제공하는 사업에 적용한다.

문단제정근거2. 조달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융자를 실행한 경우 이에 따른 보조효과를 정확하게 산출하는 것이 이 예규의 제정 취지임을 고려하여, 단기융자금에 대해서도 계산의 실익을 이유로 융자보조원가충당금을 인식하도록 하였다.

Q296 용자보조원가총당금 설정 대상 용자금

질의내용(1)

유효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용자는 용자보조원가총당금을 계상하지 않아도 괜찮은지요?

- ✓ 유효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용자를 제공하는 사업(용자사업)에만 「용자 회계처리지침」을 적용하여 용자보조원가총당금을 계상합니다.

질의내용(2)

OO기금에서 계상하고 있는 OO공단 직원에 대한 용자금도 용자보조원가총당금 설정 대상이 되나요?

- ✓ OO기금이 대여하고 있는 용자금의 이자율이 유효이자율보다 낮으면 용자보조원가총당금 설정대상이 됩니다. 단, 2009년 12월 31일 이전 실행된 용자금은 대손추산액만 용자보조원가총당금으로 인식합니다.

〈용자 회계처리지침〉

2. (적용범위) 이 예규는 국가회계실체가 유효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용자를 제공하는 사업에 적용한다.

Q297 융자금의 현재가치 평가 여부

질 의 내 용

유효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제공한 융자금에 대해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회계처리지침」의 현재가치 평가를 적용하는지요?

- ✓ 유효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제공하는 융자금은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회계처리지침」의 현재가치 평가를 적용하지 않고 「융자 회계처리지침」을 적용하므로, 동 지침에 따라 융자보조원가충당금을 인식하고 이후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하며, 매년 재정상태표일을 기준으로 융자보조원가충당금을 평가해야 합니다.

〈융자 회계처리지침〉

2. (적용범위) 이 예규는 국가회계실체가 유효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융자를 제공하는 사업에 적용한다.
4. (융자보조원가충당금의 최초 인식) (1) 융자보조원가충당금은 융자 실행 당시 융자금 원금에서 회수가능액의 현재가치를 빼서 계산한다.
(2) (1)의 회수가능액의 현재가치는 융자금으로부터의 추정 순현금유입액을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가액으로 한다.
(3) (2)의 유효이자율은 융자금과 만기가 유사한 국채이자율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융자사업을 위해 직접적으로 조달된 재원이 있는 경우 해당 재원의 조달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다.
10. (융자보조원가충당금의 상각) (1) 문단4에 따라 인식한 융자보조원가충당금은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한다.
12. (융자보조원가충당금의 평가) (1) 융자보조원가충당금은 매년 재정상태표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Q298 변동이자율 조건의 융자금에 대한 융자 회계처리지침 적용여부

질 의 내 용

00기금에서 운영중인 일부 융자사업의 경우 변동이자율 조건으로 실행되고 있음. 이러한 변동이자율 조건 융자금 중에서 융자금 실행 당시에는 유효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융자되었으나, 이후 이자율 변동으로 유효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로 바뀐 경우 융자 회계처리지침의 적용범위를 벗어나게 되는 것인지?

- ✔ 융자 회계처리지침 문단2에 따른 융자사업 여부는 융자(대여) 실행 당시의 대여이자율과 유효이자율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변동이자율 조건에 따라 추후 대여이자율이 변동하더라도 융자(대여) 실행 당시 대여이자율이 유효이자율 보다 낮았던 경우에는 융자 회계처리지침을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융자 회계처리지침〉

2. (적용범위) 이 예규는 국가회계실체가 유효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융자를 제공하는 사업에 적용한다.

2. 순현금흐름

Q299 융자보조원가총당금 계산시 융자금 현금흐름 변동의 반영 방법

질 의 내 용

융자금 현금흐름의 변동 효과를 융자보조원가총당금 산정 과정에 반영할 때에는 다음 중 어느 방법으로 해야 하나요?

1. “갭”설 : 만기연장 비율과 조기상환 비율을 추정에 적용하는 방법
= 역사적 자료를 토대로 만기연장 사례, 조기상환 사례를 분석하여 통계적으로 추정
2. “을”설 : 상환까지 걸리는 평균 기간을 적용하는 방법

✔ 융자금과 관련된 순현금유입액에 대한 영향은 국가회계실체가 융자금 종류별로 그 위험 유형을 가장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결정하여 적용하여야 합니다.

〈융자 회계처리지침〉

7. (순현금유입액 추정 시 고려사항) 문단4에 따른 순현금유입액은 융자금 위험유형을 반영하여 융자금 종류별로 추정하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융자금의 원리금
 - (2) 차입자의 채무불이행 예상액
 - (3) 기타 융자금 관련 직접 비용

Q300 용자금 채무불이행 예상액 산정 방법

질 의 내 용

용자금 채무불이행 예상액을 산정하는 방법은 다음 중 무엇으로 해야 하나요?

1. “갑”설 : 비율 추정
= 채무불이행 비율(대손의 개념)을 반영하여 순 현금유입액을 충실하게 반영하게 됨
- 2 “을”설 : 대손이 일어난 경우 반영
= 법적으로 채무불이행이 전혀 일어나지 않음(퇴직금과 연금에 대한 담보 존재)

✔ 용자 회계처리지침 문단8은 차입자의 채무불이행 예상액을 추정할 때 (1) 과거 용자금의 채무불이행 실적, (2) 용자금 회수에 영향을 주는 현재 및 미래의 경제적 상황, (3) 차입자의 재무상태, (4) 용자금에 대한 담보물의 가치 및 그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갑설의 과거 용자금의 채무불이행 실적 및 을설의 용자금에 대한 담보물의 가치 및 그 변화 등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처 내부적으로 결정하여야 합니다.

〈용자 회계처리지침〉

8. (채무불이행 예상액 추정의 기준) (1) 문단7에 따른 차입자의 채무불이행 예상액을 추정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가) 과거 용자금의 채무불이행 실적
 - (나) 용자금 회수에 영향을 주는 현재 및 미래의 경제적 상황
 - (다) 차입자의 재무상태
 - (라) 용자금에 대한 담보물의 가치 및 그 변화
- (2) (1)에 따른 채무불이행 예상액 추정의 기준은 최초 추정할 경우와 이후 평가할 경우에 모두 적용한다.

Q301 순현금유입액 측정 시 채권잔액비례법 사용 가능 여부

질 의 내 용

OO기금의 외화대출금에 대한 용자보조원가총당금 산정을 위해 순현금유입액을 추정하고자 하며, 이 중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효과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 회계법인에 자문을 구한 결과 외화대출금잔액에 일정비율을 곱하는 채권잔액비례법을 사용하도록 권고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채권잔액비례법을 사용하여도 무방한가요?

- ✔ 순현금유입액 추정 시 차입자의 채무불이행 예상액은 대손충당금 설정방법과 동일하게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자문결과로 제시받은 채권잔액비례법이 기금 입장에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식이라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용자 회계처리지침〉

8. (채무불이행 예상액 추정의 기준) (1) 문단7에 따른 차입자의 채무불이행 예상액을 추정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가) 과거 용자금의 채무불이행 실적
 - (나) 용자금 회수에 영향을 주는 현재 및 미래의 경제적 상황
 - (다) 차입자의 재무상태
 - (라) 용자금에 대한 담보물의 가치 및 그 변화
- (2) (1)에 따른 채무불이행 예상액 추정의 기준은 최초 추정할 경우와 이후 평가할 경우에 모두 적용한다.

3. 유효이자율

Q302 용자보조원가총당금 계산 시 적용하는 유효이자율

질 의 내 용

용자보조원가총당금을 계산할 때 적용해야 할 유효이자율은 다음 중 어느 것을 말하나요?

1. “갑”설 : 대부시점(당일)의 국고채 이자율 적용
2. “을”설 : 대부시점이 속하는 월(말)의 국고채 이자율 적용
3. “병”설 : 한 해 동안의 가중평균 국고채 이자율 적용

- ✔ 용자 회계처리지침 문단9에 따라 용자보조원가총당금의 최초 인식 시 적용하는 유효이자율은 용자금과 만기가 유사한 국채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중요한 차이가 없을 경우 용자금이 실행된 회계기간의 가중평균이자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갑설의 대부시점의 국고채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것이 병설에 따른 유효이자율과 중요한 차이가 없다면 해당 이자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용자 회계처리지침〉

9. (유효이자율 적용) (1) 용자보조원가총당금의 최초 인식 시 적용하는 유효이자율은 용자금과 만기가 유사한 국채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해당 용자사업을 위해 직접적으로 조달된 재원이 있는 경우 해당 재원의 조달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적으로 조달된 재원이 둘 이상일 경우에는 가중평균한 이자율을 적용한다.
- (가) 유효이자율은 용자금 실행시점의 이자율을 적용하며 중요한 차이가 없을 경우 용자금이 실행된 회계기간의 가중평균한 이자율을 사용할 수 있다.
 - (나) 만기가 유사한 국채이자율이 없는 경우 용자금의 만기와 가장 근접한 국채이자율을 사용하여 추정한 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다.
 - (다) 용자사업을 위해 직접 조달한 재원이 조달이자율이 없는 출연금 등 정부 예산인 경우에도 국채이자율을 적용한다.
 - (라) 동일한 종류의 용자금에 대해서도 개별 용자금별로 유효이자율이 다른 경우에는 개별 용자금별로 유효이자율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 (2) 용자보조원가총당금을 평가할 때에는 용자보조원가총당금 최초 인식 시 적용한 유효이자율을 계속 적용한다.

Q303 국고채이자율 확인 방법

질 의 내 용

「융자 회계처리지침」 문단4 '유효이자율은 융자금과 만기가 유사한 국채이자율을 적용한다.' 에서 '국채이자율'은 무엇이며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요?

- ✓ '국채이자율'은 한국은행에서 공시하는 국고채의 유통수익률을 의미하며 한국은행 경제 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의 '시장금리'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융자 회계처리지침〉

4. (융자보조원가총당금의 최초 인식) (1) 융자보조원가총당금은 융자 실행 당시 융자금 원금에서 회수가능액의 현재가치를 빼서 계산한다.
- (2) (1)의 회수가능액의 현재가치는 융자금으로부터의 추정 순현금유입액을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가액으로 한다.
- (3) (2)의 유효이자율은 융자금과 만기가 유사한 국채이자율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융자사업을 위해 직접적으로 조달된 재원이 있는 경우 해당 재원의 조달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다.

4. 용자보조원가총당금의 상각 및 평가

Q304 용자금에 대한 미수이자 계상 시 적용할 이자율

질 의 내 용

기금에서는 OO은행과 용자약정을 체결하여 용자금을 지급하고, OO은행에서는 사업주들과 개별용자약정을 통해 대출을 시행합니다. 미수이자 계상시 이자율을 어떤 이자율을 적용해야 하나요?

- ✓ 기금은 OO은행과 용자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OO은행과 약정시 정한 표면이자율을 적용하여 미수이자를 계상하여야 합니다.

〈용자 회계처리지침〉

11. (용자보조원가총당금 상각액 산출) 용자보조원가총당금 상각액은 다음 순서로 산출한다.
- (1) 직전 회계연도말 용자금 장부가액에 용자금 실행 시 적용한 유효이자율을 곱해서 유효이자금액을 산정
 - (2) 용자금 원금에 표면이자율을 곱해 명목이자액을 산정
 - (3) (1)에서 산정한 유효 이자금액과 (2)에서 산정한 명목 이자금액의 차이를 산정

Q305 용자금 회수 시 회계처리

질 의 내 용

기금에서 OO은행과 용자약정을 체결하여 용자금을 지급했고, OO은행에서는 사업주들과 개별용자약정을 통해 대출을 시행해 오던 중 동 용자금이 실수요자에게 용자되지 않고 기금으로 회수된 경우 어떻게 회계처리하나요?

- ✔ OO은행에서 해당 정책자금을 실수요자에게 용자하지 못하고 기금에 반납한 경우 동 반납액을 기존의 용자금 회수와 동일하게 회계처리합니다.
- 또한 기존 용자금의 조기 회수로 인해 용자보조원가충당금이 변동될 것이므로 재정상태표일을 기준으로 「용자 회계처리지침」 문단 13에 따라 용자보조원가충당금 변경액을 산출한 후 동 금액을 용자보조비용에서 차감합니다. 만약 차감 후 금액이 부의 금액일 경우에는 그 부의금액은 용자보조원가충당금환입으로 인식합니다.

〈용자 회계처리지침〉

12. (용자보조원가충당금의 평가) (1) 용자보조원가충당금은 매년 재정상태표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1)에 따라 용자보조원가충당금을 평가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한다.
 - (가) 용자금의 조기상환
 - (나) 채무불이행
 - (다) 체납 및 회수
 - (라) 기타 현금유출과 유입에 영향을 주는 요소
13. (용자보조원가충당금의 변경액 측정) (1) 용자보조원가충당금의 변경 시 용자보조원가충당금의 변경액은 다음의 순서로 산출한다.
 - (가) 평가 시점에 변경된 용자금 순현금유입액을 재추정
 - (나) (가)에서 추정한 순현금유입액을 용자금 실행 시 사용한 유효이자율로 할인
 - (다) 직전 재정상태표일 현재 용자금 원금에서 당 회계연도 현금회수액을 차감하고, (나)에서 구한 순현금유입액의 현재가치를 차감
 - (라) 변경전 용자보조원가충당금 잔액에서 (다)의 금액을 차감하여 용자보조원가충당금 변경액을 산출
 (2) (1)에 따른 용자보조원가충당금 변경액을 당기의 "용자보조비용"에 더하거나 빼다. 이 경우 "용자보조비용"에서 용자보조원가충당금 감소액을 빼 금액이 음인 경우 그 차액을 "용자보조원가충당금환입"으로 인식한다.

Q306 용자보조원가총당금의 변경액 인식 방법

질 의 내 용

「용자 회계처리지침」을 적용받는 용자금에 대해서 매년말 결산조정을 통해 용자보조원가총당금을 인식하고 있는데, 2014년말 용자보조원가총당금을 인식할 때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어떤 방법으로 회계처리해야 하는지요?

1. 2013년말 용자보조원가총당금 금액을 결산조정분개를 통해 취소하고, 2014년말 용자보조원가총당금 금액을 결산조정으로 반영함.
2. 2014년도에 용자보조원가총당금으로 계상해야할 금액에서 2013년말 용자보조원가총당금을 차감한 순액만을 결산조정분개로 반영함.

✔ 용자보조원가총당금은 재정상태표일 기준으로 용자보조원가총당금 변경액[2014년 용자보조원가총당금-(2013년말 용자보조원가총당금-2013년도 용자보조원가총당금 상각표에 따른 총당금상각액)]을 산출한 후 그 변경액을 용자보조비용에 가감(감한 금액이 음인 경우 그 금액은 용자보조원가총당금환입으로 인식)하는 결산조정 전표를 등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용자 회계처리지침〉

13. (용자보조원가총당금의 변경액 측정) (1) 용자보조원가총당금의 변경 시 용자보조원가총당금의 변경액은 다음의 순서로 산출한다.
 - (가) 평가 시점에 변경된 용자금 순현금유입액을 재추정
 - (나) (가)에서 추정한 순현금유입액을 용자금 실행 시 사용한 유효이자율로 할인
 - (다) 직전 재정상태표일 현재 용자금 원금에서 당 회계연도 현금회수액을 차감하고, (나)에서 구한 순현금유입액의 현재가치를 차감
 - (라) 변경전 용자보조원가총당금 잔액에서 (다)의 금액을 차감하여 용자보조원가총당금 변경액을 산출
- (2) (1)에 따른 용자보조원가총당금 변경액을 당기의 "용자보조비용"에 더하거나 빼다. 이 경우 "용자보조비용"에서 용자보조원가총당금 감소액을 빼 금액이 음인 경우 그 차액을 "용자보조원가총당금환입"으로 인식한다.

I. 정의항목 리스트

II. 회계처리에 관한 질의

III. 디브리엔 업무처리에 관한 질의

IV.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질의

5. 제거(융자금의 매각 및 대손)

Q307 융자금 정상 회수의 경우 융자보조원가충당금의 회계처리

질 의 내 용

만기일시상환조건의 융자금을 실행할 당시 채무불이행이 예상되어 융자보조원가충당금을 설정하였으나 만기가 되었을 때 채무불이행 없이 정상적으로 회수가 된 경우 기존에 인식한 융자보조원가충당금에 대해 어떤 회계처리가 필요한가요?

- ✔ 융자보조원가충당금이 채무불이행 예상액만큼 남아 있게 되므로 융자금 회수 시점의 융자보조원가충당금은 융자보조원가충당금환입으로 회계처리합니다.
 - 예를 들어, 1,000원의 원금상환 불이행이 예상되었던 경우라면, 만기에 융자보조원가충당금 1,000원이 상각되지 않고 남아있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융자금이 정상적으로 회수되었으므로 융자보조원가충당금 잔액 1,000원에 대한 환입이 필요한 것입니다.
- 차) 융자보조원가충당금 1,000 대) 융자보조원가충당금환입 1,000

6. 수익과 비용의 인식

Q308

**용자보조비용(용자보조원가총당금환입), 용자금이자수익의
재정운영표상 표시**

질의내용(1)

용자보조비용(용자보조원가총당금환입)은 프로그램총원가와 관리운영비(프로그램수익과 비배분수익)중 어디에 해당하나요?

- ✓ 용자보조비용 및 용자보조원가총당금환입액은 관련 프로그램에 귀속되므로, 「용자 회계처리지침」 문단 20에 의거 각각 프로그램총원가와 프로그램수익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질의내용(2)

기금이 용자금 재원을 차입하지 않고 자체 재원으로 조달하는 경우, 용자사업에서 발생한 용자 보조비용, 용자금이자수익은 각각 프로그램총원가와 프로그램수익으로 분류되어야 하는지?

- ✓ 용자금 재원의 자체조달 여부와 상관없이 용자보조비용은 「용자 회계처리지침」 문단 20에 따라 프로그램총원가로 분류되어야 하고, 용자금이자수익은 「원가계산에 관한 지침」 문단12에 따라 프로그램 대응 가능한 교환수익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프로그램수익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용자 회계처리지침〉

20. (수익과 비용의 인식) (1) 용자금의 원금에 대한 이자수익은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한다. 다만, 원금이나 이자 등의 회수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현금을 수취하는 시점에 인식한다.
- (2) 용자보조원가총당금과 관련하여 인식한 "용자보조비용"과 "용자보조원가총당금환입"은 각각 프로그램총원가와 프로그램수익에 포함한다.
- (3) 용자사업의 관리에 필요한 신용조사비용, 법률자문비용 등은 "관리운영비"에 포함한다.

〈원가계산에 관한 지침〉

12. (교환수익과 비교환수익의 구분집계) 수익은 교환수익과 비교환수익으로 구분하여 집계되어야 한다.
 - (1) 교환수익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발생하는 수익으로 프로그램 대응여부에 따라 프로그램수익과 비배분수익으로 구분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연도 이전까지 일반회계는 수입대체경비수입에 해당하는 수익만을 프로그램수익으로 구분한다.

7. 재무제표 표시

Q309 융자금의 표시(유동성 대체)

질 의 내 용

융자금을 유동성 대체하는 경우 관련 융자보조원가충당금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융자금은 재정상태표일로부터 상환기일이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 유동성 대체하며, 1년 이내에 도래하는 현금유입액(원금 + 이자) 관련 융자보조원가충당금도 함께 유동성 대체해야 합니다.

〈용자 회계처리지침〉

21. (융자금의 표시) 융자금은 재정상태표일을 기준으로 회수일이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 유동자산의 "단기대여금"으로 분류하고 1년 후에 도래하는 경우 투자자산의 "장기대여금"으로 분류한다. 다만, 재정상태표일 현재 해당 투자자산의 회수일이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유동성대체를 통하여 유동자산의 "단기대여금"으로 재분류한다.

8. 경과조치

Q310 피고용자 대상 용자금의 용자 회계처리지침 적용대상 여부

질 의 내 용

용자 회계처리지침 문단2에 따른 적용범위에 기금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용자도 포함 되나요?

- ✓ **舊** 용자회계준칙 제1조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용자금도 2013년 1월 1일 부터 용자 회계처리지침 적용대상으로 변경되었으므로 기금 근로자 대상 용자금 역시 용자 회계처리지침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용자 회계처리지침〉

실무해설5. 중앙관서 및 기금관리주체에 소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용자금에 대해서는 2013년 1월 1일부터 구「용자회계준칙」을 적용하였다.

Q311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실행된 융자금에 대한 대손추산액의 처리

질 의 내 용

OO기금에서 운영중인 융자사업 중 2009년 이전에 실행되어 12월 31일 현재 회수만 이루어지고 있는 융자사업이 일부 존재합니다. 해당 융자금에 대한 대손추산액은 융자금대손충당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정한가요?

- ✔ 융자 회계처리지침 문단27에 따라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실행된 융자금에 대한 대손추산액은 융자보조원가충당금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참고로 융자금대손충당금은 유효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로 대여한 융자금에 대해 인식한 대손추산액을 의미합니다.

〈융자 회계처리지침〉

27. (융자보조원가충당금 인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예규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실행된 융자금을 대상으로 하여 적용하며, 2009년 12월 31일 이전 실행된 융자금은 신뢰성 있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른 대손추산액을 융자보조원가충당금으로 인식한다.

1. 임대형 민자사업(BTL) 방식의 회계처리

Q312 임대형 민자사업(BTL) 계약변경 시 회계처리**질 의 내 용**

임대형민자사업(BTL)에 대한 계약 조건(기대수익률 및 임대료)이 도중에 변동되는 경우의 회계처리는?

- ✓ 임대형민자사업(BTL)에 대한 계약 조건이 변경된 시점에 변경된 기대수익률 및 임대료를 반영하여 BTL임대료장기미지급금과 BTL임대료장기미지급금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조정해야 합니다.

1. 일반사항

Q313 프로그램에 추적 가능한 행정운영성 경비

질 의 내 용

개별프로그램으로 추적 가능한 피복비 등 경비항목이 관리운영비로 분류되고 있는바 프로그램총원가로 분류할 수 있는지?

- ✓ 원가계산에 관한 지침 문단17에 따라 행정회계는 행정운영성 경비를 모두 관리운영비로 구분하고, 사업회계의 경우에는 사업의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프로그램별로 배부하여야 합니다.
- 행정회계는 징수한 세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공공재를 공급하는 국가의 일반적이고 고유한 행정활동을 하는 회계실체를 말하며, 사업회계는 개별적인 보상관계가 적용되는 독립적인 수익창출활동을 수행하는 회계실체를 말합니다.

〈원가계산에 관한 지침〉

6. (국가회계실체의 구분과 원가계산의 적용) (1) 국가회계실체는 그 활동의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가) 행정형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기업특별회계는 제외한다)와 같이 징수한 세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공공재를 공급하는 국가의 일반적이고 고유한 행정활동을 수행하는 회계실체를 말한다.
 - (나) 사업형 회계는 기업특별회계(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를 포함한다)나 기금과 같이 개별적인 보상관계가 적용되는 독립적인 수익 창출활동을 수행하는 회계실체를 말한다.
17. (행정운영성 경비의 구분) 행정운영성 경비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여 자산취득원가에 계상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국가회계실체별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1) 행정형 회계는 행정운영성 경비를 모두 관리운영비로 구분한다.
 - (2) 사업형 회계는 사업의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나 행정운영성 경비로 일괄적으로 집계되는 경우 간접원가와 관리운영비로 구분하여 간접원가를 프로그램별로 배부하여야 한다.

Q314 기금의 관리운영비 프로그램총원가 계상 여부

질 의 내 용

기금의 관리운영비 중 아래의 업무대행수수료와 행사진행경비를 프로그램총원가로 계상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요?

- 업무대행수수료 내역 : 국채취급수수료와 콜수수료
- 행사진행경비 : 업무협의비

✓ 기금(사업형 회계)의 관리운영비 중 프로그램 운영에 직접적으로 소요된 원가는 간접원가로 구분해 배부기준에 따라 해당 프로그램으로 배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원가계산에 관한 지침〉

17 (행정운영성 경비의 구분) 행정운영성 경비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여 자산취득원가에 계상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국가회계실체별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1) 행정형 회계는 행정운영성 경비를 모두 관리운영비로 구분한다.
- (2) 사업형 회계는 사업의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나 행정운영성 경비로 일괄적으로 집계되는 경우 간접원가와 관리운영비로 구분하여 간접원가를 프로그램별로 배부하여야 한다.

Q315 관서운영경비(프로그램총원가 vs 관리운영비)

질 의 내 용

비용 계정과목 중 적요란에 관서운영경비라고 기록된 비용들이 관리운영비가 아닌 프로그램총원가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올바른 처리인가요?

- ✓ 관서운영경비는 예산을 집행하는 방법 중 하나로 프로그램총원가 및 관리운영비 구분과는 무관합니다. 프로그램총원가와 관리운영비 구분은 회계처리지침 상 정의에 따라 구분합니다.

〈재무제표의 표시와 부속서류의 작성에 관한 지침〉

- 16 (프로그램총원가) 프로그램총원가는 국가회계실체의 프로그램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총원가로 프로그램별로 추적 및 배부가 가능한 원가를 말하며 국가회계실체별로 구성을 달리한다.
19 (관리운영비) 관리운영비는 프로그램의 운영에 직접적으로 소요되지는 않으나 기관의 기본적인 기능수행 및 특정사업의 행정운영과 관련된 인건비와 경비를 말한다.

Q316 프로그램명이 변경된 경우 재정운영표상 표시 방법

질 의 내 용

전년부터 존재하던 프로그램이 올해에는 다른 프로그램으로 명칭이 변경된 경우 재정운영표상 어떻게 표시 하나요?

- ✓ 프로그램명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프로그램으로 전진적으로 반영 합니다.

〈원가계산에 관한 지침〉

- 5 (원가계산의 일반원칙)
(1) 원가는 국가회계실체가 프로그램 예산체계에 따라 집행한 예산을 발생주의의 원칙에 따라 계산한다.

Q317 동일 부처 내 회계실체간 간접원가 배부

질 의 내 용

○○부 △△기금의 경우 재정상태표 상 기타일반유형자산이 3억원 가량에 불과한데도 재정운영표 상 기타일반유형자산수선유지비가 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역을 파악해보니 ○○부 내 타 회계실체가 소유한 자산에 대해서도 △△기금이 수선유지비를 지출한 건이 많았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동 수선유지비를 △△기금이 인식해야 하는지, 아니면 간접원가 배부를 통해 타 회계실체가 인식해야 하는지요?

✓ 원가계산에 관한 지침 상 '부서'란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의미합니다. "부서간 간접원가"의 정의에 부합되는지 확인한 후, 부서간 간접원가에 해당한다면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따라 배부하여야 합니다.

○ 실무적으로 부서간 간접원가의 경우 타 회계실체로 '기타재원조달/기타재원이전' 회계처리를 통해 배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부서간 간접원가 : 특정 부서에서 예산이 집행되어 원가가 발생하였으나 그 경제적 효익은 타 부서에서 가지는 경우, 효익을 제공받은 부서가 원가가 발생한 부서로부터 배부받은 간접원가

〈원가계산에 관한 지침〉

22 (간접원가) (1) 간접원가는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소요되었으나 특정 사업에 직접 부과하는 것이 불가능한 인건비, 지급임차료, 수선유지비 등의 원가를 말하며, 동일 부서의 다른 프로그램에서 발생한 간접원가(이하 "부서내 간접원가"라 한다)와 다른 부서에서 발생한 간접원가(이하 "부서간 간접원가"라 한다)로 구분된다. 간접원가 구분시 사용된 '부서'란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말한다.

Q318 타 부처가 집행하는 예산에 대한 원가 배부

질 의 내 용

○○청 예산 중에는 타부처가 집행하여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 이를 해당 청의 원가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타부처의 원가로 보아야 하는지요?

✔ 원가계산지침 상 "부서간 간접원가"의 정의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특정부서에서 예산이 집행되었으나 그 경제적 효익은 타 부서에서 가지는 경우 등 "부서간 간접원가"에 해당한다면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따라 배부합니다.

○ 실무적으로 부서간 간접원가의 경우 타 회계실체로 '기타재원조달/기타재원이전' 회계처리를 통해 배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부서간 간접원가 : 특정 부서에서 예산이 집행되어 원가가 발생하였으나 그 경제적 효익은 타 부서에서 가지는 경우, 효익을 제공받은 부서가 원가가 발생한 부서로부터 배부받은 간접원가

〈원가계산에 관한 지침〉

22. (간접원가) (1) 간접원가는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소요되었으나 특정 사업에 직접 부과하는 것이 불가능한 인건비, 지급임차료, 수선유지비 등의 원가를 말하며, 동일 부서의 다른 프로그램에서 발생한 간접원가(이하 "부서내 간접원가"라 한다)와 다른 부서에서 발생한 간접원가(이하 "부서간 간접원가"라 한다)로 구분된다. 간접원가 구분시 사용된 '부서'란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말한다.

Q319 일반회계의 프로그램수익**질의내용(1)**

일반회계의 프로그램수익은 수입대체경비수입만 있나요?

질의내용(2)

일반회계에서 발생한 재평가손실환입금액을 프로그램수익으로 계상할 수 있나요?

- ✓ 원가계산지침에 따르면 일반회계는 수입대체경비수입만을 프로그램수익으로 구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일반회계의 프로그램수익은 수입대체경비수입만 존재하며,
 - 재평가손실환입금액은 비배분수익으로 구분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원가계산에 관한 지침〉

12 (교환수익과 비교환수익의 구분집계) 수익은 교환수익과 비교환수익으로 구분하여 집계되어야 한다.

- (1) 교환수익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발생한 수익으로 프로그램대응 여부에 따라 프로그램 수익과 비배분수익으로 구분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연도 이전까지 일반회계는 수입대체경비수입에 해당하는 수익만을 프로그램수익으로 구분한다.

문단제정근거2

일반회계에서 발생하는 수익 중 수입대체경비수입을 제외한 대부분의 항목은 프로그램별로 대응이 어려우므로 프로그램수익의 별도 표시를 유예한다.

2. 비용과 수익의 집계

Q320 비용과 수익의 집계

질 의 내 용

국가회계의 경우 원가 정보를 어느 수준으로 집계하고 공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지?

- ✓ 현행 원가계산에 관한 지침은 프로그램(정책사업) 수준으로 원가를 집계하고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원가 집계 대상은 사업예산의 편성단위에서 통제나 의사결정이 필요하여 원가를 개별적으로 측정할 필요가 있는 단위로 설정하여야 합니다.
 - 다만, 원가계산 시행 초기임을 감안하여 원가 집계 대상은 재정운영표 작성단위인 프로그램으로 통일적으로 적용하였습니다.

〈원가계산에 관한 지침〉

9. (원가 집계 대상의 설정) (1) 원가 집계 대상은 사업예산의 편성단위에서 통제나 의사결정이 필요하여 원가를 개별적으로 측정할 필요가 있는 단위로 설정하여야 한다.
- (2) 각 중앙관서의 장은 사업관리자, 예산편성 관계자 등 정보이용자의 요구에 의해 주요 사업의 원가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원가 집계 대상에 따라 원가를 산출하여 관리하되, 재정운영표에는 프로그램별로 총원가와 순원가를 표시하여야 한다.

실무해설2. 원가계산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원가 집계 대상은 재정운영표 작성단위인 프로그램으로 통일적으로 적용한다. 다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이외의 시스템을 사용하는 기관은 원가계산 목적에 따라 별도의 원가 집계 대상을 설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향후 원가계산 제도가 정착된 이후에 자원의 효율적 활용여부 평가, 원가회수율 파악을 통한 사업성과 측정 등 국가회계실체가 통제나 의사결정을 위해 개별 측정이 필요한 단위로 원가집계대상을 설정할 수 있다.

Q321

일반회계에서 운영하는 병원의 수익구분(프로그램수익인지 또는 비배분수익인지)

질 의 내 용

○○부의 일반회계에서 운영중인 병원의 수입은 프로그램수익인지?

- ✓ 일반회계의 경우 수입대체경비수입만을 프로그램수익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로 운영되는 병원의 수입이 수입대체경비수입에 해당한다면 프로그램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원가계산에 관한 지침〉

12.(교환수익과 비교환수익의 구분집계) 수익은 교환수익과 비교환수익으로 구분하여 집계되어야 한다.

- (1) 교환수익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발생하는 수익으로 프로그램 대응여부에 따라 프로그램수익과 비배분수익으로 구분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연도 이전까지 일반회계는 수입대체경비수입에 해당하는 수익만을 프로그램수익으로 구분한다.

Q322 잡이익의 프로그램수익 분류 가능 여부

질 의 내 용

건물 임대애 따라 발생한 잡이익을 프로그램수익으로 분류할 수 있나요?

- ✔ 재화·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발생한 수익은 프로그램 대응 여부에 따라 프로그램수익과 비배분수익으로 구분됩니다.
- 잡이익의 경우 비배분수익의 대표적 예이긴 하나 프로그램에 대응될 수 있다면 프로그램수익으로 분류 가능합니다.

〈원가계산에 관한 지침〉

12. (교환수익과 비교환수익의 구분집계) 수익은 교환수익과 비교환수익으로 구분하여 집계되어야 한다.
- (1) 교환수익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발생하는 수익으로 프로그램 대응여부에 따라 프로그램수익과 비배분수익으로 구분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연도 이전까지 일반회계는 수입대체경비수입에 해당하는 수익만을 프로그램수익으로 구분한다.
 - (2) 비교환수익은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발생하는 수익을 말하며, 행정형 회계의 비교환수익은 순자산변동표의 "재원의조달및이전"으로 표시하고, 사업형 회계의 비교환수익은 재정운영표의 "비교환수익 등"으로 표시한다.
 - (3) 프로그램수익에는 다음 항목이 포함될 수 있다.
 - (가) 재화 및 용역제공수익(면허료 및 수수료, 용수수입, 입학금 및 수업료, 항공·항만 및 용수 수입, 병원수입 등을 포함한다)
 - (나) 연금수익
 - (다) 보험수익 및 보증수익
 - (라) 수입대체경비수입에 해당하는 수익 등

Q323 지원받는 기관의 운영비에 해당하는 보조비 원가구분

질 의 내 용

기금에서 미술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조비가 지원받는 기관의 '운영비'에 해당하므로 기금의 관리운영비로 계상하여야 하나요? 관리운영비가 아니라면 비배분비용에 해당하나요?

- ✓ 관리운영비는 회계실체의 기본적인 기능수행 및 특정 사업의 행정운영과 관련한 인건비와 경비를 뜻하므로 공공기관 또는 민간에 대한 보조비는 비록 그 지원받는 기관의 '운영비'라 하더라도 재정운영표 상 관리운영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하는 프로그램원가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 대부분의 회계실체에서 기관의 운영비 지원 예산을 회계실체의 행정지원프로그램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오류로 차기 예산 편성 시 일반 사업프로그램의 단위사업으로 편성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비배분비용은 프로그램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프로그램에 배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비용을 의미하므로 동 비용을 비배분비용으로 분류하는 것 역시 적절하지 않습니다.

<원가계산에 관한 지침>

20 (관리운영비)

- (1) 관리운영비는 프로그램의 운영에 직접적으로 소요되지는 않으나 기관의 기본적인 기능수행 및 특정 사업의 행정운영과 관련한 인건비와 경비를 말한다.
- (2) 기업특별회계(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를 포함)나 기금의 경우에는 그 기관의 기능수행을 위한 관리업무비를 말한다.

13 (비배분비용)

- (1) 비배분비용은 국가회계실체가 투입한 비용 중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프로그램에 배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비용을 말한다.

Q324 정부내전대차관이자수익(프로그램수익 vs 비배분수익)

질 의 내 용

정부내전대차관이자수익을 비배분수익으로 계상하여야 하는지, 프로그램수익으로 계상하여야 하는지요?

- ✓ 내부거래지출 및 보전지출은 비배분비용이나 비배분수익으로 구분하도록 하고 있지만, 해당 지출이 당해 회계실체의 주된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에 따라 프로그램총원가와 프로그램수익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따라서 정부내전대차관이자수익이 회계실체의 주된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인 경우 프로그램수익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원가계산에 관한 지침〉

15 (내부거래지출과 보전지출)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에 따른 내부거래지출과 보전지출은 다음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비배분비용과 비배분수익으로 구분한다.

- (1) 내부거래지출과 보전지출이 당해 회계실체의 주된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에 따라 프로그램총원가와 프로그램수익으로 구분할 수 있다.
- (2) 내부거래지출과 보전지출로 집계된 공무원연금부담금, 군인연금부담금, 건강보험국가부담금은 복리후생비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프로그램총원가 또는 관리운영비로 구분할 수 있다.

Q325

여유자금운용프로그램에서 발생한 장기투자증권처분손실 (프로그램총원가 vs 비배분비용)

질 의 내 용

여유자금운용 과정에서 장기투자증권처분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여유자금운용 프로그램에서 발생하였으니 프로그램총원가에 반영해야 하는지 아니면 프로그램과 관련없는 비용으로 보아 비배분비용으로 구분해야 하는지요?

- ✓ 원가계산지침에 따르면 보전지출은 비배분수익과 비배분비용으로 구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여유자금운영프로그램은 보전지출에 해당하므로, 해당 프로그램에서 발생한 장기투자증권처분손실은 비배분비용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원가계산에 관한 지침〉

15 (내부거래지출과 보전지출)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에 따른 내부거래지출과 보전지출은 다음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비배분비용과 비배분수익으로 구분한다.

- (1) 내부거래지출과 보전지출이 당해 회계실체의 주된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에 따라 프로그램총원가와 프로그램수익으로 구분할 수 있다.
 - (2) 내부거래지출과 보전지출로 집계된 공무원연금부담금, 군인연금부담금, 건강보험국가부담금은 복리후생비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프로그램총원가 또는 관리운영비로 구분할 수 있다.
- 실무해설12.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에 의하여 내부거래지출과 보전지출은 프로그램 및 단위사업이 아니지만 코드처리를 위하여 프로그램 및 단위사업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어 비배분비용으로 구분하도록 규정하였다.

보전지출의 예시: 여유자금운용, 차입금원금상환

Q326 이자수익(프로그램수익 vs 비배분수익)

질 의 내 용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이자수익을 프로그램수익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요?

- ✔ 외환관리, 자금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계실체의 경우 이자수익을 프로그램수익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자산의 취득과 관리, 처분, 외환관리, 자금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계실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처에서 판단하셔야 합니다.

〈원가계산에 관한 지침〉

14 (비배분수익)

- (1) 비배분수익은 국가회계실체에서 발생한 수익 중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이 없거나 특정 프로그램으로 추적하는 것이 불가능한 수익을 말한다.
 - (2) 비배분수익에는 다음 항목이 포함될 수 있다. (가) 이자수익
 - (3) (2)에 해당하는 수익 항목이라 하더라도 자산의 취득과 관리, 처분, 외환관리, 자금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계실체의 경우에는 프로그램수익으로 구분할 수 있다.
-

Q327 금융리스이자비용(프로그램총원가 vs 비배분비용)

질 의 내 용

디브레인 시스템 상 금융리스이자비용이 '14회계연도까지는 프로그램총원가로 분류되었는데, '15회계연도부터는 비배분비용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금융리스이자비용은 무조건 비배분비용으로 분류해야 하는 건가요?

- ✓ 이자비용이라 하더라도 특정 프로그램과 대응되는 원가인 경우 해당 비용을 프로그램총원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다만 '15회계연도에 해당 프로그램이 종료되었다면, 종료된 프로그램에 귀속되는 비용은 비배분비용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원가계산에 관한 지침>

13 (비배분비용)

- (1) 비배분비용은 국가회계실체가 투입한 비용 중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프로그램에 배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비용을 말한다.
 - (2) 비배분비용에는 다음 항목이 포함될 수 있다. (라)이자비용
 - (3) (2)에 해당하는 비용 항목이라 하더라도 자산의 취득과 관리, 처분, 외환관리, 자금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회계실체의 경우에는 프로그램총원가로 구분할 수 있다.
- 실무해설8. 집계된 비용 중 특정프로그램으로 대응되지 않거나 특정 프로그램에 배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비용은 비배분비용으로 구분한다. 종료된 프로그램에 귀속되는 비용도 비배분비용으로 구분한다.

3. 비배분비용과 비배분수익의 구분

Q328 폐지된 프로그램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 프로그램원가 계상 여부

질 의 내 용

폐지된 용자프로그램 관련하여 상황이 계속 남아있는 상태에서 관련 수익과 비용을 프로그램원가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지요?

- ✔ 원가계산에 관한 지침에 의하여 종료·폐지된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은 비배분수익과 비배분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원가계산에 관한 지침〉

실무해설8. 종료된 프로그램에 귀속되는 비용도 비배분비용으로 구분한다.

실무해설10. 종료된 프로그램에 귀속되는 수익은 비배분수익으로 구분한다.

Q329 자산재평가손실, 외화평가손실 및 감가상각비의 원가구분

질 의 내 용(1)

자산과 관련해서 자산재평가손실과 감가상각비가 모두 비배분비용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회계처리가 적절한가요?

질 의 내 용(2)

외화평가손실은 무조건 비배분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하나요?

- ✔ 자산재평가손실과 외화평가손실은 사업의 수행에 따라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대응되는 프로그램이 존재하더라도 비배분비용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 다만, 자산의 취득과 관리, 처분, 외환관리, 자금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회계실체의 경우에는 프로그램총원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 그러나, 감가상각비의 경우 해당 자산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존재하는 경우 프로그램원가로 구분해야 합니다. 이때, 대응되는 프로그램이 행정지원프로그램이라면 관리운영비로 구분됩니다.
- 대응되는 프로그램이 존재하지 않거나 프로그램과 대응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만 비배분비용으로 구분합니다.

질의내용(3)

기금 설립 당시 취득했던 자산에 대해 발생한 감가상각비를 전기까지 비배분비용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감가상각비를 비배분비용으로 인식해도 되는지요?

- ✓ 프로그램에서 사용중인 자산에서 발생한 감가상각비임에도 불구하고 취득 당시 프로그램 등록을 누락하여 비배분비용으로 계상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현재 자산을 사용중인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확인 후 프로그램과의 관련성에 따라 프로그램총원가나 관리운영비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원가계산에 관한 지침>

13 (비배분비용)

- (1) 비배분비용은 국가회계실체가 투입한 비용 중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프로그램에 배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비용을 말한다.
- (2) 비배분비용에는 다음 항목이 포함될 수 있다. (가) 평가손실
- (3) (2)에 해당하는 비용 항목이더라도 자산의 취득과 관리, 처분, 외환관리, 자금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회계실체의 경우에는 프로그램총원가로 구분할 수 있다.

Q330 국고금운용수익계정에서 발생하는 손익의 재무제표 표시

질 의 내 용

국고금운용수익계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비용 등 손익은 재정운영표 상 비배분비용 또는 수익으로 표시되는 것이 적절한가요?

- ✓ 국고금운용수익계정에서 발생하는 손익의 경우 국가회계실체 또는 중앙관서 재정운영표에 표시되지 않으며, 국가재정운영표상 기획재정부의 재정운영순원가에 표시됩니다.
- 국고금 운용과 관련된 수익과 비용은 중앙관서의 특정 프로그램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원가계산에 관한 지침 문단13과 14에 따라 비배분수익과 비배분비용으로 분류합니다.

〈원가계산에 관한 지침〉

13. (비배분비용) (1) 비배분비용은 국가회계실체가 투입한 비용 중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프로그램에 배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비용을 말한다.
(2) 비배분비용에는 다음 항목이 포함될 수 있다.
 - (가) 평가손실
 - (나) 자산감액손실
 - (다) 자산처분손실
 - (라) 이자비용
 - (마) 기타비용 등(3) (2)에 해당하는 비용 항목이라 하더라도 자산의 취득과 관리, 처분, 외환관리, 자금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회계실체의 경우에는 프로그램총원가로 구분할 수 있다.
14. (비배분수익) (1) 비배분수익은 국가회계실체에서 발생한 수익 중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이 없거나 특정 프로그램으로 추적하는 것이 불가능한 수익을 말한다.
(2) 비배분수익에는 다음 항목이 포함될 수 있다.
 - (가) 이자수익
 - (나) 평가이익
 - (다) 감액손실환입
 - (라) 자산처분이익 등(3) (2)에 해당하는 수익 항목이라 하더라도 자산의 취득과 관리, 처분, 외환관리, 자금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계실체의 경우에는 프로그램수익으로 구분할 수 있다.

Q331 재평가손실의 재정운영표상 표시

질 의 내 용

재평가손실이 비배분비용으로 분류되는 것이 타당한가요?

- ✓ 원가계산에 관한 지침 문단13.(1)에 따라 재평가손실이 발생한 자산을 특정 프로그램에 대응시킬 수 없는 등 재평가손실을 특정 프로그램에 배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비배분비용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원가계산에 관한 지침〉

13. (비배분비용) (1) 비배분비용은 국가회계실체가 투입한 비용 중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프로그램에 배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비용을 말한다.
- (2) 비배분비용에는 다음 항목이 포함될 수 있다.
- (가) 평가손실
 - (나) 자산감액손실
 - (다) 자산처분손실
 - (라) 이자비용
 - (마) 기타비용 등
- (3) (2)에 해당하는 비용 항목이라 하더라도 자산의 취득과 관리, 처분, 외환관리, 자금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회계실체의 경우에는 프로그램총원가로 구분할 수 있다.

Q332 건물 감가상각비의 재정운영표상 구분

질 의 내 용

무상으로 취득한 건물을 이용한 부수적인 사업으로서 임대수익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비배분수익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동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관리운영비와 비배분비용 중 어떤 항목으로 구분해야 하나요?

- ✓ 해당 건물의 감가상각비가 프로그램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프로그램에 배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면 비배분비용으로 구분합니다.
- 건물이 기관의 기본적인 기능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수익 인식과 무관하게 관리운영비로도 회계처리 가능합니다.

〈원가계산에 관한 지침〉

13. (비배분비용) (1) 비배분비용은 국가회계실체가 투입한 비용 중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프로그램에 배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비용을 말한다.
(2) 비배분비용에는 다음 항목이 포함될 수 있다.
 - (가) 평가손실
 - (나) 자산감액손실
 - (다) 자산처분손실
 - (라) 이자비용
 - (마) 기타비용 등(3) (2)에 해당하는 비용 항목이라 하더라도 자산의 취득과 관리, 처분, 외환관리, 자금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회계실체의 경우에는 프로그램총원가로 구분할 수 있다.
20. (관리운영비) (1) 관리운영비는 프로그램의 운영에 직접적으로 소요되지는 않으나 기관의 기본적인 기능수행 및 특정 사업의 행정운영과 관련한 인건비와 경비를 말한다.
(2) 기업특별회계(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를 포함한다)나 기금의 경우에는 그 기관의 기능수행을 위한 관리업무비를 말한다.

Q333 비배분비용과 비배분수익의 구분

질 의 내 용

OO부의 'X2회계연도 재정운영표를 보니 비배분비용 항목에 인건비, 복리후생비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음.

이러한 비용 계정과목들은 관리운영비로 볼 수 있는 항목으로 사료되는데 원가계산에 관한 지침 상 관리운영비와 비배분비용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이 있는지?

- ✓ 원가계산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계정과목(인건비, 복리후생비 등)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비배분비용과 관리운영비 정의에 따라 구분하고 있습니다.
- 비배분비용은 특정 프로그램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특정 프로그램에 배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비용이며,
 - 관리운영비는 프로그램의 운영에 직접적으로 소요되지는 않으나 기관의 기본적인 기능수행 및 특정 사업의 행정운영과 관련한 인건비와 경비를 말합니다.

〈원가계산에 관한 지침〉

13. (비배분비용) (1) 비배분비용은 국가회계실체가 투입한 비용 중 프로그램 이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프로그램에 배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비용을 말한다.
20. (관리운영비) (1) 관리운영비는 프로그램의 운영에 직접적으로 소요되지는 않으나 기관의 기본적인 기능수행 및 특정 사업의 행정운영과 관련한 인건비와 경비를 말한다.
- 실무해설8. 집계된 비용 중 특정프로그램으로 대응되지 않거나 특정 프로그램에 배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비용은 비배분비용으로 구분한다. 종료된 프로그램에 귀속되는 비용도 비배분비용으로 구분한다.

Q334 중앙관서 용자프로그램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의 구분

질 의 내 용

용자프로그램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은 프로그램수익과 비배분수익 중 어느 것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 ✔ 원가계산에 관한 지침 문단14에 따라 비배분수익은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이 없거나 특정 프로그램으로 추적하는 것이 불가능한 수익을 말합니다.
- 용자프로그램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은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이 있고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총원가에서 차감하는 프로그램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원가계산에 관한 지침〉

14. (비배분수익) (1) 비배분수익은 국가회계실체에서 발생한 수익 중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이 없거나 특정 프로그램으로 추적하는 것이 불가능한 수익을 말한다.

Q335 자산폐기손실의 원가 구분

질 의 내 용

자산폐기손실은 재정운영표에서 프로그램총원가, 관리운영비, 비배분비용 중 어느 쪽으로 분류하는 것이 맞는지?

- ✔ 비배분비용은 국가회계실체가 투입한 비용 중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프로그램에 배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비용을 의미합니다.
- 자산폐기손실이 프로그램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면 프로그램총원가로 관련이 없다면 비배분비용으로 분류하여야 합니다.

〈원가계산에 관한 지침〉

13. (비배분비용) (1) 비배분비용은 국가회계실체가 투입한 비용 중 프로그램 이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프로그램에 배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비용을 말한다.

4. 관리운영비와 간접원가의 구분

Q336 프로그램이 있는 사업의 인건비 회계처리

질 의 내 용

OO부에는 '급여정책프로그램'이 존재하여 인건비를 집행하고 있는데, 인건비를 프로그램이 있음에도 관리운영비로 집계해야 하는 지 여부

- ✓ 관리운영비는 프로그램의 운영에 직접적으로 소요되지는 않으나 기관의 기본적인 기능 수행 및 특정 사업의 행정운영과 관련한 인건비와 경비를 말합니다.
- 따라서 프로그램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배부하는 것이 적절한 인건비는 프로그램원가로 집계되어야 합니다.
- 다만, 급여정책 프로그램총원가로 모든 프로그램의 인건비가 집계되는 것이 아니라 각 프로그램 수행에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인건비가 집계되는 것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원가계산에 관한 지침〉

20. (관리운영비) (1) 관리운영비는 프로그램의 운영에 직접적으로 소요되지는 않으나 기관의 기본적인 기능수행 및 특정 사업의 행정운영과 관련한 인건비와 경비를 말한다.

1. 적용범위

Q337 국고금 회계처리지침의 적용 대상

질 의 내 용

기업특별회계 및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순자산변동표 조회 결과, 국고수입이나 국고이 전지출 등의 계정과목이 나타나지 않음을 발견했습니다. 기존 국가회계기준센터에서 발간한 교육자료를 보면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50조의2의 적용을 받는 회계실체의 경우 국고금을 통합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의 회계실체 종류와 같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 올바른가요?

- ✔ 특별회계 중 기업특별회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우체국보험특별회계의 경우 국고금 회계처리지침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50조의2는 국고금의 효율적 운용을 목적으로 하는 자금관리 측면의 규정으로 국고금회계처리 적용 여부와는 별개입니다.

〈국고금 회계처리지침〉

2. (적용범위) 이 예규는 국고금의 분류와 재무제표 표시,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우체국보험특별회계는 제외한다)의 국고금을 통합관리하는 국고금회계의 회계처리 및 국고금회계의 국가 재무제표 반영 등에 적용한다.
6. (국고금회계가 적용되지 않는 국가회계실체의 국고금) 기업특별회계(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를 포함한다), 우체국보험특별회계,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는 기금의 국고금은 해당 국가회계실체와 중앙관서의 재정상태표에 표시한다.

2. 국고금의 수납

Q338 10원 미만 수입금의 처리

질 의 내 용

국고금 징수 시 원단위 계산을 어떻게 처리하나요?

✓ 국고금 징수 시 원단위는 절사하여 회계처리 합니다.

〈국고금 관리법〉

제47조(국고금의 끝수 계산) ① 국고금의 수입 또는 지출에서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그 끝수는 계산하지 아니하고, 잔액이 10원 미만일 때에도 그 잔액을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후략)

〈국고금 회계처리지침〉

실무해설8. 관서운영경비의 경우 남은 잔액을 국고금회계로 반납하게 되므로, 기말시점에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우체국보험특별회계는 제외한다)에서는 "국고예금"의 잔액이 남아있지 않게 된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국고금 끝수 계산'에 따라 "국고예금"의 잔액이 나타날 수 있다.

3. 국고금의 지출

Q339 예산집행과정과 회계처리 시점의 관계

질 의 내 용

국고금과 관련된 회계처리는 자금배정과 예산집행 중 어느 시점에 이루어지나요?

- ✓ 국가회계에서 회계처리는 거래 발생 시 이루어지므로 국고금과 관련된 회계처리는 예산 집행 시 이루어집니다.
- 국고금 회계처리지침은 문단9와 실무해설7을 통해 연간 예산배정 및 월별세부자금계획 등을 통한 자금 배정시 회계처리하지 아니하고 실제 예산의 집행(지출)시 지출에 대한 회계처리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고금 회계처리지침〉

9. (세출예산지출액)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 자산의 취득, 부채의 상환 등의 사유로 국고금을 지출하는 경우 국고금회계는 "한국은행국가예금"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세출예산지출액"으로 처리하고,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우체국보험특별회계는 제외한다)는 "국고수입"으로 처리하는 동시에 재무제표에 관련 비용을 인식하거나 자산의 증가, 부채의 감소로 반영한다.

실무해설7. 정부는 각 정부부처의 연간 예산배정에 대하여 국회의 승인을 득한 후, 기획재정부의 승인 하에 월별자금계획 및 월별세부자금계획 등을 통하여 자금을 배정한다. 실제 자금의 집행은 개별지출관의 요구에 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한국은행 본점의 국고금 계좌에서 채권자의 예금계좌로 입금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재무제표에는 연간 예산배정 및 월별세부자금계획 등을 통한 자금 배정시 회계처리하지 아니하고 실제 예산의 집행(지출)시 회계처리를 실시한다.

Q340 국고수입과 국고이전지출의 정의**질 의 내 용**

OO특별회계(기타특별회계) 순자산변동표에 표시되어 있는 국고수입과 국고이전지출 계정과목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 ✓ 특별회계 중 기업특별회계와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우체국보험특별회계를 제외한 나머지 특별회계는 국고금 회계처리지침에 따라 국고금 회계처리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 국고수입은 일반회계와 상기의 특별회계에서 배정받은 예산을 집행하여 실제 사용한 국고금 금액을 의미하며, 국고이전지출은 해당 국가회계실체의 수익 중 수납 후 국고금회계로 이전된 수입금을 의미합니다.

〈국고금 회계처리지침〉

8. (국세 이외의 수입금의 수납)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 부담금 등의 수납, 자산처분, 차입 등의 사유로 국고금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우체국 보험특별회계는 제외한다)는 재무제표에 관련 수익을 인식하거나 자산의 감소, 부채의 증가로 반영하는 동시에 "국고이전지출"로 처리하고, 국고금회계는 "국고이전수입"으로 처리하는 동시에 "한국은행국가예금"을 증가시킨다.
9. (세출예산지출액)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 자산의 취득, 부채의 상환 등의 사유로 국고금을 지출하는 경우 국고금회계는 "한국은행국가예금"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세출예산지출액"으로 처리하고,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우체국보험특별회계는 제외한다)는 "국고수입"으로 처리하는 동시에 재무제표에 관련 비용을 인식하거나 자산의 증가, 부채의 감소로 반영한다.

Q341 기말 결산 시 국고예금 잔액이 있을 경우 오류여부

질 의 내 용

재무장부에 국고예금 금액이 일부 존재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국고예금 금액을 '0'으로 맞추어야 하나요?

- ✔ 원단위 절사로 인한 국고예금 잔액은 재무장부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매 회계연도 말 현재 국고예금 통장 잔액이 재무장부의 국고예금 잔액으로 계상되어야 합니다.

〈국고금 회계처리지침〉

실무해설8. 관서운영경비의 경우 남은 잔액을 국고금회계로반납하게 되므로, 기말시점에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우체국보험특별회계는제외한다)에서는 "국고예금"의 잔액이 남아있지 않게 된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국고금 끝수 계산'에 따라 "국고예금"의 잔액이 나타날 수 있다.

4. 수입금의 반환

Q342 과오납반환금의 회계처리

질 의 내 용

전기발생한 수입금의 과오납금 반환 건이 차)전기과오납반환금 대) 국고이전지출로 회계 처리되어 있는데, 과오납반환 결의를 통한 전기과오납반환금의 경우 '국고이전지출' 이 아닌 '국고수입'으로 처리하는 것이 올바른가요?

- ✓ 과오납반환 결의를 통해 전기과오납금을 반환하는 경우 당기세입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해야 합니다. 따라서 국고이전지출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1. 세입·세출외거래의 회계처리

Q343 현물출자 시 취득한 유가증권의 취득원가**질 의 내 용**

현물출자로 취득한 유가증권의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 ✓ 현물출자로 취득한 유가증권의 가액은 유가증권의 공정가액과 취득부대비용을 합친 금액을 취득원가로 합니다.

〈세입·세출외거래 회계처리지침〉

8. (세입·세출예산외거래) 세입·세출예산외거래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2) 현물출자는 세입·세출에는 반영되지 않으나 해당 자산의 감소와 유가증권의 취득으로 회계처리 한다. 이 경우 취득한 유가증권의 취득원가는 유가증권의 공정가액과 취득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적용사례2. 20X9년 1월 1일 ○○부처 ○○회계는 보유하는 건물(장부가액: 1억원)을 xx기업에 현물출자하여 유가증권(공정가액: 1.5억원)을 취득하였다. 동 유가증권은 장기간 보유 목적이다. 현물출자와 관련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차) 장기투자증권-지분증권 150,000,000 대) 건 물 100,000,000
유형자산처분이익 50,000,000

1. 전기오류수정

Q344 재무제표 오류 수정시 적절한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표시 방법

질의 내용

토지를 감가상각대상자산(구축물)으로 분류 변경하면서 전기이전까지 발생한 감가상각비 효과를 회계변경누적효과로 반영하였습니다. 적절한 회계처리인가요?

- ✔ 구축물을 토지로 잘못 분류하여 수정하는 것은 전기오류수정에 해당합니다.(문단3)
- 따라서 전기 이전까지 인식하였어야 할 감가상각비는 '회계변경누적효과'가 아닌 '전기오류수정손실'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중대한 오류로 판단되는 경우 순자산변동표 상 기초순자산에 '전기오류수정손실'을 반영하고 전기재무제표도 재작성합니다.(문단8)
 - 중대한 오류가 아닌 경우에는 재정운영표에 '전기오류수정손실'을 반영합니다.(문단9)
 - 또한 전기오류수정 사항은 주석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중대한 오류로 판단한 경우에는 중대한 오류로 판단한 근거, 비교표시재무제표의 수정금액 및 비교재무제표가 다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추가로 주석 공시하여야 합니다.(문단11)

〈회계정책·회계추정의 변경과 오류수정에 관한 지침〉

- 3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4) "전기오류수정"이란 전 회계연도 또는 그 전 기간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발생하였던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합당하지 아니한 회계처리를 당 회계연도에 발견하여 이를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자산의 증가, 부채의 감소 또는 순자산의 증가를 발생시키는 전기오류수정 사항은 전기오류수정이익이라 하며, 자산의 감소, 부채의 증가 또는 순자산의 감소를 발생시키는 전기오류수정 사항은 전기오류수정손실이라 한다.

- 8 (중대한 전기오류수정) 전기오류수정이 중대한 경우 다음의 방법으로 소급하여 재작성하며, 전기오류수정 효과를 발견한 회계연도 순자산변동표 상 기초순자산의 "전기오류수정손익"에 반영한다.
- (1) 오류가 전 회계연도에 발생한 경우에는 비교표시되는 전기재무제표의 해당정보를 재작성한다.
 - (2) 오류가 전 회계연도 이전에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전기오류수정효과는 비교표시되는 전기재무제표의 자산, 부채 및 순자산변동표 상 기초순자산금액을 재작성한다.
- 9 (중대하지 않은 전기오류수정) 전기오류수정이 중대하지 않은 경우 오류를 발견한 회계연도의 재정운영표 상 "전기오류수정이익" 또는 "전기오류수정손실"에 반영한다. 다만, 재정운영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오류수정의 경우에는 발견한 회계연도의 재정상태표 또는 순자산변동표에 직접 반영한다.
- 11 (전기오류수정의 주식사항) 전기오류수정의 사항은 주식으로 표시하되, 문단8에 따른 중대한 전기오류수정의 경우 다음 항목을 주식에 추가한다.
- (1) 중대한 오류로 판단한 근거
 - (2) 비교재무제표가 표시된 과거회계기간에 대한 수정금액
 - (3) 비교재무제표가 재작성되었다는 사실

질의내용(2)

취득일이 2011년 이전인 누락자산의 등재에 따라 감가상각을 수행하면서 전기오류수정손실이 과다하게 발생하였습니다. 올바른 회계처리인가요?

- ✔ 전기 이전 누락자산 등재 시 전년도 이전 감가상각분에 대해서는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다만 결산담당자는 전기오류수정손실금액이 중요한 경우 재무제표 재작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질의내용(3)

전기에 총기류 등 치안유지자산을 구입할 때 수수료나 비품구입비 등으로 처리한 경우 어떻게 회계처리하여야 하나요?

- ✔ 전기에 비용 처리한 자산을 당기에 수정하여 자산으로 인식하는 경우 전기까지 발생한 감가상각비 등을 고려하여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인식하여야 합니다.

질의내용(4)

감사원지적사항으로 전기이전에 인식하여야 할 부채를 당기에 계상하면서 '기타의기타순자산의감소'로 처리하였습니다.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처리해야하는건 아닌지요?

- ✔ 전기오류수정에 해당하므로 '기타의기타순자산의감소'가 아닌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질의내용(5)

연기금풀(채권형)투자수익을 전기까지 재정운영표상 기타평가이익으로 잘못 구분하던 것을 당기에 순자산변동표 상 투자증권평가이익으로 수정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전기오류수정손실을 순자산변동표와 재정운영표 중 어디에 표시하여야 하나요?

- ✔ 동 오류를 중대한 오류로 보는지에 따라 회계처리가 달라집니다. 중대한 오류로 보는 경우 순자산변동 과목으로 처리하고 전기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여야 하며, 중대하지 않은 오류로 보는 경우 재정운영표 과목으로 처리합니다.

질의내용(6)

2013회계연도 결산 시 정산관련 담당자오류로 사업비를 과소계상하고, 미수금을 과대계상하였습니다. 2014회계연도에 어떻게 회계처리하여야 하나요?

- ✔ '전기오류수정손실'로 회계처리하고 해당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합니다. 단, 해당 오류가 중대한 경우 전기재무제표를 재작성하여야 합니다.

질의내용(7)

○○기금과 타 부처에서 하나의 토지에 대하여 공동소유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기금에서 토지 전체를 자산으로 계상하는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토지 장부가액을 감소시키며 상대계정으로 자산감액손실이 타당한가요, 전기오류수정손실이 타당한가요?

- ✔ 토지를 과대 계상한 오류를 수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액손실'이 아닌 '전기오류수정손실'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질의 내용(8)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퇴직급여충당부채와 퇴직보험 예치금 계정이 존재합니다. 어떻게 수정해야 하나요?

-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당해 회계기간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기여금)을 퇴직급여(비용)로 인식하고, 퇴직연금운용자산 및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전기말 퇴직급여충당부채 잔액과 퇴직보험예치금은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계정과목해설서〉

IV. 장기충당부채

3. 계정과목 회계처리 유의사항

- ② 퇴직급여충당부채의 산출 및 재무제표 표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 (1)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efined Contribution Plan):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란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고,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는 적립금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퇴직연금제도
- (2)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efined Benefit Plan):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가 지급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
- (3) 확정기여형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차이점
 - ① 확정기여형 제도의 경우 사용자는 부담금을 납부하고 부채를 인식하지 않으며, 확정급여형 제도의 경우 사용자가 약정급여를 부채로 인식하고 퇴직연금운용자산도 인식함
 - ② 확정기여형의 경우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른 효과를 근로자가 부담하며, 확정 급여형의 경우 운용실적에 따라 사용자가 추가의무를 부담할 수 있음

Q345 누락된 자산의 재평가 회계처리**질 의 내 용**

등재가 누락되어 재평가되지 않은 자산의 경우 자산재평가손익을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 ✓ 전기에 누락된 자산을 당기에 발견하여 자산 인식 및 재평가를 수행하는 경우 전기오류수정으로 회계처리합니다.
- 전기오류가 중대한 경우 비교표시되는 전기재무제표를 재작성해야 하므로 재평가로 인한 효과는 '재평가손익'으로 표시됩니다.
 - 전기오류가 중대하지 않은 경우 재평가손실이 발생하였다면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재평가이익이 발생하였다면 재정운영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재평가이익'으로 표시됩니다.

〈회계정책·회계추정의 변경과 오류수정에 관한 지침〉

8. (중대한 전기오류수정) 전기오류수정이 중대한 경우 다음의 방법으로 소급하여 재작성하며, 전기오류수정 효과를 오류를 발견한 회계연도 순자산변동표상 기초순자산의 "전기오류수정손익"에 반영한다.
- (1) 오류가 전 회계연도에 발생한 경우에는 비교표시되는 전기재무제표의 해당 재무정보를 재작성한다.
 - (2) 오류가 전 회계연도 이전에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전기오류수정효과는 비교표시되는 전기재무제표의 자산, 부채 및 순자산변동표 상 기초순자산 금액을 재작성한다.
9. (중대하지 않은 전기오류수정) 전기오류수정이 중대하지 않은 경우 오류를 발견한 회계연도의 재정운영표상 "전기오류수정이익" 또는 "전기오류수정손실"에 반영한다. 다만, 재정운영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오류수정의 경우에는 발견한 회계연도의 재정상태표 또는 순자산변동표에 직접 반영한다.

Q346 전기 재평가 자산의 재평가 금액에 오류가 있는 경우

질 의 내 용

전기에 재평가한 자산의 가액에 오류가 있는 경우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하는지?

- ✔ (전기오류수정이 중대한 경우) 전기오류수정이 중대한 경우 소급하여 재작성하며, 전기오류수정 효과를 오류를 발견한 회계연도 순자산변동표 상 기초순자산의 '전기오류수정 손익'에 반영합니다.
- ✔ (전기오류수정이 중대하지 않은 경우) 오류를 발견한 회계연도의 재정운영표상 '전기오류수정 손익'에 반영합니다.
 - 다만, 재정운영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오류수정의 경우에는 발견한 회계연도의 재정상태표 또는 순자산변동표에 직접 반영합니다.

〈회계정책·회계추정의 변경과 오류수정에 관한 지침〉

8. (중대한 전기오류수정) 전기오류수정이 중대한 경우 다음의 방법으로 소급하여 재작성하며, 전기오류수정 효과를 오류를 발견한 회계연도 순자산변동표상 기초순자산의 "전기오류수정 손익"에 반영한다.
 9. (중대하지 않은 전기오류수정) 전기오류수정이 중대하지 않은 경우 오류를 발견한 회계연도의 재정운영표상 "전기오류수정이익" 또는 "전기오류수정 손실"에 반영한다. 다만, 재정운영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오류수정의 경우에는 발견한 회계연도의 재정상태표 또는 순자산변동표에 직접 반영한다.
-

Q347 계정과목 대체 시 회계처리

질 의 내 용

분류 오류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을 일반유형자산으로 변경하는 경우 재평가손익도 함께 조정해야 하는지?

- ✓ 사회기반시설을 일반유형자산으로 분류 변경하는 경우 순자산조정으로 관리하는 사회기반시설재평가이익도 함께 일반유형자산재평가이익으로 대체하여야 합니다.
 - 재정운영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재평가이익의 경우에는 오류를 발견한 회계연도의 재정상태표 또는 순자산변동표에 직접 반영합니다.
 - 또한 해당 오류수정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소급하여 재작성하며, 전기오류수정 효과를 오류를 발견한 회계연도 순자산변동표 상 기초순자산의 전기오류수정손익에 반영합니다.

〈회계정책·회계추정의 변경과 오류수정에 관한 지침〉

8. (중대한 전기오류수정) 전기오류수정이 중대한 경우 다음의 방법으로 소급하여 재작성하며, 전기오류수정 효과를 오류를 발견한 회계연도 순자산변동표상 기초순자산의 "전기오류수정손익"에 반영한다.
9. (중대하지 않은 전기오류수정) 전기오류수정이 중대하지 않은 경우 오류를 발견한 회계연도의 재정운영표상 "전기오류수정이익" 또는 "전기오류수정손실"에 반영한다. 다만, 재정운영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오류수정의 경우에는 발견한 회계연도의 재정상태표 또는 순자산변동표에 직접 반영한다.

Q348 토지면적 변경에 따른 전기오류수정 회계처리

질 의 내 용

2011년도에 당시 면적이 46,533㎡이어서 이를 근거로 2011년 공시지가(14,800/㎡)를 적용하여 자산재평가(688백만원)를 하였으나, 2012년 토지면적을 다시 측정 하니 47,128㎡로 595㎡가 증가되었습니다. 이 경우의 회계처리 방법은?

- ✔ 낙된 면적(595㎡)에 대해 2011년 공시지가(14,800/㎡)를 적용하여 전기오류수정 회계처리를 수행합니다.
 - 전기오류수정 후 47,128㎡에 2011년 공시지가를 적용한 금액이 토지 장부가액으로 재정상태표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 ✔ 전기누적효과가 중대한 경우에는 전기재무제표를 재작성하고 관련 효과를 전기 순자산 변동표상 기초순자산의 '전기오류수정손익'에 반영하고, 중대하지 않은 경우 재정운영표의 '전기오류수정손익'에 직접 반영해야 합니다.

〈회계정책·회계추정의 변경과 오류수정에 관한 지침〉

8. (중대한 전기오류수정) 전기오류수정이 중대한 경우 다음의 방법으로 소급하여 재작성하며, 전기오류수정 효과를 오류를 발견한 회계연도 순자산변동표상 기초순자산의 "전기오류수정손익"에 반영한다.
 - (1) 오류가 전 회계연도에 발생한 경우에는 비교표시되는 전기재무제표의 해당 재무정보를 재작성한다.
 - (2) 오류가 전 회계연도 이전에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전기오류수정효과는 비교표시되는 전기재무제표의 자산, 부채 및 순자산변동표 상 기초순자산 금액을 재작성한다.
 9. (중대하지 않은 전기오류수정) 전기오류수정이 중대하지 않은 경우 오류를 발견한 회계연도의 재정운영표상 "전기오류수정이익" 또는 "전기오류수정손실"에 반영한다. 다만, 재정운영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오류수정의 경우에는 발견한 회계연도의 재정상태표 또는 순자산변동표에 직접 반영한다.
-

Q349 수익, 현금및현금성자산 분류 오류 수정 시 전기재무제표 재작성 여부**질의내용(1)**

전기에 비교환수익으로 인식하던 수익이 교환대가에 해당하여 비배분수익으로 변경하였는데, 수익인식기준이 달라짐에 따라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400억원 가량 됩니다. 이러한 경우 중대한 오류에 해당하여 전기 재무제표를 재작성해야 하나요?

질의내용(2)

당기말 현재 기타현금성자산 잔액을 기타국고금으로 계정재분류 하였습니다. 전기에도 동일한 오류가 존재하는 경우 전기재무제표를 재작성해야 하나요?

✓ 재작성 기준이 되는 중대한 오류의 판단 여부는 부처의 소관이므로 부처에서 중대한 오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 중대한 오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재작성 대상이 되며, 그 외의 오류는 당기손익으로 반영합니다.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51조(회계변경과 오류수정)

- ② 오류수정사항이란 회계기준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전 회계연도 또는 그 전 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오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1. 중대한 오류: 오류가 발생한 회계연도 재정상태표의 순자산에 반영하고 관련된 계정잔액을 수정한다. 이 경우 비교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는 중대한 오류의 영향을 받는 회계기간의 재무제표 항목을 다시 작성한다.
 2. 제1호 외의 오류: 해당 회계연도의 재정운영표에 반영한다.

<회계정책·회계추정의 변경과 오류수정에 관한 지침>

8. (중대한 전기오류수정) 전기오류수정이 중대한 경우 다음의 방법으로 소급하여 재작성하며, 전기오류수정 효과를 발견한 회계연도 순자산변동표 상 기초순자산의 "전기오류수정손익"에 반영한다.

Q350 전 회계연도 이전에 발생한 중대한 오류 전기 순자산변동표 반영 방법

질 의 내 용

중대한 오류에 해당하여 전기 재무제표를 재작성하려고 합니다. 전 회계연도 이전에 발생한 오류인 경우 비교표시되는 전기 순자산변동표에 전기오류수정효과를 어떻게 반영해야 하나요?

- ✔ 순자산변동표 상 비교표시되는 전기 순자산변동표의 '1.기초순자산' '2.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회계정책·회계추정의 변경과 오류수정에 관한 지침〉

- 8 (중대한 전기오류수정) 전기오류수정이 중대한 경우 다음의 방법으로 소급하여 재작성하며, 전기오류수정 효과를 발견한 회계연도 순자산변동표 상 기초순자산의 "전기오류수정손익"에 반영한다.
- (1) 오류가 전 회계연도에 발생한 경우에는 비교표시되는 전기재무제표의 해당정보를 재작성한다.
 - (2) 오류가 전 회계연도 이전에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전기오류수정효과는 비교표시되는 전기재무제표의 자산, 부채 및 순자산변동표 상 기초순자산금액을 재작성한다.

Q351 중대한 오류를 판단하기 위한 양적 기준 유무 여부

질 의 내 용

중대한 오류를 판단하기 위한 양적 중요성기준이 있나요?

- ✔ 현재 지침상 중대한 오류를 판단하기 위한 양적기준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처 자체적으로 판단이 필요합니다.

1.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회계처리

Q352 조직 변경으로 이관된 자산이 취득원가 50만원 미만인 경우 회계처리**질 의 내 용**

조직 변경으로 취득원가가 50만원 미만인 자산이 이관될 경우 비용으로 회계처리 해야 하는지?

- ✓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자산을 이관하고 승계되는 경우 장부가액으로 인식하고 재정상태표에 총액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취득원가가 50만원 미만인 자산의 경우에도 비용 처리하지 않고 장부가액 그대로 인식하여야 합니다.
- 참고로 장부가액 50만원 미만인 자산(최초 취득시 50만원 이상)을 관리전환하는 경우에도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자산의 취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부조직개편 회계처리지침〉

5. (회계처리의 일반원칙)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이관하고 승계되는 자산·부채 및 순자산은 장부가액으로 하며, 재정상태표에 총액으로 표시한다. 이 경우 자산 항목과 부채 항목 또는 순자산 항목을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정상태표에서 제외해서는 아니 된다.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13. (관리전환을 통한 취득) 관리전환으로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원가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다만, 관리전환의 경우 장부가액이 50만원 미만인 소액자산의 경우에도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자산의 취득으로 처리한다.
- (1) 유상관리전환의 경우, 관리전환 대상 자산의 공정가액을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로 하되, 제공하는 자산을 공정가액으로 간주하여 장부가액과 공정가액의 차이는 처분손익으로 한다.
 - (2) 무상관리전환 또는 용도폐지에 따른 전환의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는 관리전환으로 자산을 제공하는 실체의 장부가액으로 하며, 재무제표에 총액으로 표시한다.

Q353 조직개편에 따른 자산 이관 회계처리 방법

질 의 내 용

조직개편에 따른 자산 이관 회계처리는 무엇인가요?

- ✓ 정부조직법 등에 따른 조직개편 시, 자산, 부채를 이관하고 이관 받는 경우는 아래의 회계처리가 발생합니다.
- 이관하는 부처
(차) 정부조직개편등에따른순자산감소 xx (대) 자산 xx
 - 이관받는 부처
(차) 자산 xx (대) 정부조직개편등에따른순자산증가 xx

Q354 정부조직개편등에따른순자산증감 계정과목 사용시기

질 의 내 용

조직개편 후 기간에 정부조직개편등에따른순자산증감 계정과목을 사용할 수 있나요?

- ✓ 해당 계정과목은 조직개편일 시점에 자산, 부채의 이관 회계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계정과목이므로 조직개편일 이후 기간에는 발생할 수 없습니다.

Q355 조직개편 시 국고예금 처리방법

질 의 내 용

조직개편시 국고예금통장 잔액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국고예금 잔액은 국고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2. 정부조직 개편일이 속한 회계연도의 결산

Q356 폐지부처 재무제표의 보고주체

질 의 내 용

폐지 부처의 재무제표의 경우 국회 보고대상에 포함되나요? 포함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보고되나요?

- ✓ 중앙관서가 폐지된 경우에도 국회 보고대상 결산보고서에 포함됩니다.
 - 정부조직개편 회계처리지침 문단9에 따라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폐지 부처의 사무를 승계한 중앙관서의 장은 폐지 부처 소관 내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의 재무제표를 통합하여 개편전 기간에 대한 재무제표 등*을 작성해야 합니다.
 - * 1월 1일에 시작하여 정부조직개편일 전일에 종료하는 회계연도를 대상으로 하는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

〈정부조직개편 회계처리지침〉

9. (중앙관서가 자산·부채를 이관하고 폐지되는 경우) 자산·부채를 이관하고 폐지되는 중앙관서 및 그 소관에 속하는 국가회계실체의 결산은 다음과 같이 수행한다.
 - (1) 국가회계실체는 1월 1일에 시작하여 정부조직 개편일 전일에 종료하는 회계연도를 대상으로 하는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이하 "개편전 기간에 대한 재무제표 등"이라 한다)를 작성한다.
 - (2)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의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를 통합하여 중앙관서의 '개편전 기간에 대한 재무제표 등'을 작성한다. 이 경우 (1)과 (2)에 따라 작성하는 중앙관서 및 국가회계실체의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는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와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한다.

1. 유형자산

Q357 특수장비취득 관련 비용 계정과목 선택**질 의 내 용**

조달계약으로 취득한 특수장비를 특정업무비로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 ✓ 각 기관의 수사·감사·예산 등 특정한 업무수행 및 사건 수사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 성격의 비용만 특정업무비로 회계처리 가능합니다. 만약 해당 특수 장비가 고유한 행정 활동에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이라면 유형자산으로 계상하여야 합니다.

〈계정과목해설서〉

VI. 여비교통비, 업무추진비, 국립학교운영비

② 업무추진비

(3) 특정업무비 (2017회계연도부터 적용)

각 기관의 수사·감사·예산 등 특정한 업무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와 위원회 참석 사례비, 시험관리비 등 특정한 업무에 따른 경비를 말한다.

Q358 치안유지자산의 범위

질 의 내 용

총기 및 탄약만 치안유지자산 인가요?

- ✓ 경찰청, 국민안전처, 법무부 등이 치안유지목적으로 보유한 자산으로 전비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총기 및 탄약이 아니더라도 치안유지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계정과목해설서>

Ⅷ. 일반유형자산

⑦ 기타일반유형자산

(2) 치안유지자산

경찰청, 국민안전처, 법무부 등이 치안유지목적으로 보유한 총기류 및 탄약 등으로 전비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산을 말한다.

Q359 예비군 훈련장비의 계정과목 선택

질 의 내 용

부처의 특성을 고려할 때 내부 예비군 훈련 관련 취득한 암호해독장비를 치안유지자산으로 분류해도 되나요?

- ✓ 암호해독장비를 치안유지 목적으로 구입하였고, 전비품에 해당하지 않는 자산일 경우 치안유지자산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계정과목해설서>

Ⅷ. 일반유형자산

⑦ 기타일반유형자산

(2) 치안유지자산

경찰청, 국민안전처, 법무부 등이 치안유지목적으로 보유한 총기류 및 탄약 등으로 전비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산을 말한다.

Q360 교도소 장비의 계정과목 선택

질 의 내 용

교도소 등에서 쓰이는 전기충격기 등 호신용장비는 치안유지자산으로 회계처리해야 하나요?

- ✔ 치안유지목적으로 보유한 자산 중 전비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산은 치안유지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계정과목해설서〉

VIII. 일반유형자산

⑦ 기타일반유형자산

(2) 치안유지자산

경찰청, 국민안전처, 법무부 등이 치안유지목적으로 보유한 총기류 및 탄약 등으로 전비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산을 말한다.

Q361 치안유지자산과 전비품과의 차이

질 의 내 용

치안유지자산과 전비품과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 전비품은 전쟁의 억제 및 수행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전문 군사장비와 탄약 등을 말하고, 치안유지자산은 치안유지목적으로 보유한 총기류 및 탄약 등으로 전비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산을 의미합니다.

〈계정과목해설서〉

VIII. 일반유형자산

⑥ 전비품

전쟁의 억제 및 수행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전문 군사장비와 탄약 등을 말한다.

⑦ 기타일반유형자산

(2) 치안유지자산

치안유지목적으로 보유한 총기류 및 탄약 등으로 전비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산

2. 투자증권, 소프트웨어

Q362 주식회사가 아닌 회사에 대한 투자금 회계처리

질 의 내 용

〇〇특별회계에서 〇〇공사 출자금을 일부는 주식으로, 일부는 출자금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하나요?

- ✔ 주식회사에 출자한 경우에만 장·단기투자증권 중 주식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〇〇공사는 주식회사가 아니므로 '주식'으로 계상되어 있는 출자금을 '출자금' 계정과목으로 재분류하여야 합니다.

〈계정과목해설서〉

Ⅲ. 장·단기투자증권

(2) 지분증권

② 출자금

정부가 공익사업 또는 민간경제 운용상 필요한 사업을 운영하는 민간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취득하기 위해 법률 등에 의해 출자하여 취득한 지분증권으로, 장기투자증권에 포함

Q363 개발 중인 소프트웨어 회계처리 방법

질 의 내 용

개발 진행 중인 소프트웨어에 사용되는 비용은 어떤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 해야 맞나요?

- ✔ 개발 진행 중인 소프트웨어에 사용되는 비용은 개발 완료 전까지 선급금으로 회계처리 하고, 개발이 완료된 시점에 선급금을 '무형자산' 중 '내부개발소프트웨어'로 변경하는 회계처리를 하면 됩니다.

<계정과목해설서>

VI. 기타유동자산

(6) 선급금

일반적 거래에 의한 상품, 원재료, 저장품 등의 자산의 취득 또는 외주가공을 위하여 구입처나 외주가공처에 착수금 등의 명목으로 선지급하는 금액으로 1년 이내에 취득이 완료되어 본 계정으로 대체될 금액을 말한다.

3. 제재금수익, 무상이전수입, 이자수익

Q364 소송패소에 따른 과징금 수익 반환 시 계정과목 선택

질 의 내 용

전년도 이전에 징수한 과징금수익을 소송패소에 따라 상대방에게 반환할 때 어떻게 회계 처리하나요?

- ✓ 전년도말에 관련 소송충당부채를 계상하고 있다면 반환 시 소송충당부채를 차감하는 회계처리를 수행해야 합니다. 소송충당부채를 계상하지 않았다면 반환 시 과징금수익환급금으로 회계처리해야 합니다.

<계정과목해설서>

IV. 장기충당부채

④ 기타장기충당부채

(3) 소송충당부채

소송이 불리하게 진행되어 향후 손실을 부담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 부담하게 될 추정 순현금유출액의 현재가치 금액을 말한다.

Q365 기금의 특별회계전입금(순자산)사용 가능 여부

질 의 내 용

계정과목 해설서에 보면 재원의조달의 무상이전수입에 특별회계전입금 계정과목이 있습니다.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계정과목 인가요?

- ✓ 순자산변동표상 재원의조달에 표시되는 특별회계전입금은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에서 사용하는 계정과목입니다. 기금은 재정운영표 상 비교환수익등에 표시되는 특별회계전입금(비교환수익) 계정과목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Q366 공공기관으로부터 자산수증 시 계정과목 선택

질 의 내 용

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부터 인터넷pc자료저장방지시스템을 무상양도 받았습니다. 정부내 자산수증과 정부외자산수증 중 어느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 ✓ 한국정보화진흥원은 국가회계실체가 아닌 공공기관이므로 '정부외자산수증'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계정과목해설서>

II. 재원의 조달

⑦ 무상이전수입

(5) 정부외자산수증

정부 이외의 자로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수증 받는 경우 발생한다. 정부외기부금은 현금성자산 또는 금융자산을 수증 받는 경우인데 반해 정부외자산수증의 경우 비금융자산을 수증 받는 경우임에 유의한다.

Q367 학자금 대여금 이전에 따른 계정과목 선택

질 의 내 용

○○기금은 ○○대학교 법인화에 따라 재직 중인 공무원의 학자금 대여금 중 일부(65.7억)를 이전 받았습니다. 대여금 인식 시 상대계정은 무엇인가요?

- ✓ 대여금을 이전하는 회계실체는 '기타무상이전지출', 대여금을 이전받는 회계실체는 '기타무상이전수입'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계정과목해설서〉

II. 재원의 조달

㉞ 무상이전수입

(7) 기타무상이전지출: 일반회계전출금, 기타특별회계전출금, 기업회계전출금, 기금전출금, 국고금 회계전출금, 정부내자산기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무상이전지출

II. 재원의 조달

㉞ 무상이전수입

(10) 기타무상이전수입: 일반회계전입금, 특별회계전입금, 기금전입금, 정부내자산수증, 정부외자산수증, 정부외기부금, 손익계정전입금, 자본계정전입금, 감가상각전입금에 해당하지 않는 무상이전수입

Q368 보통예금 이자수익 계정과목 선택

질 의 내 용

관서운영경비를 관리하는 통장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을 정기에금이자수익으로 계상하는 것이 올바른 회계처리 인가요?

- ✔ 관서운영경비를 관리하는 통장에서 발생한 보통예금 이자수익의 경우 ‘잡이익’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계정과목해설서>

VII. 기타수익

(23) 잡이익

교환수익 중 ‘프로그램수익/비배분수익’의 타항목에서 설명되지 아니하는 수익으로 학교 및 단체의 실습연구 시험에 따른 부산물판매수입 및 실습 수입과 같이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익 또는 금액적으로 중요하지 않거나 그 항목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수익 등을 말한다.

Q369 정기에금 이자수익 계정과목

질 의 내 용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보는 정기에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의 재정운영표상 계정과목은 무엇인지요?

- ✔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보는 정기에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의 재정운영표상 계정과목은 ‘정기에금이자수익’입니다.

<계정과목해설서>

IV. 이자수익

(1) 금융상품이자수익

① 정기에금이자수익: 정기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

4. 재화및용역제공수익, 기타수익

Q370 투기장 사용료 수익 계정과목 선택

질 의 내 용

항만의 수심을 파내어 나온 흙을 저장할 수 있는 투기장을 소유하고 있고 이를 민간에게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수령하고 있을 때 어떤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 해야 하나요?

- ✓ 국가소유의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등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사용료수익' 계정과목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계정과목해설서>

I. 재화 및 용역제공수익

(3) 기타사업수익

- ① 사용료수익: 국가가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등 각종 시설과 무형자산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함으로써 국가로 귀속되는 사용료 수익

Q371 폐지매각대금 계정과목 선택

질 의 내 용

폐지매각대금 수입의 계정과목은 무엇으로 하나요?

- ✓ 폐지매각대금이 업무 수행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이라면 '잡이익'으로 처리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계정과목해설서>

VII. 기타수익

(23) 잡이익

교환수익 중 '프로그램수익/비배분수익'의 타항목에서 설명되지 아니하는 수익으로 학교 및 단체의 실습연구 시험에 따른 부산물판매수입 및 실습 수입과 같이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익 또는 금액적으로 중요하지 않거나 그 항목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수익 등을 말한다.

Q372 고철대매각대금 계정과목 선택

질 의 내 용

재산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던 고철대를 매각할 때 잡이익 계정과목을 사용해도 되나요?

- ✔ 고철 매각대금이 업무 수행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이라면 '잡이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계정과목해설서〉

VII. 기타수익

(23) 잡이익

교환수익 중 '프로그램수익/비배분수익'의 타항목에서 설명되지 아니하는 수익으로 학교 및 단체의 실습연구 시험에 따른 부산물관매수입 및 실습 수입과 같이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익 또는 금액적으로 중요하지 않거나 그 항목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수익 등을 말한다.

5. 인건비, 복리후생비

Q373 무기계약직 급여 계정과목 선택

질 의 내 용

무기계약직에 대한 보수는 어떤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해야 하나요?

✔ 무기계약직에 대한 보수는 상용임금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적정합니다.

〈계정과목해설서〉

II. 인건비, 복리후생비

㉠ 인건비

(1) 급여

⑥ 상용임금 (2017회계연도부터 적용)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단시간근로자 포함)에 대한 보수로 다음을 포함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강사 및 “공무원인재 개발법”에 의한 교수요원 등에 대한 보수

(나)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직원에게 대한 보수

Q374 4대보험관련 비용 계정과목 선택

질 의 내 용

기타직 보수로 처리되는 인건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4대보험 회사부담분을 퇴직급여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업무처리 인가요?

✔ 퇴직급여가 아닌 4대보험 관련 비용 계정과목(국민연금부담비, 고용보험부담비, 산재보험부담비, 건강보험부담비)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6. 소모품비, 인쇄비

Q375 업무용도서 및 도서관 도서구입비 계정과목 선택

질 의 내 용

업무용 도서 구입비용은 간행물비가 아닌 소모성물품비가 맞나요? 그리고 도서관의 도서 구입비는 소모성물품비로 처리하면 되나요?

- ✓ 업무 관련 도서 구입비용은 '간행물비'로 처리하고 도서관 도서구입비는 '기타일반유형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계정과목해설서〉

Ⅲ. 소모품비, 인쇄비, 광고선전비

3. 계정과목 회계처리 유의사항

③ 도서구입비의 구분

일반도서 구입비는 간행물비로 분류하되, 도서관용 등 자본형성 성격의 도서구입비는 기타일 반유형자산으로 분류한다.

Q376 신문 구독 대금 계정과목 선택

질 의 내 용

매월 구독하는 신문대금은 어떤 계정과목을 사용해야 하나요?

- ✓ 도서, 잡지, 마이크로필름, 관보, 법령추록, 통신구독료, 신문 구독료 등 정기·비정기 간행물의 구입비로 보아 '간행물비'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계정과목해설서〉

Ⅲ. 소모품비, 인쇄비, 광고선전비

① 소모품비

(4) 간행물비는 신문·잡지·관보·도서·팜플렛 등 정기·비정기 간행물의 구입비를 말한다.

Q377 파워포인트 제작에 소요된 비용 계정과목 선택

질 의 내 용

통계시스템 소개자료 등 외국 홍보를 위한 파워포인트 제작에 소요된 비용은 어떤 계정과목을 사용해야 하나요?

✔ 행사안내 및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로 보아 ‘홍보물품비’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계정과목해설서>

Ⅲ. 소모품비, 인쇄비, 광고선전비

① 소모품비

홍보물품비란 현수막, 간판 등 행사 안내 및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 기관(관서)간판, 명패, 감사패, 상패 등의 제작비를 말한다.

Q378 사진인화 경비 계정과목 선택

질 의 내 용

사진인화경비를 인쇄비로 처리 가능한가요?

✔ 자료 및 보고서에 사용할 사진을 인화하는데 사용된 비용은 ‘인쇄비’로 회계처리 가능합니다.

<계정과목해설서>

Ⅲ. 소모품비, 인쇄비, 광고선전비

1. 계정과목의 정의

인쇄비는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전단 등 업무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 제작비를 말한다.

Q379 관리지침 책자발행비 계정과목 선택

질 의 내 용

부처에서 관리지침 책자를 발행한 비용이 있는데 이 경우 어떻게 회계처리 해야 하나요?

✔ 관리지침 책자의 경우 '인쇄비'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가장 적합합니다.

<계정과목해설서>

Ⅲ. 소모품비, 인쇄비, 광고선전비

1. 계정과목의 정의

인쇄비는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전단 등 업무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 제작비를 말한다.

7. 외주용역비

Q380 무선통신망 유지 관리비 계정과목 선택

질 의 내 용

무선통신망을 주기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매달 지급하는 용역비를 기타의일반유형자산수선유지비로 계상하고 있는데 관리용역비 계정을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나요?

- ✓ 무선통신망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사용된 용역비는 '관리용역비'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계정과목해설서〉

IV.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외주용역비

③ 외주용역비

(2) 관리용역비 (2017회계연도부터 적용)

청사의 시설관리 또는 장비의 유지관리, 전산운영 등 기관의 운영과정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유지관리 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외부에 대행시키는 제비용을 말한다.

Q381 전문가 자문에 대한 수당지급 관련 계정과목 선택

질 의 내 용

전문가 자문료 지급시에 일선관서별로 업무대행수수료, 기타수수료, 등기수수료 등 다양한 계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계정과목은 무엇인가요?

- ✔ 전문가 자문료 지급은 계정과목해설서에 따르면 '외주용역비' 중 '기타용역비'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정과목해설서〉

IV.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외주용역비

③ 외주용역비

(5) 기타용역비 (2017회계연도부터 적용)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채용, 영상자료 제작 등의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과 국선변호사 및 수임·고문변호사에 대한 변호료·수임료 및 보수, 속기·원고측량 등의 각종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 및 전문가 자문료 등을 말한다.

Q382 위탁계약에 의한 상담센터 운영비용 계정과목 선택**질 의 내 용**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 관련 상담처리를 위한 상담센터를 별도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상담센터를 운영하기 위해 외부업체와 위탁계약(외부업체 명의로 운영)을 체결하였는데 이때 지불되는 제비용은 위탁사업비와 업무대행수수료 중 어떤 비용 계정과목으로 회계 처리해야 하나요?

- ✓ 국가가 법령·계약 등에 의해 민간인에게 위탁 관리(민간인 명의)시키는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위탁사업비'로 회계처리해야 합니다.

<계정과목해설서>

IV.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외주용역비

③ 외주용역비

(5) 위탁사업비 (2017회계연도부터 적용)

법률에 규정된 국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 명의·책임 하에 행사하는 경우의 제비용을 말한다.

Q383 민간대행사업비 관련 운영비 계정과목 선택

질 의 내 용

국가가 직접 추진하여야 할 사업으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에 대행시키는 사업비는 어떤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 해야 할까요?

- ✔ 국가가 직접 추진하여야 할 사업으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행시키는 사업의 사업비는 '대행사업비' 계정이 적절합니다.

<계정과목해설서>

IV.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외주용역비

③ 외주용역비

(5) 대행사업비 (2017회계연도부터 적용)

국가가 직접 추진하여야 할 사업으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행시키는 사업의 사업비를 말한다.

Q384 연구개발용역비와 연구용역비의 차이

질 의 내 용

연구개발용역비와 연구용역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 ‘연구개발비’ 중 ‘연구개발용역비’는 국가사업 관련 조사, 강연, 연구 등 용역을 수행한 반대급부로 지급된 금액을 말하지만, ‘외주용역비’ 중 ‘연구용역비’는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조사 또는 예비설계, 기본설계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합니다.

〈계정과목해설서〉

IV.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외주용역비

① 연구개발비

- (3) 연구개발비 중 연구개발용역비는 국가사업 관련 조사, 강연, 연구 등 용역을 수행한 반대급부로 지급된 금액을 말하지만, 외주용역비 중 연구용역비는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조사 또는 예비설계, 기본설계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③ 외주용역비

(1) 연구용역비

사업계획을 기초로 하여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조사 및 교통·환경영향평가와 사업기본계획수립에 소요되는 경비, 주요설계 시행지침이나 예비설계, 기본설계 및 개략공사비 산정에 소요되는 경비,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집행방법이 확정된 공사의 발주에 따른 설계보상비, 차관자금으로 직접 지급되는 것으로서 국내외에서 수행되는 조사, 연구 등 용역비를 말한다.

Q385 회의참석자에 대한 수당 계정과목 선택

질 의 내 용

제안서 평가를 위해 회의에 참석한 외부인에게 지급한 수당은 어떤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해야 하나요?

✔ 전문가 용역제공에 대한 성격이므로 '기타용역비'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계정과목해설서〉

IV.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외주용역비

③ 외주용역비

(5) 기타용역비 (2017회계연도부터 적용)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채용, 영상자료 제작 등의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과 국선변호사 및 수임·고문변호사에 대한 변호료·수임료 및 보수, 속기·원고측량 등의 각종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 및 전문가 자문료 등을 말한다

8. 세금과공과, 여비교통비, 업무추진비

Q386 해외출장관련 비용 계정과목 선택

질 의 내 용

해외 출장 시 발생하는 정액경비 외 식사비, 공식행사비 등을 사업추진비 예산으로 지급 시 세세부 항목("공식 회의, 외빈초청 경비 및 행사 경비 등"과 "해외출장지원")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가요?

- ✓ 해외출장에서 여비규정에 의하여 발생한 비용은 '해외출장지원' 항목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당 세세부 항목 선택으로 발생하는 재무계정과목은 '국외여비'입니다.

<계정과목해설서>

VI. 여비교통비, 업무추진비, 국립학교운영비

① 여비교통비

(2) 국외여비

여비규정에 의한 해외출장여비, 해외출장지원경비를 말한다

Q387 행사 진행관련 비용 계정과목 선택

질의내용(1)

행사 진행관련 용품 구입비용 및 식비는 어떤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 해야 하나요?

- ✔ 행사관련 용품 구입비용 및 식비는 계정과목해설서에 따라 '행사진행경비'로 회계처리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계정과목해설서>

VI. 여비교통비, 업무추진비, 국립학교운영비

② 업무추진비

(1) 행사진행경비

외빈초청에 따른 여비(숙식비 및 항공료 등 교통비), 정례회의 경비, 외빈초청 접대 경비, 행사 경비 등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접대비, 연회비 및 기타 제경비, 체육대회 또는 중무식 등 공식적인 업무추진소요 경비를 말한다.

질의내용(2)

외빈초청행사를 진행하면서 참가자들에게 식권을 지급하였습니다. 해당 비용이 잡손실로 처리되어 있는데 적절한 회계처리 인가요?

- ✔ 외빈초청에 따른 접대경비 등과 같은 공식적인 업무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은 '행사진행 경비'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계정과목해설서>

VI. 여비교통비, 업무추진비, 국립학교운영비

② 업무추진비

(1) 행사진행경비

외빈초청에 따른 여비(숙식비 및 항공료 등 교통비), 정례회의 경비, 외빈초청 접대 경비, 행사 경비 등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접대비, 연회비 및 기타 제경비, 체육대회 또는 중무식 등 공식적인 업무추진소요 경비를 말한다.

9. 지급수수료, 지급임차료

Q388 송달료 등의 소송비용 계정과목 선택

질 의 내 용

소송사건으로 인한 송달료 등의 소송비용(외부 변호사 등에 지급하는 비용 제외)은 등기료 법정수수료가 맞나요?

- ✓ 계정과목해설서에 따라 송달료 등의 소송비용은 ‘등기료법정수수료’ 계정과목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단, 변호사 수입료는 ‘기타용역비’로 회계처리하여야 합니다.

〈계정과목해설서〉

VII. 지급수수료, 지급보험료, 지급임차료

① 지급수수료

(3) 등기료법정수수료: 등기 및 소송료(인지대 및 법정수수료) 등을 말한다.

Q389 근저당설정비용 계정과목 선택

질 의 내 용

임차보증금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전세권설정비용은 어떤 계정과목을 사용해야 하나요?

- ✓ 등기비용은 ‘등기료법정수수료’로 회계처리하며 법무사비용은 ‘업무대행수수료’로 회계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계정과목해설서〉

VII. 지급수수료, 지급보험료, 지급임차료

① 지급수수료

(1) 업무대행수수료: 물품관리위탁수수료, 업무대행수수료 등과 같이 외부에 업무를 대행하고 지급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3) 등기료법정수수료: 등기 및 소송료(인지대 및 법정수수료) 등을 말한다.

Q390 신용평가정보이용료 계정과목 선택

질 의 내 용

신용평가정보이용료는 어떤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되어야 하나요?

✔ '지급수수료' 중 '기타수수료'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습니다.

〈계정과목해설서〉

VII. 지급수수료, 지급보험료, 지급임차료

① 지급수수료

(11) 기타수수료: 외부에 지급하는 수수료 중 업무대행수수료, 송금수수료, 등기료법정수수료 등을 제외한 비용을 말한다.

Q391 운용리스와 임차계약 구분기준

질 의 내 용

운용리스와 임차계약(렌탈 등)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 운용리스는 리스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고 리스계약서가 존재하며, 단순 임차계약(렌탈)은 리스회사가 아닌 판매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서에 리스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10. 보전비, 보조비, 수선유지비, 기타비용

Q392 변론참고인에 지급한 여비 계정과목 선택

질 의 내 용

변론참고인에 대해 지급한 여비는 어떤 계정과목을 사용해야 하나요?

- ✓ 법령에 의하여 지급하는 증인, 감정인, 참고인, 공술인에 대한 실비변상금, 반대급부는 '기타보전비' 계정과목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계정과목해설서〉

Ⅷ. 보전비, 출연비, 보조비

① 보전비

(4) 기타보전비

법령에 의하여 증인, 감정인, 참고인, 공술인에 대한 실비 변상금, 반대급부 또는 채권채무의 원인행위에 의하여 보전해야 할 보상금(징발보상금)을 말한다.

Q393 의료보조비 관련 비용 계정과목 선택

질 의 내 용

보훈병원, 보훈요양원 등에 대한 의료보조비에 대해 '기타공공기관보조비'가 적절한 계정과목인가요?

-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보조금 중 공공기관이 행하는 사업은 '기타공공기관보조비'로, 민간이 행하는 사업은 '기타민간보조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훈병원 및 보훈요양원의 보훈 대상 환자들에 대한 의료보조비 관련 비용 성격의 지출은 '기타공공기관보조비' 계정이 적절합니다.

〈계정과목해설서〉

VIII. 보전비, 출연비, 보조비

③ 보조비

(1) 공공기관보조비

- ① 기타공공기관보조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조금 중에서 공공기관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중앙정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의한 법정배분금 중 공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지원 등

Q394 파티션 재배치 경비 계정과목 선택

질 의 내 용

파티션 재배치 경비를 수선유지비로 처리 가능한가요?

- ✔ 파티션 재배치 경비는 건물 등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지출이 아니므로 '수선유지비'로 회계처리 가능합니다.

〈계정과목해설서〉

X. 수선유지비

3. 계정과목처리유의사항

①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의 구분

일반유형자산 및 사회기반시설의 수선 목적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지출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로 구분되며,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따라 자본적 지출은 자산의 증가로, 수익적 지출은 비용으로 회계처리한다.

- ① 자본적 지출: 자산의 내용연수를 증대시키거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
- ② 수익적 지출: 자산의 원상회복이나 현상유지를 위한 지출

Q395 소모성물품의 수선유지비 계정과목 선택

질 의 내 용

소모성물품의 수선유지비는 기타일반유형자산수선유지비로 처리하는 것이 맞나요?

- ✔ 소모성물품은 자산이 아니라 비용처리되므로 이에 대한 수선유지비는 기타일반유형자산수선유지비로 처리할 수 없으며 '소모성물품비' 등 적절한 비용과목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합니다.

〈계정과목해설서〉

X. 수선유지비

1. 수선유지비 정의

수선유지비란 반유형자산, 사회기반시설, 유산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현재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경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Q396 과오납반납 시 이자비용 계정과목 선택

질 의 내 용

과오납반환 시 지급이자는 어떤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 해야 하나요?

- ✔ 과오로 인하여 당기 수익금 반환시 지급금액과 그에 따른 이자는 당기 수익에서 차감하며 전기 과오로 인하여 수익금 반환시 지급금액과 그에 따른 이자는 '전기과오납반환금'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Q397 소송충당부채 계상 시 비용 계정과목의 선택

질 의 내 용

소송과 관련해서 충당부채를 계상할 때 비용 계정과목은 어떤 계정과목을 사용해야 하나요?

- ✔ 소송과 관련해서 충당부채는 소송충당부채를 계상하면서 ‘소송충당부채전입액’ 계정과목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계정과목해설서〉

XVII. 기타비용

(18) 소송충당부채전입액

재정상태표일 현재 소송충당부채에서 직전 재정상태표일 현재 소송충당부채를 차감한 후 회계연도 중 지급한 금액을 더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Ⅲ

디브레인 업무처리에 관한 질의

본 챕터는 디브레인 업무처리 중 재무결산과 관련된 질의답변 내용만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타 디브레인 시스템상의 구체적인 업무처리 방법은 한국재정정보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별법과 재무제표 대사

Q398 결산조정전표로 등록하여 국유재산 대장에만 누락된 자산의 처리

질 의 내 용

주식형 수익증권을 재무제표에는 결산조정으로 반영하였으나, 국유재산대장에는 등재 누락하였습니다. 국유재산대장에 등재가 필요한 지와 등재 방법은 무엇인가요?

- ✓ 수익증권은 국유재산이므로 국유재산 대장에 등재하여야 합니다. 디브레인을 통해 국유재산 대장에 등재하면 동시에 재무제표에도 반영되어 해당 자산이 이중계상 되므로, 기존의 결산조정으로 계상했던 자산은 다시 결산조정을 통해 제거해야 합니다.

Q399 계정과목세부명세서 조회 가능 시기

질 의 내 용

계정과목별명세 메뉴 중 계정과목세부명세서를 통해 조회할 수 있는 국유재산과 재무장부 간 비교점검 화면에 국유재산별 대장현황 금액이 모두 '0'입니다. 원인이 무엇인가요?

- ✓ 국유재산 마감이 완료되어야 해당 메뉴에 금액이 조회됩니다.

Q400 지번 변경으로 분할, 합병된 토지의 업무처리 방법

질 의 내 용

당회계연도 중 지번 변경으로 인해 토지가 분할, 합병되었습니다. 디브레인 상 어떻게 업무처리가 이루어져야 하나요?

- ✓ '국유재산/대장관리/기타증감/증감없음/분할 또는 합병'을 통해 업무처리를 수행해야 별도 분개 발생 없이 분할·합병 전 장부가액과 재평가이익이 분할·합병 후 국유재산 대장에 제대로 반영됩니다.

2. 건설중인자산, 선급금 내역 검토

Q401 회계연도 말 선급금 잔액 정산 여부

질 의 내 용

당회계연도 말 현재 용역기간이 만료된 시스템 유지·보수계약에 대해 당회계연도 중 선급한 금액이 당회계연도 말 현재 선급금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남아있는 선급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 ✔ 선급한 금액은 지출 시점에 선급금으로 계상 후 해당 용역의 제공기간에 걸쳐 비용과 상계되어야 하기 때문에 당회계연도 말 현재 선급금 잔액이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 따라서, 당회계연도 말 재정상태표 상 선급금으로 계상된 금액은 전액 비용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Q402 전기 이전에 지출한 내역이 자본적지출 임에도 비용 처리한 경우 조치방법

질 의 내 용

전기 이전에 비용처리한 감리비가 자본적지출에 해당되어 자산가액을 증가시켜줘야 하는 경우에 적절한 업무처리는 무엇인가요?

- ✔ 전기 이전의 비용을 취소해야 하므로 전기오류에 해당됩니다. 자산가액을 증가시키면서 '전기오류수정이익'을 계상해야 하며, 중대한 오류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전기재무제표 제작성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Q403

결산담당자가 결산조정분개로 삭제한 건설중인자산을 일선관서에서 배부 처리한 경우 조치방법

질 의 내 용

작년 결산 시 건설중인자산을 비용으로 판단하여 결산조정분개를 수행하였으나, 올해 일선관서에서 해당 건설중인자산을 배부 처리하여 건설중인자산이 부의 금액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인가요?

- ✔ 건설중인자산의 적정성을 일선관서담당자를 통해 파악하신 후에 조치하여야 합니다.
 - 건설중인자산이 맞다면, 작년에 수행한 결산조정분개를 취소하셔야 합니다.
 - 건설중인자산이 아니라 비용이 맞다면, 올해 수행한 부대비 배부 업무를 취소하고 정리요청서를 통해 조달의 부대비 내역을 삭제하셔야 합니다.

Q404

본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완료된 부대공사의 정산 시기

질 의 내 용

본공사가 완료되기 전 부대공사가 먼저 끝났을 경우 건설중인자산의 대체 시기는 언제인가요?

- ✔ 본공사가 완료 되었을 때 본공사 부분이 국유재산대장에 등재되고, 같은 시기에 부대공사정산을 통해서 건설중인자산이 함께 자산으로 대체가 이루어집니다.

Q405 본계정대체되지 않은 건설증인자산 회계처리**질 의 내 용**

준공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건설증인자산이 재무장부에 존재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해당 건설증인자산과 관련하여 현재 국유재산 대장에 본자산이 등재되어있는지 확인하고, 재무장부에도 본자산이 계상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확인 결과 자산대체서 승인 누락으로 자산 등재가 누락된 경우에는 디브레인에서 자산대체서 승인을 통해 본자산을 자산등재하여야 합니다.
 - 당기에 기타증감으로 대장 등재하였다면 해당 업무처리를 취소하고 자산대체서 승인 업무처리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 만약 전기 이전에 기타증감을 통해 해당 자산을 국유재산 대장에 등재하였다면 당기 결산조정분개를 통해 건설증인자산을 제거하셔야 합니다.

3. 계정과목 변경

Q406 보험료 지급은 일반지출이 아닌 조달(계약) 메뉴로 처리 필요

질 의 내 용

복지인력(도우미)에 대한 업무 관련 배상보험료를 일반지출을 통해 집행하고자 하는데 보험료 관련 세세부항목이 조회되지 않아 지급보험료 계정과목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지급보험료 대신 기타수수료 계정과목으로 처리해도 되나요?

- ✔ 업무와 관련된 보험료 지출은 지급보험료 계정과목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기타수수료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는 것은 옳바르지 않으므로, 조달(계약) 메뉴를 통해 지출해야 합니다.
- 디브리인 시스템에서 보험료 관련 세세부항목이 조회되지 않는 것은 조달(계약) 메뉴를 통해 동 보험료 지출과정이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Q407 세부·세세부항목 선택 오류의 수정 방법

질 의 내 용

지출 시 세부항목을 잘못 선택해 계정과목 오류가 발생한 건에 대해서 어떻게 수정해야 하나요?

- ✔ 세부·세세부항목 선택 오류에 따른 계정과목 오류와 관련해서는 '계정과목변경' 메뉴*를 통하여 수정이 가능합니다.
- * 지출>요청관리>계정과목정정요청>계정과목변경
- 관련 오류와 관련해서 해당 전표를 발생시킨 일선관서에 오류사항을 전달하여 수정 조치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Q408 시스템상 계정과목 변경 반영 시간**질 의 내 용**

업무담당자가 계정과목을 변경하였다고 하는데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계정과목변경은 어느 시점에 반영되나요?

- ✓ 계정과목변경의 경우 디브레인시스템에서 일괄적으로 하루에 한번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익일에 합계잔액시산표에서 변경된 결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Q409 시스템을 통한 계정과목 변경이 가능한 범위**질 의 내 용**

잡손실 계정과목을 검토 중인데, 올바른 계정과목으로 변경할 수 있는 건가요?

- ✓ 계정과목변경 기능을 통해 가능합니다.
 ○ 다만, 세부·세세부항목 재선택을 통해서 계정과목이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세목과 연계되어 있는 계정과목으로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Q410 시스템을 통한 계정과목 변경 방법**질 의 내 용**

출산축하경비가 경조금이 아닌 선물대로 잘못 회계처리되어 있는데, 이를 수정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 ✓ 계정과목변경을 통해 세부·세세부항목 재선택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Q411 비용 계정과목 정정 가능 시기

질 의 내 용

지출이 모두 마감되어 디브리인에서 '계정과목변경'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결산 조정전표를 통해 수정해야 하나요?

- ✓ '계정과목변경'은 지출이 마감되었어도 수정전시산표 마감 전 까지 수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산조정이 아니라 '계정과목변경'을 통해 해당 계정과목을 수정해야 합니다.

Q412 수익 계정과목 정정 가능 시기

질 의 내 용

디브리인의 '수입과목정정결의' 기능은 수입 업무가 마감된 이후에도 수행이 가능한가요?

- ✓ '수입과목정정결의' 기능은 세부·세세부항목 뿐만이 아니라 예산과목까지 수정이 가능하므로 수입 업무가 마감된 이후에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계정과목 적정성 검토

Q413 국고예금 잔액 적정성 검토

질 의 내 용

시산표에 계상된 국고예금 금액과 실제 예금잔액에 차이가 발생하면 결산조정분개로 조정해야하나요?

- ✓ 결산조정분개 보다는 잔액 차이가 나는 원인을 파악하여 수정해야 합니다.
 - 시산표상 국고예금 잔액과 실제 예금 잔액은 차이가 발생하면 안 되므로, 누락된 업무가 없는 지 파악하여 해당 업무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Q414 국고수입과 월별 세출부 누계금액이 차이나는 원인

질 의 내 용

합계잔액시산표상 국고수입과 디브레인의 월별 세출부 누계금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재무제표상 국고수입과 예산결산상 지출액은 원칙적으로 일치하여야 합니다. 세출부 누계금액 조회 시 조건이 정확하지 않으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ex. 월별 세출부 누계금액은 12월이 아니라 13월로 조회하여야 합니다.)

Q415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잔액이 한국은행국가예금 잔액과 일치

질 의 내 용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에서 예산결산상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잔액인 결산상 잉여금은 연도말 한국은행국가예금과 일치해야 하나요?

- ✓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에서 예산결산상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잔액인 결산상 잉여금은 연도말 한국은행국가예금과 일치해야 합니다.

Q416 전기오류수정이익 계정과목 검토

질 의 내 용

전기오류수정이익 계정과목 내역을 살펴보니, 기말 시점에 토지 14억이 증가하면서 전기오류수정이익이 발생하는 분개가 있었습니다. 확인결과 내역은 BTL 취득이라고 합니다. 현재 디브레인에서 BTL 관련 업무처리가 없어서 부채를 자동으로 계상할 수 없다고 합니다. 결산조정전표 입력 시 상대계정과목은 무엇인가요?

- ✓ BTL 자산 취득 시 상대계정과목은 'BTL임대료장기미지급금' 입니다. 현재는 전기오류 수정이익으로 잘못 되어 있으므로, 전기오류수정이익을 상계하면서 'BTL임대료장기미지급금'을 계상하는 결산조정전표 입력이 필요합니다.

Q417 정부외자산기부 회계처리 발생 사유**질 의 내 용**

조달청으로 무상관리전환이 된 거래인데 계정과목이 정부외자산기부로 되는 이유가 무엇 인가요?

- ✓ 조달청으로 무상관리전환을 한 거래라고 한다면 '정부외자산기부'가 아닌 '정부내자산기부'로 회계처리되어야 합니다.
- 만일 해당 거래가 조달청과의 거래가 아니라 조달청과 계약을 맺고 있는 민간업체와의 거래라면 관리전환이 아닌 양여이며, 양여인 경우에는 '정부외자산기부'로 회계처리 됩니다.

Q418 전기오류수정이익 발생내역 검토 및 조치 방법

질 의 내 용

전기오류수정이익이 발생한 내역이 있는데, 이를 조치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 ✓ 전기오류수정이익은 국유재산 또는 물품 등을 '기타증감'업무로 대장가액을 증액시키는 경우 발생합니다.
 - 누락자산등록처럼 전기오류수정이익이 적정하거나,
 - 기타(증)처럼 증가 사유를 알 수 없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 ✓ 따라서, 일선관서 담당자에게 어떤 거래를 통해 발생한 것인지 확인하여 조치하여야 합니다.
 - 누락자산등록처럼 적정한 경우에는 해당 오류가 중대한 오류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재무제표 제작성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기타(증)처럼 증가 사유를 알 수 없어 발생한 경우에는 확인된 거래에 맞게 조치하여야 합니다.
 - 예를 들어, 자산 구입을 조달메뉴를 통하지 않고, 구입대금은 일반지출로 처리하고 기타증감을 통해 자산을 대장에 등록하는 경우에는 지출 시 발생한 비용 계정과목과 전기오류수정이익을 상계처리 해야 합니다.

Q419 기타증감을 통해 발생한 전기오류수정손익의 적정성 판단**질 의 내 용**

기타증감처리_국유, 기타증감처리_물품을 통하여 발생한 전기오류수정손익은 올바른 것 인가요?

- ✓ 예산의 집행 또는 수납이 이루어지지 않고 국유재산, 물품의 가액 또는 정보관리항목이 변경되는 경우 기타증감 메뉴를 사용하게 됩니다.
 - 그러나 물품, 국유재산 담당자에 의하여 당기에 취득한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기타증감 처리를 통해서 자산을 등재하여 자산과 비용이 과대 계상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 따라서 기타증감처리를 통해서 발생한 전기오류수정손익의 경우 전기오류에 의한 것(전년도 이전에 등재해야 할 것을 등재하지 않은 경우)을 제외하고는 올바른 계정과 목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Q420 감가상각비 재계산을 위한 정보 조회 방법**질 의 내 용**

감가상각비 재계산 검증 수행을 위해 국유재산 대장을 조회하였는데, 잔존가액 정보가 일괄 조회되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확인이 가능한가요?

- ✓ 국유재산 대장에서는 개별 자산별로 조회가 가능하며, 일괄 조회를 위해서는 국유재산 대장과 별도로 있는 감가상각 대장을 조회해야 합니다.

Q421 기타증감을 통해 발생한 잡손실의 적정성 판단

질 의 내 용

잡손실 계정과목 내역을 검토 중 "기타증감처리"에 따라 발생한 것이 많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기타증감처리를 하면 잡손실로 회계처리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은 회계처리는 올바른 것인가요?

- ✓ 기타증감은 대장관리 업무로 증가사유에 따라 회계처리 되는 계정과목이 결정됩니다.
 - 재산관리관을 통해 어떤 업무를 수행한 것인지 확인한 이후에야 해당 거래를 잡손실로 처리한 것이 올바른 것인지 판단 가능합니다.

Q422 임차보증금 계상 시 발생한 전기오류수정이익 조치 방법

질 의 내 용

임차보증금을 대장에 반영하면서 기타증감으로 처리하여 전기오류수정이익이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요?

- ✓ 임차보증금을 실제 계약할 때 지출한 현금이 어떻게 회계처리 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서 전기오류수정이익과 상계처리 하셔야 합니다.

Q423 물품대장과 국유재산대장 간의 자산 이동 시 발생한 손익 처리

질 의 내 용

물품대장에 등재되어 있던 자산을 국유재산대장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전기오류수정이익과 잡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올바른 회계처리인가요?

- ✓ 회계실체 내에서 물품에서 국유재산으로의 단순 분류 변경인 경우에는 관련 손익이 발생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전기오류수정이익과 잡손실을 상계 처리하여야 합니다.

Q424 기타증감의 사유를 잘못 선택하여 전기오류수정이익 발생**질 의 내 용**

민간으로부터 무상으로 수증받은 자산을 등재하였는데 상대 계정과목이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올바른 회계처리와 업무방법은 무엇인가요?

- ✓ 민간으로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받았다면 기부채납에 해당되며, '정부외자산수증'이 올바른 회계처리입니다. 국유재산<취득>기부채납에서 기부채납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Q425 전세권의 재산종류를 잘못 선택하여 감가상각 발생**질 의 내 용**

전세권이 감가상각되는 오류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 일선관서 국유재산담당자가 전세권을 등재하면서 재산종류를 무체재산의 전세권이 아닌 무체재산의 기타로 잘못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5. 부(-)의 계정과목 처리

Q426 임차보증금 회수 시 기수납여부 체크 사용

질의내용(1)

부의 선수금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 및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요?

질의내용(2)

임차보증금 관련 업무처리를 수행하고 나니 부(-)의 선수금이 생겼습니다. 처리방법은 무엇인가요?

- ✓ 부의 선수금 발생 원인은 '기수납여부' 체크 때문입니다.
 - 임차보증금-국유의 회수는 일선관서에서 매각요청=>징수요청=>징수결의(수입)=>수납정산(수입)=>인계관리의 업무절차를 통해 진행하나,
 - 매각요청에서 '기수납여부'를 체크하여 징수결의 없이 인계관리 업무만 수행하는 경우 부의 선수금이 발생합니다.
- ✓ 조정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선관서에 수납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수납시점에 발생한 수익(대변 계정과목)과 선수금을 상계하는 결산조정분개를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Q427 계정과목별 부(-)의 명세서에서 관리번호별로 부(-)의 금액의 조치 필요성

질 의 내 용

계정과목별 부(-)의 명세서 검토 시 거래처별 이외에도 관리번호별로도 조회가 되는데 조치해야할 사항인가요?

- ✓ 관리번호별 조회는 검토의 편의성을 위한 것으로 부(-)의 금액이 조회된다고 하여 무조건 오류로 볼 수 없습니다.

Q428 계정과목별 부(-)의 명세서에서 관리번호의 의미

질 의 내 용

선급금 부(-)의 거래처 조회 시 관리번호가 동일한데 거래처가 다른 것들이 조회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 관리번호는 하나의 계약(또는 사업)에 대해 부여된 번호이고, 거래처는 대금을 지급한 상대방이므로 하나의 관리번호에 다수의 거래처가 조회될 수 있습니다.

Q429 기수납여부 체크를 하여 선수금 잔액이 음수가 되는 오류

질 의 내 용

선수금의 잔액이 음수가 되는 사례는 무엇인가요?

✔ 자산 등의 매각 시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분개가 발생합니다.

1. 징수결의 : 차) 미수금 대) 선수금
 2. 수납정산 : 차) 국고금 대) 미수금
 3. 자산인계 : 차) 선수금 대) 자산 등
- 매각요청서 작성 시 '기수납여부'를 체크(징수결의와 수납정산의 단계를 생략하고 자산인계만 수행하게 해주는 기능)하여 자산인계 업무만 수행하면, 선수금의 발생없이 차감만 되므로 선수금 잔액이 음수가 될 수 있습니다.

Q430 선급금 거래처별 부(-)의 잔액 조치 방법

질 의 내 용

계정과목명세서 상 선급금 거래처별 잔액이 부(-)의 금액입니다. 어떻게 조치하여야 하나요?

✔ 한 거래처의 잔액이 부(-)의 금액인 것은 다른 거래처에서는 과대되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거래처 변경을 통하여 금액을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Q431 거래처별 부(-)의 명세서에서 전기에 조치한 거래처가 당기에 부(-)의 금액으로 조회되는 경우 조치 방법

질 의 내 용

선급금 거래처별 부(-)의 잔액 검토 결과, 전기에 거래처 수정을 통해 타 거래처의 부(-)의 금액과 상계한 부분이 당기에 부(-)의 금액으로 조회가 됩니다.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요?

- ✔ 전년도 거래처 수정이 잘못된 것으로 보입니다. 올바른 거래처를 확인하셔서 거래처 수정을 하셔야 합니다.
 - 당기에 부(-)의 금액으로 조회되는 이유는 당기에 적정한 업무처리로 인해 해당 거래처의 선급금 금액이 차감되었다는 뜻이므로, 전기 거래처 수정 업무처리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Q432 미지급금의 발생과 지급시점의 거래처가 상이하여 거래처별 부(-)의 금액 발생

질 의 내 용

전기말 '기타'거래처로 계상되어 있는 미지급금을 당기에 지급하면서 '기타'가 아닌 타 거래처로 업무처리 하였습니다.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나요?

- ✔ 당기의 미지급금 지급전표에 대하여 거래처 수정(타거래처 -) 기타) 전표를 발생시켜 거래처를 수정하여야 합니다.

I. 정의항목 리스트

II. 회계처리에 관한 질의

III. 디브리인 업무처리에 관한 질의

IV.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질의

Q433

연계기관이 재무결산 자료 등록 시 부(-)의 금액이 발생하여 연계가 불가능한 경우 조치방법

질 의 내 용

투자증권평가손실이 부(-)의 금액이 발생하여 디브리인상 재무결산 연계가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조치해야 할까요?

- ✔ '15회계연도 결산부터 연계기관에 대해 부(-)의 계정과목 점검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따라서 투자증권평가손실이 부(-)의 금액으로 계상된 사유를 파악하여 투자증권평가가
익으로 대체하는 등 연계자료를 수정한 후 재연계 하셔야 합니다.

6. 업무마감 절차

Q434 기금의 수입 업무 마감 시 중앙관서에서도 마감 필요

질 의 내 용

기금의 업무담당자는 수입, 지출 등을 마감했는데도 불구하고, 디브레인 '재무결산>회계 기금>수정전 시산표 마감'메뉴 하단에 업무별 마감 현황에서는 업무마감일자가 조회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요?

- ✓ 기금 업무 마감 후에 중앙관서 담당자가 중앙관서 마감을 별도로 수행하여야 업무별 마감현황에서 업무마감일자가 조회됩니다.
 - 수입 업무 마감 : 수입>마감>중앙관서관리>중앙관서마감

Q435 기금의 국유재산은 마감되었으나 중앙관서에서 마감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조치 방법

질 의 내 용

중앙관서 국유재산 담당자가 타회계·기금의 국유재산 미마감을 이유로 본 기금의 국유재산 결산서를 확정하지 않아 수정전시산표마감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 ✓ 타 회계·기금의 국유재산이 마감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기금의 국유재산보고서는 확정할 수 있으므로, 중앙관서 담당자에게 해당 내용을 설명한 후 보고서 확정 요청하시면 됩니다.

Q436 선급금이나 건설중인자산 본계정 대체 수행 시기

질 의 내 용

국유재산 대장을 마감하였다면 선급금이나 건설중인자산 본계정 대체를 수행할 수 없나요?

- ✔ 국유재산 대장이 마감되었다면 국유재산 업무담당자와 협의하여 마감을 취소하고 본계정 대체를 수행해야 합니다.
 - 본계정 대체는 건중자산대체서를 생성하여 수행할 수 있습니다.

7.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 내역 검토

Q437 자산취득비(430-01) 등 400번대 예산으로 지출한 내역이 자본적지출 또는 수익적지출인지 검토

질 의 내 용

400번대 예산 지출 금액은 금액이 적어도 무조건 자본적지출인 것으로 간주해서 자산가액을 증가시켜야 하나요?

- ✓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자본적지출은 400번대 예산으로 편성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합니다.
- (2016 예산편성지침) 건물 및 건축설비, 공구, 기구, 기타시설물의 유지보수비는 시설장비유지비(210-09)로 편성하되, 시설 장비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거나 기능을 변화시키는 핵심부품의 교체비용은 자산취득비(430-01) 또는 시설비(430-02)로 반영한다.

8. 처분 업무처리 오류

Q438

자산 매각 시 매각절차가 아닌 징수결의만 수행하여 자산이 차감되지 않는 오류 발생

질 의 내 용

자산매각건 관련한 아래의 분개가 적절한가요?

차) 미수기타수익 10 대) 잡이익 10

✓ 국유재산 및 물품의 매각업무 수행 시 정상적인 업무처리에 따른 회계처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징수결의	/	차) 미수금 10	대) 선수금 10
수납정산	/	차) 현금 10	대) 미수금 10
인계	/	차) 선수금 10	대) 토지 8

일반유형자산처분이익 2

✓ 매각절차를 통하지 않고 매각대금을 징수결의로 수납만 하는 경우 질의와 같이 모든 수입이 수익으로 회계처리되고, 자산은 장부에서 삭제되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회계처리가 아닙니다.

○ 결산담당자는 매각 담당자에게 해당 매각자산을 대장에서 삭제하도록 하고, 既 발생한 잡이익과 대장 삭제 시 발생한 비용 계정과목을 취소하면서 처분손익을 계상하여야 합니다.

징수결의	/	차) 미수기타수익 10	대) 잡이익 10
수납정산	/	차) 현금 10	대) 미수기타수익 10
대장삭제	/	차) 비용 8	대) 토지 8
결산조정	/	차) 잡이익 10	대) 비용 8

일반유형자산처분이익 2

9. 취득 업무처리 오류

Q439 건설중인자산을 대체하지 않고 대장관리에서 기타증가로 처리

질 의 내 용

토지를 기타증가 처리하여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계상되고, 건설중인자산이 대체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요?

- ✓ 자산등재 시 '기타(증)'으로 처리한 경우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처리됩니다. 이 경우 '기타(증)'으로 처리한 해당 업무를 취소하고 '검수-자산대체'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Q440 건당 취득금액이 50만 원 이상인 자산을 비용처리

질 의 내 용

건당 취득금액이 50만원 이상인 자산에 대해서 취득 시 기계장치및부품비로 처리된 경우에 대응방법은 무엇인가요?

- ✓ 해당 거래를 일선관서에 확인하여 자산으로 계상하는 것이 맞다면 비용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Q441 대금 지급 시 미지급금이 정산되지 않은 오류

질의내용(1)

대금 지급을 완료하였으나, 미지급금이 정산되지 않은 경우 조치 방법은 무엇인가요?

✔ 대금 지급 시 발생한 비용 계정과목과 미지급금을 상계처리 해야 합니다.

질의내용(2)

유상관리전환 시 발생한 미지급금과 관련하여 대금지급이 완료되었으나, 미지급금이 상계되지 않은 경우 어떻게 회계처리하여야 하나요?

✔ 유상관리전환 시 발생한 미지급금은 지출업무 시 해당 건을 선택하여 업무를 진행하면 상계 제거됩니다.

- 대금지급 완료 후에도 해당 미지급금이 남아 있다는 것은 대금지급 시 업무처리를 잘못하였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관련 지출업무를 다시 수행하여야 하며, 재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지출업무 처리 시 발생한 계정과목과 미지급금을 상계하는 결산조정전표 등록을 통해 수정할 수 있습니다.

※ 결산조정전표 등록 예시

차) 미지급금 XXX 대) 지출업무 시 발생한 계정과목 XXX

Q442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에서 취득한 건물의 일반회계 이관

질의 내용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에서 취득한 건물을 일반회계로 무상관리전환 할 수 있나요?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혁신도시특별회계가 취득한 건물은 일반회계로 무상관리전환이 가능합니다.

1. 거래처 수정

Q443

거래처를 자신의 관서로 선택한 후 수입/지출 마감된 상태에서 거래처 수정 방법

질 의 내 용

다수의 개인에게 인증서류를 발급하고 수수료를 징수하는 거래에서 거래처를 잘못 입력하여 요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현재 세입, 세출이 마감된 상태인데 동 거래의 거래처를 조정분개로 수정해야하는지요?

- ✔ 세입, 세출이 마감된 상태에서도 수정후시산표 마감 전이라면 상호점검 메뉴에서 거래처 수정이 가능합니다. 상호점검 메뉴의 경로는 [재무장부>회계기금>내부거래 상호점검>상호점검입니다.

Q444

상대소관이 폐지소관인 경우 조치방법

질 의 내 용

전표의 상대소관이 폐지된 소관으로 되어 있어 내부거래 미제거 상태로 남아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거래처가 현재 존재하지 않는 중앙관서로 되어 있는 경우 올바른 거래처를 확인하여 거래처 수정을 하여야 합니다.

Q445 상호점검에서 조회되지 않는 전표의 거래처 수정 방법

질 의 내 용

내부거래 상호점검에서 보이지 않는 전표는 거래처 수정을 어떻게 하나요?

- ✔ 내부거래 상호점검에서는 거래처가 국가회계실체인 내부거래 전표만 조회됩니다.
- ✔ 상호점검에서 조회되지 않는 전표의 거래처 수정은 디브레인의 '내부거래대상 계정과목별 점검'(회계결산) 재무장부>회계기금>내부거래상호점검] 하위에 위치)에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Q446 내부거래처가 올바른지 확인하는 방법

질 의 내 용

OO청과의 내부거래 미제거건이 존재하는데, 거래처가 'OO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래처를 'OO청 재정책임관'으로 바꾸면 올바른 거래처로 바뀌어 내부거래가 제거되는지요?

- ✔ 내부거래는 거래처가 일치해야 제거될 수 있으며, 일치여부는 일선관서나 거래처명이 아닌 해당 거래처 정보에 담긴 소관, 회계, 계정 정보입니다. 거래처 정보에 담긴 소관, 회계, 계정이 상대소관, 회계, 계정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여 거래처 수정 조치하시면 질의하신 미제거 건은 제거될 것입니다.

Q447 거래처명과 거래처 정보가 불일치하는 미제거 건 조치방법**질 의 내 용**

내부거래 미제거 건 중 거래처명이 '경기도 과천시 건축과 징수관(보전)'으로 되어 있는데 상대소관 및 회계명이 OO부, 지역발전특별회계-△△계정인 것이 있습니다. 거래처명과 상대소관 및 회계명이 불일치하는 경우 거래처를 수정해야 하나요? 수정한다면 어떻게 하는지요?

- ✓ 실제 거래처가 과천시인지, OO부인지 확인 후 과천시가 맞다면 업무담당자에게 거래처를 올바르게 수정하도록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과천시를 거래처로 선택할 때 거래처구분을 '3-중앙재정(일반회계·특별회계, 기금)'이 아닌 다른 적절한 구분을 선택해야 상대소관 및 회계가 기존과 같이 OO부, 지역발전 특별회계로 나타나지 않게되어 동 내부거래 미제거건이 해결됩니다.

2. 기타 미제거 건 조치 방법

Q448

상호점검에서 '상호점검제거상태'만 다르고 나머지는 같은 건이 두 개 발생한 경우 조치방법

질 의 내 용

내부거래 상호점검 화면에서 회계일자, 계정과목, 금액 등이 모두 동일한 건이 두 개가 존재합니다. 상호점검제거 여부가 하나는 제거, 하나는 미제거로 표시되어 있는데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요?

- ✓ 두 건이 각각 발생한 거래는 아닌지 검토하시고, 각각 발생한 거래가 맞다면 미제거건이 제거될 수 있도록 추가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하나의 거래인데 상호점검 화면에서만 2개로 보인다면, 재정정보원에 문의하여 조치바랍니다.

Q449 부가세 차이로 인한 미제거 건 조치방법

질 의 내 용

부가세 차이로 인해 발생한 내부거래 미제거 건을 어떻게 조치하여야 하는지요?

- ✓ 부가세 차이로 인해 발생한 내부거래 미제거 건은 향후 국가통합결산보고서 작성 시 조정분개로 반영하므로 중앙관서 결산 시점에서는 별도로 조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 참고로 부가세만큼 금액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세이나 부동산임대사업의 경우 예외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이에 따라 임차료를 지급하는 부처에서는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한 공급대가를 임차료로 계상하나, 임대료 수입을 처리하는 부처에서는 수령한 공급대가 중 부가가치세매출세액을 제외한 공급가액만 수수료수익으로 인식합니다.
이러한 사유로 임차료가 수수료수익보다 부가가치세 만큼 과대하여 수익, 비용 내부거래 금액간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Q450

자산계정의 잔액이 0원이나, 당 회계연도 발생 부의금액이 미제거로 표시된 경우 제거 조치여부

질 의 내 용

12월말 현재 미수채권 잔액이 0(전기이월 1,000원, 당기 발생 -1,000원)입니다. 당기 발생건에 대해 디브레인 '상호점검' 화면에 '미제거'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 별도의 조치가 필요한가요?

- ✓ 12월말 현재 자산부채 계정과목 잔액이 '0'인 경우는 제거할 금액이 없으므로 내부거래 제거 대상이 아닙니다.
- 따라서 당기 발생 건 -1,000원에 대해 디브레인 상호점검 화면에서 '미제거'로 표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작업을 수행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3. 대상제외 항목

Q451 대상제외 항목의 의미와 처리방법

질 의 내 용

조달청의 조달특별회계와 조달수수료 거래를 했는데, 상호점검 시 대상제외로 조회됩니다. '대상제외'의 의미와 이와 같이 대상제외로 조회된 항목은 어떻게 처리 하는지요?

- ✔ 조달청과의 거래 중 상호점검 시 대상제외로 조회된 금액은 내부거래 제거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의미이므로, 대상제외로 조회된 항목은 아무 조치 없이 그냥 두시면 됩니다.

Q452 내부거래 대상제외 항목 문의

질 의 내 용

조달수수료, 등기료, 우편요금 및 세금 외에 내부거래 대상제외 항목이 더 있는지요?

- ✔ 내부거래 대상제외는 질의에 언급하신 조달수수료, 등기료, 우편요금 및 세금 이외에 다른 항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Q453 조달수수료가 내부거래 제거 대상인지 여부

질 의 내 용

조달청에 조달수수료를 지급한 거래가 내부거래 제거 대상인지요?

- ✔ 조달수수료가 조달청 조달특별회계 및 조달사업회전자금을 거래처로 하여 업무대행수수료나 기타수수료 계정과목으로 발생한 경우 내부거래 제거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Q454 조달수수료가 미제거로 조회된 이유**질의내용(1)**

조달청에 지급한 조달수수료의 경우 내부거래 대상제외 항목으로 알고 있는데, 소모성물품비 계정과목으로 인식한 조달수수료가 상호점검에서 내부거래 미제거로 보이는 까닭이 무엇인지요?

- ✓ 조달수수료를 기타수수료와 업무대행수수료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했을때 내부거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질의하신 조달수수료는 소모성물품비 계정과목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미제거로 집계된 것으로 보입니다. 계정과목명을 기타수수료나 업무대행수수료로 변경하시면 내부거래 대상제외로 집계될 것입니다.

질의내용(2)

조달청에 지급한 나라장터 이용수수료가 내부거래 대상제외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조치해야 되는지요?

질의내용(3)

조달청에 조달수수료를 지급한 금액이 내부거래 미제거로 되어있습니다. 조달청에 문의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 ✓ 조달청 조달특별회계 및 조달사업회전자금을 거래처로 하여 업무대행수수료나 기타수수료 계정과목으로 인식한 조달수수료는 시스템상 대상제외로 집계됩니다. 미제거로 조회되는 건의 거래처 및 계정과목이 대상제외 조건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4)

조달수수료에 대해서 계정과목이 기타수수료로 인식되어 있으나 내부거래 미제거로 조회가 됩니다. 사유는 무엇입니까?

- ✓ 거래처가 조달청 '조달특별회계'와 '조달사업회전자금'인 경우에만 시스템 상 내부거래 대상제외로 집계되므로, 거래처가 '조달특별회계'와 '조달사업회전자금'이 아닌 경우에는 미제거로 조회 될 수 있습니다.

Q455 기금 내부거래 대상 자료에 법인세비용 포함여부

질 의 내 용

디브레인을 사용하지 않는 기금에서 발생한 법인세비용을 기말 결산시 내부거래 자료로 업로드해야 하는지요?

- ✓ 국세청과 거래한 법인세비용도 내부거래에 해당하므로 기말 결산시 내부거래 자료로 업로드해야 합니다. 다만, 상대거래처를 국세청으로하여 인식한 법인세비용은 내부거래 대상제외 항목이므로, 업로드 하더라도 대상제외 되어 상호점검 화면에서 내부거래로 조회되지 않습니다.

Q456 선급법인세도 법인세비용과 같이 내부거래 대상제외 항목인지 여부

질 의 내 용

OO기금에서 내부거래 대상 자료로 선급법인세를 포함하여 연계하였습니다. 법인세비용과 같이 선급법인세도 내부거래 대상제외 항목인지요? 대상제외 항목일 경우 해당 거래를 제외하고 연계해야 하는지요?

- ✓ 상대거래처를 국세청으로하여 인식한 선급법인세도 내부거래 대상제외 항목입니다. OO기금에서 선급법인세를 포함하여 내부거래 자료를 연계하더라도 디브레인 시스템에서 대상제외 처리하므로 OO기금에서 선급법인세를 제외하고 재연계할 필요는 없습니다.

Q457 부담금수익과 제세의 내부거래 제거여부**질 의 내 용**

부담금수익과 제세는 내부거래 제거를 해야 하는 것이지요?

- ✔ 국가통합 재정운영표상 내부거래 원가와 내부거래 수익의 합계액(이하 '내부거래금액'이라함)이 0원이 되어야하므로 부담금수익과 제세(상대회계명이 환경개선특별회계,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수산발전기금 등)는 내부거래 제거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 참고로 국가통합 재정운영표상 부담금 수입은 '부담금수익'으로 처리되어 '비교환수익 등'에 반영되는 반면, 부담금 지출은 '제세'로 처리되어 '재정운영순원가'에 반영됩니다. 또한 내부거래금액도 국가통합 재정운영표상 재정운영순원가에 반영됩니다. 부담금수익과 제세를 제거할 경우 '내부거래 원가'와 '내부거래 수익'이 불일치하게 되어 내부거래금액이 0원이 되지 않습니다.

Q458 관세를 운송비로 처리한 경우 조치방법**질 의 내 용**

관세청에 대한 관세 납부액은 내부거래 제외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운송비로 잘못 처리하여 내부거래 제거대상으로 조회되고 있습니다. 이를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 ✔ 업무담당자가 디브레인에서 '계정과목 변경요청'을 통해 제세 등으로 계정과목을 올바르게 수정하면 내부거래 대상제외 항목으로 집계될 수 있습니다.

4. 상대소관 또는 발생소관 미제거 건만 존재시 조치 방법

Q459 상호점검에서 발생소관의 미제거 건만 존재하는 경우 조치 방법

질 의 내 용

내부거래 상호점검 화면에서 우리 부처에서 발생한 내부거래 내역만 있고, 상대방에서 발생시킨 내부거래 내역은 없습니다.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요?

- ✔ 먼저 해당 거래가 내부거래가 맞는지 거래의 실질을 파악하고, 내부거래가 맞다면 상대 부처 결산담당자와 연락하여 해당 거래의 거래처나 계정과목 선택에 오류가 없는지 확인 후 거래처나 계정과목 수정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만약 내부거래로 집계될 대상이 아닌데 귀 부처의 오류로 집계되어 미제거된 상태라면 귀 부처에서 거래처 수정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면 됩니다.

Q460 발생소관의 미제거 건만 존재하는 경우(상대소관 부채 누락) 조치 방법

질 의 내 용

내부거래 미제거 사유 파악 결과 상대기관의 부채 계상 누락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 디브리인에서 해당 기관의 결산담당자 조회가 가능합니다. 결산담당자와 연락하여 상호 확인 후 상대기관에서 내부거래 부채 금액이 누락된 사유(거래처나 계정과목 선택오류)를 파악하여 내부거래가 제거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거래처나 계정과목 수정)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Q461

발생소관의 미제거 건만 존재하는 경우(조달청에 대한 관리용역비) 조치 방법

질 의 내 용

OO위원회에서 조달청을 거래처로하여 계상한 관리용역비가 내부거래 미제거되고 있습니다. 내부거래 대상제외해야 하는 건가요?

- ✓ 조달청과의 내부거래 중 조달수수료(업무대행수수료와 기타수수료 계정과목으로 처리한 것)만 내부거래 대상제외 항목이 될 수 있습니다. 관리용역비는 내부거래 대상제외 항목이 아니므로, 동 미제거 건은 제거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Q462

발생소관의 미제거 건만 존재하는 경우(상대소관의 거래처 선택 오류) 조치 방법

질 의 내 용

OO청에서 우리 부처를 중앙부처가 아닌 공공기관으로 선택하여 OO청에서 발생시킨 내부거래 자료가 조회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 거래처 정보는 거래처명 뿐만 아니라 하위에 정보관리항목이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거래처명이 동일하더라도 '거래처 구분'이 '3-중앙재정(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으로 되어 있지 않은 거래처를 선택했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 ✓ 이 경우 OO청 결산담당자에게 통보하여 해당 거래처를 '거래처 구분'이 '3-중앙재정(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인 거래처로 수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Q463

상대소관에서 발생시킨 미제거 건만 존재하는 경우(계정과목 선택 오류) 조치 방법

질 의 내 용

OO청으로 입목을 매각하였습니다. OO청에서 입목 대금을 지출하면서 기타수수료로 회계처리하여 해당 전표가 내부거래 미제거 상태로 조회되는데 어떻게 조치해야하는지요?

- ✔ OO청에서 입목 매입시 기타수수료가 아닌 입목으로 제대로 회계처리했다면 해당 미제거 건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OO청 결산담당자에게 기타수수료를 입목으로 수정해야 내부거래로 집계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셔서 동 미제거 건이 내부거래 내역에서 제외 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Q464

환원전표 내부거래 제거 여부

질 의 내 용

환원전표도 내부거래 제거 대상인가요?

- ✔ 환원전표도 내부거래 제거 대상입니다. 따라서 환원전표 관련 내부거래 미제거 건도 다른 미제거 건과 동일하게 내부거래 제거 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 참고로 환원전표는 디브레인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발생되므로 작성자가 기획재정부로 표시됩니다.

5. 수동대사 및 국채 제거 방법

Q465 상호점검 조회 화면의 요청번호 의미

질 의 내 용

내부거래 상호점검에서 조회되는 '요청번호'가 무엇인지요?

- ✓ 내부거래 중 '미제거'로 조회된 전표에 대해 수동대사를 수행하게 되면 생성되는 것으로, 수동대사 수행한 전표를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제거하기 위한 정보로 활용됩니다.
 - 참고로 상대방 거래처에서도 동일한 수동대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 상호점검에서 '요청번호'열 옆의 '상대요청번호'열에 일련번호가 생성되며, 요청번호와 상대요청번호가 일치할 경우 수동대사 수행한 전표가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제거됩니다.
 - 두 번호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호점검 화면의 '상호점검제거'열에 '불일치'라고 표시되며, 이 경우 해당 수동대사를 취소하고 재수행해야 합니다.

Q466 외부연계기관의 수동대사 수행 여부

질 의 내 용

외부연계기관도 디브레인상 수동대사를 수행할 수 있나요?

- ✓ 외부연계기관은 디브레인상 수동대사 처리를 할 수 없으므로 국가통합단계에서 동 수동대사를 수행합니다.

Q467 자산부채의 결산 전 수동대사 필요 여부

질 의 내 용

중간점검 시 자산부채 내부거래 미제거건과 관련해서 수동대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나요?

- ✔ 자산부채 내부거래는 결산시 최종 잔액을 기준으로 제거되므로 결산 전에 미제거건을 수동대사 처리하더라도 내부거래 최종 제거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리 수동대사 처리하는 실익이 없으므로 중간점검 시 수동대사를 수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Q468 내부거래 COA다운로드 방법

질 의 내 용

디브레인 연계기관입니다. 내부거래 대상자로 연계를 위해 '내부거래 COA'를 참고하고 싶은데 어디에서 다운 받을 수 있는지요?

- ✔ 디브레인에서 '회계결산' 메뉴를 선택하면 화면 중앙에 나타나는 '공지사항'에서 내부거래 COA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회계결산>재무결산>결산계시판] 경로에서도 내부거래 COA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Q469 중앙관서 내 회계실체간 국채 내부거래 제거 방법

질 의 내 용

OO부의 회계실체간에 국채 발행 및 매입 거래가 있습니다. 기말 결산시 중앙관서내 회계실체간의 국채 내부거래는 어떻게 제거해야 하는지요? 국채와 관련해 발생한 국채이자비용, 투자증권평가손익 등의 계정도 내부거래 제거대상인지요?

- ✔ 국채의 경우 국채발행자 입장에서는 거래처를 확인할 수 없어 국채에 대한 내부거래가 자동으로 제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앙관서 회계실체간의 국채 내부거래는 결산담당자가 디브레인의 [회계결산> 재무결산> 중앙관서> 회계간내부거래제거> 국공채 자동대사(중앙관서)]경로로 들어가 화면 상단에 기재된 '작업순서 : 조회>국공채 대상집계>엑셀>엑셀 업로드>원장반영'에 따라 작업하여 제거할 수 있습니다.
- 즉, 중앙관서내 회계실체간에 거래한 국채 및 공채의 내부거래는 결산담당자가 별도로 디브레인에서 다운받은 국공채 내부거래 대상집계 양식(엑셀파일)에 내부거래 제거 정보를 입력하고 다시 디브레인에 업로드하여 '원장반영'을 클릭해 제거할 수 있습니다.
- 국채 내부거래 제거시 국채 계정과목 뿐만 아니라 국채와 관련해 발생한 국채이자비용, 국채이자수익, 투자증권평가손익, 미수채권이자수익, 미지급이자비용 등도 함께 업로드 및 원장반영하여 내부거래 제거를 수행해야 합니다.

Q470 소관간 국채 내부거래 제거 방법

질 의 내 용

OO기금에서 부동산 매입에 따라 국민주택채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발행한 국채이기 때문에 내부거래 문제가 생길것 같은데 이에 대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 ✔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중앙관서에서는 해당 국채의 발행처가 어디인지 알 수 있지만, 국채를 발행한 중앙관서에서는 발행한 국채가 현재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 ✔ 이에 따라 국채의 내부거래 제거는 기획재정부에 의해 국가통합시 각 중앙관서로부터 국채보유내역을 전달받아 수행됩니다.

I. 정의항목 리스트

II. 회계처리에 관한 질의

III. 디브레인 업무처리에 관한 질의

IV.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질의

1. 결산조정분개 진행 및 등록 메뉴 사용

Q471 디브레인을 통한 감가상각비 계산 시점**질 의 내 용**

디브레인에서 감가상각비 계산을 실행하려면, 국유재산대장을 마감하여야 하나요?

- ✓ 디브레인에서 감가상각비 계산실행은 국유재산대장을 마감한 후에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처리 결과는 '결산조정분개 진행 및 등록>감가상각비 조회'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Q472 정부내예수금에 대한 미지급비용 계상 시 계정과목과 시스템상 처리방법**질 의 내 용**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정부내예수금 700억에 대해 이자상환이 이루어진 12월9일 이후부터 재정상태표일까지의 미지급비용을 계상하려면, 사용하여야 하는 계정과목은 무엇이고, 조정분개 입력으로 수행하여야 하나요?

- ✓ 정부내예수금에 대한 미지급비용의 계정과목은 미지급이자비용입니다. 이는 결산조정분개 진행 및 등록 메뉴 중 '미지급비용 인식'을 통해 수행됩니다.
- '미지급비용 인식'은 정부내예수금의 정보항목에 따라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분개전표를 생성하는 방식이므로, 별도의 결산조정전표 입력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Q473 대손충당금의 프로그램 대응 방법

질 의 내 용

대손충당금을 프로그램에 대응시키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 ✔ '결산조정분개 진행 및 등록' 대손충당금 설정 화면에서 전표 생성 전에 프로그램/단위사업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2. 결산조정전표 등록

Q474 결산조정전표 등록 가능 시점

질 의 내 용

건강보험금 관련 비용을 퇴직급여총당금에서 차감한 오류를 발견하여 결산조정분개를 수행하려고 하였으나 dBrain상에서 가능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dBrain시스템을 통하여 수정전시산표 마감을 수행하게 되면 결산조정분개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Q475 건설중인자산을 결산조정분개로 처리한 경우 사후 조치

질 의 내 용

과거 건설중인자산과 관련하여 재해손실이 발생하여 결산조정으로 건설중인자산을 감소시켜 놓은 것과 관련하여, 취득이 완료됨에 따라 국유재산 대장에 등재할 때 관련 결산조정 효과를 어떻게 반영해야 하나요?

- ✔ 국유재산 대장에 등재되어야 하는 금액은 재해손실을 반영한 금액이어야 합니다.
- 재해손실 금액 효과는 결산조정으로만 처리하였기 때문에 대장에 등재되는 금액은 재해손실 반영 전 금액입니다.(자산 과대 계상 및 건설중인자산 부(-)의 금액 발생)
 - 재해손실 금액만큼 과대된 자산은 기타증감으로 차감하고,
 - 차감 시 발생한 계정과목(ex. 전기오류수정손실) 금액과 건설중인자산 부(-)의 금액을 결산조정으로 제거해야 합니다.

Q476 결산조정전표 입력 시 조정항목의 순자산구분 선택 방법

질 의 내 용

디브레인에서 결산조정전표를 입력하는 경우, 순자산변동표상 조정항목은 기본순자산, 적립금및잉여금, 순자산조정 구분을 어떻게 선택할 수 있나요?

- ✔ 결산조정전표 입력 시, 관리항목을 통해 순자산변동표상 조정항목의 순자산 구분(기본순자산, 적립금및잉여금, 순자산조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Q477 소송패소로 소송비용 지급한 경우 기존 소송충당부채 상계 방법

질 의 내 용

소송패소로 인해 소송가액을 지급하는 경우 기존에 설정한 소송충당부채는 어떻게 회계처리하나요?

- ✔ 소송충당부채 설정은 결산조정분개로 하게 되고, 소송패소로 실제 소송비용 지급 시 비용이나 수입금반환으로 처리됩니다.
 - 따라서 기말시점에 기존에 설정한 소송충당부채와 소송비용 지급 시 계상된 비용 등을 서로 상계하는 결산조정분개를 반드시 수행하여야 합니다.

〈분개예시〉

기말 소송충당부채 잔액 1,000, 소송패소로 인한 소송가액 지급액 500원인 경우 가정	
① 기중 소송패소금액 지급 시 (수입금반환/배상금지급)	차) 과징금수익환급금(배상비) 500 대) 국고수입 500
② 연도말 계정대체(결산조정)	차) 소송충당부채 500 대) 과징금수익환급금(배상비) 500

3. 전기재무제표 재작성

Q478 전기재무제표 재작성 절차

질 의 내 용

전기 재무제표를 재작성(기준에 프로그램수익으로 처리한 수익을 비배분수익으로 변경) 하여야 합니다. 전기 재무제표 재작성을 위한 dBrain절차는 무엇인가요?

- ✔ 다음의 3가지 절차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 결산조정전표 입력을 통해 자산, 부채 금액을 변경하는 회계처리(본 사례처럼 수익, 비용의 재작성은 해당사항 없음) 수행(회계결산) 재무결산) 회계기금) 결산조정분개) 결산조정전표 등록)
 - 결산보고서 수정요청을 통해 전기 내역 수정(회계결산) 재무결산) 회계기금) 결산보고서 수정요청)
 - 전기결산서 조정내역에 재작성 관련 효과를 입력(회계결산) 재무결산) 회계기금) 전기결산서 조정내역)

Q479 전기재무제표 재작성 시 수정분개의 반영 방식

질 의 내 용

자산누락에 따른 전기오류수정이익에 대하여 재무제표를 재작성 하는 경우에 전기 재무제표에 분개는 어떻게 반영이 되나요?

- ✔ 전기재무제표를 재작성 하는 경우 분개는 당기재무제표에만 반영됩니다. 비교표시되는 전기재무제표는 전기보고서 수정을 통해 담당자가 직접 수정해야 합니다.

IV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질의

1. 자산, 부채 및 순자산증감표

Q480 연계기관의 자산, 부채 및 순자산증감표 작성방법**질 의 내 용**

연계기관의 경우 dBrain에서 자산, 부채 및 순자산증감내역을 생성하는 기능이 부속명세서 메뉴에서 확인되는데, 자산부채순자산증감내역이 부속명세서에 포함되나요?

- ✓ 자산, 부채 및 순자산증감표는 부속명세서가 아닌 결산개요에 해당합니다. 단, 디브레인에서는 연계기관에 대해 자산, 부채 및 순자산증감표를 생성하기 위한 기능을 부속명세서 메뉴 쪽에 개설해 놓고 있습니다.

1. 계류중인 소송사건

Q481 주석에 공시 대상인 소송사건의 범위**질 의 내 용**

주석의 계류중인 소송 내역에는 전체 소송건수를 작성해야 하나요? 중요한 소송 건수만을 작성해야 하나요?

- ✓ 전체 소송사건에 대한 건수 및 소송가액을 기재하되 그 중 중요한 내역은 '소송사건 중 중요한 내역'부분에 발췌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Q482 소송관련 주석 작성**질 의 내 용**

기금 소유 골프장 리모델링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피고가 문화예술킨흥기금이 아닌 골프장 관리업체 한국문화진흥(주)인 경우 소송 관련 주석을 기재해야 하나요?

- ✓ 소송 패소 시, 패소 확정금액을 해당 기금에서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므로 피고가 기금이 아니더라도 소송 관련 주석을 기재해야 합니다.

2. 압수품·몰수품 및 세입·세출외 현금

Q483 압수품 몰수품 주식 기재 대상

질 의 내 용

압수품 몰수품은 일정기간 후에 법원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주식에 기재해야 하나요?

- ✓ 기말 현재 보유중인 압수품과 몰수품 중 처분이 예정되어 있고 처분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품목은 주식(자원의 유입가능성이 높은 우발자산)에 기재해야 합니다.

Q484 세입·세출외 현금 주식 기재 대상

질 의 내 용

보관금 공탁금 같은 세입·세출외 현금은 모든 항목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하나요?

- ✓ 구분이 가능한 항목은 모두 구분해서 주식에 기재해야 합니다.

〈세입·세출외거래 회계처리지침〉

실무해설2.

주요 세입·세출외 현금 항목과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항목	관련법령
보관금	「정부보관금취급규칙」제2조
입찰보증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3조, 제53조
계약보증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1조
하차보수보증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3조
신원보증금	「공증인의 정원 및 신원보증금에 관한 규칙」제3조
적부심보증금	「검찰사건사무규칙」제37조
가납금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제30조
임치금	「가사소송규칙」제125조
농지복구비	「농지법」제36조
산지관리복구비	「산지관리법」제38조
법원보관금	「법원보관금취급규칙」제2조
공탁금	「공탁규칙」제62조

3. 용자사업

Q485 용자보조원가총당금이 없는 용자사업 주식 공시

질 의 내 용

용자사업에 해당되지만 용자보조원가총당금이 없는 경우(2009년 12월 31일 이전 실행된 용자금으로 대손추산액이 없는 경우) 주식에 공시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 ✔ 재정상태표일 현재 용자사업의 개요, 용자조건, 용자사업의 규모 및 이자율 등을 공시하고, 해당 용자사업으로 인해 당기 및 전기에 인식한 용자보조비용이 없다는 사실과 사유를 함께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Q486 용자사업 주식에 대손처리금액 표시 방법

질 의 내 용

용자사업 주식기재 시 당기에 대손처리한 금액은 어떻게 표시해야 하나요?

- ✔ 용자사업 주식 중 용자사업 세부현황 기재 시, 대손처리한 용자금에 대해서는 당기 회수액에 기재하고, 표 하단에 해당 내용을 주기 표시할 수 있습니다.

Q487 용자사업 세부현황에 감면액 작성방법**질 의 내 용**

용자 관련 주식에서 용자사업 세부현황을 작성할 때, 당기회수액이 아닌 감면액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 감면액은 당기회수액 부분에 기재하고, 표 하단에 해당 내용을 주기 표시할 수 있습니다.

Q488 용자사업 주식 기재 범위**질 의 내 용**

용자사업 주식은 모든 용자금에 대해서 다 기재해야 하나요?

✓ 용자회계처리지침 문단2에서 규정하는 용자사업 정의에 부합하는 용자금에 대해서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4. 자산재평가

Q489 자산재평가 주식사항 작성방법

질 의 내 용

주식의 '기타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과 재무제표의 이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작성 시 각 재평가방법 마다 재평가가액, 재평가 전 장부가액 및 재평가손익을 별도로 구분해서 작성하나요?

- ✔ 결산작성지침 양식에 따라 각 자산 종류별(토지, 건물 등) 재평가방법을 열거하고 각 재평가방법마다 해당 금액을 구분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1. 유산자산

Q490 유산자산 공시방법

질 의 내 용

유산자산은 재무제표에 비용으로 계상되는데 이외에 별도로 공시하는 항목이 있나요?

✓ 유산자산의 종류, 수량, 및 관리 상태를 필수보충정보로 공시합니다.

〈재무제표의 표시와 부속서류의 작성에 관한 지침〉

32. (필수보충정보) 필수보충정보는 재무제표에는 표시하지 아니하였으나, 재무제표의 내용을 보완하고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정보로, 다음을 말한다.

- (1) 유산자산의 종류, 수량 및 관리상태

2. 총잉여금·재정운영결과조정표

Q491 총잉여금·재정운영결과조정표상에서 미수채권의 증가 표시방법

질 의 내 용

미수부담금수익과 미수제재금수익 관련 미수채권의 증감은 총잉여금·재정운영결과 조정표의 어느 항목으로 기입해야하나요?

- ✓ 미수부담금수익과 미수제재금수익 관련 미수채권은 '2. 발생주의 기간수익·비용차이'의 '(1) 부담금수익 차이'와 '(2) 제재금수익 차이'에 기재합니다.

Q492 공무원연금부담비의 총잉여금·재정운영결과조정표 조정항목 포함여부

질 의 내 용

인사혁신처로부터 배부 받은 공무원연금부담비의 경우 총잉여금·재정운영결과조정표 상 차이항목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나요?

- ✓ 공무원연금부담비 배부액의 경우 배부받은 부처 입장에서는 현금유출 없이 발생한 비용이므로 차이항목(2.발생주의 기간수익비용 차이 중 기타비용차이)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Q493 총잉여금·재정운영결과조정표 금액 refer 방법**질 의 내 용**

총잉여금·재정운영결과조정표 항목 중에서 재정운영결과 이외에 수익비용성질별재정운영표 금액과 일치해야 하는 항목은 어떤 것이 있나요?

- ✓ 총잉여금·재정운영결과조정표상의 평가이익, 퇴직급여, 감가상각비, 대손상각비, 평가손실, 자산감액손실 차이 등이 수익비용성질별재정운영표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결산적성지침>

총잉여금·재정운영결과조정표 상 다음의 항목들은 수익·비용 성질별재정운영표와 일치

총잉여금재정운영결과조정표	수익·비용 성질별재정운영표
평가이익 차이	평가이익
퇴직급여 차이	퇴직급여(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외)
감가상각비 차이	감가상각비
대손상각비 차이	대손상각비
평가손실 차이	평가손실
자산감액손실 차이	자산감액손실

Q494

총잉여금·재정운영결과조정표의 퇴직급여차이와 재정운영표의 퇴직급여 금액 비교

질 의 내 용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총잉여금·재정운영결과조정표의 퇴직급여차이와 재정운영표의 퇴직급여 금액이 일치해야 하나요?

- ✔ 총잉여금·재정운영결과조정표의 퇴직급여차이에는 현금흐름을 수반하지 않는 퇴직급여비용이 작성되어야 하지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는 현금이 지출되는 퇴직급여비용이므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으로 인한 퇴직급여만큼 총잉여금·재정운영결과조정표의 퇴직급여차이와 재정운영표의 퇴직급여 금액이 차이 나게 됩니다.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만을 활용하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활용하고 있지 않다면 총잉여금·재정운영결과조정표의 퇴직급여차이와 재정운영표의 퇴직급여 금액은 일치하여야 합니다.

Q495

총잉여금·재정운영결과조정표상의 무형자산관련 금액입력

질 의 내 용

총잉여금·재정운영결과조정표 작성 시 무형자산 당기 증감액은 자산·부채의 증감에, 무형자산상각비는 발생주의 기간수익·비용으로 반영을 하니 해당 금액만큼 재정운영결과와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데 원인과 해결방법이 무엇인가요?

- ✔ 무형자산 상각의 경우 자산에서 직접 차감합니다. 그러므로 무형자산 당기 증감액 총금액을 자산부채의 증감에 반영하는 경우 무형자산의 상각으로 인한 효과가 자산부채증감과 발생주의 기간수익·비용에 두 번 반영되게 되어 재정운영결과가 무형자산 감가상각비만큼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무형자산 상각금액만큼은 자산부채 증감효과에서 제외시켜 주어야 합니다.

1. 일반유형자산명세서

Q496 일반유형자산명세서상 '감가상각 등'과 '기타증감'의 내용

질 의 내 용

일반유형자산명세서 상 '감가상각 등'과 '기타증감'에 들어갈 금액은 어떠한 내용들인가요?

- ✓ 감가상각 등은 당기 중 감가상각으로 인한 비용에서 자산재평가이익(순자산조정)과 상계된 금액을 기재하며, 수익·비용 성질별재정운영표 상 감가상각비와 일치합니다.
- ✓ '기타증감'은 취득/자본적지출, 대체, 처분, 감가상각, 감액/환입, 조직개편 이외의 기타의 증감액을 기재합니다. 당기 발생한 재평가손익증감 및 자산의 멸실이나 폐기 등으로 인한 감소액을 포함하여 기재하며, 이때 감소액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 등을 차감한 순액으로 기재합니다.

〈결산작성지침〉

감가상각은 당기 중 감가상각으로 인한 비용에서 자산재평가이익(순자산조정)과 상계된 금액을 기재하며, 성질별재정운영표 상 감가상각비와 일치
기타증감은 상기 사항 외 기타의 증감액을 기재한다. 당기 발생한 재평가손익증감 및 자산의 멸실이나 폐기 등으로 인한 감소액을 포함하여 기재하며, 이때 감소액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 등을 차감한 순액으로 기재

Q497 자산재평가이익 refer 방법

질 의 내 용

일반유형자산 및 사회기반시설명세서상 자산재평가이익과 주식의 순자산조정명세서상 자산재평가이익 금액은 어떤 관계가 있나요?

- ✔ 일반유형자산 및 사회기반시설명세서상 자산재평가이익의 합계액은 주식의 순자산조정명세서상 자산재평가이익의 당기말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Q498 재평가가 있는 유형자산 처분시 명세서에 표시방법

질 의 내 용

재평가이익이 존재하는 자산을 처분한 경우 일반유형자산명세서상에서 어떻게 표시하나요?

- ✔ 일반유형자산명세서상 처분란에 처분된 자산의 장부가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2. 출자금명세서

Q499 출자금명세서 작성 방법

질 의 내 용

'14회계연도 결산보고서상 출자금명세서에 출자금의 대부분이 '기타' 거래처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15회계연도에도 동일하게 작성하면 되나요?

- ✓ '15회계연도 결산 시에는 기타거래처가 아닌 출자대상 기관별(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등)로 출자금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1. 결산보고서 제출방법

Q500 결산보고서 인쇄본 기획재정부 제출여부

질 의 내 용

결산서(재무제표 및 주식 등)는 인쇄하여 기재부에 제출하나요?

- ✔ 디브리인상에서 결산확정을 하시면 기획재정부에서 해당 부처의 결산서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결산서 인쇄본을 따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집필진

기획재정부

재무회계팀 팀장 임동규
재무회계팀 사무관 소광문
재무회계팀 사무관 장시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국가회계팀 김은영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국가회계팀 현지용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국가회계팀 한소영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국가회계팀 진태호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국가회계팀 오예정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국가회계팀 이명인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국가회계팀 임정혁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국가회계팀 모완수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국가회계팀 임종권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국가회계팀 최금주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국가회계팀 오가영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국가회계팀 이남주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국가회계팀 장지원

2016 재무결산 Q&A

2017년 2월 13일 인쇄

2017년 2월 13일 발행

발 행 :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재무회계팀

전 화 : (044)215-5474

팩 스 : (044)215-8118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홈페이지 : <http://www.mosf.go.kr>

디자인, 편집, 인쇄 : 경성문화사
